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

첨부(별책)

중앙관서별 결산보고서

대한민국정부

국가결산보고서

목 차

I. 결산 개요	1	외교부	228
II. 세입세출(수입지출)결산	67	통일부	230
제1장. 결산총괄	70	법무부	230
1. 세입세출결산 총괄	70	국방부	234
1) 중앙관서별 세입세출결산	70	행정안전부	238
2)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124	문화체육관광부	240
2. 수입지출결산 총괄	188	농림축산식품부	244
3. 특별회계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표	198	산업통상자원부	252
제2장. 세입세출결산	202	보건복지부	256
1. 중앙관서별 결산	202	환경부	270
1) 세입결산	202	고용노동부	276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202	여성가족부	278
대통령경호처	202	국토교통부	280
국회	202	해양수산부	290
대법원	204	중소벤처기업부	298
헌법재판소	206	국가보훈처	3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6	인사혁신처	302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208	법제처	304
감사원	208	식품의약품안전처	304
국가정보원	208	국가인권위원회	306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210	방송통신위원회	308
기획재정부	210	공정거래위원회	308
교육부	216	금융위원회	3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18	국민권익위원회	310
		원자력안전위원회	310
		개인정보보호위원회	310
		국세청	312

관세청	314	기획재정부	360
조달청	316	교육부	364
통계청	3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70
병무청	320	외교부	388
방위사업청	320	통일부	390
경찰청	322	법무부	392
소방청	324	국방부	394
문화재청	326	행정안전부	398
농촌진흥청	328	문화체육관광부	406
산림청	332	농림축산식품부	416
특허청	338	산업통상자원부	424
질병관리청	340	보건복지부	432
기상청	344	환경부	44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46	고용노동부	454
새만금개발청	346	여성가족부	458
해양경찰청	348	국토교통부	460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348	해양수산부	476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348	중소벤처기업부	486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350	국가보훈처	49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350	인사혁신처	494
2) 세출결산	352	법제처	496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352	국가인권위원회	500
대통령경호처	352	방송통신위원회	500
국회	352	공정거래위원회	502
대법원	354	금융위원회	502
헌법재판소	356	국민권익위원회	50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356	원자력안전위원회	504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56	개인정보보호위원회	506
감사원	358	국세청	506
국가정보원	358	관세청	508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358	조달청	508

통계청	512	8의2)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	632
병무청	512	9) 현물출자명세서	702
방위사업청	514	10) 재정증권의 발행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의 운용명세서	704
경찰청	514	11) 통합재정수지표	710
소방청	518	12) 통합계정자금 운용 및 수익금 사용내역서	712
문화재청	520	13) 2020년 세계잉여금 처리명세서 (일반회계)	729
농촌진흥청	522	14) 2022년 세계잉여금 내역 및 사용계획 (일반회계)	730
산림청	526	15) 특별교부금 배정명세서	731
특허청	532	제3장. 수입지출결산	736
질병관리청	536	1. 기금별 결산	736
기상청	540	1) 수입결산	736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542	고용보험기금	736
새만금개발청	542	공공자금관리기금	738
해양경찰청	544	공무원연금기금	740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544	공적자금상환기금	742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546	과학기술진흥기금	74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546	관광진흥개발기금	744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546	국민건강증진기금	746
국가교육위원회	548	국민연금기금	748
2. 부속서류	550	국민체육진흥기금	750
1) 계속비 결산명세서	550	국유재산관리기금	752
1의2) 세입세출결산 사업별설명서 : 중앙관서별 결산보고서 참조	556	국제교류기금	754
2) 총액계상 사업집행명세서	558	국제질병퇴치기금	756
3) 수입대체경비 사용명세서	564	군인복지기금	758
4) 이월명세서	586	군인연금기금	760
5) 명사이월비 집행명세서	606	근로복지진흥기금	762
6) 정부기업특별회계 회전자금운용명세서	608	금강수계관리기금	764
7) 성인지 결산서	610	기술보증기금	766
8) 예비금 사용명세서	612		

기후대응기금	768	언론진흥기금	826
낙동강수계관리기금	770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828
남북협력기금	772	영화발전기금	83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774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832
농산물가격안정기금	776	외국환평형기금	832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778	원자력기금	834
농어업재해보험기금	780	응급의료기금	836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782	임금채권보장기금	836
농지관리기금	782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838
대외경제협력기금	784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840
무역보험기금	786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842
문화예술진흥기금	788	전력산업기반기금	844
문화재보호기금	790	정보통신진흥기금	844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792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846
방송통신발전기금	794	주택도시기금	848
범죄피해자보호기금	796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852
보훈기금	796	지역신문발전기금	852
복권기금	798	청소년육성기금	85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800	축산발전기금	856
사법서비스진흥기금	804	한강수계관리기금	858
사학진흥기금	806	2) 지출결산	862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808	고용보험기금	862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확충진기금	808	공공자금관리기금	86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810	공무원연금기금	866
석면피해구제기금	814	공적자금상환기금	866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814	과학기술진흥기금	868
수산발전기금	816	관광진흥개발기금	868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820	국민건강증진기금	870
신용보증기금	822	국민연금기금	874
양곡증권정리기금	824	국민체육진흥기금	874
양성평등기금	824	국유재산관리기금	876
		국제교류기금	884

국제질병퇴치기금	884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926
군인복지기금	884	수산발전기금	928
군인연금기금	886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930
근로복지진흥기금	886	신용보증기금	930
금강수계관리기금	888	양곡증권정리기금	932
기술보증기금	888	양성평등기금	932
기후대응기금	890	언론진흥기금	932
낙동강수계관리기금	900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934
남북협력기금	900	영화발전기금	93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902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936
농산물가격안정기금	902	외국환평형기금	936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904	원자력기금	938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904	응급의료기금	938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904	임금채권보장기금	940
농지관리기금	906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940
대외경제협력기금	908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942
무역보험기금	908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942
문화예술진흥기금	910	전력산업기반기금	944
문화재보호기금	910	정보통신진흥기금	946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912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948
방송통신발전기금	912	주택도시기금	948
범죄피해자보호기금	914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950
보훈기금	916	지역신문발전기금	952
복권기금	918	청소년육성기금	95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920	축산발전기금	954
사법서비스진흥기금	920	한강수계관리기금	956
사학진흥기금	922	2. 부속서류	958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922	1) 재원조성실적표 : 중앙관서별 결산보고서 참조	958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확진기금	924	2) 성인지 기금결산서	958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924	3)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용 설명서: 중앙관서별 결산보고서 참조	959
석면피해구제기금	926		

4)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집행명세서	960
<참고> 분야/부문별 결산	981
1. 총괄	983
1) 연차별 분야 결산총괄	984
2) 연차별 분야/부문 결산총괄	990
3) 당년도 분야/부문 결산총괄	1014
2. 분야별 지출실적	1038
1) 일반·지방행정	1038
2) 공공질서 및 안전	1042
3) 통일·외교	1046
4) 국방	1050
5) 교육	1054
6) 문화 및 관광	1058
7) 환경	1062
8) 사회복지	1066
9) 보건	1072
10) 농림수산	1076
11)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080
12) 교통 및 물류	1086
13) 통신	1090
14) 국토 및 지역개발	1094
15) 과학기술	1098
16) 예비비	1102
Ⅲ. 재무제표	1107
제1장 재무제표	1109
제2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126
제3장 필수보충정보	1233
제4장 부속명세서	1475

Ⅳ. 성과보고서	1521
1. 성과보고서 개요	1523
2. 성과보고서 작성 방법	1525
3. 2022년도 성과보고서 주요내용	1526

Ⅲ. 재무제표

제1장 재무제표

제1장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당기말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전기말 : 2021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정부

		주식	2022
자산			
I. 유동자산			513,836,778,690,665
1. 현금및현금성자산			41,308,701,056,730
2. 단기금융상품			41,787,362,558,845
3. 단기투자증권			323,448,544,592,479
4. 미수채권		74,454,692,353,452	
미수채권현재가치할인차금		(13,434,521,328)	
미수채권대손충당금		(40,099,147,630,441)	34,342,110,201,683
5. 단기대여금	8.4)	34,996,940,189,872	
단기대여금대손충당금	8.4)	(709,212,068,748)	34,287,728,121,124
6. 기타유동자산			38,662,332,159,804
II. 투자자산			1,148,778,020,461,241
1. 장기금융상품			4,539,365,697,301
2. 장기투자증권			794,376,671,807,468
3. 장기대여금	8.4)	220,737,974,822,439	
장기대여금현재가치할인차금		(1,989,648,756)	
장기대여금대손충당금	8.4)	(27,674,757,568,539)	193,061,227,605,144
4. 기타투자자산			156,800,755,351,328
III. 일반유형자산			710,398,789,890,924
1. 토지	8.3)	466,375,684,372,171	
토지사용수익권		(775,161,989,099)	465,600,522,383,072
2. 건물	8.3)	75,492,233,393,516	
건물감가상각누계액		(5,599,207,786,172)	
건물사용수익권		(1,569,007,304,934)	68,324,018,302,410
3. 구축물	8.3)	18,012,550,850,200	
구축물감가상각누계액		(7,099,043,963,222)	
구축물사용수익권		(60,803,184,709)	10,852,703,702,269

(단위: 원)

2021

	565,881,119,982,154
	59,048,755,830,014
	64,618,109,276,585
	327,489,118,161,541
76,210,830,880,811	
(12,908,711,220)	
(36,252,786,487,567)	39,945,135,682,024
33,633,064,094,314	
(727,156,621,803)	32,905,907,472,511
	41,874,093,559,479
	1,167,869,356,540,087
	2,515,050,477,728
	809,794,768,134,056
203,962,804,507,866	
(1,917,350,895)	
(25,706,526,813,375)	178,254,360,343,596
	177,305,177,584,707
	704,035,611,392,210
467,933,577,518,587	
(286,243,967,937)	467,647,333,550,650
70,313,302,807,136	
(2,690,241,129,733)	
(1,249,785,407,683)	66,373,276,269,720
17,893,242,118,025	
(5,493,576,705,141)	
(74,338,697,866)	12,325,326,715,018

		주식	2022
4.	기계장치		11,571,552,157,724
	기계장치감가상각누계액		(4,995,301,529,946)
	기계장치사용수익권		(19,106,702,834)
			6,557,143,924,944
5.	집기·비품·차량운반구	8.3)	20,232,002,619,061
	집기·비품·차량운반구감가상각누계액		(10,453,137,989,379)
	집기·비품·차량운반구사용수익권		-
			9,778,864,629,682
6.	전비품		171,701,330,545,527
	전비품감가상각누계액		(58,091,952,336,799)
			113,609,378,208,728
7.	기타일반유형자산	8.3)	10,827,203,917,336
	기타일반유형자산감가상각누계액		(1,826,944,550,778)
			9,000,259,366,558
8.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26,675,899,373,261
IV.	사회기반시설		422,859,742,079,061
1.	도로	8.3)	328,908,125,909,391
	도로감가상각누계액		(2,637,728,159,024)
	도로사용수익권		(68,362,158,385,283)
			257,908,239,365,084
2.	철도	8.3)	61,055,358,929,895
	철도감가상각누계액		(2,625,283,300,161)
	철도사용수익권		(14,464,918,085,386)
			43,965,157,544,348
3.	항만	8.3)	24,927,331,471,555
	항만감가상각누계액		(589,555,822,585)
	항만사용수익권		(2,737,371,580,868)
			21,600,404,068,102
4.	댐	8.3)	7,716,996,417,119
	댐감가상각누계액		(104,138,633,249)
	댐사용수익권		(3,082,551,582,534)
			4,530,306,201,336
5.	공항	8.3)	5,709,028,066,727
	공항감가상각누계액		(90,979,061,991)
	공항사용수익권		(1,173,806,316,401)
			4,444,242,688,335
6.	하천	8.3)	73,453,683,588,409
	하천감가상각누계액		(388,199,584,264)
	하천사용수익권		(7,389,504)
			73,065,476,614,641
7.	상수도	8.3)	7,203,170,063,239
	상수도감가상각누계액		(459,440,034,660)
	상수도사용수익권		(4,002,162,074,254)
			2,741,567,954,325

(단위: 원)

2021

11,292,825,034,534	
(4,589,750,994,585)	
(20,112,318,772)	6,682,961,721,177
19,959,881,938,220	
(9,556,686,614,664)	
-	10,403,195,323,556
161,542,610,064,103	
(55,090,968,753,737)	106,451,641,310,366
10,348,564,453,217	
(1,701,619,847,455)	8,646,944,605,762
	25,504,931,895,961
	410,185,270,699,289
272,329,082,979,335	
(136,530,244,775)	
(67,108,784,679,890)	205,083,768,054,670
68,724,018,473,936	
(1,877,468,454)	
(14,230,176,370,755)	54,491,964,634,727
24,179,539,212,539	
(20,522,996,145)	
(2,994,484,463,513)	21,164,531,752,881
8,456,395,739,063	
-	
(3,030,912,163,826)	5,425,483,575,237
6,558,327,511,603	
(6,088,278,125)	
(1,204,861,977,242)	5,347,377,256,236
99,120,424,924,393	
(1,071,856,495)	
(32,522,527)	99,119,320,545,371
11,044,296,984,125	
(21,935,344,762)	
(3,261,844,983,783)	7,760,516,655,580

	주식	2022
8. 국가어항	8.3)	2,218,825,462,532
국가어항감가상각누계액		(142,121,668,573)
국가어항사용수익권		(11,995,557,076)
9.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12,539,639,406,007
V. 무형자산		2,503,188,947,186
1. 산업재산권		58,385,526,634
2. 광업권		-
3. 소프트웨어		2,270,463,168,005
4. 기타무형자산		174,340,252,547
VI. 기타비유동자산		35,199,839,254,161
1. 장기미수채권		15,846,894,926,954
장기미수채권현재가치할인차금		(291,616,100,239)
장기미수채권대손충당금		(357,984,219,773)
2.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20,002,544,647,219
자산계		2,833,576,359,323,238
부채		
I. 유동부채		220,032,412,616,168
1. 단기차입금		95,545,853,752,937
2. 유동성장기차입부채	2	96,394,272,809,396
3. 기타유동부채		28,342,930,321,157
기타유동부채현재가치할인차금		(250,644,267,322)
II. 장기차입부채		812,245,843,662,385
1. 국채	2	929,808,110,808,540
국채할증(할인)발행차금		(12,879,289,624,729)
자기국채		(124,812,280,351,118)
2. 공채	2	17,833,048,095,756
공채할증(할인)발행차금		(5,658,258,364)
자기공채		(580,826,638,442)
3. 장기차입금	2	2,882,739,630,742

2021

2,105,404,135,266	
(2,732,141,018)	
(12,869,223,204)	2,089,802,771,044
	9,702,505,453,543
	2,590,605,631,964
	49,430,385,763
	415,737,000
	2,371,380,401,873
	169,379,107,328
	15,495,591,094,980
8,446,669,267,755	
(382,715,669,840)	
(267,509,977,000)	7,796,443,620,915
	7,699,147,474,065
	2,866,057,555,340,684
	187,397,896,031,641
	96,268,978,936,028
	63,280,637,583,397
28,080,561,319,104	
(232,281,806,888)	27,848,279,512,216
	756,089,771,719,861
866,974,718,699,430	
(3,619,758,340,352)	
(125,792,793,529,322)	737,562,166,829,756
16,597,473,722,734	
(6,200,057,639)	
(1,032,606,435,709)	15,558,667,229,386
	2,968,937,660,719

	주식	2022
III. 장기총당부채		1,243,236,809,477,381
1. 퇴직급여총당부채	3	684,981,775,968
2. 연금총당부채	3	1,181,325,233,815,972
3. 보험총당부채	3	591,481,579,328
4. 기타장기총당부채	3	60,635,112,306,113
IV. 기타비유동부채		50,449,555,506,901
1. 장기미지급금		14,934,031,142,151
장기미지급금현재가치할인차금		(1,619,024,819,758)
2.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37,272,411,394,291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현재가치할인차 금		(137,862,209,783)
부채계		2,325,964,621,262,835
순자산		
I. 기본순자산		442,736,634,506,192
II. 적립금 및 잉여금		(276,581,362,841,073)
III. 순자산조정	7	341,456,466,395,284
순자산계		507,611,738,060,403
부채와순자산계		2,833,576,359,323,238

2021

1,199,407,447,136,480

648,244,928,902

1,138,155,463,599,372

809,174,294,274

59,794,564,313,932

52,424,838,077,272

13,711,837,699,881

(1,684,653,945,475)

12,027,183,754,406

40,471,785,342,474

(74,131,019,608)

40,397,654,322,866

2,195,319,952,965,254

442,360,032,867,850

(250,763,199,132,408)

479,140,768,639,988

670,737,602,375,430

2,866,057,555,340,684

2. 재정운영표

당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정부

	주석	2022
I. 재정운영순원가		512,518,247,038,087
1.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94,800,602,063
2. 국회		707,388,586,950
3. 대법원		1,778,528,488,405
4. 헌법재판소		53,712,213,638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		877,827,911,384
6.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33,172,817,300
7. 감사원		144,843,968,338
8. 국가정보원		736,154,979,420
9.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645,269,178,400
10. 기획재정부(국고금회계 포함)		
(1) 기획재정부	9,020,109,203,395	
(2) 국고금회계	(218,929,136,480)	8,801,180,066,915
11. 교육부		99,476,992,037,991
12. 외교부		2,703,747,000,565
13. 통일부		223,127,295,665
14. 법무부		4,423,331,074,557
15. 국방부		46,853,491,149,469
16. 인사혁신처		36,547,372,499,450
17. 문화체육관광부		5,716,874,984,957
18. 농림축산식품부		11,415,264,722,691
19. 산업통상자원부		8,840,433,683,430
20. 보건복지부		41,723,682,523,502
21. 환경부		13,332,053,607,165
22. 고용노동부		30,477,400,170,281
23. 여성가족부		1,333,723,461,029
24. 국토교통부		(5,056,476,201,250)
25. 해양수산부		4,706,845,777,484
26. 법제처		41,974,561,320

(단위: 원)

2021

476,088,377,301,021

118,176,570,199

673,840,235,646

1,738,710,455,962

72,618,451,916

422,147,078,376

33,086,928,469

127,449,365,348

683,703,390,620

632,190,643,865

(7,405,210,790,918)

(95,773,402,150)

(7,500,984,193,068)

79,173,545,994,651

2,859,923,627,243

182,930,178,643

4,485,730,406,761

49,413,822,744,048

34,438,255,287,271

6,297,964,918,218

7,788,778,940,815

9,046,681,711,168

24,660,103,187,950

8,421,681,506,883

36,966,194,994,117

1,250,732,238,549

54,820,950,296,219

5,458,921,879,102

40,578,729,005

주석	2022
27. 국가보훈처	5,703,536,490,593
28. 식품의약품안전처	618,493,991,934
29. 국가인권위원회	42,383,247,690
30. 방송통신위원회	54,279,252,637
31. 공정거래위원회	138,615,517,155
32. 금융위원회	1,183,429,138,217
33. 국민권익위원회	98,968,006,768
34. 원자력안전위원회	154,345,477,930
35. 국세청	2,374,103,511,445
36. 관세청	528,214,919,013
37. 조달청	(152,530,761,932)
38. 통계청	376,159,380,948
39. 병무청	258,385,608,220
40. 방위사업청	5,008,716,858,727
41. 경찰청	13,462,477,355,085
42. 문화재청	1,082,823,332,094
43. 농촌진흥청	1,107,590,249,476
44. 산림청	1,777,422,660,733
45. 특허청	(35,699,757,574)
46. 기상청	405,202,503,253
47.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150,050,014,431
48. 새만금개발청	718,954,382
49. 행정안전부	86,798,880,392,861
50. 중소벤처기업부	50,454,871,943,042
51. 소방청	258,547,908,697
52. 해양경찰청	1,840,162,284,007
5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857,781,458,732
54. 대통령경호처	102,246,677,887
55.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11,978,892,544
56.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12,349,460,325
5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47,335,615,589

2021

5,683,474,734,611
590,472,782,034
39,549,466,577
53,259,181,165
221,933,193,437
940,944,020,530
97,676,199,661
155,966,791,489
2,651,809,524,837
763,649,114,387
(180,067,368,531)
424,258,567,737
296,605,379,590
4,912,075,829,791
13,737,194,710,612
1,156,437,910,428
1,611,485,759,248
2,917,125,504,669
(66,796,374,501)
483,740,150,338
489,344,862,757
60,565,997,987
74,032,622,312,653
23,051,457,358,727
296,096,407,246
1,716,445,382,779
9,950,408,592,641
113,315,697,471
12,938,716,692
9,185,428,211
37,872,085,262

	주식	2022
5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13,730,946,877
59. 질병관리청		10,134,634,264,374
6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4,406,038,959
61. 국가교육위원회		918,041,849
62. 내부거래 금액		
(1) 내부거래 원가	(9,057,993,341,501)	
(2) 내부거래 수익	9,057,993,341,501	-
II. 비교환수익 등		464,750,009,088,191
1. 국세수익		
(1) 국세수익	404,011,788,157,728	
(2) 대손상각비	(5,719,945,253,292)	
(3) 대손충당금환입	267,304,263,930	398,559,147,168,366
2. 부담금수익		19,276,120,280,376
3. 제재금수익		5,096,787,523,834
4. 사회보험수익	8.5)	24,440,660,510,310
5. 채무면제이익		49,208,575,744
6. 기타비교환수익		243,486,916,392
7. 기타재원조달및이전		17,084,598,113,169
III. 제정운영결과(I-II)		47,768,237,949,896

2021

	9,077,902,038
	7,503,269,869,841
	7,246,040,631
	-
(8,176,272,072,496)	
8,176,272,072,496	-
	412,672,191,884,148

353,727,854,517,599	
(6,258,981,513,171)	
405,403,328,207	347,874,276,332,635
	18,916,142,215,933
	5,542,878,422,406
	21,434,253,663,540
	50,381,401,820
	584,976,019,644
	18,269,283,828,170
	63,416,185,416,873

3. 순자산변동표

당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전기 :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대한민국 정부

	주식	기본순자산
I. 전기 기초순자산		442,197,565,117,937
1. 보고금액		442,197,565,117,937
2. 전기오류수정손익	6	-
II. 재정운영결과		
III. 조정항목		162,467,749,913
1. 납입자본의 증감		-
2. 투자증권평가손익		-
3. 파생상품평가손익	5	-
4. 자산재평가이익		-
5. 기타순자산의 증감		162,467,749,913
IV. 전기 기말순자산(I-II+III)		442,360,032,867,850
V. 당기 기초순자산		442,360,032,867,850
1. 보고금액		442,360,032,867,850
2. 전기오류수정손익	6	-
VI. 재정운영결과		
VII. 조정항목		376,601,638,342
1. 납입자본의 증감		-
2. 투자증권평가손익	7	-
3. 파생상품평가손익	5,7	-
4. 자산재평가이익	7	-
5. 기타순자산의 증감	7	376,601,638,342
VIII. 당기 기말순자산(V-VI+VII)		442,736,634,506,192

(단위: 원)

적립금 및 잉여금	순자산조정	합계
(158,290,476,164,548)	221,534,466,756,013	505,441,555,709,402
(158,290,476,164,548)	221,534,466,756,013	505,441,555,709,402
-	-	-
63,416,185,416,873		63,416,185,416,873
(29,056,537,550,987)	257,606,301,883,975	228,712,232,082,901
-	-	-
-	59,258,416,641,501	59,258,416,641,501
-	(130,730,581)	(130,730,581)
-	183,571,424,468,316	183,571,424,468,316
(29,056,537,550,987)	14,776,591,504,739	(14,117,478,296,335)
(250,763,199,132,408)	479,140,768,639,988	670,737,602,375,430
(250,763,199,132,408)	479,140,768,639,988	670,737,602,375,430
(250,763,199,132,408)	479,140,768,639,988	670,737,602,375,430
-	-	-
47,768,237,949,896		47,768,237,949,896
21,950,074,241,231	(137,684,302,244,704)	(115,357,626,365,131)
-	-	-
-	(101,750,462,148,487)	(101,750,462,148,487)
-	(554,417,436)	(554,417,436)
183,271,087,444	(20,726,407,786,471)	(20,543,136,699,027)
21,766,803,153,787	(15,206,877,892,310)	6,936,526,899,819
(276,581,362,841,073)	341,456,466,395,284	507,611,738,060,403

제2장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1. 중요한 회계처리 방법

① 일반기준

- 대한민국 정부(이하 '정부')의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는 「국가회계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였습니다.

② 현금및현금성자산

- 통화 및 타인발행수표 등 통화대용증권과 당좌예금, 보통예금 및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변동의 위험이 중요하지 않은 금융상품으로서 취득 당시 만기일 또는 상환일이 3개월 이내인 것을 현금및현금성자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③ 수익의 정의 및 인식기준

- 교환수익이란 재화나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발생하는 수익이며, 비교환수익은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발생하는 국세, 부담금, 기부금, 무상이전 및 제재금 등의 수익을 의미합니다.
- 정부의 교환수익의 경우 수익창출활동이 완료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고, 비교환수익의 경우 해당 수익에 대한 청구권이 발생하고 그 금액을 합리적으로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하고 있습니다.

④ 유가증권

- 유가증권은 총평균법 등을 적용하여 원가를 산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유가증권을 자산의 분류기준에 따라 단기투자증권과 장기투자증권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단기투자증권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만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거나 또는 1년 이내에 처분 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단기투자증권을 포함하며, 장기투자증권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만기가 1년을 초과하거나 1년 후에 처분예정인 채무증권, 지분증권 및 기타장기투자증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 채무증권은 상각후취득원가로 평가하며 지분증권과 기타장·단기투자증권은 취득원가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목적의 장·단기투자증권의 경우에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뢰성 있게 공정가액을 측정할 수 있으면 공정가액으로 평가하며 장부가액과 공정가액의 차이금액은 순자산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유가증권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 미만으로 하락하고 그 하락이 장기간 계속되어 회복할 가능성이 없을 경우 장부가액과의 차액을 감액손실로 인식하고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⑤ 채권 등의 평가

- 정부는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미수채권 잔액에 대하여 신뢰성 있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산출한 대손추산액을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장기연불조건의 거래, 장기금전대차거래 또는 이와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권·채무로서 명목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가 중요한 경우에는 현재가치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⑥ 재고자산 등의 평가

- 재고자산의 수량은 계속기록법과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실지재고조사에 의하여 확정되며, 선입선출법 등을 적용하여 산정한 원가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또한 재고자산의 시가가 취득원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시가를 재정상태표 가액으로 하고 있습니다.

⑦ 일반유형자산 평가 및 감가상각방법

- 일반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주부동산의 취득, 국가외 상대방과의 교환 및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으며, 국가회계실체 간 발생하는 관리전환은 무상거래일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 일반유형자산에 사용수익권이 설정된 경우 이는 해당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며 사용수익권은 수증자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일반유형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자산의 증가로 처리하고, 원상회복 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토지, 임목, 정부미술품·정부미화물품 등을 제외한 일반유형자산은 아래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감가상각하며, 감가상각누계액에 가산하여 자산의 차감 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건물	10년 ~ 62년	정액법
건축물	3년 ~ 60년	
기계장치	1년 ~ 25년	정액법, 정률법, 재고법
집기·비품·차량운반구	1년 ~ 40년	
전비품	5년 ~ 25년	정액법, 재고법
기타일반유형자산	1년 ~ 40년	정액법, 정률법

⑧ 사회기반시설 평가 및 감가상각방법

- 사회기반시설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건설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부채납 등의 방법으로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할 경우 취득 당시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으며 국가회계실체 간 발생하는 관리전환은 무상거래일 경우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유상거래일 경우에는 자산의 공정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 사회기반시설에 사용수익권이 설정된 경우 이는 해당자산의 차감항목으로 표시하며 사용수익권은 수증자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는 금액과 동일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사회기반시설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가치를 실질적으로 증가시키는 지출은 당해 자산의 증가로 처리하고,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능률유지를 위한 지출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토지 및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을 제외한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아래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 방법에 따라 감가상각하며, 감가상각누계액에 가산하여 자산의 차감형식으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건물	20년 ~ 50년	정액법
구축물	10년 ~ 100년	

-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이란 관리·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 당시의 용역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로서 감가상각하지 않고, 지출된 수선유지비를 감가상각비로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필수보충정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⑨ 무형자산 평가 및 감가상각방법

- 무형자산의 취득원가는 당해 자산의 개발원가 또는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 비용을 가산한 가액을 취득원가로 하고 있습니다.
- 무형자산은 사용할 수 있는 시점부터 아래의 내용연수 및 감가상각방법에 따라 감가상각하며 상각액을 직접 자산에서 차감하여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 분	내용연수	감가상각방법
산업재산권	3년 ~ 40년	정액법
광업권	5년 ~ 10년	
소프트웨어	1년 ~ 20년	
기타무형자산	1년 ~ 100년	

⑩ 자산의 감액 등

- 정부의 재정상태표 자산 중 국가회계기준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산의 물리적인 손상 및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하고 그 미달액이 중요한 경우에는 이를 장부가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회수가능가액으로 조정하고, 장부가액과 회수가능가액의 차액은 동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의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으며, 당해연도와 직전연도의 감액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 분	당기	전기	감액사유
투자증권	223,938	292,795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
일반유형자산	196,399	171,988	물리적 손상 등
기타	8,012	3,444	시장가치의 급격한 하락 등
합계	428,348	468,227	

- 다만, 감액한 자산의 회수가능가액이 차기 이후에 당해 자산이 감액되지 않았을 경우의 장부가액 이상으로 회복되는 경우 동 장부가액까지를 한도로 하여 동 자산에 대한 감액손실환입 과목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⑪ 자산재평가

- 정부는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중 취득이후 공정가액과 장부가액의 차이가 중요하게 발생한 경우 또는 국유재산 관리 총괄청이 일정주기를 정하여 재평가하기로 한 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을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 재평가금액은 재평가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하되, 해당 자산의 공정가액에 대한 합리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대체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재평가 금액을 측정하며 대체적인 평가방법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시가격이나 상각후대체원가법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 자산을 재평가할 때 감가상각누계액이 있을 경우에는 기존의 감가상각누계액을 제거하며 장부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 그 증가액은 자산재평가이익(순자산조정)으로 인식하고, 재평가로 인하여 감소된 경우 그 감소액은 자산재평가손실로 인식하여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⑫ 리스

- 정부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위험과 효익이 대부분 이전되는 리스의 경우 금융리스로, 기타의 리스거래는 운용리스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금융리스의 경우 최소리스료를 내재이자율로 할인한 가액과 리스자산의 공정가치 중 작은 금액을 금융리스자산과 금융리스부채로 각각 계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운용리스의 경우에는 리스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배분된 금액을 운용리스료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⑬ 충당부채, 우발부채 및 우발자산

- 정부는 재정상태표일 현재 지출의 시기 또는 금액은 불확실하지만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로 인하여 재정상태표일 현재 국가회계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 효익을 갖는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는 경우 그 금액을 장기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과거사건은 발생하였으나 불확실한 미래사건의 발생여부에 의해서 그 존재여부가 확인되는 잠재적인 의무가 있는 경우 또는 과거사건이나 거래의 결과 현재의무가 존재하나 경제적 효익이 있는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거나 당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는 경우 우발부채로 주석 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발자산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아니하고, 경제적 효익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만 그 내용을 주석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⑭ 파생상품거래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 정부는 파생상품의 계약에 따라 발생된 권리와 의무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하여 자산·부채로 계상하고 있으며, 동 계약으로부터 발생한 평가손익은 발생시점에 재정운영순원가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미래예상거래의 현금흐름변동위험을 회피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평가손익은 순자산변동표의 조정항목 중 파생상품평가손익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⑮ 외화자산 및 외화부채에 대한 회계처리방법

- 정부는 화폐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경우 재정상태표일 현재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평가하며, 이로 인한 외화평가손익은 재정운영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공정가액으로 측정하는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는 공정가액이 측정된 날의 기준환율로 평가하며,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의 환율변동효과는 해당 자산의 공정가치 평가에 따른 손익의 구분(조정항목 또는 재정운영순원가)에 따라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⑩ 기타 중요한 회계원칙 등

- 중앙관서 간의 채권 및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 차이,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등의 차이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지 않으므로 채권 및 재고자산 등의 평가방법, 유·무형자산의 감가상각방법 등을 일치시키지 아니하였습니다.

2. 장기차입부채 상환계획

구분	계	국채*	공채*
합계	1,057,319,136,482,964	1,032,223,386,180,630	21,653,048,095,756
2023년	106,795,237,947,926	102,415,275,372,090	3,820,000,000,000
2024년	113,945,388,829,746	109,300,304,140,000	3,990,000,000,000
2025년	102,368,428,755,439	97,917,922,004,200	4,070,000,000,000
2026년	87,673,129,902,525	82,685,138,404,000	4,724,176,060,964
2027년	73,051,703,678,360	70,501,397,720,000	2,409,803,432,418
2028년 이후	573,485,247,368,968	569,403,348,540,340	2,639,068,602,374

* 자기국·공채 제거 전 액면가액

① 국채

구분	계	국고채권
합계	1,032,223,386,180,630	938,253,487,452,020
2023년	102,415,275,372,090	86,070,030,762,090
2024년	109,300,304,140,000	92,300,031,000,000
2025년	97,917,922,004,200	77,825,624,884,200
2026년	82,685,138,404,000	62,990,396,954,000
2027년	70,501,397,720,000	54,901,096,000,000
2028년 이후	569,403,348,540,340	564,166,307,851,730

② 공채

구분	계
합계	21,653,048,095,756
2023년	3,820,000,000,000
2024년	3,990,000,000,000
2025년	4,070,000,000,000
2026년	4,724,176,060,964
2027년	2,409,803,432,418
2028년 이후	2,639,068,602,374

(단위: 원)

장기차입금			
국내장기차입금	해외장기차입금	금융리스부채	기타
2,203,325,470,163	-	1,216,101,875,665	23,274,860,750
130,361,000,000	-	427,629,983,836	1,971,592,000
303,005,050,000	-	352,079,639,746	-
137,936,670,000	-	242,570,081,239	-
126,633,050,000	-	137,182,387,561	-
90,480,790,000	-	50,021,735,942	-
1,414,908,910,163	-	6,618,047,341	21,303,268,750

(단위: 원)

국민주택채권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국제기구출자재정증권
82,152,608,040,000	11,807,862,500,000	9,428,188,610
15,077,944,610,000	1,267,300,000,000	-
15,353,223,140,000	1,647,050,000,000	-
18,639,537,120,000	1,452,760,000,000	-
18,748,901,450,000	945,840,000,000	-
14,333,001,720,000	1,267,300,000,000	-
-	5,227,612,500,000	9,428,188,610

(단위: 원)

중소기업진흥채권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21,653,048,095,756	-
3,820,000,000,000	-
3,990,000,000,000	-
4,070,000,000,000	-
4,724,176,060,964	-
2,409,803,432,418	-
2,639,068,602,374	-

3. 장기충당부채

① 퇴직급여충당부채

(단위: 원)

구분		금 액	
		당기	전기
퇴직급여추계액	기초잔액(A)	1,256,186,077,504	1,156,788,230,787
	퇴직금 지급액(B)	147,845,994,311	140,918,029,293
	퇴직급여(C)	268,466,071,895	240,315,876,010
	기말잔액(D=A-B+C)	1,376,806,155,088	1,256,186,077,504
차감항목	퇴직보험예치금(E)	310,382,222,233	283,994,849,930
	국민연금전환금(F)	45,497,518	48,356,242
	퇴직연금운용자산(G)	381,396,659,369	323,897,942,430
	기말잔액(H=E+F+G)	691,824,379,120	607,941,148,602
퇴직급여충당부채(I=D-H)		684,981,775,968	648,244,928,902

② 연금충당부채

※ 연금충당부채 주석 작성 대상은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이며, 연금사업의 현황 및 주요내용, 기금의 자산운용 원칙, 기타 주요 내용 등에 대한 사항은 '필수보충정보2. 연금보고서'와 중앙관서(인사혁신처, 국방부)의 결산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십시오.

□ 연금충당부채의 변동내용

(단위: 원)

구분	금 액	
	당기	전기
기초잔액(A)	1,138,155,463,599,372	1,044,651,453,417,799
당기근무원가(B)	43,489,252,049,299	39,888,714,948,138
이자원가(C)	20,486,798,344,789	21,415,354,795,065
과거근무원가(D)	-	-
공무원·군인연금비용 소계(E=B+C+D)	63,976,050,394,088	61,304,069,743,203
보험수리적손익(F)	586,734,935,741	51,958,960,007,527
연금충당부채 설정액(G=E+F)	64,562,785,329,829	113,263,029,750,730
연금 지급액(H)	21,393,015,113,229	19,759,019,569,157
기말잔액(I=A+G-H)	1,181,325,233,815,972	1,138,155,463,599,372

- 연금충당부채 설정액 64,562,785백만원은 재정운영표 프로그램총원가의 기타이전비용으로 표시되는 연금비용 63,976,050백만원과 순자산변동표의 조정항목으로 표시되는 보험수리적손익 586,735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정운영표의 기타이전비용 중 공무원기타연금비용 203,170백만원과 군인기타연금비용 104,079백만원은 연금충당부채 산정 대상이 아닌 장애연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등의 지급액입니다.
- 공무원연금충당부채에는 지방직 296조원과 교육직 319조원의 연금충당부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연금충당부채의 산정을 위하여 사용된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단위: %)

구분	당기	전기
할인율	1.75 ~ 2.47	1.8 ~ 2.49
물가상승률	2.0 ~ 5.1	2.0 ~ 2.5
임금상승률	3.6 ~ 4.2	3.3 ~ 4.2

③ 보험충당부채

□ 보험의 현황 및 주요내용

○ 무역보험(산업통상자원부)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보험기금은 수출보험 및 수입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출보험제도는 수출기업이 물품을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제도이며, 수입보험제도는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급한 선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금융기관이 수입자에게 대출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제도입니다.
- 수출보험제도와 수입보험제도는 보험료 수취 대가로 수출입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Commercial Risk) 및 비상위험(Political Risk)을 인수합니다. 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행위로 인해 피보험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을 위험을 의미하며, 비상위험은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수입국 정부의 외환거래 제한 등으로 인해 손실을 입을 위험을 의미합니다.

○ 농어업재해재보험(농림축산식품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업재해보험은 태풍·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하여 발생하는 농작물 및 양식수산물 피해를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보상함으로써 농어가의 소득 및 경영안정, 나아가 농어업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01년 도입된 정책보험으로 현재 농작물재해보험은 농협손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수협중앙회에서 시행 중입니다.
- 한편 농어업재해보험사업에 있어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과도한 보험금지급으로 원수보험자의 경영이 크게 악화되어 사업추진이 불투명해질 수 있는 바, 정부는 일정수준 이상(농작물 손익분담방식에 따른 정부 부담분, 양식수산물 140% 초과손해)의 손해를 국가가 인수토록 하는 국가재보험제도를 '05년 도입하였고, 지급재원인 농어업재해보험기금을 설치하여 재해보험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 경제협력사업보험(통일부)

- 통일부 남북협력기금은 북한에 투자하는 남한기업에게 북한 당국의 몰수, 사업중단 등 경영외적 사유로 투자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의 일부를 보상해 주는 경제협력사업보험계약을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과 체결하고 있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현재 보험계약을 체결한 기업은 없습니다.

※ 남북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한 보험계약은 대북사업의 특성상 일반적인 보험계약과는 달리 정치적 위험인 비상위험이 크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장래 보험금의 지급이 발생할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44조 및 보험회계처리지침(기획재정부고시)에 의거한 보험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 보험충당부채의 변동내역

(단위: 원)

구분		금 액	
		당기	전기
무역보험	기초잔액(A)	708,891,481,596	764,136,511,494
	증가액(B)	-	-
	감소액(C)	199,681,483,618	55,245,029,898
	기말잔액(D=A+B-C)	509,209,997,978	708,891,481,596
농어업재해재보험	기초잔액(A)	100,282,812,678	73,632,934,663
	증가액(B)	-	26,649,878,015
	감소액(C)	18,011,231,328	-
	기말잔액(D=A+B-C)	82,271,581,350	100,282,812,678
합계	기초잔액(A)	809,174,294,274	837,769,446,157
	증가액(B)	-	26,649,878,015
	감소액(C)	217,692,714,946	55,245,029,898
	기말잔액(D=A+B-C)	591,481,579,328	809,174,294,274

□ 구상채권 및 대손충당금 변동내역

(단위: 원)

구분	당기말			
	구상채권액(A)	현재가치 할인차금(B)	대손충당금(C)	장부금액 (D=A-B-C)
무역보험	193,631,702,039	25,153,602,966	7,483,541,149	160,994,557,924
합계	193,631,702,039	25,153,602,966	7,483,541,149	160,994,557,924

(단위: 원)

구분	전기말			
	구상채권액(A)	현재가치 할인차금(B)	대손충당금(C)	장부금액 (D=A-B-C)
무역보험	261,049,703,968	45,001,866,264	10,306,097,306	205,741,740,398
합계	261,049,703,968	45,001,866,264	10,306,097,306	205,741,740,398

□ 보험종류별 보험수익 및 보험비용

(단위: 원)

구분	금 액			
	당기		전기	
	보험수익	보험비용	보험수익	보험비용
합계	1,013,062,310,218	468,769,900,233	664,564,540,803	454,356,696,515
무역보험	839,885,095,685	458,943,375,952	532,255,316,042	427,003,040,200
농어업재해재보험	173,103,383,383	9,826,524,281	132,232,551,471	27,353,656,315
경제협력사업보험	73,831,150	-	76,673,290	-

④ 기타장기충당부채

(단위: 원)

구분	금 액	
	당기말	전기말
보증충당부채	5,574,618,266,108	5,549,502,018,060
퇴직수당충당부채	52,776,511,699,955	52,143,323,928,779
소송충당부채	1,773,535,801,471	1,744,202,977,523
기타의기타장기충당부채	510,446,538,579	357,535,389,570
합계	60,635,112,306,113	59,794,564,313,932

<1. 보증충당부채>

□ 보증의 현황 및 주요 내용

○ 신용보증기금(금융위원회)

- 일반보증 : 기업이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부담하는 각종 채무에 대한 보증입니다.
- 유동화회사보증 : 기업의 자금난 완화 및 자본시장 안정화를 위해 유동화회사가 개별회사의 회사채 등을 매입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입니다.
- 시장안정특별보증 : 건설부문 등의 경기침체와 회사채 시장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일시적인 신용경색을 해소하기 위해 시장안정P-CBO보증, 건설공사브릿지론보증 등으로 구성된 특별계정을 설치하여 실물부문에 원활한 유동성을 지원하는 한시적 보증입니다.
- 주력산업 등 유동화회사보증 : 주력산업 기업, 코로나19 피해기업 등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유동화회사가 개별회사의 회사채 등을 매입하여 발행하는 유동화증권에 대한 보증입니다.

○ 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증기금은 기술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기술평가를 통해 보증지원을 하고 있고,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2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보증채무를 부담할 수 있으며, 보증업종별 당기와 전기말 현재의 보증잔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구분	당기	전기
농림어업및광업	70,357,062,625	63,713,724,327
제조업	19,506,134,581,136	19,544,405,236,865
건설업	560,671,962,010	544,325,025,491
도소매업	591,436,735,228	553,385,429,643
사업서비스업	5,139,902,516,456	4,915,458,534,781
운수통신업외기타	830,426,882,494	871,649,307,801
합계	26,698,929,739,949	26,492,937,258,908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금융위원회)

- 기금은 농림어업인의 영농어 활동에 소요되는 자금의 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보증과 특례보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보증의 경우 보증 금액별 각 구간에서 일반 또는 정식 신용조사를 실시한 후 제공하며, 특례보증의 경우 1억원 이하는 금융기관에 위탁심사, 1억원 초과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보증센터에서 직접심사를 수행하여 보증 제공여부를 결정합니다.
- 보증요율은 최저 0.1%에서 최고 1.4%의 범위 안에서 결정되며 동일인당 보증한도는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 보증금액과 합산하여 개인 및 단체는 15억원 이내, 법인은 20억원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심의회가 농림수산업발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승인하는 농림수산업자에 대하여는 70억까지 보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금은 보증신청인의 신청금액 및 신청인의 구분에 따라 보증위험부담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대출금융기관과 책임을 나누어 부담하는 부분보증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금융위원회)

- 주택금융신용보증

개인보증은 주택을 건축·구입·임차(전세 포함) 또는 개량하거나 이에 소요된 자금을 보전하기 위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고자 하는 개인에 대하여 지원하는 신용보증이며, 사업자보증은 주택의 건설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법인 또는 개인기업)에 대하여 지원하는 신용보증입니다.

(단위: 원)

구 분	당 기		전 기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개 인	114,414,269,700,325	92.54	109,139,011,035,412	93.28
사 업 자	9,219,181,427,580	7.46	7,859,942,923,419	6.72
합 계	123,633,451,127,905	100.00	116,998,953,958,831	100.00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연금의 방식으로 노후생활 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주택소유자에 대하여 지원하는 신용보증입니다.

(단위: 원)

구 분	당 기		전 기		
	금 액	구성비(%)	금 액	구성비(%)	
일반 주택	정액형	5,409,997,354,923	68.60	4,354,649,022,833	69.33
	증가형	19,607,386,829	0.25	18,936,425,868	0.30
	감소형	355,608,518,597	4.51	345,469,811,932	5.50
	전후후박형	1,735,517,594,186	22.01	1,470,437,953,435	23.41
	정기증가형	1,479,692,563	0.02	218,495,916	0.00
	초기증액형	314,776,166,712	3.99	55,196,733,695	0.89
노인 복지 주택	정액형	16,400,347,066	0.21	14,321,959,322	0.23
	감소형	5,885,609,865	0.07	6,372,045,555	0.10
	전후후박형	11,830,938,218	0.15	10,228,164,072	0.16
	초기증액형	2,776,432,931	0.04	300,446,271	0.00
오피스텔	정액형	7,062,209,691	0.09	3,341,733,618	0.05
	감소형	1,834,785,813	0.02	1,156,327,206	0.02
	초기증액형	3,197,105,943	0.04	502,679,897	0.01
합 계	7,885,974,143,337	100.00	6,281,131,799,620	100.00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기획재정부)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하여 항만, 도로, 철도, 학교 등의 민간투자사업의 자금 조달과 관련하여 보증하고 있으며, 재정상태표일 현재 8,624,688백만원의 산업기반신용보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근로복지진흥기금(고용노동부)

- 보증·담보 여력이 없는 근로자(실업자)가 신용보증지원을 통해 생활안정자금 융통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생계보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무역보험기금(산업통상자원부)

- 무역보험기금은 수출신용보증 상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수출신용보증은 수출입자가 수출입계약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환어음 매각에 따른 금융기관 앞 수출금융채무를 지는 경우 해당 수출입자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는 신용위험에 대해 무역보험공사가 연대보증을 제공하는 상품입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정책소외 등급인 신용등급 4~5등급 소상공인의 제2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정책자금으로 전환하여 저신용 영세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였습니다.

□ 보증충당부채 산정내역

○ 신용보증기금(금융위원회)

-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신용보증잔액에 대해 대위변제에 따른 추정 예상손실액을 고려하여 보증충당부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 부실사유가 발생되지 아니한 정상보증잔액 및 부실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지급시기 미도래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 경험손실률(보증부실률, 대위변제율, 구상채권대손율)을 적용하여 예상손실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 기술보증기금(중소벤처기업부)

- 기술보증기금은 사고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사고사유가 발생하였지만 지급시기 미도래 등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 과거 5개년간 경험률에 의한 대지급율 및 대손율을 적용하여 대위변제준비금 및 보전금지급준비금의 과목으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단위: 원)

보증충당부채 구분		당기	전기
대위변제준비금	사고잔액	352,788,036,996	290,898,508,355
	예상사고액	1,008,075,167,905	1,095,809,583,796
	사고보증액 계	1,360,863,204,901	1,386,708,092,151
	준비금	1,026,761,667,005	1,091,237,103,979
	설정율	75.45%	78.69%
유동화보증 대위변제준비금	사고잔액	4,545,569,280	4,965,341,440
	예상사고액	13,781,895,978	18,214,428,495
	사고보증액 계	18,327,465,258	23,179,769,935
	준비금	10,384,124,496	13,740,251,277
	설정율	56.66%	59.28%

○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금융위원회)

- 기금회계처리지침 및 보증회계처리지침에 따라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보증충당부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산정방식
보증충당부채 적립대상	보고기간종료일 현재 보증승낙잔액
대위변제율	5개년 연도말 보증승낙잔액 중 대위변제발생액/5개년 연도말 보증승낙잔액
구상채권대손율	1(-)(5년간 구상채권 회수액/5년간 구상채권 발생액)

(단위: 원)

구분	금 액	
	당 기 말	전 기 말
설정대상보증승낙잔액	17,185,161,335,784	16,358,548,456,681
대위변제율	6.70%	6.60%
구상채권대손율	82.56%	82.73%
보증충당부채	950,308,732,834	893,166,304,085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금융위원회)

- 주택금융신용보증

(단위: 원)

구분	잔액	예상사고율 (a)	예상대위변제율 (b)	예상대손율 (c)	예상손실율 (a×b×c)
개인 보증	114,414,269,700,325	1.13%	45.08%	63.39%	0.32%
사업자 보증	9,219,181,427,580	4.58%	4.96%	88.08%	0.20%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단위: 원)

구분	잔액	예상손실율
정상보증	7,885,974,143,337	1.58%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기획재정부)

-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은 기말 현재의 각 사업별 보증잔액에 민자사업 평가모형을 통하여 도출된 예상부도율(0.001%~6.740%)을 곱하여 산출된 금액의 합계액을 보증충당부채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근로복지진흥기금(고용노동부)

- 재정상태표일 현재 근로자신용보증사업과 관련된 신용보증잔액에 대하여 예상대위변제율과 예상손실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을 보증충당부채(기타장기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무역보험기금(산업통상자원부)

- 재정상태표일 현재 유효계약금액, 사고통지금액, 청구계류금액에 손실율을 적용해 기금이 부담하게 될 순현금유출액의 현재가치를 산출합니다. 손실율은 크게 사고발생확률, 사고대비청구율, 청구대비지급율로 구성되며, 각각의 비율은 전기 말 현재 유효계약금액과 당 회계연도의 사고발생금액, 청구금액, 지급금액을 이용해 산출합니다.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보증하고 있는 채무에 대해 자산건전성 분류에 따라 대손위험을 평가하고 대손추정금액을 보증충당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보증충당부채 변동내역

(단위: 원)

구분		당기	전기
신용보증기금	기초잔액(A)	3,103,339,605,998	2,973,485,290,810
	증가액(B)	11,026,556,879	1,986,832,236,962
	감소액(C)	200,604,781,510	1,856,977,921,774
	기말잔액(D=A+B-C)	2,913,761,381,367	3,103,339,605,998
기술보증기금	기초잔액(A)	1,104,977,355,256	1,185,815,955,981
	증가액(B)	-	-
	감소액(C)	67,831,563,755	80,838,600,725
	기말잔액(D=A+B-C)	1,037,145,791,501	1,104,977,355,256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기초잔액(A)	893,166,304,085	846,327,864,069
	증가액(B)	57,142,428,749	46,838,440,016
	감소액(C)	-	-
	기말잔액(D=A+B-C)	950,308,732,834	893,166,304,08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기초잔액(A)	315,696,958,929	345,974,022,697
	증가액(B)	196,806,793,669	-
	감소액(C)	-	30,277,063,768
	기말잔액(D=A+B-C)	512,503,752,598	315,696,958,929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기초잔액(A)	64,177,889,025	59,669,912,347
	증가액(B)	10,963,618,640	4,507,976,678
	감소액(C)	-	-
	기말잔액(D=A+B-C)	75,141,507,665	64,177,889,025
근로복지진흥기금	기초잔액(A)	16,226,648,463	14,502,616,618
	증가액(B)	2,412,221,843	1,724,033,108
	감소액(C)	1,263	1,263
	기말잔액(D=A+B-C)	18,638,869,043	16,226,648,463
무역보험기금	기초잔액(A)	51,916,923,785	80,113,595,768
	증가액(B)	14,332,004,029	-
	감소액(C)	-	28,196,671,983
	기말잔액(D=A+B-C)	66,248,927,814	51,916,923,785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기초잔액(A)	332,519	77,749,368
	증가액(B)	868,970,767	-
	감소액(C)	-	77,416,849
	기말잔액(D=A+B-C)	869,303,286	332,519
합계	기초잔액(A)	5,549,502,018,060	5,505,967,007,658
	증가액(B)	293,552,594,576	2,039,902,686,764
	감소액(C)	268,436,346,528	1,996,367,676,362
	기말잔액(D=A+B-C)	5,574,618,266,108	5,549,502,018,060

□ 구상채권 및 대손충당금 변동내역

(단위: 원)

구분	당기말			
	구상채권액(A)	현재가치 할인차금(B)	대손충당금(C)	장부금액 (D=A-B-C)
합계	7,769,908,249,979	-	6,477,375,443,945	1,292,532,806,034
신용보증기금	2,646,076,996,006	-	2,164,331,455,386	481,745,540,620
기술보증기금	1,624,424,917,298	-	1,385,084,011,223	239,340,906,075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457,272,140,027	-	1,196,936,920,649	260,335,219,378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243,193,338,345	-	973,510,900,393	269,682,437,952
근로복지진흥기금	91,272,215,456	-	63,009,791,629	28,262,423,827
무역보험기금	704,891,671,825	-	691,725,393,643	13,166,278,182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776,971,022	-	2,776,971,022	-

(단위: 원)

구분	전기말			
	구상채권액(A)	현재가치 할인차금(B)	대손충당금(C)	장부금액 (D=A-B-C)
합계	8,052,299,493,930	-	6,721,321,812,129	1,330,977,681,801
신용보증기금	2,885,571,849,281	-	2,348,681,056,110	536,890,793,171
기술보증기금	1,757,534,591,213	-	1,523,310,564,002	234,224,027,211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355,486,478,878	-	1,115,115,924,933	240,370,553,945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238,159,444,535	-	965,222,031,202	272,937,413,333
근로복지진흥기금	77,850,896,787	-	48,295,176,426	29,555,720,361
무역보험기금	734,870,427,548	-	717,871,253,768	16,999,173,78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2,825,805,688	-	2,825,805,688	-

□ 보증 회계실체별 지급보증금액

(단위: 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합계	270,847,429,137,872	256,511,443,723,571
신용보증기금	83,368,917,767,758	78,588,789,066,414
기술보증기금	26,698,929,739,949	26,492,937,258,908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7,185,161,335,784	16,358,548,456,681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131,519,425,271,242	123,280,085,758,451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8,624,688,279,885	8,758,299,488,627
근로복지진흥기금	848,468,809,799	743,484,481,402
무역보험기금	2,421,812,113,455	2,282,700,061,555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180,025,820,000	6,599,151,533

<2. 퇴직수당충당부채>

- 퇴직수당충당부채의 변동내용

(단위: 원)

구분	금 액	
	당기	전기
기초잔액(A)	52,143,323,928,779	49,027,235,975,514
당기근무원가(B)	3,552,539,416,868	3,267,551,625,462
이자원가(C)	938,579,830,718	1,005,058,337,498
과거근무원가(D)	-	-
퇴직수당비용 소계(E=B+C+D)	4,491,119,247,586	4,272,609,962,960
보험수리적손익(F)	(832,186,706,940)	1,346,520,528,315
퇴직수당충당부채 설정액(G=E+F)	3,658,932,540,646	5,619,130,491,275
퇴직수당 지급액(H)	3,025,744,769,470	2,503,042,538,010
기말잔액(I=A+G-H)	52,776,511,699,955	52,143,323,928,779

- 퇴직수당충당부채의 산정을 위하여 사용된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

(단위: %)

구분	당기	전기
할인율	1.75 ~ 2.47	1.8 ~ 2.49
물가상승율	2.0 ~ 5.1	2.0 ~ 2.5
임금상승율	3.6 ~ 4.2	3.3 ~ 4.2

<3. 소송충당부채>

(단위: 원)

구분	금 액	
	당기	전기
기초잔액 (A)	1,744,202,977,523	1,584,671,650,937
증가액 (B)	196,582,937,242	337,822,988,792
감소액 (C)	167,250,113,294	178,291,662,206
기말잔액 (D=A+B-C)	1,773,535,801,471	1,744,202,977,523

<4. 기타의기타장기충당부채>

(단위: 원)

구분	금 액	
	당기	전기
기초잔액 (A)	357,535,389,570	327,568,925,980
증가액 (B)	161,808,191,822	37,373,218,204
감소액 (C)	8,897,042,813	7,406,754,614
기말잔액 (D=A+B-C)	510,446,538,579	357,535,389,570

4. 외화자산및외화부채

(단위: 원, 달러, 엔 등)

구분	계정과목	외화종류	당기말		전기말	
			외화금액	원화환산액	외화금액	원화환산액
외화자산	합계	소계		616,691,944,179,598		649,744,942,879,152
		USD(미국)	419,659,652,621	531,829,509,424,671	483,232,305,927	572,871,898,677,697
		JPY(일본)	1,091,406,713,916	10,403,070,515,486	1,075,067,197,561	11,075,772,295,801
		EUR(유럽연합)	30,010,918,855	40,550,753,555,320	26,702,638,133	35,844,019,275,319
		AUD(호주)	8,596,501,996	7,379,323,278,921	7,557,888,988	6,491,395,274,116
		CAD(캐나다)	7,318,599,848	6,845,671,925,578	6,470,083,980	6,021,124,854,209
		CHF(스위스)	2,010,763,499	2,760,516,883,883	2,190,221,425	2,841,746,593,920
		DKK(덴마크)	4,506,153,112	818,768,020,333	4,120,250,280	743,622,770,787
		GBP(영국)	5,549,661,806	8,478,051,851,971	4,737,254,426	7,580,791,397,417
		HKD(홍콩)	6,654,570,501	1,081,700,434,861	5,033,407,255	765,228,905,093
		IDR(인도네시아)	328,899,300,152	26,607,953,376	26,523,571,366	2,204,108,772
		NOK(노르웨이)	957,278,226	122,646,486,164	832,500,523	111,796,495,455
		NZD(뉴질랜드)	156,080,831	125,524,886,473	209,184,473	169,364,117,895
		SEK(스웨덴)	9,061,036,556	1,097,925,799,595	9,353,870,124	1,225,731,141,163
		SGD(싱가포르)	1,174,937,299	1,108,095,115,271	1,135,655,315	996,128,704,731
		VND(베트남)	296,433,945	15,918,501	275,513,867	14,354,272
		BRL(브라질)	322,112,864	77,229,881,472	30,861,725	6,566,758,092
		CNY(중국)	16,379,006,958	2,978,029,821,860	13,983,732,427	2,599,856,791,645
		INR(인도)	13,592,259,459	208,097,492,275	1,251,103,315	19,930,075,775
		RUB(러시아)	213,178,916	3,602,723,675	315,780,257	5,005,117,067
		ZAR(남아공)	709,889,798	53,121,053,551	68,246,601	5,080,959,461
		MXN(멕시코)	512,158,171	33,367,104,877	55,815,735	3,233,963,706
		PLN(폴란드)	906,186,338	261,615,995,713	926,029,185	270,502,385,510
		SAR(사우디아라비아)	170,635,149	57,515,989,527	16,450,314	5,194,351,271
		AED(아랍에미리트)	56,873,310	19,624,704,157	5,637,492	1,819,500,445
		ILS(이스라엘)	176,370,710	63,534,020,862	136,004,591	51,914,312,774

구분	계정 과목	외화종류	당기말		전기말		
			외화금액	원화환산액	외화금액	원화환산액	
외화 자산	합계	CLP(칠레)	4,880,344,034	7,222,909,168	404,911,591	566,876,226	
		CZK(체코)	37,004,260	2,066,687,905	4,000,776	215,961,888	
		TRY(터키)	119,436,672	8,088,251,392	3,085,457	277,104,946	
		COP(콜롬비아)	5,556,691,856	1,444,739,882	930,209,230	269,760,676	
		PHP(필리핀)	441,185,631	10,014,913,826	45,508,463	1,057,161,585	
		MYR(말레이시아)	73,775,994	21,136,084,582	7,434,849	2,110,381,880	
		KWD(쿠웨이트)	3,153,823	13,054,304,366	242,969	952,134,963	
		HUF(헝가리)	807,943,368	2,730,848,583	102,863,170	374,421,938	
		THB(태국)	832,893,820	30,533,887,437	69,500,178	2,472,121,354	
		QAR(카타르)	40,461,367	14,032,406,579	3,602,273	1,172,648,091	
		TWD(대만)	4,790,363,643	197,698,307,505	595,964,594	25,531,123,212	
		소계		13,060,598,415,649		12,221,291,592,253	
		USD	10,303,919,047	13,058,156,609,195	10,306,854,051	12,218,775,478,629	
		JPY	5,924,366	56,469,870	3,395,106	34,977,739	
		EUR	1,489,190	2,012,193,229	822,111	1,103,553,283	
		AUD	21,618	18,556,944	45,527	39,103,037	
		GBP	22,200	33,914,778	517,677	828,411,883	
		IDR	80,462,967	6,509,454	359,704,781	29,891,466	
		VND	296,433,945	15,918,501	275,513,867	14,354,272	
		BRL	677,858	162,496,141	1,277,650	271,858,269	
		CNY	426,812	77,440,693	783,000	145,841,541	
		INR	69,887	1,069,976	88,621	1,411,737	
		RUB	816,512	13,799,058	308,061	4,882,760	
		ZAR	39,119	2,927,294	34,493	2,568,026	
		MXN	23,051	1,501,787	59,854	3,467,915	
		PLN	1,787	515,849	5,401	1,577,604	
		SAR	2	515	10,943	3,455,206	
		AED	56,494	19,493,754	29,982	9,676,538	
		SGD	20,145	18,998,611	24,002	21,053,526	
		PHP	-	-	1,241	28,822	
		단기 금융상품	소계		15,829,056,548,449		38,283,024,330,112
			USD	10,347,280,290	13,113,108,312,226	30,071,162,341	35,649,362,954,912
			EUR	2,009,651,997	2,715,441,778,035	1,961,587,691	2,633,117,620,975
			CNY	2,791,326	506,458,188	2,919,329	543,754,225
		단기 투자증권	소계		100,910,936,499,463		103,381,304,927,576
			USD	54,207,170,423	68,696,747,077,763	60,959,483,444	72,267,467,622,794
			JPY	640,013,006,778	6,100,475,977,957	652,500,952,898	6,722,325,817,096
			EUR	6,814,626,448	9,207,923,257,016	7,053,899,709	9,468,731,735,931
			AUD	2,359,058,089	2,025,039,054,242	2,097,072,625	1,801,154,706,869
			CAD	3,734,515,832	3,493,191,418,799	3,545,832,507	3,299,787,190,155

구분	계정 과목	외화종류	당기말		전기말	
			외화금액	원화환산액	외화금액	원화환산액
외화 자산	단기 투자증권	CHF	1,972,898,279	2,708,532,860,567	2,122,324,381	2,753,652,214,784
		DKK	4,306,195,572	782,435,735,374	3,913,366,714	706,284,424,638
		GBP	2,845,803,092	4,347,448,009,731	2,566,415,562	4,106,906,504,411
		HKD	6,646,630,249	1,080,409,746,977	5,023,277,840	763,688,930,117
		NZD	6,825	5,489,030	5,056,767	4,094,161,344
		CNY	2,100,565,665	381,924,849,090	571,039,777	106,167,715,297
		NOK	779,530,810	99,873,487,319	620,153,613	83,280,428,736
		SEK	7,008,624,276	849,235,003,535	7,160,107,689	938,260,511,639
		SGD	295,977,080	279,138,943,946	253,868,204	222,677,956,911
		ILS	176,370,710	63,534,020,862	136,004,591	51,914,312,774
		IDR	328,818,837,185	26,601,443,922	26,163,866,585	2,174,217,306
		BRL	315,299,737	75,583,652,882	29,583,095	6,294,691,105
		RUB	194,380,755	3,285,034,749	315,472,196	5,000,234,307
		ZAR	709,850,679	53,118,126,257	68,212,108	5,078,391,435
		MXN	511,852,349	33,347,180,560	55,755,881	3,230,495,791
		TRY	119,436,672	8,088,251,392	3,085,457	277,104,946
		PLN	35,788,838	10,332,237,443	4,125,676	1,205,151,256
		CLP	4,873,985,777	7,213,498,948	404,911,591	566,876,226
		MYR	73,714,345	21,118,422,690	7,434,849	2,110,381,880
		TWD	4,780,638,073	197,296,933,235	595,964,594	25,531,123,212
		AED	56,816,816	19,605,210,403	5,607,510	1,809,823,907
		QAR	40,461,367	14,032,406,579	3,602,273	1,172,648,091
		COP	5,453,127,200	1,417,813,072	930,209,230	269,760,676
		CZK	36,854,755	2,058,338,066	4,000,776	215,961,888
	THB	832,893,820	30,533,887,437	69,500,178	2,472,121,354	
	PHP	440,933,244	10,009,184,632	45,507,222	1,057,132,763	
	KWD	3,153,823	13,054,304,366	242,969	952,134,963	
	HUF	807,943,368	2,730,848,583	102,863,170	374,421,938	
	SAR	170,582,875	57,498,369,740	16,439,371	5,190,896,065	
	INR	13,592,189,572	208,096,422,299	1,250,918,080	19,927,124,971	
	미수채권	소계		744,227,158,439		1,116,677,890,307
		USD	436,701,620	553,431,961,926	830,259,934	984,273,152,909
		JPY	1,200,190,698	11,439,977,538	942,095,871	9,705,848,341
EUR		66,307,289	89,594,407,765	42,348,314	56,845,837,831	
AUD		4,520,875	3,880,764,669	4,000,371	3,435,879,447	
CAD		11,786,206	11,024,581,402	11,123,861	10,351,976,777	
GBP		18,249,086	27,878,580,609	10,817,876	17,311,306,148	

구분	계정 과목	외화종류	당기말		전기말	
			외화금액	원화환산액	외화금액	원화환산액
외화 자산	미수채권	NOK	1,945,238	249,223,862	2,259,415	303,416,953
		NZD	881,233	708,714,007	1,220,340	988,036,593
		SEK	2,635,694	319,367,089	2,295,833	300,845,990
		SGD	508,740	479,797,429	719,848	631,407,623
		CNY	193,407,140	35,165,286,112	158,554,748	29,478,498,716
		PLN	1,296,849	374,400,384	1,476,164	431,202,366
		CHF	260,806	358,052,098	745,055	966,687,194
		DKK	33,658,459	6,115,741,979	620,958	112,070,658
		BRL	4,614,675	1,106,229,791	980	208,718
		HKD	7,940,252	1,290,687,884	10,129,415	1,539,974,976
		RUB	17,981,649	303,889,868	-	-
		MXN	282,771	18,422,530	-	-
		SAR	52,272	17,619,272	-	-
		CLP	6,358,257	9,410,220	-	-
		CZK	149,505	8,349,839	-	-
		COP	103,564,656	26,926,810	-	-
		PHP	252,387	5,729,194	-	-
		MYR	61,649	17,661,892	-	-
		TWD	9,725,570	401,374,270	-	-
	INR	-	-	96,614	1,539,067	
	단기 대여금	소계		586,641,088,090		510,190,015,760
		USD	462,906,248	586,641,088,090	430,358,511	510,190,015,760
	기타 유동자산	소계		69,256,508,580		62,864,431,420
		USD	54,648,867	69,256,508,580	53,027,779	62,864,431,420
	장기 투자증권	소계		325,011,034,435,070		311,267,448,356,079
		USD	217,431,396,130	275,545,639,973,862	226,474,491,068	268,485,509,161,628
		JPY	450,187,072,074	4,291,093,133,591	421,620,233,686	4,343,700,295,535
		CNY	14,081,816,015	2,560,355,787,777	13,250,435,573	2,463,520,981,866
		EUR	20,916,312,347	28,262,121,242,976	17,488,532,433	23,475,556,626,759
AUD		6,232,901,414	5,350,384,903,066	5,456,770,465	4,686,765,584,763	
CAD		3,572,297,810	3,341,455,925,377	2,913,127,612	2,710,985,687,277	
GBP		2,685,587,428	4,102,691,346,853	2,159,503,311	3,455,745,174,975	
NOK		175,802,178	22,523,774,983	210,087,495	28,212,649,766	
NZD		155,192,773	124,810,683,436	202,907,366	164,281,919,958	
SEK		2,049,776,586	248,371,428,971	2,191,466,602	287,169,783,534	
SGD		878,431,334	828,457,375,285	881,043,261	772,798,286,671	
PLN		869,098,864	250,908,842,037	920,421,944	268,864,454,284	

구분	계정과목	외화종류	당기말		전기말	
			외화금액	원화환산액	외화금액	원화환산액
외화자산	장기투자증권	CHF	37,604,414	51,625,971,218	67,139,489	87,111,473,572
		BRL	1,520,594	377,502,658	-	-
		DKK	166,299,081	30,216,542,980	206,262,608	37,226,275,491
	장기대여금	소계		3,475,088,068,600		5,243,334,884,533
		USD	2,526,185,357	3,201,434,702,291	4,246,881,692	5,034,678,246,052
		EUR	202,526,174	273,653,366,309	155,442,465	208,656,638,481
	기타투자자산	소계		156,631,572,717,180		177,189,465,277,259
		USD	123,594,707,423	156,631,572,717,180	149,463,909,977	177,189,465,277,259
	장기미수채권	소계		67,649,205,714		63,282,674,485
		USD	53,380,578	67,649,205,714	53,380,578	63,282,674,485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	소계		305,883,534,364		406,058,499,368
		USD	241,356,638	305,871,267,844	342,496,552	406,029,661,849
		JPY	520,000	4,956,530	520,000	5,357,090
		CHF	-	-	12,500	16,218,370
		EUR	5,410	7,309,990	5,410	7,262,059
	외화부채	합계	소계		12,625,705,418,013	
USD(미국)			7,660,399,352	9,708,024,100,237	7,772,183,797	9,213,923,892,485
EUR(유럽연합)			2,158,951,199	2,917,174,859,588	2,158,951,199	2,898,046,551,968
CNY(중국)			2,791,326	506,458,188	2,919,329	543,754,225
PHP(필리핀)			-	-	46,645,431	1,088,690,225
단기차입금		소계		-		711,300,000
		USD	-	-	600,000	711,300,000
기타유동부채		소계		187,516,809,756		309,887,819,234
		USD	138,022,166	174,915,491,980	249,885,974	296,239,822,816
		EUR	8,951,199	12,094,859,588	8,951,199	12,015,551,968
		CNY	2,791,326	506,458,188	2,919,329	543,754,225
		PHP	-	-	46,645,431	1,088,690,225
국채, 공채		소계		12,438,188,608,257		11,803,003,769,669
		USD	7,522,377,186	9,533,108,608,257	7,521,697,823	8,916,972,769,669
		EUR	2,150,000,000	2,905,080,000,000	2,150,000,000	2,886,031,000,000

5. 우발사항 및 약정사항

① 계류중인 소송사건

- 원고인 경우

(단위: 건, 원)

중앙관서	건수	소송가액	중앙관서	건수	소송가액
중앙선거관리위원회	5	1,329,869,748	국토교통부	25	43,099,962,593
교육부	4	23,743,087,423	해양수산부	26	452,223,186,85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31	40,460,117,141	중소벤처기업부	477	110,632,911,292
외교부	1	-	인사혁신처	32	22,489,750,353
법무부	74	13,973,325,383	금융위원회	2,176	447,125,257,439
국방부	3	32,036,507,120	조달청	14	3,037,978,744
행정안전부	1	108,241,110	방위사업청	28	154,152,127,111
문화체육관광부	2	74,636,079	산림청	7	946,875,573
농림축산식품부	1	176,225,630	기상청	2	1,773,949,938
산업통상자원부	3	2,045,400,000	새만금개발청	1	8,935,000,000
보건복지부	5	44,969,705,291	해양경찰청	2	400,000,000
여성가족부	1	50,000,000			

※ 소송관련 상세내역은 각 중앙관서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참고

- 피고인 경우

(단위: 건, 원)

중앙관서	건수	소송가액	중앙관서	건수	소송가액
국회	5	400,000,000	공정거래위원회	213	2,819,874,000,000
대법원	94	19,030,310,184	금융위원회	185	93,568,295,128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4	653,000,000	국민권익위원회	90	4,630,000,000
교육부	186	15,571,771,195	원자력안전위원회	4	351,000,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29	98,887,461,069	국세청	374	3,795,530,715,497
외교부	45	30,577,080,341	관세청	110	780,508,779,056
통일부	4	4,138,561,170	조달청	225	24,437,783,133
법무부	1,149	671,211,231,198	통계청	2	215,376,947
국방부	104	259,684,551,009	병무청	31	1,600,000,000
행정안전부	24	20,720,701,580	방위사업청	56	830,432,558,832
문화체육관광부	26	2,113,538,115	문화재청	16	1,150,000,000
농림축산식품부	9	3,021,031,301	농촌진흥청	11	1,614,764,415
산업통상자원부	127	410,676,500,110	산림청	63	5,776,068,100
보건복지부	357	57,925,986,475	특허청	125	11,950,000,000
환경부	12	39,551,592,070	기상청	1	233,200,000
고용노동부	228	14,236,421,573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3	291,293,550
국토교통부	617	294,466,188,076	새만금개발청	2	190,000,000
해양수산부	78	146,085,863,200	해양경찰청	54	84,510,000,000
중소벤처기업부	57	18,892,657,70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5	2,218,450,999
국가보훈처	35	1,893,984,728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	4	200,000,000
인사혁신처	249	13,305,801,435	질병관리청	25	1,581,000,000
식품의약품안전처	68	3,400,000,000	법제처	1	50,000,000
국가인권위원회	51	2,630,000,000	국가교육위원회	1	50,000,000
방송통신위원회	13	744,953,333			

※ 소송관련 상세내역은 각 중앙관서별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참고

② 담보제공자산

(단위: 원)

중앙관서	담보제공자산	장부가액	채권최고액	담보제공 이유	담보권자	차입금액
금융위원회	토지, 건물 (신보 경기채권 관리단)	9,705,315,000	300,000,000	임차인 권리보전	수원중앙신협	-
	건물 (신보 의정부지점)	727,220,218	1,000,000,000	임차인 권리보전	한국자산관리공사	-
	건물 (신보 안양지점)	1,892,005,845	3,350,000,000	임차인 권리보전	현대자동차	-
중소벤처기업부	단기 금융상품	20,025,820,000	25,812,705	대환대출 보증	하나은행 등	-
	장기 금융상품	160,000,000,000	100,414,656,600	대환대출 보증	하나은행 등	-

“공 란”

③ 파생상품 내역

□ 당해연도

구분		평가손익		
		소계		매매목적
		당기손익	순자산변동	당기손익
합계		478,006,226,646	(554,417,436)	(22,929,014,543)
통화관련	소계	722,184,555,768	(5,326,119,191)	(27,815,077,958)
	통화선도	700,115,761,774	-	(44,832,521,012)
	통화스왑	26,876,876,948	(5,326,119,191)	22,452,657,546
	매입통화옵션	1,326,022,203	-	-
	매도통화옵션	(698,890,665)	-	-
	환변동보험	(5,435,214,492)	-	(5,435,214,492)
이자율관련	소계	(244,178,329,122)	4,771,701,755	4,886,063,415
	이자율스왑	(244,178,329,122)	4,771,701,755	4,886,063,415
	이자율변동보험	-	-	-
기타파생상품		-	-	-

(단위: 원)

위험회피목적		기말잔액	
당기손익	순자산변동	자산	부채
500,935,241,189	(554,417,436)	1,379,716,734,357	1,033,297,104,595
749,999,633,726	(5,326,119,191)	1,364,641,983,815	586,581,808,032
744,948,282,786	-	1,288,189,308,804	546,318,700,871
4,424,219,402	(5,326,119,191)	66,104,749,095	25,095,377,914
1,326,022,203	-	1,326,022,203	-
(698,890,665)	-	-	698,890,665
-	-	9,021,903,713	14,468,838,582
(249,064,392,537)	4,771,701,755	15,074,750,542	446,715,296,563
(249,064,392,537)	4,771,701,755	15,074,750,542	446,715,296,563
-	-	-	-
-	-	-	-

□ 직전연도

구분		평가손익		
		소계		매매목적
		당기손익	순자산변동	당기손익
합계		340,904,906,778	(130,730,581)	421,972,536,504
통화관련	소계	470,831,599,906	405,197,690	421,972,536,504
	통화선도	444,868,542,422	-	432,828,943,543
	통화스왑	23,692,728,745	405,197,690	(13,017,212,681)
	매입통화옵션	111,040,260	-	-
	매도통화옵션	(1,517,163)	-	-
	환변동보험	2,160,805,642	-	2,160,805,642
이자율관련	소계	(129,926,693,128)	(535,928,271)	-
	이자율스왑	(129,926,693,128)	(535,928,271)	-
	이자율변동보험	-	-	-
기타파생상품		-	-	-

(단위: 원)

위험회피목적		기말잔액	
당기손익	순자산변동	자산	부채
(81,067,629,726)	(130,730,581)	551,184,931,194	311,690,273,879
48,859,063,402	405,197,690	548,589,168,042	116,860,592,073
12,039,598,879	-	516,363,698,075	106,042,623,059
36,709,941,426	405,197,690	29,347,053,547	9,888,440,123
111,040,260	-	111,040,260	-
(1,517,163)	-	-	1,517,163
-	-	2,767,376,160	928,011,728
(129,926,693,128)	(535,928,271)	2,595,763,152	194,829,681,806
(129,926,693,128)	(535,928,271)	2,595,763,152	194,829,681,806
-	-	-	-
-	-	-	-

④ 지급보증

- 국가가 부담하고 있는 지급보증 중 보증채무는 「국가채정법」상 국가채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원채무자의 상환능력이 없는 경우 국민의 재정부담을 초래할 수 있어 국가채무에 준하는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며, 「국가채정법」 제92조 제1항에서는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 재정상태표일 현재 기획재정부의 보증채무 규모는 10,620,000백만원이며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중앙관서	피보증처	보증구분	지급보증금액	
			당기말	전기말
기획재정부	한국장학재단	지급보증	9,920,000,000,000	10,180,000,000,000
	한국산업은행	지급보증	700,000,000,000	750,000,000,000
합계			10,620,000,000,000	10,930,000,000,000

- 한편, 국가보훈처 보훈기금의 보증채무 규모는 596,440백만원이며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중앙관서	피보증처	보증구분	지급보증금액	
			당기말	전기말
국가보훈처	국민은행	장기저리 대부	488,152,545,834	480,136,156,963
	농협은행	장기저리 대부	108,287,238,018	85,355,996,429
합계			596,439,783,852	565,492,153,392

* 국가보훈처와 피보증처의 협약에 따른 양수도 대상 채권의 양수 사유(6개월 이상 미납된 대부 원리금 등) 발생 시 국가 유공자 등 대출자를 대신하여 은행에 양수금액을 지급함

⑤ 중요한 계약사항

□ 건설공사계약

○ 문화체육관광부

구분	계약처	계약기간	비고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공사	(주)남광건설 외 4개사	2017.11.01. ~ 2022.09.30.	건립용역 (61,100백만원)
국립부산국악원 교육체육관 건립	(주)성아종합건설 외 4개사	2019.12.16. ~ 2023.05.31.	건립용역 (17,500백만원)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	(주)아이에스피	2019.11.01. ~ 2023.12.07.	설계용역 (1,205백만원)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을 위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변경인가	(유)청양기술개발	2019.11.27. ~ 2022.12.13.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용역 (20백만원)

□ 업무위탁계약

○ 인사혁신처

- 공무원연금기금은 공무원 후생복지시설 관리·운영을 위하여 2019년 7월 1일 100% 현금출자하여 (주)상록골프앤리조트를 설립하였습니다. 자회사 설립은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주)상록골프앤리조트와 천안상록리조트 및 화성·남원·김해상록골프장, 수안보상록호텔 관리·운영을 위한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2019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주)상록골프앤리조트와 공무원연금공단 제주본부 및 서울사옥의 경비·미화·시설관리·주차관리를 위한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계약기간은 2019년 12월 1일부터 2024년 11월 30일까지입니다.

- 공무원연금기금은 공무원연금법 제23조에 의거 금융업무 위탁을 위하여 KB국민은행과 주거래은행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기간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이며, 동 계약의 만료에 따라 주거래은행 선정 공고를 통해 KB국민은행이 재선정되었으며 새로운 계약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당기말 현재 문화예술진흥기금 소유의 뉴서울골프장에 대한 운영 및 관리를 기금 100% 출자 회사인 한국문화진흥(주)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 관광진흥개발기금은 출국납부금의 부과 및 징수 업무를 한국공항공사법에 의한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지방해양항만청, 항만공사법에 의한 항만공사에 각각 위탁하고 있으며 징수금액의 일정 비율을 위탁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융자금 대여 및 상환'을 목적으로 하여 한국산업은행과 기금대여업무 취급약정을 체결하고 있는 바, 동 약정에 따라 상환원리금 발생액의 일정 비율을 한국산업은행에 위탁수수료로 납부하고 있습니다. 융자 대화약정서에 의하여 산업은행은 대출금의 회수여부에 불구하고 대하자금을 기일 내에 문화체육관광부에 상환하여야 합니다.

○ 금융위원회

-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개인에 대한 주택신용보증 등의 업무위탁과 관련하여 국민은행 등 19개 금융기관과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기금이 징수한 보증료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위탁수수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은 당기말 현재 공적자금을 지원한 서울보증보험을 포함한 2개 금융기관과 경영정상화 이행약정(MOU)를 체결하고 그 이행실적을 매 분기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신용보증기금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중소기업은행 외 14개 은행과 신용보증기금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위탁수수료는 위탁보증수익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 중소기업부

- 중소기업부의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용자금 대여 및 상환을 목적으로 하여 18개 시중은행과 기금대여업무취급약정을 체결하고 있는바, 동 약정에 따라 상환원리금 발생액의 일정 비율을 18개 시중은행에 위탁수수료로 납부하고 있음. 용자대하약정서에 의하여 시중은행은 대출금의 회수여부에 불구하고 대하자금을 기일 내에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에 상환 하여야 합니다.

□ 기타계약

○ 문화체육관광부

-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골프장 인허가 관련 41백만원 보증받고 있습니다.
- 문화예술진흥기금의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 중 700백만원은 미술관 지원사업과 관련한 전시장의 건물 임대를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부터 임대보증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미술관 지원사업을 종료하고 건물의 임대보증금을 환급받는 시점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한편, 동 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장기지급보증금으로 기타의기타비유동자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영화발전기금의 부산광역시와 영화진흥위원회는 부산광역시 우동 청사를 소유권이전일(2012년 5월 21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청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소유권이전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는 공학관 및 기숙사 건립과 관련하여 임대형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바, 주요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운영기간	총투자비	총임대료	당기임대료	당기운영비
05년 폴리텍	2008년~2027년	30,297,036,259	52,362,687,040	2,456,372,160	1,359,197,510
06년 폴리텍	2013년~2034년	66,826,960,293	99,161,841,477	4,924,535,990	2,213,519,880
07년 폴리텍	2012년~2032년	83,258,032,299	127,324,752,025	6,158,265,300	3,115,358,290
한국기술대학교	2012년~2032년	30,403,855,045	43,934,850,483	2,339,884,470	996,279,900
16년 폴리텍	2020년~2040년	52,248,157,847	71,012,129,396	3,550,605,960	1,633,799,640
17년 폴리텍	2021년~2041년	31,321,742,382	44,793,636,800	2,239,455,680	985,339,630

○ 국가보훈처

-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은 광복회관 준공('18.8.27.)에 따라 토지 소유자인 '광복회'에 2019년부터 매년 임차료를 지급하는 토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18.11.1.)하였습니다.

<연도별 토지 임차료 지급내역>

(단위: 백만원)

연도	'19~'20	'21~'22	'23~'24
금액	1,100	1,155	1,694

※ 토지 임대차 계약서상 2년마다 임차료 조정 가능

○ 방위사업청

- 방위사업청은 요구성능에 적합한 군수품을 적기 조달하기 위하여 방위산업체 등과 무기체계와 관련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 해양경찰청

구분	대상	계약처	계약기간
건조계약	3000톤 경비함 1척	삼강엠엔티	2020.12.14.~2024.05.27.
건조계약	200톤급 경비정 4척	삼강엠엔티	2020.08.20.~2023.08.05.
건조계약	500톤급 예인정 2척	티엔지중공업	2020.09.23.~2023.03.12.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은 통신사업자들과의 주파수이용권 부여계약에 따라 주파수할당대가를 수령하고 있으며, 재정상태표일 현재 계약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통신사	대역	계약기간	향후 수취예정금액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SKT	2.6GHz	2016.08.04~2026.12.31	133,515,000,000	163,185,000,000
	2.6GHz	2016.08.04~2026.12.31	46,048,500,000	56,281,500,000
	3.5GHz	2018.12.01~2028.11.30	246,746,250,000	301,578,750,000
	28GHz*	2018.12.01~2023.11.30	13,992,750,000	17,102,250,000
	0.8GHz	2021.07.01~2026.06.30	61,344,000,000	74,976,000,000
	1.8GHz	2021.12.06~2026.12.05	147,906,000,000	180,774,000,000
	2.1GHz	2021.12.06~2026.12.05	111,159,000,000	135,861,000,000
KT	1.8GHz	2016.08.04~2026.12.31	63,423,000,000	77,517,000,000
	3.5GHz	2018.12.01~2028.11.30	196,020,000,000	239,580,000,000
	28GHz**	2018.12.01~2023.11.30	14,026,500,000	17,143,500,000
	0.9GHz	2021.07.01~2026.06.30	38,151,000,000	46,629,000,000
	1.8GHz	2021.07.01~2026.06.30	147,906,000,000	180,774,000,000
	2.1GHz	2021.12.06~2026.12.05	111,159,000,000	135,861,000,000
LGU+	3.5GHz	2018.12.01~2028.11.30	163,923,750,000	200,351,250,000
	28GHz	2018.12.01~2023.11.30	13,986,000,000	17,094,000,000
	0.8GHz	2021.07.01~2026.06.30	61,344,000,000	74,976,000,000
	2.1GHz	2021.12.06~2026.12.05	118,287,000,000	144,573,000,000
	2.6GHz	2021.12.04~2026.12.03	58,563,000,000	71,577,000,000
	3.4GHz	2022.11.01.~2028.11.30.	51,333,750,000	62,741,250,000
IDIS 파워텔	800MHz	2019.07.01~2026.06.30	16,387,500	20,029,173
합 계			1,798,850,887,500	2,198,595,529,173

* 5G 주파수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라 6개월 이용기간 단축 (단,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

** 5G 주파수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라 주파수 할당 취소 (단, 지하철 노선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주파수 사용을 허용)

⑥ 천재지변, 중대한 사고, 파업, 화재 등에 관한 내용과 결과 : 해당 없음

⑦ 최소운영수입보장 내역(BTO 등)

- 최근 3개년 간 최소운영수입보장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중앙관서	회계실체	구 분	2022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2020회계연도
국토교통부	교특회계	도로계정*	76,529,000,000	327,027,000,000	411,616,000,000
해양수산부	교특회계	항만계정	65,459,272,610	70,874,048,630	102,101,771,330
계			141,988,272,610	397,901,048,630	513,717,771,330

* (도로계정) MRG 외 통행료 미인상, 통행료 면제 등으로 인해 협약에서 정한 통행료 보다 낮은 통행료의 징수로 발생한 사업자 수입 손실분에 대한 재정지원금 포함

-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의 민간투자사업 중 협약상 최소운영수입을 보장하고 있는 사업은 총 13건이며, 최소운영수입보장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관서	회계실체	구 분	사업명	보장기간	상세 협약내역
국토교통부	교통시설 특별회계	도로 계정	대구-부산고속도로	2006.01부터 20년	협약수입의 77% 미달분 (사업권가치에 포함)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	2007.12부터 20년	협약수입의 90% 미달분 (사업권가치에 포함)
			부산-울산고속도로	2008.12부터 30년	타인자본원리금 상환보장(30년간)
			서울-춘천고속도로	2009.08부터 15년	1 ~ 5년 : 협약수입의 80%미달분
					6 ~ 10년 : 협약수입의 70%미달분
					11 ~ 15년 : 협약수입의 60%미달분 * 50%미만시 미지급 (사업권가치에 포함)
인천대교	2009.10부터 15년	협약수입의 80% 미달분			

중앙관서	회계실체	구분	사업명	보장기간	상세협약내역
해양수산부	교통시설 특별회계	항만 계정	울산신항(1-1단계)	2009~2024	1~5년 : 협약수입의 50~90%
					6~10년 : 협약수입의 50~85%
					11~15년 : 협약수입의 50~80%
			목포신외항(1-1단계)	2004~2024	1~4.5년 : 협약수입의 50~90%
					4.6~12.5년 : 협약수입의 50~79.43%
			목포신외항(1-2단계)	2004~2024	1~4.5년 : 협약수입의 50~80%
					4.6~12.5년 : 협약수입의 50~79.43%
			목포신외항(1-2단계)	2004~2024	12.6~20년 : 협약수입의 50~77.43%
					12.6~20년 : 협약수입의 50~77.43%
			인천북항(2-1단계)	2008~2023	협약수입의 80% 미달분
			인천북항일반부두	2009~2024	1~5년 : 협약수입의 50~85%
					6~10년 : 협약수입의 50~75%
					11~15년 : 협약수입의 50~65%
					* 50% 미만시 미지급
평택항 다목적부두	2010~2025	1~5년 : 협약수입의 50~85%			
		6~10년 : 협약수입의 50~75%			
		11~15년 : 협약수입의 50~65%			
		* 50% 미만시 미지급			
마산항(1-1단계)	14년간 (미개장)	1~5년 : 협약수입의 50~90%			
		6~10년 : 협약수입의 50~80%			
		11~14년 : 협약수입의 50~70%			
포항영일만신항(1-1단계)	2010~2024	1~5년 : 협약수입의 50~90%			
		6~10년 : 협약수입의 50~85%			
		11~14년 : 협약수입의 50~80%			

* 사업 재구조화(수도권제1순환 '18. 3., 천안-논산 '19. 12., 대구-부산 '20. 12., 서울-춘천 '20. 12.) 이후 발생하는 재정지원 사항은 신규투자자가 부담

⑧ 기타 우발부채에 대한 내용, 자원의 유출에 따른 재무적 영향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기금은 해외 부동산개발 사업 투자 목적으로 운용사와 자금보충약정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약정금액은 우발손실의 발생가능성이 높지 않아 재정상태표에 부채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구분	2022년	2021년
자금보충약정액	USD 395,000,000	USD 515,000,000
	CAD 119,509,001	

○ 환경부

- 수자원공사에 대한 금융비용 및 채무원금 지원

환경부 일반회계는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09.9월)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가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을 위하여 2009년부터 8조원 규모로 발행할 회사채에서 발생하는 금융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 '15.9월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한국수자원공사의 4대강 수공부채에 대한 지원방안을 결정함에 따라 2016년부터는 채무원금을 포함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5개년 간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지원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2018년
지원액	340,000,000,000	340,000,000,000	340,000,000,000	340,000,000,000	296,400,000,000

* 2023년 예산액 : 3,000억원

** 2015년 9월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 : 4대강 사업에 투자한 7.98조원의 부채는 수공의 자구노력으로 채무원금의 70%(5.55조원)를 우선 상환(2015~2036, 22년간)하고, 정부가 나머지 채무원금의 30%(2.43조원)를 지원(2016~2031, 16년간), 금융비용은 2009년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대로 계속 전액 지원

○ 여성가족부

- 재정상태표일 현재 국립중앙청소년수련원에서 장기임차(1995.11~2024.10)하여 사용하고 있는 토지(420.716㎡)에 대해 계약기간 종료 후 원상회복의무에 따라 자원의 유출의 발생은 확실하지만 그 손실금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주석에 기재하였습니다.

○ 국토교통부

- PSO 공익서비스 비용

국토교통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철도운영자의 공공서비스(공공목적의 운임감면, 벽지노선의 운영 등) 제공으로 발생하는 손실을 부담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향후 발생할 비용을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어 우발상황으로 기재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 3개년 간 공공서비스의무 보상비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2022년	2021년	2020년
지급액	384,474,000,000	379,561,000,000	352,800,000,000

⑨ 자원의 유입가능성이 매우 높은 우발자산

○ 관세청

(단위: 원)

구분	종류	금액
국고품	가방 등	405,229,790
물수품	주류 등	338,689,200

○ 금융위원회

- 재정상태표일 현재 신용보증기금이 상각처리한 채권 중 관련 법률에 따라 채무관련인에 대한 청구권이 상실되지 않은 채권 잔액은 8,491,492백만원입니다.

6. 전기오류수정 및 회계처리방법의 변경

① 중대하지 아니한 전기오류수정

- 국토교통부 외 46개 중앙관서는 중대하지 아니한 전기오류수정에 대하여 전기오류수정이익 또는 전기오류수정손실의 계정과목으로 당기 재정운영 결과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공 란”

7. 순자산조정명세

구 분		전기말		
순자산조정 계		479,140,768,639,988		
투자증권평가 손익	소계		247,526,418,806,777	
	단기투자증권	소계	74,751,606,574,819	
		채무증권	16,562,562,451	
		지분증권	74,734,512,326,755	
		기타단기투자증권	531,685,613	
	장기투자증권	소계	172,774,812,231,958	
		채무증권	233,564,839,384	
		지분증권	172,559,898,811,561	
		기타장기투자증권	(18,651,418,987)	
	파생상품평가손익		(227,992,750)	
	자산재평가이익		425,036,991,716,060	
	기타순자산의증감		(193,422,413,890,099)	

(단위: 원)

금 액

증가	감소	당기말
315,295,613,450,200	452,979,915,694,904	341,456,466,395,284
189,513,520,008,153	291,263,982,156,640	145,775,956,658,290
54,408,226,319,172	95,794,247,374,777	33,365,585,519,214
329,950,138,511	832,729,546,852	(486,216,845,890)
54,078,276,180,661	94,960,986,142,312	33,851,802,365,104
-	531,685,613	-
135,105,293,688,981	195,469,734,781,863	112,410,371,139,076
2,493,086,062,380	14,230,831,723,386	(11,504,180,821,622)
132,599,575,579,239	181,211,974,996,903	123,947,499,393,897
12,632,047,362	26,928,061,574	(32,947,433,199)
8,858,231,723	9,412,649,159	(782,410,186)
51,916,723,621,634	72,643,131,408,105	404,310,583,929,589
73,856,511,588,690	89,063,389,481,000	(208,629,291,782,409)

8. 기타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과 재무제표의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 정부보관금

(단위: 원)

구 분	금 액
공탁금	11,314,386,433,601
보증금	87,063,553,990
압수압류금	119,725,062,749
권리자미상금	18,973,216,977
기타보관금	1,740,785,917,193
합계	13,280,934,184,510

2) 세입·세출외거래

(1) 우체국예금 및 우체국보험적립금

과학기술정보통신신부는 재무제표의 통합에 관한 지침에 따라 중앙관서 재무제표 작성 시 세입·세출외로 관리되는 우체국예금과 우체국보험적립금 관련 자산, 부채, 순자산 및 수익과 비용을 재무제표 본문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재무제표 본문에 미반영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경우 고객예수금 관련 부채는 민간예수금 81,722,075백만원과 기타유동부채 214,662백만원 등 총 81,936,737백만원이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순자산은 순자산조정 4,904,580백만원입니다. 이와 대응되는 자산은 장·단기 금융상품 15,678,432백만원, 장·단기 투자증권 67,172,279백만원 및 기타 미수채권 등을 포함하여 총 86,850,658백만원입니다.

한편, 세입·세출 내 거래로 관리되는 우체국예금특별회계의 고객예수금 운용에 따른 손익은 우체국예수금운용수익으로 3,730,431백만원을, 우체국예수금운용비용으로 3,158,073백만원을 재정운영표에 반영하였습니다.

우체국보험특별회계의 경우 책임준비금 등 보험적립금 관련 부채는 보험충당부채 56,015,341백만원과 파생상품 등 총 56,488,466백만원이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한 순자산은 적립금및잉여금 등 3,930,693백만원입니다. 관련 부채에 대응되는 자산은 장·단기 투자증권 54,256,057백만원 등 총 61,018,225백만원입니다. 보험적립금과 관련세입·세출 외로 관리되는 수익과 비용은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았으며 금액은 각각 10,829,713백만원과 9,782,851백만원입니다.

(2)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정부기업예산법」에 따라 조달특별회계가 사업운영을 위해 세입·세출 외로 별도로 보유하고 있는 회전자금은 재정상태표의 기타유동자산에 반영하고 있으며, 그 구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자산(A)	5,100,992,670,344	4,699,867,717,841
Ⅰ. 유동자산	5,100,992,670,344	4,699,867,717,841
현금및현금성자산	2,334,130,484,452	2,303,045,374,028
국고금	2,320,198,077,390	2,300,637,154,820
현금및현금등가물	13,932,407,062	2,408,219,208
미수채권	242,267,925,590	170,657,975,923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179,240,698,830	119,341,043,240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대손충당금	(1,029,455,720)	(1,029,455,720)
미수기타수익	64,056,682,480	52,346,388,403
기타유동자산	2,524,594,260,302	2,226,164,367,890
재고자산	1,012,933,725,832	927,877,228,630
선급금	1,511,660,534,470	1,298,287,139,260
부채(B)	3,644,917,423,899	3,291,641,732,536
Ⅰ. 유동부채	3,644,917,423,899	3,291,641,732,536
기타유동부채	3,644,917,423,899	3,291,641,732,536
미지급금	138,904,217,293	140,337,027,534
예수금	2,591,597,192	1,006,237,003
선수금	3,494,987,273,220	3,137,303,163,590
미지급비용	7,397,705,154	12,202,674,719
기타의기타유동부채	1,036,631,040	792,629,690
회전자금 합계(C=A-B)	1,456,075,246,445	1,408,225,985,305

회전자금으로 수행하고 있는 비축물자사업에서는 비축물자의 가격변동 위험을 관리하기 위하여 6개 비철금속에 대하여 파생상품거래를 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거래손익을 조달특별회계 조달사업 운영 프로그램수익(재화판매수익)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파생상품 거래내역>

(단위: 톤, USD)

구분	품목	전기 미청산		당기 신규거래		당기 청산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선물거래	납 외 5종*	35,493	96,395,206.25	146,998	1,096,075,513.25	137,426	1,096,075,513.25

* 납, 니켈, 구리, 아연, 알루미늄, 주석

“공 란”

3) 자산재평가

(1) 일반유형자산

자산종류	재평가액 추정방법 및 유의적 가정	재평가금액 (A+B-C)
토지	공정가액, 공시지가 등	103,346,951,197,484
건물	공정가액, 공시지가, 상각후대체원가법(물가배수법) 등	33,558,025,990,570
구축물	공정가액, 상각후대체원가법(물가배수법) 등	4,195,380,850,525
기계장치	공정가액, 상각후대체원가법(물가배수법) 등	5,726,577,696
차량운반구 (선박·항공기)	공정가액, 상각후대체원가법(물가배수법) 등	40,627,599,197
기타일반유형자산 (입목)	공정가액 등	6,410,084,726,029
일반유형자산 합계		147,556,796,941,501

(2) 사회기반시설

자산종류	재평가액 추정방법 및 유의적 가정	재평가금액 (A+B-C)
도로	자산유형(토지, 건물, 구축물)별 재평가방법을 적용 ① 토지 : 공정가액, 공시지가 등 ② 건물 : 공정가액, 시가표준액 또는 주택공시가격 등 ③ 구축물 : 공정가액, 상각후대체원가법 등	1,260,452,379,741
철도		944,563,821,368
항만		1,090,972,028,990
댐		26,049,464,721
공항		19,793,598,400
하천		530,143,966,646
상수도		31,129,042,746
국가어항		42,168,841,690
사회기반시설 합계		3,945,273,144,302

(단위: 원)

재평가전 장부가액(A)	평가증 (B)	평가감 (C)
104,838,907,994,780	5,364,812,795,851	6,856,769,593,147
33,715,599,966,838	147,326,609,004	304,900,585,272
4,193,826,057,130	11,843,424,636	10,288,631,241
5,707,154,059	19,558,690	135,053
23,153,441,751	17,474,157,446	-
6,236,104,397,147	177,425,764,345	3,445,435,463
149,013,299,011,705	5,718,902,309,972	7,175,404,380,176

(단위: 원)

재평가전 장부가액(A)	평가증 (B)	평가감 (C)
1,989,374,416,921	439,251,075,077	1,168,173,112,257
634,169,664,946	496,126,515,415	185,732,358,993
719,628,255,786	676,750,394,818	305,406,621,614
96,503,955,381	1,819,577,089	72,274,067,749
6,567,067,300	13,646,065,600	419,534,500
929,082,078,463	112,533,336,919	511,471,448,736
26,715,866,801	11,526,422,980	7,113,247,035
36,736,276,817	17,099,683,860	11,667,118,987
4,438,777,582,415	1,768,753,071,758	2,262,257,509,871

- 국방부 외 36개 중앙관서는 일반유형자산 및 사회기반시설에 대하여 당기에 재평가를 실시하였습니다.
- 일반유형자산의 재평가대상은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선박, 항공기), 기타일반유형자산(입목)이며, 사회기반시설 재평가대상은 도로, 철도, 항만, 댐, 공항, 하천, 상수도, 국가어항입니다. 각 사회기반시설은 토지, 건물, 구축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 재평가금액은 재평가기준일의 공정가액으로 하되, 공정가액을 합리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운 자산의 경우에는 각 자산별로 대체적인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재평가금액을 산정하였습니다. 대체적인 평가방법으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시가격 및 상각후대체원가법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 재평가에 따라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평가증 7,487,655백만원이 발생하여 순자산변동표 상 재평가이익으로 7,092,399백만원을 인식하였고, 일반유형자산재평가손실환입 297,891백만원 및 사회기반시설재평가손실환입 97,365백만원을 재정운영표 상 비배분수익 등으로 인식하였습니다.
-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의 평가감 9,437,662백만원이 발생하여 일반유형자산재평가손실 1,600,358백만원 및 사회기반시설재평가손실 1,471,694백만원을 재정운영표 상 비배분비용 등으로 인식하였고, 전기 인식한 순자산변동표 상 재평가이익 6,365,610백만원이 당기에 상계되었습니다.

4) 융자사업

(1) 융자사업의 개요

융자사업이란 국가회계실체가 유효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융자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당기말 현재 고용노동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총 20개의 부처가 융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 융자조건

부처	융자사업명	사업내용	융자대상	이자율(%)	융자기간
고용노동부	여성고용환경개선용자 외 20건	여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여성고용친화시설을 설치하거나 개선하여 여성친화적 작업환경 조성에 필요한 비용 용자 등	사업주 또는 사업주 단체 등	0.0%~3.0%	1년 거치후 4년 상환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항기국제공동연구사업 외 1건	국내 항공업체의 세계 주요 민항기국제공동개발사업에 참여를 지원하여 항공산업의 신수출동력화 추진 등	국내 항공업체 등	1.5%~3.4%	5년 거치10년 분할상환 등
교육부	국고대여학자금사업 외 2건	대학 학자금 지원 등	교직원 본인 및 자녀 등	0.0%~2.6%	2년 거치 후 2~4년 분할상환 등
국가보훈처	5·18민주유공자대부 외 3건	장기저리 대부	국가유공자 등	1.4%~2.9%	3~20년
국방부	학자금대부사업 외 1건	본인 및 자녀 학자금 대부 등	현역 및 군무원 등	-	2년거치 4년상환 등
기획재정부	친환경설비투자 외 15건	환경산업육성 및 녹색설비투자 필요자금 융자 지원 등	중소/중견 환경기업 등	0.0% ~ 5.4%	3년거치 7년 분할상환 등
금융위원회	학자금대여금	학자금 지원	직원	-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농촌진흥청	농촌지도사업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역특화사업,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농민	0.0%	20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융자지원 외 4건	관광사업체 건설 자금지원, 관광시설 개보수 자금지원, 관광사업체 운영 자금지원	관광진흥법에 의한관광사업체 등	1.0%~4.6%	신축 : 4(5)년 거치 5(7~8)년 분할상환, 개보수 : 3(4)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운영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등

부처	용자사업명	사업내용	용자대상	이자율(%)	용자기간
보건복지부	병원병상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외 4건	병원병상확충 및 기능보강사업 등	근지역 및 도농 통합시 안의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민간병원 등	0.5%~5.0%	5년 거치 10년 상환 등
여성가족부	성매매피해자창업자금지원(1) 외 1건	성매매피해자 창업자금 지원 등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의한 성매매피해여성 등	-	4년(1년거치 3년 균분상환)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지원(용자) 외 10건	소상공인의 창업과 사업전환을 지원- 소상공인의 영업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 등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등	0.0% ~ 4.3%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등
국토교통부	구입 외 6건	주택 구입자금 지원 등	무주택 개인 수요자 등	1.0% ~ 4.8%	2년~30년 등
농림축산식품부	동물의약품종합지원사업 외 40건	동물의약품시설및운영자금 등	동물의약품업체 등	0.0% ~ 3.0%	10년 등
산림청	산림종합자금 외 1건	임산물생산기반 조성,산림시설·운영 자금 등 등	임업인 등	0.3% ~ 1.8%	2년~35년 등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안전관리 외 15건	가스안전관리투자지원 등	한국에너지공단 등	0.0% ~ 3.5%	3년거치 5년 분할상환 등
인사혁신처	대여학자금	공무원 본인 및 자녀 학자금 대여	공무원연금법 적용 대상 재직공무원	-	졸업 후 2년 거치 3~4년 분할상환
통일부	민족공동체회복지원(유상) 외 4건	경제협력기반을 조성하는 공공사업자(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등) 대출 등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등	0.0% ~ 4.9%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등
해양수산부	허베이유류오염사고 외 40건	허베이유류오염사고지원 등	농어민 등	0.0% ~ 3.8%	확정판결후 6월 등
환경부	미래환경산업육성용자 외 8건	기업의 환경오염방지와 환경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시설투자 및 운영지원 등	중소·중견 기업 및 환경산업체 등	0.7% ~ 2.7%	2년거치 3년상환 또는 3년거치 7년상환 등

(3) 용자사업의 규모

(단위: 원)

구분	금액	
	당기말	전기말
용자금	125,051,336,566,710	113,774,621,989,506
(용자보조원가총당금)	(11,097,713,857,831)	(9,531,004,141,787)
합계	113,953,622,708,879	104,243,617,847,719

“공 란”

- 용자사업 세부 현황

□ 당해연도

중앙관서	기초융자금잔액	당기증가	당기감소
기획재정부	11,089,502,063,416	2,923,260,105,832	2,516,720,877,638
교육부	624,531,497,100	141,971,674,600	256,802,133,874
통일부	242,249,564,525	2,368,806,758,151	2,348,909,600,881
국방부	127,193,138,770	489,441,577	-
인사혁신처	2,663,820,366,392	347,846,991,150	559,893,407,979
문화체육관광부	3,396,262,904,657	1,651,064,243,440	1,259,525,622,899
농림축산식품부	12,444,406,836,785	3,791,331,790,000	2,791,687,905,771
산업통상자원부	5,546,224,652,720	994,921,204,872	652,270,056,387
보건복지부	899,265,078,348	-	162,512,841,909
환경부	1,115,759,051,740	310,019,586,750	174,054,491,780
고용노동부	1,884,540,081,425	693,498,830,650	366,224,676,280
여성가족부	339,265,184	-	-
국토교통부	43,882,387,740,489	9,269,516,861,454	4,229,766,339,867
해양수산부	370,082,361,220	410,718,050,000	321,286,141,900
국가보훈처	93,338,534,790	28,683,364,750	27,591,222,060
금융위원회	2,827,574,689	519,669,330	777,290,098
농촌진흥청	2,348,296,000	-	896,749,000
산림청	536,735,282,160	404,854,702,870	418,874,068,720
중소벤처기업부	28,756,562,081,156	14,211,927,602,099	10,164,062,778,4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96,245,617,940	16,388,000,000	37,248,094,870
합계	113,774,621,989,506	37,565,818,877,525	26,289,104,300,321

(단위: 원)

조직개편 증감	기말용자금잔액	(용자보조원가총당금)
-	11,496,041,291,610	(2,509,963,090,106)
-	509,701,037,826	(32,849,192,354)
-	262,146,721,795	(68,663,227,803)
-	127,682,580,347	(17,771,652,552)
-	2,451,773,949,563	(180,180,938,740)
-	3,787,801,525,198	(393,588,255,970)
-	13,444,050,721,014	(789,453,725,288)
-	5,888,875,801,205	(1,384,879,467,976)
-	736,752,236,439	(3,523,088,158)
-	1,251,724,146,710	(42,507,339,377)
-	2,211,814,235,795	(134,109,724,841)
-	339,265,184	(339,265,184)
-	48,922,138,262,076	(4,960,027,047,053)
-	459,514,269,320	(6,988,957,600)
-	94,430,677,480	(20,823,453,242)
-	2,569,953,921	(186,720,750)
-	1,451,547,000	(132,643,568)
-	522,715,916,310	(76,044,046,802)
-	32,804,426,904,847	(474,633,706,247)
-	75,385,523,070	(1,048,314,220)
-	125,051,336,566,710	(11,097,713,857,831)

□ 직전연도

중앙관서	기초융자금잔액	당기증가	당기감소
기획재정부	10,633,819,538,438	2,162,024,798,036	1,706,342,273,058
교육부	618,681,184,251	119,916,347,989	114,066,035,140
통일부	241,537,040,660	1,674,261,627,865	1,673,549,104,000
국방부	148,829,108,405	42,153,930,264	63,789,899,899
인사혁신처	2,903,050,997,282	367,798,012,740	607,028,643,630
문화체육관광부	3,212,898,763,552	585,423,971,105	402,059,830,000
농림축산식품부	11,621,270,466,201	3,308,830,568,915	2,485,694,198,331
산업통상자원부	5,282,740,450,403	979,843,660,488	716,359,458,171
보건복지부	907,404,318,956	-	8,139,240,608
환경부	853,014,670,810	500,000,000,000	237,255,619,070
고용노동부	1,523,283,744,316	628,980,942,720	267,724,605,611
여성가족부	339,265,184	-	-
국토교통부	35,547,785,995,600	12,272,675,179,693	3,938,073,434,804
해양수산부	336,237,812,181	262,612,800,000	228,768,250,961
국가보훈처	93,795,098,630	30,153,076,530	30,609,640,370
금융위원회	3,205,274,165	534,104,220	911,803,696
농촌진흥청	3,242,418,000	-	894,122,000
산림청	456,663,055,550	406,339,127,870	326,266,901,260
중소벤처기업부	25,829,977,044,864	8,408,006,923,684	5,481,421,887,39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17,166,240,440	25,589,000,000	46,509,622,500
합계	100,334,942,487,888	31,775,144,072,119	18,335,464,570,501

(단위: 원)

조직개편 증감	기말용자금잔액	(용자보조원가총당금)
-	11,089,502,063,416	(2,227,964,926,036)
-	624,531,497,100	(31,363,582,667)
-	242,249,564,525	(62,147,602,316)
-	127,193,138,770	(13,253,229,951)
-	2,663,820,366,392	(180,852,252,197)
-	3,396,262,904,657	(276,738,181,329)
-	12,444,406,836,785	(603,384,259,426)
-	5,546,224,652,720	(1,289,967,780,271)
-	899,265,078,348	(6,483,820,671)
-	1,115,759,051,740	(106,099,267,908)
-	1,884,540,081,425	(78,026,688,476)
-	339,265,184	(339,265,184)
-	43,882,387,740,489	(4,459,379,383,560)
-	370,082,361,220	(5,988,915,133)
-	93,338,534,790	(17,601,640,658)
-	2,827,574,689	(153,008,884)
-	2,348,296,000	(296,404,409)
-	536,735,282,160	(68,818,310,014)
-	28,756,562,081,156	(99,796,903,402)
-	96,245,617,940	(2,348,719,295)
	113,774,621,989,506	(9,531,004,141,787)

(4) 용자보조비용

(단위: 원)

구분	당 기	전 기
용자보조비용	2,825,798,247,710	2,295,369,211,081

(5) 그밖에 중요하다고 판단한 사항

- 중소기업부의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은 2010년부터 용자회계처리지침에 따라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을 설정하였으나, 기획재정부로부터 2011년 12월 30일자로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에 대한 용자회계처리지침 적용 유예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2010년 실행된 대여금 중 회수된 대여금에 해당하는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을 환입처리하였으며, 2011년 이후 실행된 대여금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을 설정하지 않아 재정운영표에 용자보조비용으로 인식한 금액은 없습니다.
-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은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북식량 및 자재장비 등 차관 및 대북경수로사업 본공사비 대출 2,553,666백만원(전기: 2,477,547백만원)에 대하여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 제58조 및 제9차 국가회계제도심의위원회에서 승인된 남북협력기금 세부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용자보조원가충당금을 설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나 2022년 12월 31일 현재 북한조선무역은행 대여금 1,179,272백만원과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여금 1,374,393백만원은 관련 차주의 특성상 향후 상황변화 등에 따라 회수가능성에 변동성이 존재하며, 이 중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KEDO) 대여금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 현재 대북경수로사업이 중단된 상태로서 향후 사업재개의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5) 사회보험사업

- 사회보험의 현황 및 주요 내용

1. 고용보험기금

개요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

-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계속 고용을 보장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합니다.
-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하여 훈련지원, 실직자 재취업훈련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 실업급여 >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실직한 경우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재원조달 방법

사업주 및 피보험자의 보험료, 기타 징수금,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수입, 차입금, 전입금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개요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 및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신속·공정하게 지급하여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회 안정망 역할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 재원조달방법

사업주 및 피보험자의 보험료, 기타 징수금, 기금운용수익금 및 기타수입, 전입금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 사회보험부채 산정내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에 따라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책임준비금의 적립수준은 전년도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의 총액으로 합니다.

3. 임금채권보장기금

□ 사회보험사업의 개요

<체당금 지급>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체당금)함으로써 체불근로자 생활안정 도모합니다.

* (일반체당금)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체불액(최고 2,100만원까지 지급), (소액체당금) 퇴직자는 최고 1,000만원, 재직자는 최고 700만원(퇴직급여 제외)까지 지급

□ 사회보험사업의 재원조달방법

- 사업주 부담금 : 사업주로부터 “보수총액 × 부담금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
- 사업주 변제금 : 체당금을 지급한 경우 사업주로부터 그 지급액 범위 내에서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의 청구권을 대위 행사
- 기타 기금운용수익금 등

□ 사회보험부채 산정내역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체당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 책임준비금의 적립수준은 전년도 체당금 지급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 구상채권 및 대손충당금 변동내역

(단위: 원)

구분	당기말			
	구상채권액(A)	현재가치 할인차금(B)	대손충당금(C)	장부금액 (D=A-B-C)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36,485,496,740	-	72,249,691,365	64,235,805,375
임금채권보장기금	2,983,696,837,630	-	2,523,949,217,604	459,747,620,026
합계	3,120,182,334,370	-	2,596,198,908,969	523,983,425,401

구분	전기말			
	구상채권액(A)	현재가치 할인차금(B)	대손충당금(C)	장부금액 (D=A-B-C)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123,993,696,630	-	66,251,492,215	57,742,204,415
임금채권보장기금	2,752,457,465,020	-	2,301,030,004,463	451,427,460,557
합계	2,876,451,161,650	-	2,367,281,496,678	509,169,664,972

- 사회보험수익 및 사회보험비용

(단위: 원)

구분	금 액			
	당기		전기	
	사회보험수익	사회보험비용	사회보험수익	사회보험비용
고용보험기금	15,990,875,553,410	15,736,255,510,130	13,720,388,185,970	17,935,335,572,387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8,449,784,956,900	7,032,259,139,860	7,713,865,477,570	6,649,578,303,648
임금채권보장기금	-	-	-	119,810,237,540
합계	24,440,660,510,310	22,768,514,649,990	21,434,253,663,540	24,704,724,113,575

- 사회보험과 관련하여 기타의기타비유동부채로 계상하고 있는 준비금 및 적립금은 당기말 현재 31,088,043백만원(전기말: 34,265,847백만원)입니다.

6) 정부조직개편

-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직개편을 실시하였습니다. 정부조직개편으로 인하여 국가교육위원회(2022.7.21.)를 신설하였으며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 사무 등을 교육부에서 국가교육위원회로 이관하였습니다.
- 또한 「정부조직법」 제 39조 개정 등으로 2022년 1월 1일자로 하천에 관한 사무를 국토교통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였습니다.
- 「정부조직개편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신설부처는 개편후 기간(조직개편 일~22.12.31), 나머지 부처는 전체기간(‘22.1.1~’22.12.31)에 대한 재무결산을 수행하였으며, 국가 재무제표 및 부속서류는 모든 부처의 결산보고서를 통합하여 작성하였습니다.

7) 기타 사항

□ 법무부 국제투자분쟁 사건

- 재정상태표일 현재 론스타 국제투자분쟁 사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최종 판정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동 분쟁의 결과는 현재로서는 예측할 수 없습니다.

□ 교육부 퇴직자 중 퇴직급여 미청구자 내역

(단위 : 명)

구분	당기	전기
퇴직급여미청구자	19,285	11,720

※ 퇴직급여의 지급의무는 퇴직교직원 본인의 퇴직급여신청(퇴직연금, 퇴직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등)에 의해 발생됨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 보유 REC 현황

- 산업통상자원부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국가 보유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거래가 이루어지면 기금의 수익으로 재무제표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국가보유 REC는 거래 전까지 수익 인식 등 별도 회계처리를 할 수 없으며 거래가 이루어지면 전력산업기반기금 기타잡수입으로 계상하여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지원 사업 지원분은 프로그램수익, 그 외는 잡이익으로 인식합니다.
- 국가보유 REC 거래목적은 전력산업기반기금 수입 증대가 아닌 REC 부족현상 해소 및 합리적 가격 형성에 있는 바, 시장 안정기에는 발급대기 상태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 '17년도부터 신재생에너지 설비투자 확대 등으로 REC 공급량이 의무공급량을 초과함에 따라 국가보유 REC를 전량 발급대기 상태로 관리하고 있으며, 향후 민간 REC만으로 시장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 최근 3년간 국가 REC 발급 현황

(단위 : REC)

구분		2020	2021	2022
발생량 ^{주2)}	연도별	1,544,680	1,267,889	미산정 ^{주1)}
	누적(A)	16,576,387	17,844,276	
거래량 ^{주3)} (발급량)	연도별	-	-	-
	누적(B)	6,849,054	6,849,054	6,849,054
잔여량 (A-B)		9,727,333	10,995,222	미산정

주1) '22년도 국가 REC 발생량은 '23년도 상반기 중 산출 가능

주2) 발생량 : FIT 및 RPS설비의 발급량 중 국가무상지원금의 비율만큼의 REC 수량(발전연도 기준)

주3) 거래량(발급량) : 시장에서 부족한 양만큼 발생량에서 발급 상태로 전환하여 거래에 사용한 REC 수량

□ 중소벤처기업부 환수금 관련

○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이하 '기촉법')에 따라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촉법 제7조와 제20조에 따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등의 평가·관리와 기촉법 제29조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기촉법 제32조 제1항의 출연금 환수에 관한 업무는 기촉법 제29조와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4호에 근거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에게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며 환수된 출연금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국고에 세입 조치합니다.

○ 이와 관련 당기말 현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2022회계연도(2022.1.1. ~ 12.31.) 환수금 징수 결정 및 수납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국고 미세입	국고세입	소계	
당기	4,950	626	3,061	3,687	2,952

* 징수결정액 : 회계연도 기간 중 제재처분으로 환수금 징수가 확정된 금액

수납액 : 회계연도 기간 중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이 환수 대상(기업)으로부터 현금으로 수납한 금액

국고세입액 : 수납액 중 고지서 납부를 통해 중기부로 국고 세입 처리를 요청한 금액(국고 미세입액 : 626백만원 : 2023.1분기 국고세입예정)

미수납액 : 환수금 납부 기한 경과로 독촉, 강제징수(압류, 추심)가 진행중인 금액

○ 참고로 최근 3개년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의 환수금 징수현황(매년말, 누적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구분	징수 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국고 미세입	국고세입	
당기	99,522	626	39,433	41,262
전기	93,726	-	36,329	39,350
전전기	83,896	-	29,774	36,760

* 징수 면제금액 제외

□ 교육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현황 및 주요 내용

1. 연금의 현황 및 주요 내용

1) 연금사업 특성 및 연혁

가. 제도의 특성

-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1조는 사학연금제도의 목적이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 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국·공립학교 교직원간의 처우 형평성 유지 및 교직원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1975년에 도입된 사학연금제도는 사회연대성의 원칙과 보협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사회경제제도로서 사회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나. 주요연혁

설립 ~ 199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3년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정·공포 · 1974년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 설립 · 1975년 : 교원 연금업무 개시 · 1976년 : 교원 대역사업 개시 · 1978년 : 사무직원 연금법 적용 · 1981년 : 국가위탁사업(학자금대역) 개시
1991년 ~ 2010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1년 : 퇴직수당제도 신설 · 2000년 : 법제명 및 공단명칭 개정(교원→교직원) · 2005년 : 군소급 사용자 부담금의 국가부담 전환 · 2006년 : 공단 이념 및 비전 수립 · 2007년 : 공공기관 지정 · 2009년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 · 2010년 : 연금법 개정(부담금, 급여산정기준 변경)
2011년 ~ 현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1년 : 국립대 연금법 적용 · 2014년 : 본부 이전(전남 나주) · 2016년 : 연금법 개정(부담률 인상, 지급률 인하 등), 국립대병원 연금법 적용 · 2018년 : 연금법 개정(재해보상 강화) · 2019년 : 연금법 개정(급여 청구 절차 간소화) · 2020년 :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실행 · 2021년 : ESG경영 도입·실행, 해외주식 직접투자 개시

다. 주요사업

- 공단의 주요사업은 크게 부담금의 징수, 제 급여의 결정과 지급, 사립학교 교직원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기금증식을 위한 예탁·신탁·유가증권 투자 및 안정성이 보장된 수익사업과 소유부동산을 이용하여 직접 운영하는 사업, 교직원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가가 공단에 위탁하는 사업, 기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관리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구분됩니다.

2) 연금사업 현황

가. 학교기관 수 및 인원수

< 사학연금제도 가입현황 >

(단위 : 기관, 명,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학교기관 수	6,468 (△1.45)	6,209 (△4.00)	5,996 (△3.43)	5,845 (△2.52)	5,689 (△2.67)
교직원 수	320,326 (0.86)	323,697 (1.05)	327,864 (1.29)	330,322 (0.75)	333,231 (0.88)
교원	169,093	163,245	159,900	156,632	152,832
직원	151,233	160,452	167,964	173,690	180,399
퇴직자 수	34,074 (12.63)	34,672 (1.76)	33,099 (△4.54)	34,270 (3.54)	35,406 (3.31)
연금수급자 수	75,914 (9.67)	83,177 (9.57)	90,989 (9.39)	98,730 (8.50)	106,896 (8.27)
연금선택률	90.0	89.3	90.9	90.9	89.0

(주) ()는 증감률임

나. 급여지급 현황

< 급여종류별 지급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금급여	26,563	29,184	31,683	34,373	38,597
재해보상급여	464	459	465	448	521
퇴직수당	6,080	6,427	6,900	6,754	7,477
합 계	33,107	36,070	39,048	41,575	46,595

(주) 연금급여 : 퇴직급여, 유족급여, 연금이체급여, 연계급여 포함, 결산수치

다. 부담금 징수 현황

< 급여종류별 부담금 징수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금부담금	31,330	33,052	35,091	35,955	36,406
재해보상부담금	690	730	777	794	806
퇴직수당부담금	6,020	6,337	6,770	6,653	7,364
합 계	38,040	40,119	42,638	43,402	44,576

3) 사학연금제도 가입대상 및 급여내용

가. 가입대상

- 사학연금제도 가입대상은 사학연금법이 당연히 적용되는지 아니면 학교 기관의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연적용 대상과 임의적용 대상으로 구분됩니다. 당연적용 대상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사무직원을 말하며, 임의적용 대상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사무직원을 의미합니다.

나. 급여의 종류

< 사학연금제도의 급여 종류 >

구 분	급여 종류	
재직 중 급여	사망조위금, 재난부조금, 요양급여,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간병급여	
퇴직 후 급여	퇴직급여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분할연금, 분할연금일시금, 분할일시금
	퇴직유족 급여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재해유족 급여	장해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직무상유족보상금
	장해급여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수당	퇴직수당
	연계급여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주) 연계급여의 근거 법률 : 「국민연금과 지역연금 연계에 관한 법률」

4) 재원조달 및 비용부담방식

- 사학연금은 각출형제도를 채택하여 가입자인 사학교직원과 사용자인 학교경영기관 및 국가가 각각 일정률씩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한 부담금과 적립된 기금의 운용수익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재해보상급여에 대해서는 법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고, 퇴직수당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공단이 매년 236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와 법인이 일부 또는 전액을 분담하는 비각출형제도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학연금은 급여 수준이 급여산식에 따라 사전적으로 결정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조달은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확정급여형 설계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 사학연금 비용부담률 현황 >

부담금 종류		비용부담률		부담자
		교 원	사무직원	
연 금	개인부담금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90.0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90.0	교직원
	법인부담금	개인부담금의 9,000분의 5,294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	법 인
	국가부담금	개인부담금의 9,000분의 3,706	-	국 가
재해보상부담금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454/10,000		법 인
퇴 직 수 당	공단부담금	1992년도 퇴직수당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연 236억원)		공 단
	국가부담금	(공단부담분을 제외한) 초·중·고 국가 전액 / 대학 60%		국 가
	법인부담금	대학 40%		법 인

2. 연금사업의 기금운용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

가. 기금조성 현황

< 기금조성 현황 >

(단위 : 억원, %)

구 분	기 금		수 입	지 출	포괄손익 누 계액	조성액
	기금액	증가율				
2018년	182,846	0.4	40,526	40,909	1,138	755
2019년	204,940	12.1	52,920	34,498	3,671	22,093
2020년	229,566	12.0	49,113	33,606	9,120	24,627
2021년	257,659	12.2	57,679	36,295	6,709	28,093
2022년	237,607	△7.78	54,108	45,330	△28,830	△20,052

(주) 1. 포괄손익 :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자본조정 항목)

2. 2012년부터 국립대법인연금기금 (기금액 : 5,546원) 포함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

< 부문별 투자액과 비중 >

(단위 : 억원, %)

구 분	금융투자부문	대여사업부문	유형자산 등	기금 합계
액 수	210,956	19,792	6,859	237,607
비 중	88.8	8.3	2.9	100.0

(주) 2022년 말 현재

< 부문별 투자액 추이 >

(단위 : 억원)

구 분	금융투자부문	대여사업부문	유형자산 등	기금 합계
2018년	158,889	19,551	4,406	182,846
2019년	180,187	19,032	5,721	204,940
2020년	205,191	19,210	5,165	229,566
2021년	230,703	20,425	6,531	257,659
2022년	210,956	19,792	6,859	237,607

□ 재정상태표일 직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장기재정추계의 주요내역

1. 주요가정

1) 거시경제변수

- 재정추계를 위한 거시경제변수에는 임금상승률, 이자율, 물가상승률이 있습니다. 임금상승률과 이자율은 각각 재직자의 기준소득증가율 및 기금운용수익률의 산출을 위한 기본 입력변수로 사용됩니다.

< 거시경제변수 >

(단위 : %)

연 도	임금상승률	이자율	물가상승률
2022	4.040	2.976	1.900
2025	4.083	3.207	2.000
2030	4.134	3.321	2.000
2035	4.114	3.398	2.000
2040	4.086	3.346	2.000
2045	4.113	3.374	2.000
2050	4.040	3.337	2.000
2055	3.991	3.254	2.000
2060	3.907	3.221	2.000
2065	3.878	3.154	2.000
2070	3.823	3.125	2.000
2075	3.751	3.059	2.000
2080	3.668	2.987	2.000
2085	3.653	2.945	2.000
2090	3.634	2.913	2.000

2) 제도변수

- 제도변수로는 퇴직력, 기준소득증가율, 연금선택률, 연금실권율, 유유족률, 부부연령차 등이 있으며, 과거 경험 실적치를 기초로 산정됩니다. 퇴직력은 최근 약 3~5년 정도의 경험 실적자료를 기초로 재직기간 및 입직연령별로 기초 퇴직력을 산출한 후 Greville 3차 7항식으로 보정하여 추정하며 성별과 교직원별 구분에 따라 각각 산출합니다. 기준소득

증가율은 2010년부터의 모든 재직자의 기준소득월액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교직원별 구분, 재직기간, 학교급 및 스플라인 모형(cubic natural regression spline)에 따라 산출합니다. 연금선택률은 재직기간을 설명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산출하고, 그 외 변수는 가중평균, 지수분포의 누적분포함수, 최근 3개년 평균 수치 등을 반영함으로써 추정하였습니다.

3) 인구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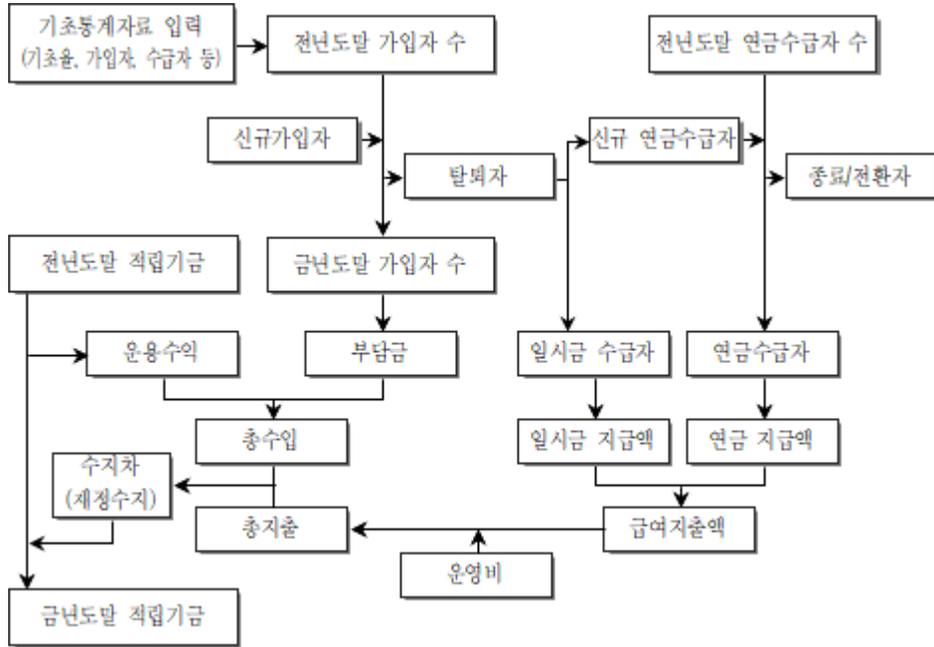
- 인구변수에는 신규가입자 수와 사망률이 있습니다. 신규가입자는 사학연금 전체 가입자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연도 말 가입자 수 추계를 바탕으로 일정 산식을 이용해 산출(신규가입자 수 = 전년도말 가입자 - 당년도말 가입자 + 사망자 + 퇴직자)합니다. 사망률은 1999년부터의 재직자 및 수급자의 사망 자료를 이용, 정합적 사망률 모형인 Li-Lee 모형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2. 추계모형과 방법

1) 모형의 구조

- 장기 재정추계 모형은 가입자 개인별 확률모형으로써 인원수 추계와 수입 및 지출 추계, 그리고 재정수지 추계로 구분됩니다.

< 사학연금 재정추계 모형의 흐름도 >



2) 추계방법

- 인원수 추계는 가입자 부문과 연금수급자 부문으로 구성됩니다. 가입자 수는 학령인구의 전망치를 기초로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수요로서 산출됩니다. 연금수급자 수는 가입자 수 추계과정에서 산출된 퇴직자를 대상으로 연금선택률을 적용하여 신규 퇴직연금, 유족연금, 연계연금수급자로 구분됩니다. 재정수입은 부담금수입과 기금운용수익의 합으로 계산됩니다. 부담금 수입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산출되고, 운용수익은 전년도 적립기금과 금년 재정수지를 재원으로 하며 이에 운용수익률을 적용하여 추계합니다. 재정지출은 급여지출액과 운영비로 이루어집니다. 급여지출액은 퇴직자 및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급여산식에 의해 산출하며, 운영비는 개인부담금 납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3. 주요 전망 결과

1) 인원수

- 전망결과에 따르면 재직자 수는 2090년 131,691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퇴직자 수 역시 재직자 수와 동일한 감소 추세를 나타냅니다. 반면 전체 연금수급자 수는 2090년 312,761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인원수 전망 결과 >

(단위 : 명)

연도	재직자	퇴직자	퇴직(유족)연금 수급자 (A)	연계연금 수급자(B)	총 연금수급자 (A+B)
2022	319,602	30,368	101,841	1,473	103,314
2025	313,679	29,125	120,946	1,632	122,578
2030	311,391	27,900	146,878	1,920	148,798
2035	300,849	26,664	168,501	2,252	170,753
2040	290,184	25,748	188,446	2,738	191,184
2045	282,821	25,305	208,530	3,375	211,905
2050	271,071	24,419	224,387	4,436	228,823
2055	255,975	23,240	233,234	6,807	240,041
2060	235,557	20,961	242,412	13,080	255,492
2065	215,478	19,008	247,262	23,937	271,199
2070	194,945	17,195	249,224	37,611	286,835
2075	176,149	15,789	248,525	51,740	300,265
2080	160,119	14,709	245,486	64,358	309,844
2085	145,656	13,541	240,095	75,072	315,167
2090	131,691	12,168	230,719	82,042	312,761

2) 재정수지 및 연금기금

- 부담금수입과 운용수익을 포함한 총수입은 2062년에 최대 67,465억원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추계 최종년도인 2090년에는 59,0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납니다. 급여지출과 운영비 지출액을 포함한 총지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90년에는 177,768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재정수지는 2029년에 최초의 재정적자 발생 이후 2090년에 118,728억원의 적자를 나타낼 때까지 그 규모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금기금액은 재정흑자가 예상되는 2028년까지 251,248억원으로 증가하다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49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나타납니다.

< 장기 재정전망(명목가격) 결과 >

(단위 : 억원)

연도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기금액
2022	45,956	38,457	7,500	230,892
2025	50,575	46,925	3,650	246,212
2030	57,721	58,752	△1,031	250,192
2035	62,120	68,639	△6,519	229,219
2040	63,907	77,759	△13,852	175,210
2045	64,516	87,025	△22,509	80,598
2050	64,826	96,242	△31,415	0
2055	66,387	105,040	△38,653	0
2060	67,374	115,308	△47,934	0
2065	67,373	126,315	△58,941	0
2070	66,504	138,629	△72,125	0
2075	64,804	151,315	△86,512	0
2080	62,851	162,864	△100,013	0
2085	60,998	171,984	△110,986	0
2090	59,040	177,768	△118,728	0

3) 주요 재정지표

- 주요 재정지표로는 부양률, 지출율, 수입률, 수지율, 적자보전율이 있습니다. 재직자 수 대비 연금수급자 수로 정의되는 부양률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90년 237.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연금재정안정화가 위협에 처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반면 기준소득총액 대비 지출액 비율로 정의되는 지출율은 부과방식 하에서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부과보험료율과 동일한 지표로서 2090년 54.20%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입률은 연금기금이 소진되는 2049년부터 법정부담률인 18.0%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지출액에 대한 수입액의 비율인 수지율은 점차 하락하여 2090년에는 33.21%에 달하게 되는데, 이는 시간의 경과와 함께 재정상태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적자보전율은 기준소득총액 대비 재정적자 규모를 보전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부담률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90년에는 36.2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 주요 재정지표 추계 결과 >

(단위 : %)

연도	부양률	지출률	수입률	수지율	적자보전율
2022	32.33	18.54	22.16	119.50	△3.62
2025	39.08	20.81	22.43	107.78	△1.62
2030	47.79	22.32	21.92	98.24	0.39
2035	56.76	23.33	21.12	90.50	2.22
2040	65.88	24.42	20.07	82.19	4.35
2045	74.93	25.51	18.91	74.13	6.60
2050	84.42	26.72	18.00	67.36	8.72
2055	93.78	28.48	18.00	63.20	10.48
2060	108.46	30.81	18.00	58.43	12.81
2065	125.86	33.75	18.00	53.34	15.75
2070	147.14	37.52	18.00	47.97	19.52
2075	170.46	42.03	18.00	42.83	24.03
2080	193.51	46.64	18.00	38.59	28.64
2085	216.38	50.75	18.00	35.47	32.75
2090	237.50	54.20	18.00	33.21	36.20

(주) 1) 지출률=지출/기준소득총액, 2) 수입률=수입/기준소득총액, 3) 수지율=수입/지출
4) 적자보전율=적자(지출-수입)/기준소득총액

4) 민감도 분석

- 민감도 분석은 추계에 적용된 다양한 가정들이 변화할 시 추계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재정추계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추계결과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민감도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로 4개의 조합 시나리오와 8개의 개별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습니다. 조합 시나리오는 인구전망 및 거시경제상황에 따라 중위-비관, 중위-낙관, 저위-중립 및 고위-중립을 가정하였으며, 각 시나리오별 재정추계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 재정추계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

(단위 : 억원)

구 분		기금 최고시점	기금 최고액	재정수지 역전시점	기금 고갈시점	2090년 적자규모
기본 가정 (중위-중립)		2028년	251,248	2029년	2049년	118,728
중위-낙관		2037년	291,468	2038년	2057년	159,592
중위-비관		2026년	238,700	2027년	2044년	84,473
고위-중립		2033년	265,284	2034년	2055년	118,797
저위-중립		2026년	244,815	2027년	2045년	113,854
기금운용 수익률	-1.0%p	2025년	231,715	2026년	2045년	118,728
	-0.5%p	2026년	240,026	2027년	2047년	118,728
	+0.5%p	2030년	266,373	2031년	2050년	118,728
	+1.0%p	2033년	287,236	2034년	2053년	118,728
임금 상승률	-10%	2026년	243,907	2027년	2046년	115,874
	- 5%	2028년	247,200	2029년	2047년	117,346
	+ 5%	2029년	256,167	2030년	2050년	119,940
	+10%	2030년	261,971	2031년	2050년	120,988
물가 상승률	-0.5%p	2032년	262,772	2033년	2054년	105,267
	-0.3%p	2030년	257,256	2031년	2052년	110,479
	+0.3%p	2027년	247,019	2028년	2046년	127,531
	+0.5%p	2026년	244,934	2027년	2045년	133,730
연금 선택률	-5.0%	2028년	244,617	2029년	2048년	113,417
	+5.0%	2029년	258,218	2030년	2049년	124,038
퇴직력	-5.0%	2030년	260,227	2031년	2051년	121,482
	+5.0%	2027년	244,626	2028년	2047년	115,860
사망률	-5.0%	2028년	250,674	2029년	2048년	120,068
	+5.0%	2029년	251,952	2030년	2049년	117,439
연계연금 선택률	-10%	2028년	250,906	2029년	2048년	118,057
	+10%	2029년	251,639	2030년	2049년	119,398
부담률	+1.0%p	2033년	285,056	2034년	2054년	115,447
	+2.0%p	2038년	341,221	2039년	2060년	112,167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의 현황 및 주요 내용

1. 연금의 현황 및 주요 내용

1) 연금사업 연혁

○ 설립목적

-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합니다.

○ 설치연혁

- 1986.12.31 : 국민연금법 공포
- 1987. 9.18 :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 1988. 1. 1 : 국민연금제도 실시(10인이상 사업장) 및 기금설치 운영
- 1992. 1. 1 :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5인이상 사업장)
- 1993. 1. 1 : 특례노령연금 지급
- 1995. 7. 1 : 농어촌지역 가입확대 적용
- 1999. 4. 1 : 도시지역 가입확대 적용(전국민 연금제도 시행)
- 1999.11. 5 : 기금운용본부 설치
- 2003. 7. 1 : 5인 미만 사업장 단계별 확대 적용(~ 2006. 1. 1)
- 2007. 7.23 : "국민연금공단"으로 명칭변경
- 2008. 1. 1 : 완전노령연금(가입기간 20년 이상) 지급개시
- 2010. 7. : 기금적립금 300조원 돌파
- 2011. 1. 1 :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따른 징수업무 이관
- 2011.10. 5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시행
- 2012.12. 1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사업 시행
- 2013. 2. : 기금적립금 400조원 돌파
- 2014. 7. 1 : 기초연금 사업 시행
- 2015. 9. : 기금적립금 500조원 돌파
- 2015.12.23 : 전국민 노후준비서비스 시행
- 2016. 8. 1 :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
- 2017. 7. : 기금적립금 600조원 돌파
- 2018. 7.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
- 2019. 7. : 기금적립금 700조원 돌파
- 2022. 7.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시행

2) 연금사업 현황

○ 기금 실운영기관 조직 및 정원현황

- 조직

- 본 부 : 13실 6센터, 디지털혁신본부, 기금운용본부, 준법감시인, 국민연금연구원
- 하부조직 : 지역본부 7개소, 지사 112개소,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112개소, 장애심사센터

《 조직도 》



- 정 원

(22. 12. 31 기준, 단위 : 명)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6급	기금	일반직 또는 별정직	연구	기능	별정	공무직
7,301	6	55	241	851	4,284	380	5	43	2	2	1,432

○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입 계	1,350,128	1,454,176	1,640,734	1,912,467	1,752,350
자체수입(A)	617,512	662,516	723,935	940,440	875,672
연금보험료수입	443,735	478,001	512,171	535,402	559,140
운용수익 등	173,777	184,515	211,764	405,038	316,532
정부내부수입	101	102	102	102	103
여유자금회수	732,515	791,558	916,697	971,925	876,575
지출 계	1,350,128	1,454,176	1,640,734	1,912,467	1,752,350
사업비(B)	209,436	230,102	259,355	294,166	343,425
기금운영비(C)	4,939	5,019	5,184	5,274	5,370
여유자금운용	1,135,753	1,219,055	1,376,195	1,613,027	1,403,555
기금재정수지(D)	403,137	427,395	459,396	641,000	526,877
연도말 누적적립금	6,387,811	7,366,538	8,337,276	9,487,194	8,904,657

* 기금재정수지(D) = 자체수입(A) - [사업비(B) + 기금운영비(C)]

* 연도말 누적적립금은 결산기준, 평가가 반영된 누적 적립금임

○ 주요 통계현황

- 가입자 추이

(단위 : 천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장가입자	13,818	14,158	14,320	14,581	14,786
지역가입자	7,695	7,232	6,898	6,827	6,846
임의(계속)가입자	801	826	889	940	866
계	22,314	22,216	22,107	22,348	22,498

- 연금수급자 추이

(단위 : 천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노령연금	3,779	4,090	4,468	4,894	5,397
장애연금	79	81	81	78	77
유족연금	742	793	842	892	951
일 시 금	170	199	197	206	218
계	4,770	5,163	5,588	6,070	6,643

- 종류별 연금급여액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노령연금	173,840	190,693	218,169	250,833	295,441
장애연금	4,059	4,276	4,314	3,849	3,914
유족연금	20,576	22,636	24,284	26,125	28,818
일 시 금	9,052	10,039	9,774	10,561	12,029
계	207,527	227,643	256,541	291,368	340,201

3) 주요사업

○ 관리·운용주체

-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영하되, 그 업무를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 관리기관의 주요사업

- 연금보험료 징수사업
 -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동안 매월 연금 보험료를 징수하여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
- 연금급여 지급사업
 - 국민의 노령·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
 - 종 류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시금(사망, 반환)
- 국민연금 사옥확보사업
 - 안정적인 사무공간 확보, 본부지방이전을 위한 사옥 신축 및 보유사옥 관리·운영, 지방이전 직원에 대한 주거지원으로 업무능률 향상 및 민원편익 도모
- 복지사업
 - 휴양시설 설치·운영 및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등을 통한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 및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여 국민연금 제도의 장기적 안정과 발전에 기여
-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 운용사업
 -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연금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여유자금을 금융부문에 투자·운용
 - 종 류 : 주식, 채권, 해외주식, 해외채권, 대체투자 등

4) 연금사업의 재원조달 방법

- 재원의 조달 :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및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 잉여금
- 비용부담방식
 - 연금보험료 : 근로자 4.5%, 사용자 4.5%, 자영자 9%
 - 정부보조금 지원(정액지원 : 100억원)

2. 중장기 기금운용 방향

- 지속적인 투자다변화, 포트폴리오 분석 및 관리 강화, 신상품 도입, 국민의 주주가치 제고 등 투자활동을 강화
- 위험자산 증가, 투자환경 급변에 대비하여 사전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별·산업별·자산별 통합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
- 기금 1,000조 시대를 대비 조직 및 인력운영 체계를 강화하고 자금결제 및 기금정보시스템을 글로벌 연기금 최고수준으로 향상

□ 재정상태표일 현재 관련 법령에 따른 장기재정추계의 주요 내역

1. 주요가정

■ 인구가정

○ 합계출산율 가정

<표 1> 합계출산율 가정

(단위 : 명)

구분	2015	2020	2030	2050년 이후
합계출산율	1.24	1.24	1.32	1.38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2016.

○ 사망률 가정

<표 2> 기대수명 가정

(단위 : 세)

구분	2015	2020	2030	2040	2050	2060	2065
남자	79.0	80.3	82.7	84.7	86.3	87.8	88.4
여자	85.2	86.2	87.8	89.1	90.2	91.2	91.6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2016.

○ 국제이동률 가정

<표 3> 국제순이동률 가정

(단위 : 인구천명 당)

구분	2015	2020	2030	2040	2050	2065년 이후
국제순이동률	1.6	1.2	0.6	0.7	0.7	0.7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2016. 순이동률은 국제 순이동자 수를 특정연도 인구로 나눈 비율

■ 경제변수가정

○ 거시경제변수 가정

<표 4> 거시경제변수 가정

(단위 : %)

구분	2018~ 2020	2021~ 2030	2031 ~2040	2041 ~2050	2051 ~2060	2061 ~2070	2071~ 2080	2081~ 2088
실질경제성장률	3.0	2.3	1.4	1.0	0.8	0.5	0.6	0.6
실질임금상승률	2.1	2.1	2.1	2.0	1.9	1.8	1.7	1.6
실질금리	1.1	1.4	1.5	1.4	1.4	1.3	1.2	1.1
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2.0	2.0	2.0
기금투자수익률	4.9	4.8	4.6	4.5	4.5	4.4	4.4	4.3

주 : 제시된 경제변수 가정은 해당 기간의 단순평균임

○ 경제활동참가율 가정

<표 5> 경제활동참가율 가정(남자)

(단위 : %)

연령계층	2016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88
15 ~ 19	8.1	9.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 ~ 24	45.8	44.0	43.2	46.1	49.0	51.9	54.3	56.2	57.7
25 ~ 29	78.2	75.8	77.8	79.3	80.9	82.5	83.8	84.9	85.7
30 ~ 34	92.1	91.3	90.5	90.4	90.3	90.2	90.2	90.1	90.1
35 ~ 39	94.3	94.6	93.3	93.1	92.9	92.6	92.4	92.3	92.2
40 ~ 44	94.7	94.7	93.2	92.9	92.6	92.3	92.1	91.9	91.7
45 ~ 49	93.9	93.5	91.9	91.6	91.3	90.9	90.7	90.4	90.3
50 ~ 54	91.5	91.0	90.3	89.9	89.5	89.1	88.8	88.5	88.3
55 ~ 59	86.8	87.9	89.2	88.8	88.4	88.1	87.7	87.5	87.3
60 ~ 64	74.6	77.9	81.9	81.3	80.6	79.9	79.3	78.9	78.5
65 ~ 69	58.2	60.1	62.6	62.1	61.7	61.3	60.9	60.6	60.4
70 ~ 74	42.9	44.9	48.6	47.1	45.7	44.2	43.0	42.0	41.2
75세 이상	26.0	25.0	25.9	25.2	24.6	23.9	23.3	22.9	22.5
계 ¹⁾	73.9 (78.9)	73.8 (80.0)	71.5 (81.2)	66.4 (81.0)	62.3 (80.1)	60.1 (80.3)	57.9 (80.5)	57.3 (80.1)	57.7 (80.2)

1) ()값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임

<표 6> 경제활동참가율 가정(여자)

(단위 : %)

연령계층	2016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88
15 ~ 19	9.6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20 ~ 24	56.6	51.7	51.5	53.4	55.4	57.4	59.0	60.4	61.4
25 ~ 29	75.0	76.8	80.0	81.0	82.1	83.1	83.9	84.6	85.2
30 ~ 34	62.3	66.2	72.9	75.8	77.8	79.9	81.9	83.3	83.8
35 ~ 39	58.0	59.3	62.2	68.4	72.7	76.3	79.3	82.1	83.2
40 ~ 44	64.7	64.7	68.5	74.1	76.4	78.2	80.3	83.1	84.2
45 ~ 49	70.0	73.7	77.8	79.1	80.4	81.7	82.9	83.7	84.4
50 ~ 54	67.0	71.6	75.9	77.9	80.0	82.0	83.4	84.3	84.9
55 ~ 59	58.9	63.2	68.6	70.6	72.5	74.5	76.1	77.4	78.4
60 ~ 64	49.0	50.9	56.1	57.8	59.5	61.2	62.6	63.7	64.6
65 ~ 69	35.8	37.8	41.5	42.3	43.1	43.8	44.5	45.0	45.4
70 ~ 74	25.9	28.4	29.8	28.5	27.1	25.8	24.7	23.8	23.1
75세 이상	13.8	15.2	15.2	14.7	14.1	13.6	13.1	12.7	12.4
계 ¹⁾	52.1 (58.4)	53.5 (61.0)	52.9 (64.4)	49.9 (66.8)	47.4 (68.2)	46.8 (70.1)	46.6 (71.9)	47.3 (73.0)	48.0 (73.7)

1) ()값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임

■ 제도변수

○ 국민연금 가입률, 지역가입자 비율 및 납부예외자 비율 가정

<표 7> 국민연금 가입률, 지역가입자 비율 및 납부예외자 비율 가정

(단위 : %)

구분	2017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률(%)	90.5	91.1	92.0	92.6	93.0
지역가입자 비율(%)	36.4	33.5	30.5	28.2	26.4
납부예외자비율(%)	49.2	48.1	44.7	42.2	40.0

주: 국민연금 가입률은 경제활동인구(18세~59세)대비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

○ 징수율 가정

<표 8> 징수율 가정

(단위 : %)

구분	2017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이후
사업장가입자 징수율	98.6				
지역가입자 징수율	68.9	68.3	70.1	71.6	73.2

○ 소득수준 가정

<표 9> 사업장가입자 소득 대비 지역가입자 소득의 비율 가정

(단위 : %)

구분	2017년	...	2032~2042년	...	2060년 이후	2088년
사업장가입자 소득 대비 지역가입자 소득	51.1		47.7		49.7	5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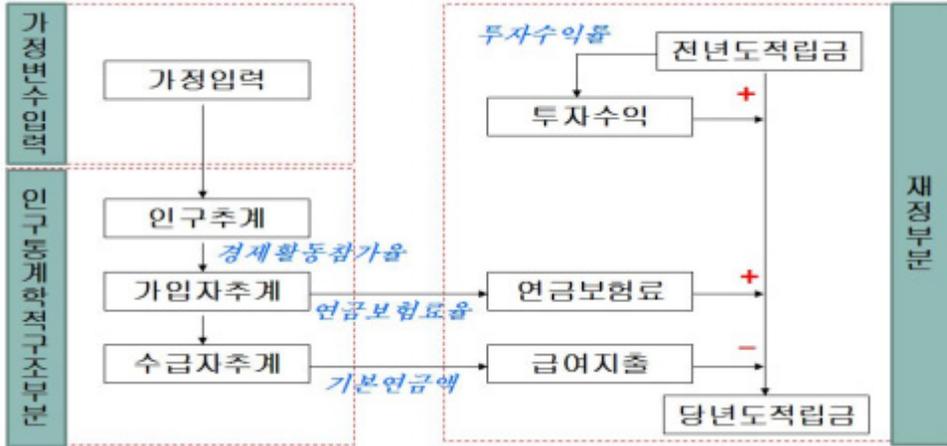
2. 재정추계모형 및 방법

■ 재정추계모형

- 국민연금의 재정추계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재정추계모형은 가입자가 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사망으로 연금수급을 마감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연금제도 내용에 맞추어 세부적으로 구현하고 이를 통해 가입자, 보험료수입, 수급자, 급여지출 등을 계산하는 연금 수리적 모형(actuarial model)입니다.
- 재정추계모형은 크게 “가정변수입력부분”, “인구통계학적 추계부분” 및 “재정추계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가정변수입력부분”에서는 재정추계에 적용되는 거시경제변수 및 제도 관련 변수(보험료율, 급여조건³⁾, 소득수준 및 납부예외자비율 등) 등의 외생 변수를 설정
 - “인구통계학적 추계부분”은 인구전망을 토대로 경찰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를 전망하며, 가입자를 기준으로 수급조건에 따라 수급자를 산출
 - “재정추계부분”에서는 연금보험료수입, 연금급여지출, 투자수익, 적립금 등 재정전망 결과를 산출

3) 수급연령, 가입기간, 소득활동여부 등

[그림 1]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의 구조



■ 재정추계방법

○ 인구추계

- 인구추계는 인구변동 요인인 출생·사망·국제이동에 대한 미래변동을 예측한 후 이를 인구균형방정식에 적용하여 다음 해 인구를 산출해 나가는 코호트요인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사용합니다.

○ 가입자추계

- 인구에 경제활동참가율, 국민연금가입률, 지역가입비율을 반영하여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 수를 산출
- 가입종별(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간 이동, 공적연금 간 이동 등의 가입자 이동행태 및 징수율, 납부예외자비율을 적용하여 가입기간별로 구분된 가입자 산출
-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추계와 추납보험료 납부제도 반영은 2018년 4차 재정계산부터 적용합니다.(규모가 크지 않은 점과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예측이 힘든 점을 고려하여 기존 재정계산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최근 들어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남에 따라 추계모형에 반영)

○ 수급자추계

- 수급조건(수급연령, 가입기간, 장애발생, 사망 등)에 따라 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료부터 신규수급자를 산출하며, 계속수급자는 전년도 수급자에 생존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연금보험료수입

- 보험료수입은 가입종별로 가입자 수, 가입자의 소득, 보험료율, 징수율, 소득신고자비율(=1-납부예외자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연금급여지출

- 급여지출은 수급자와 평균급여액의 곱으로 산출되는데 신규수급자의 평균급여액은 가입기간과 평균소득을 반영한 급여산식을 적용하며, 계속수급자의 평균급여액은 전년도 수급자의 평균급여액에 물가상승률을 적용합니다.

○ 적립금

- 전년도 적립금에 당해 연도 총수입(연금보험료수입 및 투자수익)과 총지출(연금급여지출 및 관리운영비)의 수지차를 반영하여 당해 연도의 적립금 산출합니다.

3. 주요 전망결과

○ 추계기간

- 2018년을 기준으로 '향후 70년'인 2088년까지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수지를 추계합니다.

○ 인구구조 및 노인부양비

<표 10> 인구구조 및 노인부양비

(단위 : 천명, %)

구분	인구				구성비			노인 부양비 (나)/(가)
	계	18세미만	18-64세 (가)	65세이상 (나)	18세미만	18-64세	65세이상	
2020	51,974	7,958	35,882	8,134	15.3	69.0	15.6	22.7
2025	52,610	7,706	34,396	10,508	14.6	65.4	20.0	30.6
2030	52,941	7,431	32,556	12,955	14.0	61.5	24.5	39.8
2035	52,834	7,187	30,471	15,176	13.6	57.7	28.7	49.8
2040	52,198	6,855	28,222	17,120	13.1	54.1	32.8	60.7
2045	51,051	6,367	26,505	18,179	12.5	51.9	35.6	68.6
2050	49,433	5,832	24,788	18,813	11.8	50.1	38.1	75.9
2055	47,430	5,417	23,439	18,574	11.4	49.4	39.2	79.2
2060	45,246	5,178	21,531	18,536	11.4	47.6	41.0	86.1
2065	43,024	5,003	19,748	18,273	11.6	45.9	42.5	92.5
2070	40,803	4,810	18,666	17,328	11.8	45.7	42.5	92.8
2075	38,631	4,561	17,815	16,255	11.8	46.1	42.1	91.2
2080	36,539	4,257	16,931	15,351	11.7	46.3	42.0	90.7
2085	34,534	3,961	16,223	14,350	11.5	47.0	41.6	88.5
2088	33,379	3,814	15,765	13,800	11.4	47.2	41.3	87.5

○ 가입자수 및 수급자수

<표 11> 가입자수 및 수급자수

(단위 : 천명, %)

구분	가입자수 (가)	수급자수				제도부양비 (나)/(가)
		전체	노령연금(나)	장애연금	유족연금	
2020	21,832	5,127	4,280	95	752	19.6
2025	21,377	6,816	5,699	121	995	26.7
2030	20,355	8,504	7,132	145	1,227	35.0
2035	18,944	10,526	8,948	161	1,417	47.2
2040	17,766	12,848	11,140	163	1,545	62.7
2045	16,487	14,713	12,918	161	1,634	78.4
2050	15,574	15,998	14,167	153	1,678	91.0
2055	14,399	16,582	14,793	145	1,644	102.7
2060	13,285	17,069	15,416	127	1,527	116.0
2065	12,621	17,000	15,548	109	1,344	123.2
2070	12,076	16,164	14,926	98	1,141	123.6
2075	11,484	15,180	14,152	90	938	123.2
2080	11,022	14,265	13,437	83	745	121.9
2085	10,530	13,256	12,579	80	598	119.5
2088	10,193	12,725	12,094	78	553	118.6

○ 재정수지전망

<표 12> 재정수지전망

(단위 : 십억원, %)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 배율	보험 료율	적립기금 (2017년 불변가액)
		총수입	보험료 수입	투자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20	780,610	84,745	48,028	36,717	29,190	28,500	55,556	24.8	9.0	737,031
2025	1,078,656	107,458	59,620	47,838	48,264	47,835	59,194	21.1	9.0	922,431
2030	1,378,515	132,884	71,537	61,347	73,509	72,985	59,375	17.9	9.0	1,067,730
2035	1,641,860	156,078	83,537	72,541	109,643	109,003	46,435	14.6	9.0	1,151,822
2040	1,776,319	174,861	95,926	78,934	163,722	162,941	11,139	10.8	9.0	1,128,676
2041	1,777,883	177,213	98,183	79,029	175,649	174,837	1,564	10.1	9.0	1,107,519
2042	1,768,941	179,062	100,426	78,635	188,003	187,158	-8,942	9.5	9.0	1,080,342
2045	1,673,943	183,658	108,758	74,899	227,237	226,286	-43,580	7.6	9.0	963,359
2050	1,244,339	182,881	125,396	57,485	298,884	297,728	-116,004	4.6	9.0	648,613
2055	384,976	162,463	140,908	21,555	377,053	375,651	-214,590	1.6	9.0	181,752
2057	-123,881	147,200	147,200	-	415,992	414,477	-268,791	0.3	9.0	-56,215
2060		157,690	157,690	-	485,289	483,593	-327,599		9.0	
2065		180,876	180,876	-	607,810	605,764	-426,934		9.0	
2070		208,618	208,618	-	713,127	710,663	-504,509		9.0	
2075		238,404	238,404	-	815,338	812,381	-576,934		9.0	
2080		274,085	274,085	-	931,141	927,604	-657,056		9.0	
2085		313,103	313,103	-	1,045,131	1,040,906	-732,028		9.0	
2088		337,382	337,382	-	1,119,935	1,115,234	-782,553		9.0	

- 부과방식비용률(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총액 대비 급여지출 비율) 및 GDP 대비 급여지출 추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표 13> 부과방식비용률 및 GDP 대비 급여지출 추이

(단위 : 십억원, %)

연도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총액(가)	급여지출 (나)	GDP (다)	GDP대비 보험료부과대 상소득총액 (가)/(다)	GDP대비 급여지출 (나)/(다)	부과방식 비용률 (나)/(가)
2020	549,469	28,500	1,984,946	27.7	1.4	5.2
2025	678,436	47,835	2,445,452	27.7	2.0	7.1
2030	811,739	72,985	2,924,580	27.8	2.5	9.0
2035	947,973	109,003	3,407,651	27.8	3.2	11.5
2040	1,091,203	162,941	3,928,053	27.8	4.1	14.9
2045	1,241,018	226,286	4,486,486	27.7	5.0	18.2
2050	1,434,787	297,728	5,096,405	28.2	5.8	20.8
2055	1,613,011	375,651	5,760,773	28.0	6.5	23.3
2060	1,805,740	483,593	6,454,771	28.0	7.5	26.8
2065	2,072,279	605,764	7,181,179	28.9	8.4	29.2
2070	2,390,572	710,663	7,966,870	30.0	8.9	29.7
2075	2,732,050	812,381	8,869,334	30.8	9.2	29.7
2080	3,141,781	927,604	9,909,947	31.7	9.4	29.5
2085	3,589,548	1,040,906	11,068,147	32.4	9.4	29.0
2088	3,868,136	1,115,234	11,816,028	32.7	9.4	28.8

- 저출산 시나리오 재정추계결과

- 최근의 저출산 경향을 고려하여 '저출산4)' 및 '출산율 1.05명5)' 인구가정을 추가로 검토합니다.
- 저출산 시나리오의 경우 수지적자(2042년) 및 기금소진 시점(2057년)은 기본가정과 동일하나,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부과방식비용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표 14> 저출산 고려 시 재정전망

인구가정	최대적립기금 시점	수지적자 시점	기금소진 시점
저출산	2041년(1,775조원)	2042년	2057년(△209조원)
출산율 1.05명	2041년(1,773조원)	2042년	2057년(△239조원)

4) 통계청 중위인구(출산율, 기대여명, 국제이동률 모두 중위)에서 출산율을 저위수준으로 변경

5) 통계청 중위인구에서 출산율이 향후에도 1.05명('17년 실적)으로 지속된다는 가정

<표 15> 저출산 고려 시 부과방식비용률

(단위 : %)

인구 가정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88
저출산	5.2	9.0	15.0	21.3	28.6	33.3	35.2	34.9
출산율 1.05명	5.2	9.0	15.0	21.5	29.3	34.7	37.7	37.7

4. 민감도분석

- 각 변수의 변화에 따른 당년도 수지적자 발생연도, 기금소진연도, 부과방식비용률의 차이를 분석합니다.
 - 조합시나리오 : 인구변수와 경제변수를 함께 변화시킴
 - 개별시나리오 : 주요변수에 대해서 가정을 변화시키고, 다른 변수는 기본가정을 사용
- 조합시나리오의 구분 및 가정
 - 조합시나리오는 통계청(2016년) 저위, 중위, 고위 3가지 시나리오와 최근의 저출산 현상을 고려한 저출산 대안, 출산율 1.05 대안 2가지 시나리오의 인구전망에 따른 각각의 거시경제변수를 전망, 기본가정 통계청 중위 인구전망에 대하여 중요소생산성 증가율 가정을 비관과 낙관으로 설정한 2가지 시나리오 추가하여 총 6가지 시나리오입니다.

<표 16> 조합시나리오의 구분

구분	인구			경제변수 (중요소생산성)	비고
	출산	사망	국제이동		
시나리오1	저위			중립	저위중립
시나리오2	중위			비관	중위비관
기본가정				중위	
시나리오3	고위			낙관	중위낙관
시나리오4				고위	
시나리오5	저위	중위		중립	저출산 대안
시나리오6	1.05	중위		중립	출산율 1.05 대안

<표 17> 인구추계의 출산율(합계출산율) 변화가정

(단위: 명)

구분	2015	2020	2025	2030	2035	2050년 이후
고위가정	1.24	1.38	1.50	1.57	1.62	1.64
중위가정	1.24	1.24	1.28	1.32	1.36	1.38
저위가정	1.24	1.10	1.07	1.07	1.10	1.12

<표 18> 인구추계의 사망률(기대수명) 변화가정

(단위: 세)

구분	저위가정		중위가정		고위가정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015	79.0	85.2	79.0	85.2	79.0	85.2
2020	79.6	85.5	80.3	86.2	80.9	86.7
2030	81.7	86.8	82.7	87.8	83.6	88.6
2040	83.6	87.9	84.7	89.1	85.6	90.0
2050	85.2	89.1	86.3	90.2	87.2	91.2
2060	86.6	90.0	87.8	91.2	88.7	92.1
2065	87.2	90.5	88.4	91.6	89.2	92.6

<표 19> 인구추계의 국제이동력(순국제이동률) 변화가정

(단위: 인구 1천명당)

구분	저위가정	중위가정	고위가정
2015	1.6	1.6	1.6
2020	0.4	1.2	2.1
2030	-0.2	0.6	1.4
2040	-0.1	0.7	1.4
2050	-0.1	0.7	1.4
2065년 이후	0.0	0.7	1.4

<표 20> 조합시나리오에 대한 경제변수 가정(실질)

(단위 : %)

인구	경제	경제변수	2018~ 2020	2021~ 2030	2031~ 2040	2041~ 2050	2051~ 2060	2061~ 2070	2071~ 2080	2081~ 2088
저위	중립	실질 GDP성장률	2.9	2.2	1.2	0.7	0.3	-0.0	-0.1	-0.2
		실질 임금상승률	2.1	2.1	2.1	2.1	2.0	1.9	1.7	1.7
		실질 금리	1.1	1.3	1.4	1.3	1.1	1.0	0.8	0.6
		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2.0	2.0	2.0
중위	비관	실질 GDP성장률	2.3	1.5	0.6	0.2	-0.0	-0.3	-0.2	-0.2
		실질 임금상승률	1.4	1.3	1.3	1.2	1.1	1.0	0.9	0.8
		실질 금리	0.9	0.8	0.9	0.8	0.7	0.6	0.5	0.5
		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2.0	2.0	2.0
	중립	실질 GDP성장률	3.0	2.3	1.4	1.0	0.8	0.5	0.6	0.6
		실질 임금상승률	2.1	2.1	2.1	2.0	1.9	1.8	1.7	1.6
		실질 금리	1.1	1.4	1.5	1.4	1.4	1.3	1.2	1.1
		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2.0	2.0	2.0
	낙관	실질 GDP성장률	3.6	3.1	2.1	1.8	1.5	1.3	1.4	1.4
		실질 임금상승률	2.7	2.9	2.9	2.8	2.7	2.6	2.5	2.4
		실질 금리	1.3	2.0	2.1	2.0	2.0	1.9	1.8	1.7
		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2.0	2.0	2.0
고위	중립	실질 GDP성장률	3.0	2.4	1.5	1.3	1.2	1.0	1.2	1.3
		실질 임금상승률	2.0	2.1	2.0	2.0	1.9	1.8	1.7	1.6
		실질 금리	1.1	1.4	1.5	1.6	1.6	1.5	1.4	1.4
		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2.0	2.0	2.0
저출산 대안	중립	실질 GDP성장률	3.0	2.3	1.4	0.9	0.5	0.2	0.2	0.1
		실질 임금상승률	2.1	2.1	2.1	2.0	1.9	1.8	1.7	1.7
		실질 금리	1.1	1.4	1.5	1.4	1.3	1.1	1.0	0.8
		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2.0	2.0	2.0
출산율 1.05 대안	중립	실질 GDP성장률	3.0	2.3	1.3	0.8	0.5	0.1	0.0	-0.1
		실질 임금상승률	2.1	2.1	2.1	2.0	2.0	1.9	1.7	1.7
		실질 금리	1.1	1.4	1.5	1.4	1.3	1.1	0.9	0.7
		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2.0	2.0	2.0

주 : 제시된 경제변수 가정은 해당 기간의 단순평균임

<표 21> 민감도분석 결과

시나리오		적립기금		부과방식비용률			GDP 대비 급여지출			
		수지 적자	기금 소진	206 0년	207 0년	208 8년	206 0년	207 0년	208 8년	
기본가정(중위중립)		2042년	2057년	26.8%	29.7%	28.8%	7.5%	8.9%	9.4%	
조 합 시 나 리 오	저위중립	2041년	2056년	30.0%	34.9%	37.5%	8.0%	9.9%	11.4%	
	고위중립	2042년	2058년	24.3%	26.0%	23.7%	7.0%	8.2%	8.2%	
	중위낙관	2044년	2059년	24.4%	26.8%	25.6%	6.7%	8.0%	8.2%	
	중위비관	2040년	2056년	29.7%	33.2%	32.6%	8.4%	10.1%	10.9%	
	저출산 대안	2042년	2057년	28.6%	33.3%	34.9%	7.8%	9.6%	10.8%	
	출산율 1.05 대안	2042년	2057년	29.3%	34.7%	37.7%	7.9%	9.8%	11.4%	
개 별 시 나 리 오	기금투자 수익률	기본가정+0.1%pt	2042년	2058년	26.8%	29.7%	28.8%	7.5%	8.9%	9.4%
		기본가정-0.1%pt	2041년	2057년	26.8%	29.7%	28.8%	7.5%	8.9%	9.4%
	임금 상승률	기본가정+0.4%pt	2042년	2057년	25.5%	28.2%	27.1%	8.4%	10.3%	11.6%
		기본가정-0.4%pt	2041년	2057년	28.2%	31.4%	30.7%	6.7%	7.7%	7.7%
	경제활동 참가율	기본가정+0.3%pt	2042년	2057년	26.8%	29.8%	28.9%	7.5%	9.0%	9.5%
		기본가정-0.3%pt	2042년	2057년	26.8%	29.7%	28.8%	7.5%	8.9%	9.4%
	임의 가입자	기본가정+0.1%pt	2042년	2057년	26.8%	29.7%	28.8%	7.5%	8.9%	9.4%
		기본가정-0.1%pt	2042년	2057년	26.8%	29.7%	28.8%	7.5%	8.9%	9.4%
	임의계속 가입자	기본가정+1.0%pt	2042년	2057년	26.8%	29.7%	28.8%	7.5%	8.9%	9.4%
		기본가정-1.0%pt	2042년	2057년	26.8%	29.7%	28.8%	7.5%	8.9%	9.4%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비율	기본가정+1.1%pt (35년 이후)	2042년	2057년	26.8%	29.8%	28.9%	7.5%	8.9%	9.4%
		기본가정-1.1%pt (35년 이후)	2042년	2057년	26.7%	29.7%	28.8%	7.5%	8.9%	9.4%
	지역가입자 징수율	기본가정+0.3%pt (35년 이후)	2042년	2057년	26.8%	29.7%	28.8%	7.5%	8.9%	9.4%
		기본가정-0.3%pt (35년 이후)	2042년	2057년	26.8%	29.7%	28.8%	7.5%	8.9%	9.4%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사업장 대비)	기본가정+0.5%pt (35년 이후)	2042년	2057년	26.8%	29.7%	28.8%	7.5%	8.9%	9.5%
		기본가정-0.5%pt (35년 이후)	2042년	2057년	26.8%	29.7%	28.8%	7.5%	8.9%	9.5%
	관리비, 크레딧 국고 지원	관리운영비1.6%, 출산 크레딧 30%	2041년	2057년	27.0%	29.9%	29.0%	7.5%	9.0%	9.5%

제3장 필수보충정보

1.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

- 유산자산이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를 위하여 정부가 영구히 보존하여야 할 자산으로서 역사적, 자연적, 문화적, 교육적 및 예술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자산을 의미하며, 취득시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고 ‘유산자산취득비’로 비용 처리하고 있습니다.
- 당기말 현재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국가보훈처, 문화재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다음의 문화재, 국립공원, 보호구역의 유산자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① 유산자산의 종류, 수량 및 관리상태

구분		단위	당기말	전기말
문화재	토지	m ²	128,596,757	128,591,620
	건물	m ²	121,138	120,495
	입목	식	369	369
	건축물	식	2,316	2,319
	국보, 보물, 등록문화재 등	점	11,705	11,491
국립공원		km ²	6,728	6,728
보호구역		km ²	383,279	381,216

② 유산자산취득비 및 유산자산수선유지비

(단위: 원)

구분	당기	전기
유산자산취득비	89,238,222,814	126,549,839,008
유산자산수선유지비	8,032,056,640	9,615,941,260

2. 연금보고서

- 「연금 회계처리지침」에 따른 연금보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공무원연금(인사혁신처)

1장 공무원연금 개요

1.1 제도 일반

□ 내용 및 연혁

- 공무원연금제도(Government Employees Pension System, GEPS)는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효시로서 1960년 1월 1일 법률 제533호로 공무원연금법이 제정·공포됨으로써 시행되었습니다.
- 직업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직역연금제도로써,
 - 적용대상은 국가공무원법·지방공무원법 및 관련 법규에 의한 정규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기타 직원(위원회 전임직원 등) 및 업무·보수 등을 고려하여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자이며,
 - 군인과 선거로 취임하는 공무원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공무원연금 급여는 크게 퇴직급여, 퇴직유족급여, 비공무상 장애급여 및 퇴직수당으로 구분됩니다.
 - 2018년 「공무원재해보상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공무상 재해보상제도와 관련된 급여는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되었습니다.
 - 퇴직급여는 재직기간이 10년 이상(2015년까지는 재직 20년 기준)인 경우 선택 여부에 따라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혹은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이 지급되며, 10년 미만인 경우 퇴직일시금이 지급됩니다.
- 법 제정 이후 공무원기여율 및 정부부담률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였으며 다양한 형태의 급여가 도입 또는 폐지되었습니다.
 - 2000년 연금개혁으로 수지적자를 ‘보전금’의 형태로 정부가 추가 부담하도록 전환하여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였으며,
 - 2009년 연금개혁으로 수급구조 및 지급요건을 조정하여 장기적으로 재정안정화를 위한 토대를 마련하였고 같은 해 국민연금과의 연계제도 도입을 통해 공적연금 사각지대 문제가 크게 해소되었습니다.
 - 2015년 연금개혁으로 지급률 인하, 기여율 인상 등 강력한 재정안정화 조치가 이루어져 국가 보전금이 70년간 497조 절감되는 등 공무원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연금 수급요건, 지급개시연령, 유족연금 지급률 등 주요 제도를 국민연금과 일치시킴으로써 수익비가 기존 2.08배에서 국민연금 수준(1.5배)인 1.48배로 낮아져 실질적 형평성도

달성하였습니다.

- 2018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공무원연금법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으로 이원화 되었고,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연금법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 2021년 연금법을 개정하여 공무원 부모가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에 대해 양육책임을 불이행한 경우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하였습니다.

□ 2015년 연금개혁 주요내용

- 2015년 공무원연금 개혁은 재정건전성 강화와 공적연금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추진하였으며 역대 개혁 중 가장 큰 효과를 달성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종 전	개 정
기여율(공무원) 및 부담률(정부) 인상	기준소득월액의 7%	기준소득월액의 9% (단계적 인상) * '16년 8% → '17년 8.25% → '18년 8.5% → '19년 8.75% → '20년 9%
연금지급률 인하	재직기간 1년당 1.9%	재직기간 1년당 1.7% (단계적 인하) * '16년 1.878% → '20년 1.79% → '25년 1.74% → '30년 1.72% → '35년 1.7%
소득재분배 도입	없음	지급률 1.7% 중 1.0% (국민연금상당분)에 재분배 요소 도입
소득상한 강화	1.8배 (전체 공무원 평균기준소득월액 대비)	1.6배로 하향 조정
연금수급요건 조정	20년	10년
재직기간 상한 연장	33년	36년 (재직 21년 미만부터 단계적 연장)
연금지급개시 연령 연장	'09년 이전 임용자 60세 '10년 이후 임용자 65세	모든 공무원 65세로 단계적 연장 * '22년 61세 → '24년 62세 → '27년 63세 → '30년 64세 → '33년 65세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	'09년 이전 임용자 70% '10년 이후 임용자 60%	모든 공무원 60% 적용 * 개정이후 유족연금 사유발생자부터
연금액 한시동결	물가인상률 연동 조정	5년간 동결 ('16 ~ '20년)
연금정지제도 강화	공무원·군인·사학에 재임용시 연금 전액정지	선거직 공무원과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재취업 고소득자도 연금 전액 정지
	근로자 평균임금월액 기준으로 연금정지액 결정('14년 338만원) 부동산임대소득은 정지대상 소득에서 제외	연금수급자 평균연금월액 기준으로 연금정지액 결정('14년 224만원) 부동산임대소득도 정지대상 소득에 포함
분할연금제도 도입	없음	혼인기간 5년 이상자 이혼 시 해당기간 1/2 분할지급 (당사자간 협의 및 재판결과 우선적용)
비공무상 장애연금 도입	없음	비공무상 장애로 퇴직 시 지급 (공무상 장애연금액의 1/2 수준)

□ 기금 역할

- 공무원연금법 제76조에 근거하여 연금급여를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의 유지·관리를 위해 공무원연금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법 제72조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재정의 안정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책임준비금을 연금기금에 적립하게 되었으며,
 - 2009년 연금개혁으로 신설된 공무원연금법 제71조 제8항에 따라 기금의 수익금으로 정부가 부담할 보전금을 충당할 수 있게 됨으로써 연금재정에 대한 기금의 역할이 더욱 분명하게 되었습니다.
- 공무원연금재정 안정을 위해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매년 보전금을 충당하는 상황에서 실효성이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적립방식을 유지하려면 일정 규모의 추가 기금적립이 필요한데 현재의 정부 여건상 보전금 외 추가적인 예산지원은 곤란한 상황이며,
 - 필요할 경우 기금수익의 일부를 보전금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있지만, 1년분 연금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의 기금을 사용하기는 어려운 상태입니다.
 - 장기적으로 기금증식 속도보다 급여 지출 증가 속도가 빨라 기금을 급여재원으로 일절 사용하지 않고 증식만 시켜도 기금 적립률(연금기금/연간 연금지출액)이 오히려 하락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세대 간 공조에 기반을 둔 재정운영 특성상 기금은 유동성 위기 방지를 위한 지불준비금으로 1~2년분 연금지출액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공무원연금기금은 사전적립을 통한 책임준비금이기보다는 유동성 위험과 비상위험 방지 및 복지투자 재원의 성격으로 이해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1.2 인원과 재정 현황

□ 인원 현황

<인원 현황>

(단위 : 명, 2022년 12월말 기준)

구 분		인 원
재 직 자		1,280,994
연금수급자		624,508
	퇴직연금수급자	546,010
	유족연금수급자	78,498

<인원과 지표의 과거 추이>

(단위 : 명)

연도	재직자 (A)	퇴직자 (B)	퇴직연금 수급자(C)	유족연금 수급자(D)	연금수급자 (E=C+D)	퇴직률 (B/A)	연 선 택 률	부양률 (E/A)
1982	667,554	38,844	3,556	140	3,696	5.8%	32.6%	0.6%
1984	682,281	34,768	6,940	225	7,165	5.1%	29.1%	1.1%
1986	716,629	24,651	10,435	376	10,811	3.4%	30.4%	1.5%
1988	767,123	27,129	17,186	737	17,923	3.5%	38.2%	2.3%
1990	843,262	27,866	23,844	1,277	25,121	3.3%	49.9%	3.0%
1992	922,098	32,924	31,797	2,203	34,000	3.6%	48.3%	3.7%
1994	948,151	36,875	44,146	3,476	47,622	3.9%	54.8%	5.0%
1996	971,303	33,777	58,248	4,955	63,203	3.5%	51.4%	6.5%
1998	952,154	54,900	81,991	6,732	88,723	5.8%	46.7%	9.3%
2000	909,155	64,345	140,387	9,286	149,673	7.1%	78.2%	16.5%
2001	913,192	29,509	148,884	10,949	159,833	3.2%	79.7%	17.5%
2002	930,835	23,095	155,863	12,643	168,506	2.5%	84.0%	18.1%
2003	947,616	24,899	165,483	14,643	180,126	2.6%	87.9%	19.0%
2004	964,593	27,384	176,799	16,754	193,553	2.8%	91.0%	20.1%
2005	986,339	34,762	196,820	18,925	215,745	3.5%	94.6%	21.9%
2006	1,009,145	30,021	212,560	21,177	233,737	3.0%	92.8%	23.2%
2007	1,021,771	30,909	229,157	23,675	252,832	3.0%	93.5%	24.7%
2008	1,030,256	36,934	250,476	26,353	276,829	3.6%	93.9%	26.9%
2009	1,047,897	24,280	260,910	29,086	289,996	2.3%	91.5%	27.7%
2010	1,052,407	30,035	276,188	32,045	308,233	2.9%	93.4%	29.3%
2011	1,057,958	27,053	287,980	35,298	323,278	2.6%	92.4%	30.6%
2012	1,064,472	35,408	306,582	38,562	345,144	3.3%	93.7%	32.4%
2013	1,072,610	29,364	321,098	41,919	363,017	2.7%	93.6%	33.8%
2014	1,081,147	44,010	346,781	45,320	392,101	4.1%	95.5%	36.3%
2015	1,093,038	40,340	373,529	48,867	422,396	3.7%	95.6%	38.6%
2016	1,107,972	38,398	396,743	52,410	449,153	3.5%	92.5%	40.5%
2017	1,120,458	37,059	419,968	56,216	476,184	3.3%	93.3%	42.5%
2018	1,160,586	37,710	442,241	60,266	502,507	3.2%	93.3%	43.3%
2019	1,195,051	39,781	467,143	64,685	531,828	3.3%	94.6%	44.5%
2020	1,221,322	47,319	494,417	68,992	563,409	3.9%	93.7%	46.1%
2021	1,261,421	44,676	521,486	73,461	594,947	3.5%	93.1%	47.2%
2022	1,280,994	54,993	546,010	78,498	624,508	4.3%	92.5%	48.8%

※ 부양률(%) = 연금수급자 수(장해연금 및 장해유족연금 수급자 제외) ÷ 재직자 수 × 100

□ 재정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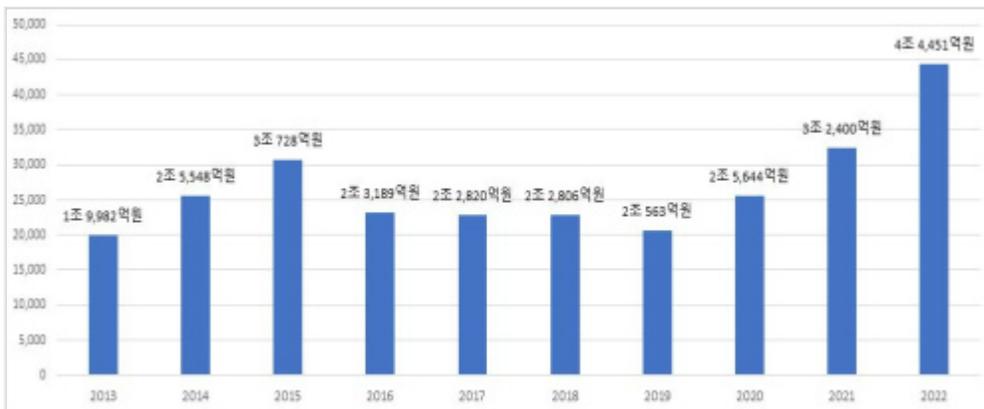
<공무원연금 재정수지¹⁾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수 입(I)	74,854	77,148	83,562	97,712	105,559	113,845	125,187	130,268	134,480	137,233
○ 기여금 부담금	74,302	76,601	81,664	96,392	103,823	113,111	121,891	129,346	132,469	135,914
○ 연금이체부담금 기금전입금 등	552	547	1,898	1,320	1,736	734	3,296	922	2,011	1,319
지 출(II)	94,836	102,696	114,290	120,901	128,379	136,651	145,750	155,912	166,880	181,684
○ 퇴직연금	90,669	98,179	110,067	117,410	124,920	133,130	142,211	151,962	162,752	176,679
○ 퇴직일시금 등	4,167	4,517	4,223	3,491	3,459	3,521	3,539	3,950	4,128	5,005
보전금(II-I) ²⁾	19,982	25,548	30,728	23,189	22,820	22,806	20,563	25,644	32,400	44,451

- 1) 국가부담의 퇴직수당과 재해보상급여 등 제외
- 2) 보전금 : 매년 연금수지 부족액에 대한 정부 추가부담금

<공무원연금 보전금 추이>



1.3 급여 구성과 내용

<공무원연금의 급여 종류>¹⁾



※ : 연금충당부채 산정대상

1) 개정 「공무원연금법」 기준 (2018. 9. 21. 시행)

1.4 비용부담방식과 재정운영방식

□ 공무원연금 비용부담방식²⁾

- 공무원연금제도의 비용부담은 급여의 성격에 따라 정부공무원이 공동부담(기여제 방식)하거나 정부가 전액 비용 부담(비기여제 방식)하는 방식으로 재원이 조달됩니다.
- 연금충당부채 산정대상이 되는 퇴직급여와 퇴직유족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무원기여금, 정부부담금과 보전금으로 조달됩니다.
 - 2000년 개정으로 기여금과 부담금을 초과해서 발생하는 연금수지 부족분에 대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추가로 부담(보전금)하게 되어 있으며,
 - 기여율과 부담률은 2016년 8%에서 단계적으로 인상되어 2020년 이후 9%로 설정되었습니다.
- 사용자 책임급여인 재해보상급여, 퇴직수당과 부조성격의 급여인 재난부조금, 사망조위금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전액 부담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 재정운영방식³⁾

- 공무원연금기금은 급여지출 비용의 예상액과 기여금·부담금 및 그 예정운용수익금의 합계액이 장기적으로 균형이 되도록 조정해 왔습니다.
- 도입 당시 기여율은 2.3%(총 4.6%)에서 출발하여 1970년부터 20년간 5.5%(총 11.0%) 수준을 유지하다가 제도 성숙단계에 들어서면서 급속한 고령화 등 인구환경의 변화에 따라 재정 불균형 상태가 점차 가시화되기 시작하였습니다.
- 1993년 최초로 연금수지상 적자 발생 이후 IMF 외환위기시 정부 구조조정으로 기금이 상당 부분 소진되는 경험을 하였으며, 2001년부터는 급여부족분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전하도록 하였습니다.
- 2015년 연금개혁으로 공무원의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의 부담률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0년에 기준소득월액의 9%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2) 연금제도의 비용부담방식은 크게 기여제(Contributory System)와 비기여제(Non-Contributory System)가 있습니다. 기여제는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방식을 말하며, 비기여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요비용 전액을 부담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3) 연금재정 운용방식은 크게 적립방식(Funded System)과 부과방식(Pay-As-You-Go System)이 있습니다. 적립방식은 장래에 소요될 급여비용의 부담액을 제도가입 기간의 평균화된 표준보험료로 내고 그 금액을 적립하도록 계획된 재정방식입니다. 부과방식은 일정 기간의 급여비용을 동일기간 내에 조달하도록 계획된 재정방식으로, 적립금을 보유하지 않으며 보유하더라도 그 금액이 급여의 일시적 과다지출에 대비한 위험준비금 정도인 재정방식입니다.

1.5 감독·관리체계

- 인사혁신처가 제도 전반을 관장하고 있으며,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기금의 운용과 급여의 지급, 기여금 및 부담금의 징수 등 관리 집행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 또한, 일선 연금취급기관이 기여금의 징수, 급여사유의 확인 등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금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인사혁신처장은 연금제도의 개선연구, 연금관계 법령의 입안 및 해석, 기금운용 등 주요 정책사항의 결정과 공단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기능을 수행합니다.
 - 공무원단체, 연금전문가, 시민단체에서 참여하는 「공무원연금운영위원회」가 연금제도, 재정계산, 기금 및 복지사업 등 중요사항을 심의합니다.
 - 국가재정법에 따라 매년 기금운용계획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수립되어 국무회의 및 국회에 보고되고 최종적으로 국회에서 심의·의결되고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공단은 연금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연금급여의 지급, 기여금·부담금 기타 비용징수, 기금증식사업 및 후생복지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기금을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공단 산하 「자산운용위원회」가 안정성, 수익성, 유동성 및 공공성의 원칙 하에 관련 법규 및 기금운용기준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금융투자(유가증권 매입, 금융기관 예탁), 연금대부사업, 실물자산투자(주택사업, 시설운영사업) 등 자산배분안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다만,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인사혁신처장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2장 공무원연금의 기금운용

2.1. 기금의 조성과 운용

□ 공무원연금기금의 조성

(단위 : 억원)

연 도	연금수지 ¹⁾			기금증가액	연 말 기금규모
	수 입	지 출	차 액		
1981					5,491
1982	2,684	1,611	1,073	1,140	7,704
1984	3,673	1,841	1,832	1,461	14,672
1986	3,931	2,897	1,034	2,087	20,951
1988	5,418	4,596	822	2,641	27,893
1990	7,898	7,236	662	3,345	35,786
1992	12,767	12,095	672	3,810	44,918
1994	17,520	19,351	△1,831	5,242	52,414
1996	24,760	24,321	439	4,871	56,805
1998	33,164	50,698	△17,534	3,363	47,844
2000	34,374	43,832	△9,458	920	17,752
2002	39,512	35,736	3,776	2,604	27,276
2004	49,264	49,264	-	2,543	33,218
2006	61,775	61,775	-	3,934	42,229
2008	78,293	78,293	-	△1,182	46,861
2010	84,232	84,232	-	6,434	58,307
2011	89,391	89,391	-	1,798	60,105
2012	103,520	103,520	-	3,471	63,576
2013 ²⁾	107,624	107,624	-	20,094	83,670
2014	125,417	125,417	-	1,602	85,272
2015	136,769	136,769	-	2,270	87,542
2016	140,203	140,203	-	15,669 ³⁾	103,211
2017	148,820	148,820	-	6,295	109,506
2018	157,366	157,366	-	△1,127 ⁴⁾	108,379
2019	169,102	169,102	-	12,050	120,429
2020	181,574	181,574	-	12,658	133,087
2021	189,047	189,047	-	18,665	151,752
2022	208,813	208,813	-	△576	151,176

- 1) 연금수지에는 퇴직수당 포함, 재해보상 및 부조급여는 제외
 2) '13년 회계기준변경(기업회계→국가회계)에 따라 기금증가액 및 기금규모 조정
 3) '16년 기획재정부 국유재산결산지침에 따른 유형자산 재평가의 발생(12,163억원)
 4) 국내 주식시장 하락으로 금융자산투자에서 1,697억원 손실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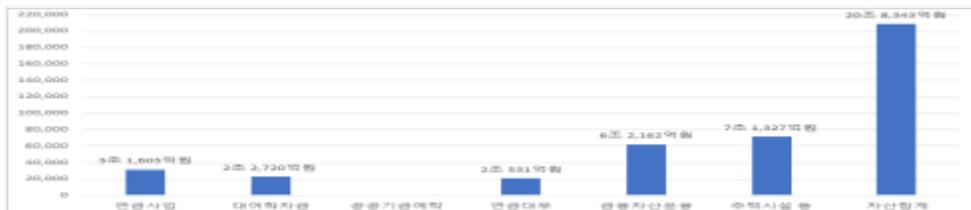
□ 공무원연금자산의 운용

<공무원연금자산의 부문별 투자액>

(단위 : 억원, 2022년 12월말 기준)

구 분	연금사업	대여학자금	공공기금예탁	연금대부	금융자산운용	주택시설 등	자산합계
액 수	31,603	22,720	-	20,531	62,162	71,327	208,343

<공무원연금자산의 부문별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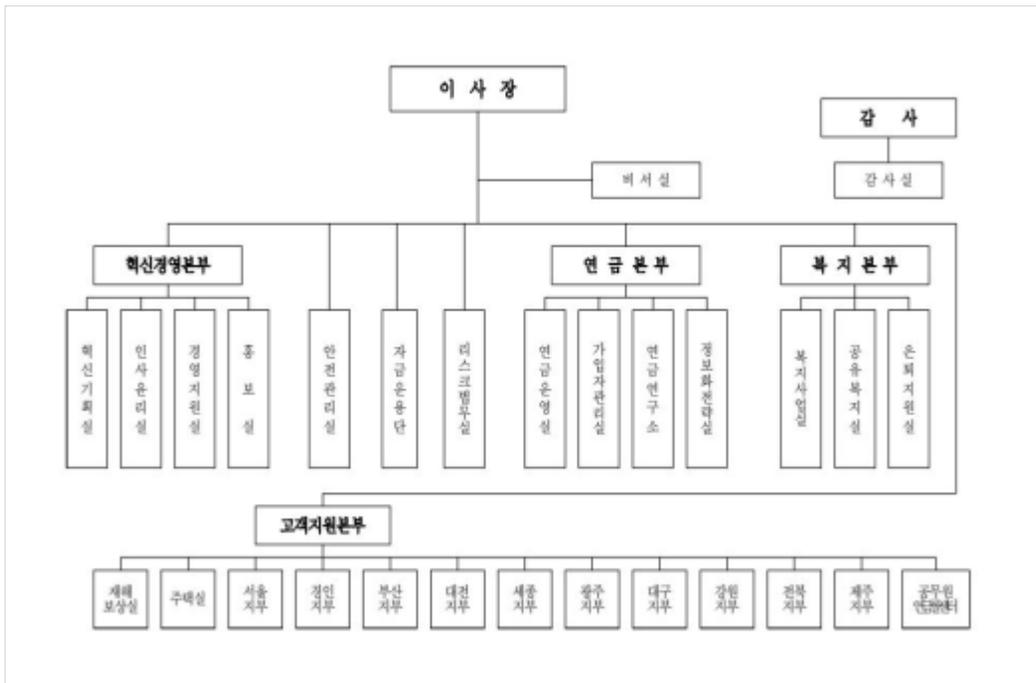
2.2 기금운용체계

□ 공무원연금공단

- 공무원연금법 제4조에 의해 1982년 2월 1일 설립된 공단은 연금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공단의 주요 업무는 재직공무원과 연금수급자의 연금관리, 재해보상 업무와 기금운용사업(금융자산운용, 연금대출, 공무원 주택 건설·임대 및 후생복지시설 운영)입니다.
- 그 외 재직공무원을 위한 대여학자금대부, 맞춤형복지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공단 조직도>

(2022년 12월말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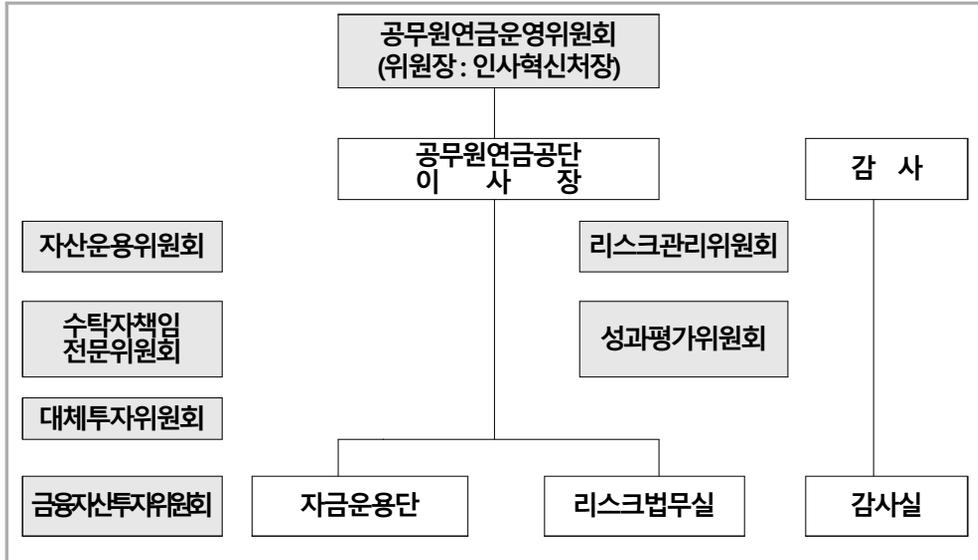


□ 공무원연금공단 자금운용조직

- 자금운용단은 기금운용의 전문성을 기하기 위하여 금융계 및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금융자산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자산배분평가위험관리에 대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운용 관련 조직도>

(2022년 12월말 기준)



<공무원연금공단 내 기금운용 관련 위원회 내역>

(2022년 12월말 기준)

구 분	자산운용 위원회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대체투자 위원회	실물자산 운용위원회	성과평가 위원회	리스크관리 위원회
목적(기능)	전체자산 배분·운용	수탁자 책임활동 심의	대체투자 심의	실물자산 배분·운용	성과평가 심의	금융실물자산 위험관리
위원수	10명	5명	29명	11명	7명	9명
구성원	위원장 혁신경영 본부장	외부위원	자금운용단장	복지본부장	외부위원	외부위원

2.3 기금투자관리⁴⁾

□ 기금운용의 목적은 안정성·유동성에 중점을 둔 수익을 통한 안정적인 연금급여 지급에 있습니다.

□ 기금운용의 원칙과 계획

- 기금운용규정 제4조에 따라, 안정성·수익성·유동성·복지성·공공성(금융자산)에 따라 자산을 운용합니다.
 - 자산의 변동성에 대응하면서 손실위험을 최소화하는 안정성, 기금의 실질가치를 보전하면서 최대 수익을 추구하는 수익성, 원활한 연금급여 지급 및 투자재원의 자체 조달을 위한 유동성,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복지성을 고려합니다.
- 자산별 성격을 고려하여 전략적 자산배분*된 금융자산과 정책적으로 배분**된 실물·대부자산을 바탕으로 향후 5개년에 대한 기금운용전략을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 * 전략적 자산배분 : 기금의 장기전망을 고려한 요구수익률, 경제 및 금융시장의 전망을 반영하여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한도를 충족할 수 있도록 자산군별 최적 배분안 도출
 - ** 정책적 자산배분 : 실물·대부자산은 거의 무위험 수준이고 중기 사업계획에 따라 규모 및 수익이 정해지므로 해당 계획에 따라 배분

□ 기금운용의 자산군 분류

•금융자산

- 채권 (국내, 해외 / 직접, 위탁 / 국채, 특수채, 회사채, 금융채 등)
- 주식 (국내, 해외 / 직접, 위탁 / 주식, 순수주식형, 사회책임투자형 펀드 등)
- 대체투자 (부동산펀드, 사모펀드, SOC펀드 등)
- 단기자금 (지불준비금 / 단기특정금전신탁, MMF, MMDA, 예금 등)

•실물자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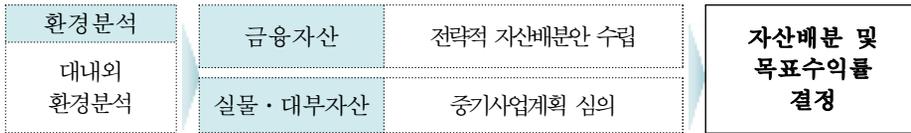
- 공무원주택자산
- 공무원시설운영자산

•연금대부자산

4)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의 「경영공시-금융자산운용」 참조 (2022년 IPS 기준)

□ 중장기 기금운용전략

- 중장기 기금운용전략이란 중장기 경영전략의 이행을 위해 대내외 환경 분석을 바탕으로 자산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산별 비중과 목표 수익률을 설정하는 과정으로,
 - 금융자산은 기금의 허용위험한도와 목표수익률을 반영하여 자산운용 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자산군의 상대적 비중을 결정하는 전략적 자산배분안을 수립하고,
 - 시장상황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자산투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전략적 자산 배분 수립시 설정한 허용범위 내에서 전술적으로 자산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실물·대부자산은 공무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 중기 사업계획에 따라 확정된 투자·운영·매각 계획을 기초로 배분합니다.
- 수립 방식



□ 위험관리체계

- 각종 위험(시장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운영위험 등)을 사전·사후적으로 인식·측정·통제하여 자산운용에 따른 위험과 자금부족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함으로써 기금운용의 안정성과 자산의 건전성 확보를 궁극적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자산운용의 위험 종류

- 시장위험 : 주가, 이자율, 환율 등 시장가격의 불리한 변화에 따라 보유 유가증권의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위험
- 신용위험 :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도 저하에 따라 투자 원리금을 당초 약정한 대로 회수할 수 없게 되거나 투자자산 가치가 하락하게 되는 위험
- 유동성위험 : 적정 유동성이 부족하거나 시장의 거래부진 등으로 정상적인 가격으로 매매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위험
- 운영위험 : 적절하지 못한 업무처리절차, 시스템 오류, 직원의 실수 또는 부정, 법률위반이나 외부 사건 등으로 인해 재무적·비재무적 손실이 초래될 위험

□ 성과평가

- 자산운용 프로세스에 따라 산출된 자산운용의 성과를 측정, 평가하여 그 결과를 자산운용 및 보상체계에 반영(Feed-back)하며 자산운용의 효율성과 책임성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의 평가와 병행하고 있습니다.

□ 공시·의결권 행사

- 발생주의에 의해 회계처리를 하고 성과보고 및 공시에 있어 국제성과 평가기준(GIPS)의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준용하고 있습니다.
- 공시의 필수사항으로 5년 이상의 기간실적자료, 시간가중수익률, 벤치마크, 레버리지와 파생상품 사용여부, 수수료 포함 여부 등이 있으며,
- 권고사항으로 독립된 제3기관에 의한 검증, 회사내부사항(인사이동 등), 위험지표 등이 있으며 특히, 다음 사항을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에 공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시사항

- 월간 및 분기 공시사항 : 투자현황 및 투자상품별 운용수익률 등
 - 연간 공시사항 :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 연도별 수입지출 및 기금적립현황, 총 투자현황 및 투자상품별 운용수익률, 기금운용지침 등
 - 수시 공시사항 : 자산운용에 관하여 공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기타 국정감사 및 감사원 지적사항 등에 대한 조치결과
- 국가재정법 제64조에 따라 주식의 의결권은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행사내용을 공시하고 있습니다.

□ 금융자산 투자관리

- 기금운용규정 제4조에 따라, 안정성·수익성·유동성·복지성을 고려하면서 기준수익률 이상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금융자산의 투자관리 의사결정체계는 위원회(「자산운용위원회」, 「대체투자위원회」 등)와 실질적인 운용정책의 실행을 담당하는 내부 운용조직인 자금운용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공무원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과 공단의 기금운용규정시행규칙에 의해 금융투자자산은 채권, 주식, 대체투자, 지불준비금 등으로 나누어 운용하고 있습니다.

□ 금융자산 자산배분계획

<2022년 자산군별 비중조정 및 허용 범위>

(단위 : 억원, %, %p)

구 분	합 계	국내채권	해외채권	국내주식	해외주식	대체투자
연말						
비중	100	31.8	10.9	17.6	13.7	26
기준						
총		±8.5	±6.5	±6.0	±6.5	±6.5
허용범위						
목표금액	83,366	26,510	9,087	14,672	11,422	21,675

* 2021년도 제2회 자산운용위원회('21.4.)에서 확정된 2022년 전략적 자산배분 비중

<2022년 자산군별 목표수익률 설정>

(단위 : 억원, %)

구 분	합 계	채 권	주 식	대체투자	단기자산
운용평잔	97,761	31,991	24,363	21,034	20,373
목표수익	3,657	681	1,551	1,119	306
목표수익률	3.7	2.1	6.4	5.3	1.5

2.4 기금운용성과

□ 요약 재무상태표⁵⁾

< 공무원연금기금 요약 재무상태표 >

(단위 : 억원)

구 분	2021년말		2022년말	
	금 액	자산대비 비율	금 액	자산대비 비율
○ 연금사업	20,529	(9.6%)	31,603	(15.2%)
○ 대여학자금사업	24,833	(11.7%)	22,720	(10.9%)
○ 공공기금예탁금	-	-	-	-
○ 연금대부사업	19,376	(9.1%)	20,531	(9.8%)
○ 금융자산운용사업	81,246	(38.1%)	62,162	(29.8%)
자 산				
- 채 권	29,033		22,063	
- 주 식	23,212		15,102	
- 대체투자	20,910		21,813	
- 지불준비금	7,900		3,000	
- 미수수익 등	191		184	
○ 주택사업	54,205	(25.4%)	58,285	(28.0%)
○ 시설운영사업	12,267	(5.8%)	12,243	(5.9%)
○ 기금지원사업	642	(0.3%)	799	(0.4%)
자 산 계	213,098	(100.0%)	208,343	(100.0%)
부 채				
○ 연금사업	6,431		4,338	
○ 대여학자금사업	35,127		32,760	
○ 금융자산운용사업	-		42	
○ 주택사업	19,559		19,782	
○ 시설운영사업	82		91	
○ 연금대부사업	-		2	
○ 기금지원사업	147		152	
부 채 계	61,346	(28.8%)	57,167	(27.4%)
기 금 총 액	151,752	(71.2%)	151,176	(72.6%)
기금증가액	18,665		△576	

5) 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의 「정보공개-경영공시-경영성과」에 공시

□ 금융자산 운용성과

<연도별 금융자산 보유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21년말		2022년말		
	금 액	비 중	금 액	비 중	
채 권	국 내	23,636	29.2	16,743	27.0
	해 외	5,396	6.7	5,320	8.6
	전 체	29,032	35.9	22,063	35.6
주 식	국 내	12,701	15.7	6,985	11.3
	해 외	10,511	12.9	8,117	13.1
	전 체	23,212	28.6	15,102	24.4
대체투자	20,911	25.8	21,813	35.2	
단기자금	7,900	9.7	3,000	4.8	
금융부문 전체	81,055	100.0	61,978	100	

<최근 5년간 금융자산 평잔수익률>

(단위 : %)

연 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익률	△1.7	8.0	9.6	8.1	△4.4

<금융자산의 세부자산별 평잔수익률>

(단위 : 억원, %, 2022년 12월말 기준)

구 분	평잔액	수 익	수익률	
채 권	국 내	21,826	△1,365	△6.3
	해 외	5,936	△776	△13.1
	전 체	27,762	△2,141	△7.7
주 식	국 내	12,172	△2,818	△23.2
	해 외	10,221	△1,420	△13.9
	전 체	22,393	△4,238	△18.9
대체투자	20,945	2,130	10.2	
단기자금	16,748	427	2.6	
계	87,848	△3,822	△4.4	

□ 연금대부자산 운용성과

<연도별 실적 비교>

(단위 : 명, 억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대부인원	60,144	45,241	44,301	37,031	46,130	37,419	39,754	38,761	38,385	30,120
대부금액	8,898	7,000	6,997	6,300	8,000	7,952	7,999	9,000	9,484	7,500
운용평잔	12,855	14,538	14,970	15,053	14,256	15,453	15,880	17,095	19,229	22,369
이자수익	589	594	501	470	477	563	520	509	476	702
수익률 (%)	4.58	4.09	3.35	3.12	3.34	3.64	3.27	2.98	2.48	3.42

※ 대출이자율 변동내역(최근 5년간)

- 3.08%(17.1월) → 3.50%(18.1월) → <일반>3.64% <특례>3.00%(19.1월) → <일반>3.01% <특례>3.00%(20.1월) → <일반>3.00% <특례>3.00%(21.1월) → <일반>2.64% <특례>1.64%(21.3.16.) → <일반>3.46% <특례>2.46%(22.1월)

□ 실물자산 운용성과

○ 주택사업

<연도별 주택사업 투자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투자액	36,423	39,409	43,453	46,108	54,393

<연도별 주택사업 투자수익률>

(단위 : 억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 익	723	1,512	1,750	1,864	383
수익률(%)	2.0	3.8	4.0	4.0	0.7

※ 임대주택 매각 및 재건축 평가이익 포함한 수익률(2017년 개포8단지 매각이익 11,752억원)

○ 시설운영사업

<연도별 시설운영사업 투자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투자액	1,706	1,754	1,723	1,634	1,613

※ 투자액 : 천안상록리조트·화성상록골프장

<연도별 시설운영사업 투자수익률>

(단위 : 억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 익	151 ¹⁾	133	93	51	174
수익률(%)	8.9	7.6	5.4	3.1	10.8

※ 수익 : 천안상록리조트·화성상록골프장 당기순이익

주 1) 화성상록골프장 부동산 매각이익 34억 제외할 경우 수익 117억원 및 수익률 6.9%

3장 공무원연금의 연금충당부채 평가

3.1 연금충당부채 평가대상 급여 종류

- 「연금 회계처리지침」 문단 4에 따르면, 연금충당부채 산정대상 급여는 다음의 11가지입니다.
 - 「공무원연금법」의 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및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의 연계퇴직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공무원연금법상 연금충당부채 평가대상 급여 종류>

공무원연금법 제28조	연금충당부채 평가 여부
1. 퇴직급여	
(1) 퇴직연금	○
(2) 퇴직연금일시금	○
(3) 퇴직연금공제일시금	○
(4) 퇴직일시금	○
2. 퇴직유족급여	
(1) 퇴직유족연금	○
(2) 퇴직유족연금부가금	○
(3)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
(4) 퇴직유족연금일시금	○
(5) 퇴직유족일시금	○
3. 비공무상 장애급여	
(1) 비공무상 장애연금	X
(2) 비공무상 장애일시금	X
4. 퇴직수당	X

※ 공무원재해보상법 제8조의 급여는 공무원연금제도와는 별개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재해보상적 급여 또는 부조적 급여이므로 연금충당부채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며 퇴직수당은 퇴직수당충당부채 산정대상이므로 제외합니다.(「연금 회계처리지침」 문단 5)

※ 공무원연금법 상 급여 이외에도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연계급여(예 :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를 연금충당부채 측정 시 포함합니다.

3.2 연금충당부채 평가대상 인원 현황

□ 인원 현황

<인원 현황>

(단위 : 명, 2022년 12월말 기준)

구 분	인 원
재 직 자	1,280,994
연금수급자	624,508
퇴직연금수급자	546,010
유족연금수급자	78,498

<인원 현황>



재직자

128만 994명



연금수급자

총 62만 4,508명

▶ 퇴직연금 : 54만 6,010명

▶ 유족연금 : 7만 8,498명

3.3 연금충당부채 평가방식

□ 연금충당부채·연금비용·연금수익의 구성요소

- 「연금 회계처리지침」 문단 17(연금충당부채의 인식)에 따르면, 재정상태표일 현재 인식하여야 할 연금충당부채는 다음 금액의 합계액입니다.
 - 연금수급자 연금충당부채 : 연금수급자에게 재정상태표일 이후 장래 연금수급기간 동안 지급할 것으로 추정되는 연금을 재정상태표일의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
 - 재직자 연금충당부채 : 연금 미수급자(재직자)에게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연금추정 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까지 귀속되는 금액을 재정상태표일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
 - 여기서, 연금 미수급자의 연금추정지급액은 연금가입자의 장래 추정보수와 장래 추정근무기간 등 보험수리적 가정을 반영하여 산정됩니다.
 - 연금추정지급액 중 재정상태표일까지 귀속되는 금액은 연금추정지급액에 전체 추정근무기간에서 재정상태표일 현재까지 근무한 기간의 비율 또는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전체추정근무기간이란 연금가입자가 재정상태표일 현재까지 근무한 기간과 장래 추정근무기간을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 「연금 회계처리지침」 문단 25(연금비용의 구성)에 따르면, 연금비용은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충당부채에서 직전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충당부채를 차감한 후 회계연도 중 지급기일이 도래한 금액을 더하여 계산하며, 동 문단에 따르면 다음 항목의 합계이기도 합니다.
 - 당기근무원가 : 회계연도 중 연금가입자가 근무용역을 제공함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충당부채의 현재가치 증가액
 - 이자원가 : 직전 재정상태표일보다 1회계연도만큼 연금개시일에 더 가까워짐에 따라 발생하는 연금충당부채의 현재가치 증가액
 - 과거근무원가 : 공무원연금제도의 변경에 따라 과거기간 근무용역에 대한 연금충당부채의 현재가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그 증감액
 - 보험수리적 손익 :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로 발생한 결과의 차이 및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경에 따른 연금충당부채의 감소 또는 증가액

- 「연금 회계처리지침」 문단 31(연금수익의 구성)에 따르면, 연금 수익은 다음 항목의 합계입니다.
 - 고용주부담금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국가회계실체가 공무원연금기금에 납부해야 할 금액
 - 피고용자기여금 :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가입자가 공무원연금기금에 납부해야 할 금액
 - 보전금 : 공무원연금기금이 자원부족 등으로 인해 국가회계실체로부터 보조받는 금액

<연금충당부채.연금비용.연금수익의 구성요소>

연금충당부채	연금비용	연금수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수급자 연금충당부채 . 재직자 연금충당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기근무원가 . 이자원가 . 과거근무원가 . 보험수리적 손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부담금 . 공무원 기여금 . 정부 보전금

- 연금충당부채.연금비용.연금수익의 회계처리
 - 연금충당부채 : 재정상태표(장기충당부채)
 - 당기근무원가, 이자원가, 과거근무원가(연금비용) : 재정운영표(프로그램총원가)
 - 보험수리적 손익(연금비용) : 순자산변동표(조정항목)
 - 고용주부담금, 피고용자기여금(연금수익) : 재정운영표(프로그램수익)
 - 보전금(연금수익) : 재정운영표(비교환수익)

□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의 평가방식과 개념

- 공무원연금의 연금충당부채와 연금비용은 급여/근무연수방식인 **예측단위 적립방식**(Projected Unit Cost Method)⁶⁾을 사용하여 산정하며, 재무상태표일 현재의 연금수급권 획득 여부와 관계없이 장래의 보수상승과 미래 재직기간을 고려한 **예측급여채무**(Projected Benefit Obligation)⁷⁾ 개념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예측단위적립방식에서는 매 근무기간에 따라 연금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한다고 보아, 예상퇴직시점의 연금추정지급액에 근무기간 혹은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연금충당부채와 연금비용을 인식합니다.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 평가방식 개요>

- 연금충당부채 평가방식 : 예측단위적립방식(PUCM, Projected Unit Cost Method)
- 연금충당부채 개념 : 예측급여채무(PBO, Projected Benefit Obligation)

- 6) 대표적인 평가방식으로 예측단위적립방식(PUCM, Projected Unit Cost Method)과 가입연령정상비용 방식(EANCM, Entry Age Normal Cost Method)이 있습니다. 예측단위적립방식이란 급여할당 (benefit allocation) 차원에서 기간귀속의 형태로 연금추정지급액을 적절히 나누는 과정에서 {연금충당부채→표준보험료}의 순서로 계산하는 급부평가방식(benefit valuation method)이지만 가입연령정상 비용방식이란 비용할당(cost allocation) 차원에서 보수귀속의 형태로 연금추정지급액을 적절히 나누는 과정에서 {표준보험료→연금충당부채}의 순서로 계산하는 비용평가방식(cost valuation method)입니다.
- 7) 연금급여채무는 크게 세 종류가 있으며, 「연금 회계처리지침」 문단 6에 따르면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부합하는 PBO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과거 「연금회계준칙」에 따르면 2012회계연도까지는 연금충당부채 계산을 위한 보수수준에 대해 다른 가정을 적용하여 연금충당부채를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 ① 확정급여채무(VBO Vested Benefit Obligation) : 평가시점에 연금수급권을 확보한 경우 연금급여, 확보하지 못한 경우 일시금 급여를 현재 보수 기준으로 계산
 - ② 누적급여채무(ABO Accumulated Benefit Obligation) : 평가시점의 연금수급권 유무에 상관없이 전체 가입자 예상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산출한 연금과 일시금급여를 현재보수 기준으로 계산 (2011~2012회계연도)
 - ③ 예측급여채무(PBO Projected Benefit Obligation) : 평가시점의 연금수급권 유무에 상관없이 전체 가입자 예상 가입기간에 기초하여 산출한 연금과 일시금 급여를 예상퇴직 때 보수 기준으로 계산(2013~2022회계연도)

연금급여채무 종류	특 징	기준소득
확정급여채무(VBO)	평가시 수급권 확보 여부에 따라 달리 계산 (확보시 연금, 미확보시 일시금)	현재보수
누적급여채무(ABO)	평가시 수급권 확보 무관	현재보수
예측급여채무(PBO)	평가시 수급권 확보 무관	미래보수

□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 산정을 위한 세부 절차

- 재직공무원의 연금충당부채와 연금수급자의 연금충당부채로 구분하여 측정하고, 이를 합산함으로써 2022년 12월 31일 현재 공무원연금의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합니다.
- 재직공무원 연금충당부채
 - 첫째, 그룹별 예상퇴직시점 보수를 반영하여 공무원연금법에 규정된 급여산식에 따라 장래에 지급하여야 할 그룹별 연금추정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재직공무원의 경우, 미래 재직기간과 예상퇴직시점의 보수를 고려하여 연금 혹은 일시금 지급을 가정하여 산정합니다.
 - 둘째, 예상퇴직시점별로 산출된 연금추정지급액에 대해 재직기간비율 또는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그룹별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합니다.
 -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비율은 전체 추정 재직기간과 이미 재직한 기간에 따른 매년 연금지급률의 수준, 연금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보수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 연금과 일시금에 적용되는 기간귀속비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 셋째,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재직공무원의 연금충당부채는 그룹별 연금충당부채를 합산한 값으로 계산합니다.
 - 이 때 연금충당부채를 일시금 급여와 연금급여로 분류하고 연금급여를 다시 퇴직급여, 유족급여, 연계급여로 분류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연금수급자 연금충당부채
 - 첫째, 연금법에 규정된 급여산식에 따라 수급기간 동안 지급하여야 할 그룹별 연금추정지급액을 산정함으로써 그룹별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합니다.
 - 연금수급자의 경우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기 위한 기간귀속이 불필요합니다.
(연금추정지급액=연금충당부채)
 - 퇴직연금수급자의 연금충당부채와 유족연금수급자의 연금충당부채로 분류하여 산정합니다.
 - 둘째, 그룹별 연금충당부채를 합산함으로써 2022년 12월 31일 현재 연금수급자의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합니다.

< 연금충당부채의 그룹별 산정 근거 >

- 「연금 회계처리지침」 문단 18에서 규정
 - '연금추정지급액은 개인별 또는 그룹별 예상퇴직시점과 장래 추정보수를 반영하여 ... 산정한다.'
- 계산환경 및 처리의 단순화
 - 산정급여가 민영부문의 경우 퇴직일시금 1종이지만 공무원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유족연금 등 11종에 달합니다.
 - 민영부문의 경우 선형 기간귀속률을 적용하지만, 공무원연금의 경우 수차례 연금개혁으로 인해 비선형적 기간귀속률을 적용합니다.
 - 결과적으로, 민영부문과 비교하면 부채 계산과정의 상당히 복잡하므로 계산환경 및 처리의 단순화가 필요합니다.

□ 공무원연금 연금비용 산정을 위한 세부 절차

- 연금비용은 2022년 12월 31일 현재 연금충당부채에서 2021년 12월 31일 현재 연금충당부채를 차감한 후 당기 연금급여 지급의무 확정액(혹은 당기 연금급여지급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여기에서 연금급여 지급액이란 공무원연금법 제28조에 따라 지급하는 급여 중 연금충당부채 인식대상으로 포함한 급여(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지급되는 연계연금급여 포함)에 대해 2022회계연도 중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을 의미합니다.
- 「연금 회계처리지침」 문단 25(연금비용의 구성)에 따라, 당기근무원가, 이자원가, 보험수리적 손익, 과거 근무원가를 합산한 값이기도 합니다.

$$\bullet \text{ 연금비용} = \text{기말 연금충당부채} - \text{기초 연금충당부채} + \text{연금급여지급액}$$
$$\bullet \text{ 연금비용} = \text{당기근무원가} + \text{이자원가} \pm \text{과거근무원가} \pm \text{보험수리적 손익}$$

- 당기근무원가의 경우 앞서 산정한 그룹별 연금충당부채에서 2022년 12월 31일 현재 당기 근무기간 귀속을 통하여 산정합니다.
- 기간귀속을 할 때, 공무원연금법 제3장의 ‘재직기간’, ‘근무기간에 따른 연금지급률’, ‘연금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보수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합니다.
 - ※ 국제회계기준(IFRS)과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2021년 12월 31일 현재 2022년(연초 기준) 대상 표준보험료를 산정한 후 당기 이자율을 적용하여 2022년 12월 31일 현재 당기근무원가를 구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 이자원가의 경우 2021년 12월 31일 현재 연금충당부채에 2021년 12월 31일 현재 사용되었던 2022년 예상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 과거 근무원가의 경우 공무원연금법 개정에 따라 과거 근무용역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는 급여가 변경되고 이로 인하여 연금충당부채의 금액이 변동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 보험수리적 손익의 경우 연금충당부채 현재가치의 증감이 있을 때 발생하며,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정과 실제의 차이(예시 : 공무원의 사망률에 대한 실적값이 가정과 달랐을 경우)
 -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화(예시 : 할인율, 공무원의 사망률, 보수상승률 등이 수정되는 경우)
 - 보험수리적 손익은 부채 변동액에서 연금비용의 구성항목들을 가감하여 산출합니다.

□ 공무원연금의 연금충당부채 평가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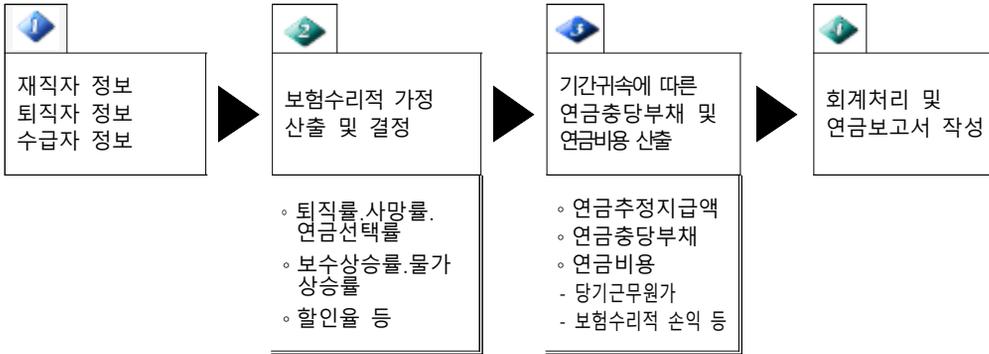
- 평가모형이란 2022년 12월 31일 현재 재직자·수급자 정보(인원현황, 보수현황)를 기초로 보험수리적 가정(인구 통계적 가정, 재무적 가정)을 입력하여 연금충당부채를 산정 및 회계처리 할 수 있는 설계도입니다.
- 모형 설계의 3대 원칙
 - ‘연금 회계처리지침의 적절한 반영’ 원칙에 따라, 모든 평가과정이 「연금 회계처리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평가모형의 합리성’ 원칙에 따라, 보험수리적 기법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연금추정지급액(PVFB, Present Value of Future Benefits)을 산출하고 과거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기간귀속률을 적용하여 연금충당부채를 계산하여야 합니다.
 - ‘보험수리적 가정의 상호정합성’ 원칙에 따라, 퇴직률, 사망률, 각종 연금선택률, 경제기초율 등이 서로 모순이 되지 않도록 산출·적용되어야 합니다.

< 평가모형의 3대 기본원칙 >

- 「연금 회계처리지침」의 적절한 반영
- 연금충당부채 평가모형의 합리성
- 보험수리적 가정의 상호정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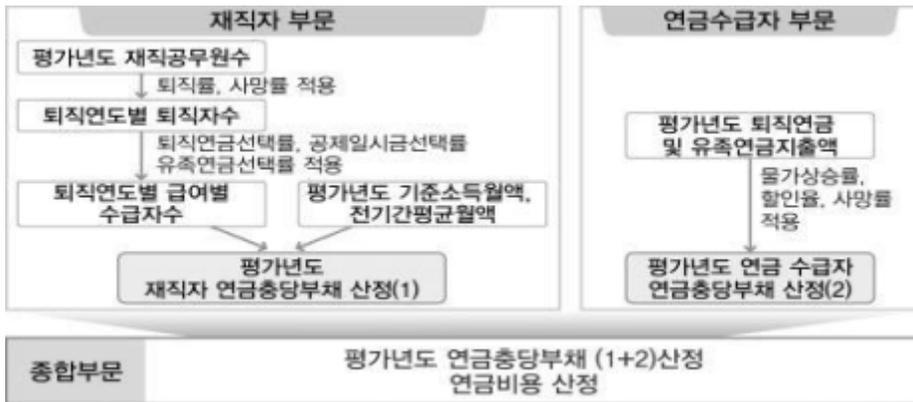
○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 산출 흐름도

<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 산출 흐름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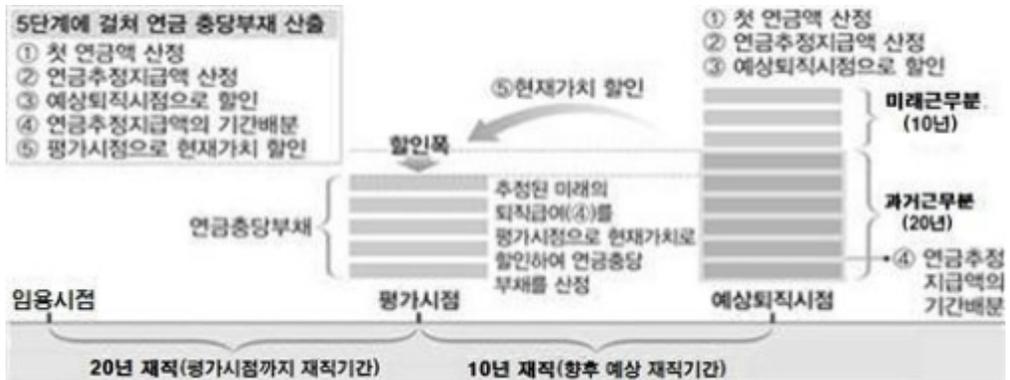
○ 평가모형의 구성과 산정 개요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 평가모형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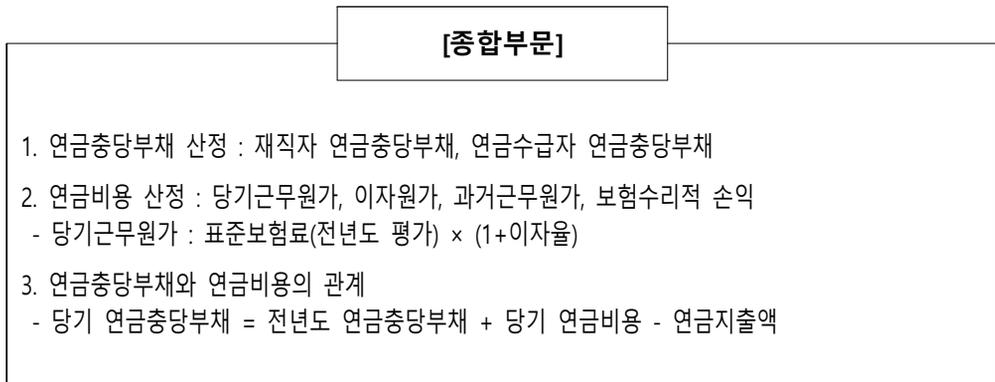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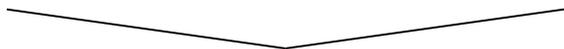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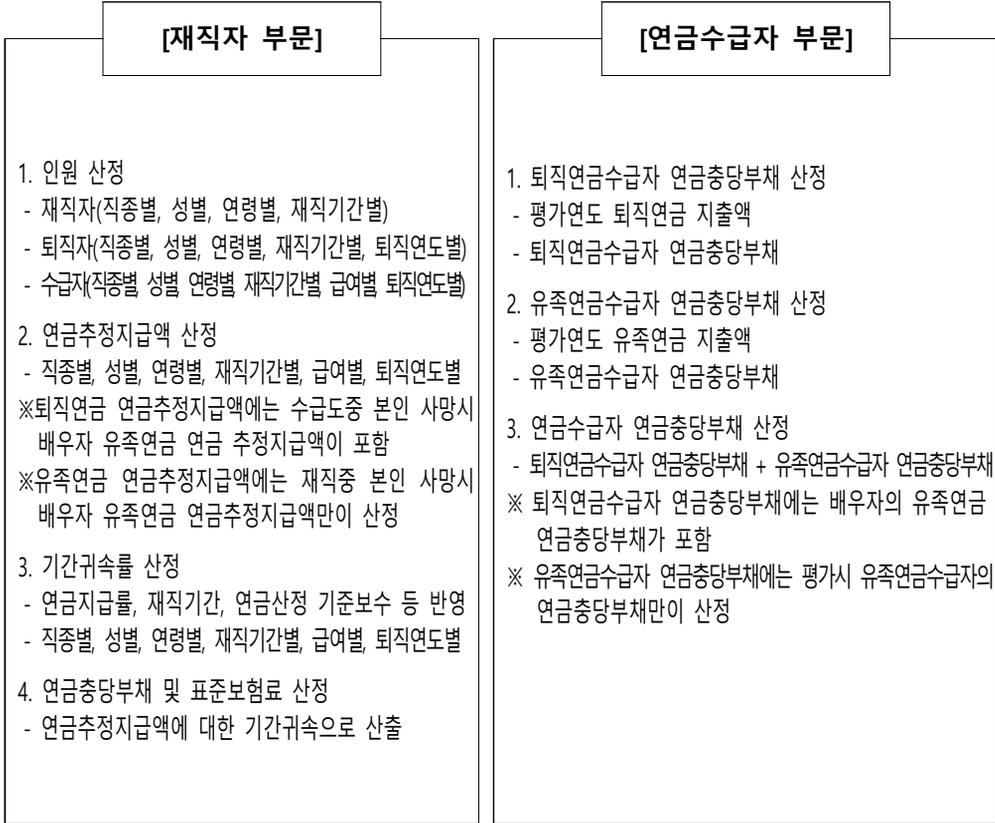


- 성별, 연령별, 재직기간별, 직종별 분류체계 적용 -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 산정 개요>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 평가모형 세부 내역>



※ 평가모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소부록 2 참조

3.4 보험수리적 가정의 적용내역과 산출방식

□ 보험수리적 가정의 개요

- 재정상태표일 현재 최적의 가정 적용을 원칙으로 하는 보험수리적 가정은 인구통계적 가정과 재무적 가정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 평가가정 개요>

구 분	정 의	산출방식	
인 구 통 계 적 가 정	퇴 직 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퇴직으로 인한 급여의 발생시점과 현금흐름을 산출하기 위한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특정 3개년의 재직자 정보와 퇴직자 정보를 활용 •비모수커널추정법을 적용하여 평활화 •직종별·성별·연령별·재직기간별 산정
	사 망 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망으로 인한 급여의 발생시점과 현금흐름을 산출하기 위한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년 통계청 장래생명표 발표에 따른 공무원생명표 개선 결과 반영 •2005~2021년 재직자·수급자 정보와 공무원연금 사망자 정보 활용 •국민 사망률 대비 공무원 사망률 상대비율을 주성분분석으로 모형화
	연금선택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여대상자 중 일시금 혹은 연금 급여의 선택행태를 반영하기 위한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특정 3개년의 퇴직자 정보와 수급자 정보를 활용 •비모수커널추정법을 적용하여 평활화 •직종별·성별·연령별·재직기간별 산정
	승 급 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무원의 급여가 연령별·재직기간별로 어느 정도의 비율로 상승할 것인가를 산출하는 비율 •공무원취우개선을 감안하지 않은 정태적 상승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의 연령별·재직기간별 급여수준 차이 반영 •공무원의 직종별·성별·연령별·재직기간별 보수구조에서 자동 산정
재 무 적 가 정	보수상승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여를 수급하는 시점의 보수수준을 반영하기 위한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 장관 제시 - 기획재정부 「'20년 장기재정전망 공통지침」 적용
	물가상승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여를 수급하는 시점의 연금수준을 반영하기 위한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 장관 제시 - 기획재정부 「'20년 장기재정전망 공통지침」 적용
	할 인 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래 예상급여지급액을 현재화시키는 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획재정부 장관 제시 - 만기별 국고채수익률(10년 평균) → 예상지급시기에 상응되는 만기가 없을 경우 보간법 적용

□ 인구통계적 가정의 산출 방법론과 적용 내역

- 인구통계적 가정은 공무원연금제도의 궁극적인 원가를 결정하는 재직자연금 수급자와 그 유족의 행태변수에 대한 최적의 추정을 반영하는 것으로, 퇴직률, 사망률, 각종 연금선택률(퇴직연금선택률, 유족연금선택률, 공제일시금선택률 등), 유족연금승계율, 승급률 등이 있습니다.

○ 인구통계적 가정의 산출방법론

① 퇴직률

- 2016-2018년 퇴직자와 2015-2017년 재직자 경험치를 기초로 원시 퇴직률 산정
- 비교육직 남·여 및 교육직 남·여로 나누어 직종별·성별·연령별·재직기간별 산정

< 산정구간 >

- 비교육직 : 임용연령 18~60세와 재직기간 0~42년
- 교육직 : 임용연령 18~65세와 재직기간 0~45년
- 비모수커널 회귀모형을 적용하여 기초퇴직률 평활화

- 비모수 회귀함수 중 국소선형추정량(Local Linear Estimator) 이용
: 자료의 경계에서 편의(bias)를 최소화하는 방식
- 최소자승 교차타당성(Least Squares Cross-Validation)으로 최적의 평활모수* 추정
: 평균적분제곱오차를 최소화하는 방법
* 평활모수: 평활(Smoothing) 정도를 결정하는 계수

- (최근 퇴직률 변동추세 감안) 전체 총 퇴직률이 2022년 실적수준이 되도록 원시 퇴직률 상·하향 조정

② 사망률

- 2022년 공무원생명표 적용
- 「2019년 공무원생명표 개선연구」 방법론에 최신 통계 반영

< 공무원연금 사망률 산정 방법론 >

국민사망률 실적 및 전망자료 취득	● 1970~2020년 통계청 국민생명표 사망률 실적 및 2021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생명표 활용
↓	
공무원연금 사망률 실적 자료 취합 및 가공	- 2005~2021년 성별·연령별 사망률 실적 통계 추출 및 연안인구 전환 처리 - 관측치 수를 고려한 연령별 사망률 데이터 복제(Looping) 기법으로 가중치 부여
↓	
공무원연금 사망률 실적보정	- 사망률 실적을 토대로 비모수 커널 회귀모형(Non-parametric Kernel Regression Model)을 적용하여 시간(연도)과 연령의 함수인 사망률 회귀모형을 성별로 추정
↓	
국민 대비 공무원연금 사망률의 상대비율 추정	- 국민 사망률 실적 대비 공무원연금 사망률 실적의 상대적 비율을 주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방법으로 추정
↓	
공무원연금 사망률 예측 및 확정	- 상대적 비율 예측값과 국민 사망률 예측치를 활용하여 공무원연금 장래 사망률 산출 - 사망률의 일반적 특징을 감안하여 공무원연금 장래 사망률 확정

③ 연금선택률

- 2016~2018년 퇴직자의 연금선택률 경험치를 기초로 원시 선택률 산정
- 비교육직 남·여 및 교육직 남·여로 나누어 직종별·성별·연령별·재직기간별 산정
< 산정구간 >
 - 비교육직 : 연령 28~60세와 재직기간 10~42년
 - 교육직 : 연령 28~65세와 재직기간 10~45년
- 비모수커널 추정법을 적용하여 퇴직연금선택률 기초값 평활화
- (최근 퇴직연금선택률 변동추세 감안) 전체 총 퇴직연금선택률이 2022년 실적 수준이 되도록 상하향조정
- 유족연금선택률 및 공제일시금선택률도 동일한 방법을 적용
- 연계연금선택률은 최근 3년 평균 실적(4.3%)이 향후에도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
 - 연계연금선택률은 '17년 4.0%, '18년 4.8%, '19년 4.1%로 나타남
 - 최근 3년 실적을 살펴보면, 시간의 경과에 따른 패턴이 나타나지 않으므로 별도 시계열 가정을 두지 않음

④ 승급률(Rate of Merit)

- 공무원처우개선율을 외부변수로 입력하면 평가모형 내부에서 자동적으로 반영

$$\begin{aligned} & \bullet \text{ wage}(t, g, d, s) \\ & = \text{wage}(t-1, g, d, s) \times (1+r_{\text{nom_wage}}(t)) \\ & \quad (t : \text{연도}, g : \text{연령}, d : \text{재직기간}, s : \text{성별}, r_{\text{nom_wage}} : \text{명목보수상승률}) \end{aligned}$$

예) $\text{rate_merit}(t, g, d, s, o) =$

※ 모형구조가 직종별·연령별·재직기간별·성별로 구분

- 즉, 공무원 승급률(혹은 직급상승률)은 외생변수가 아니라 공무원의 직종별·성별·연령별·재직기간별 보수구조에서 직종별·성별·연령별·재직기간별로 산출

○ 인구통계적 가정의 적용 내역

① 퇴직률

<비교육직 남자공무원 퇴직률>

(단위: %)

재직기간 \ 연령	연령									
	18	20	25	30	35	40	45	50	55	60
0	0.13	0.41	0.39	0.97	2.46	3.63	5.15	8.96	9.96	100
1	-	0.24	0.83	3.14	6.38	7.63	9.94	15.09	19.67	100
2	-	0.27	1.23	2.54	3.82	4.35	8.48	9.69	11.14	100
3	-	-	0.51	12.29	11.94	3.05	7.1	7.25	12.18	100
4	-	-	0.43	1.88	1.78	2.05	4.71	5.3	14.42	100
5	-	-	0.2	0.79	1.12	1.69	2.88	5.38	13.2	100
6	-	-	0.01	0.39	0.79	1.76	3.01	6.55	11.96	100
7	-	-	0.01	0.34	0.83	1.32	2.77	6.62	12.36	100
8	-	-	-	0.4	0.93	1.06	2.59	5.45	9.91	100
9	-	-	-	0.25	0.41	0.66	1.77	4.14	6.85	100
10	-	-	-	0.12	0.34	0.95	2.38	3.01	5.77	100
11	-	-	-	0.03	0.3	0.77	1.02	2.36	6.1	100
12	-	-	-	-	0.38	0.49	1.03	1.98	6.73	100
13	-	-	-	-	0.16	0.51	0.77	1.12	4.41	100
14	-	-	-	-	0.34	0.32	0.74	0.93	3.2	100
15	-	-	-	-	0.09	0.32	0.75	1.3	2.11	100
16	-	-	-	-	0.12	0.26	0.6	1.78	1.73	100
17	-	-	-	-	0.01	0.15	0.51	0.75	1.52	100
18	-	-	-	-	-	0.34	0.58	0.99	1.82	100
19	-	-	-	-	-	0.97	0.65	1.02	2.13	100
20	-	-	-	-	-	14.03	6.75	10.41	7.71	100
21	-	-	-	-	-	0.69	0.8	2.07	3.41	100
22	-	-	-	-	-	-	0.47	1.23	2.33	100
23	-	-	-	-	-	-	0.34	1.12	2.31	100
24	-	-	-	-	-	-	0.32	1.02	2.4	100
25	-	-	-	-	-	-	0.6	0.62	1.75	100
26	-	-	-	-	-	-	0.3	0.66	2.05	100
27	-	-	-	-	-	-	-	0.48	1.81	100
28	-	-	-	-	-	-	-	0.81	2.19	100
29	-	-	-	-	-	-	-	0.61	2.13	100
30	-	-	-	-	-	-	-	0.52	2.1	100
31	-	-	-	-	-	-	-	0.37	2.28	100
32	-	-	-	-	-	-	-	-	2.02	100
33	-	-	-	-	-	-	-	-	2.4	100
34	-	-	-	-	-	-	-	-	1.86	100
35	-	-	-	-	-	-	-	-	2.01	100
36	-	-	-	-	-	-	-	-	2.02	100
37	-	-	-	-	-	-	-	-	0.44	100
38	-	-	-	-	-	-	-	-	-	100
39	-	-	-	-	-	-	-	-	-	100
40	-	-	-	-	-	-	-	-	-	100
41	-	-	-	-	-	-	-	-	-	100
42	-	-	-	-	-	-	-	-	-	100
43	-	-	-	-	-	-	-	-	-	-
44	-	-	-	-	-	-	-	-	-	-
45	-	-	-	-	-	-	-	-	-	-

<비교육직 여자공무원 퇴직률>

(단위: %)

재직기간 \ 연령	연령									
	18	20	25	30	35	40	45	50	55	60
0	0.26	2.22	0.83	2.46	3.38	3.81	4.65	7.4	12.69	100
1	-	0.76	0.84	2.12	3.36	3.97	5.47	7.25	11.92	100
2	-	1.23	1.33	1.65	2.57	3.33	4.79	8.74	13	100
3	-	-	1.25	1.44	2.26	2.86	4.2	8.67	12.9	100
4	-	-	1.03	0.88	1.76	2.36	3.23	8.84	12.57	100
5	-	-	0.34	0.52	1.37	2.01	2.8	6.93	12.91	100
6	-	-	0.3	0.43	1.06	1.62	2.62	6.61	11.31	100
7	-	-	0.09	0.29	0.8	1.27	2.19	5.37	9.29	100
8	-	-	-	0.11	0.59	1.02	2.08	3.81	7.63	100
9	-	-	-	0.04	0.44	0.83	1.74	3.31	5.39	100
10	-	-	-	-	0.34	0.7	1.52	2.6	5.63	100
11	-	-	-	-	0.28	0.59	1.22	2.15	4.12	100
12	-	-	-	-	0.23	0.51	0.95	1.93	3.8	100
13	-	-	-	-	0.18	0.47	0.74	1.84	2.19	100
14	-	-	-	-	0.15	0.34	0.58	0.95	2	100
15	-	-	-	-	0.32	0.31	0.56	0.91	2.07	100
16	-	-	-	-	0.07	0.36	0.52	0.81	2.06	100
17	-	-	-	-	0.25	0.48	0.63	0.85	1.94	100
18	-	-	-	-	-	0.37	0.65	1.04	1.74	100
19	-	-	-	-	-	0.55	0.8	1.2	1.49	100
20	-	-	-	-	-	0.41	0.8	1.02	1.23	100
21	-	-	-	-	-	0.44	0.74	0.96	1.49	100
22	-	-	-	-	-	0.34	0.59	0.88	1.41	100
23	-	-	-	-	-	-	0.45	0.68	1.33	100
24	-	-	-	-	-	-	0.34	0.56	1.07	100
25	-	-	-	-	-	-	0.26	0.61	1.31	100
26	-	-	-	-	-	-	0.17	0.62	1.5	100
27	-	-	-	-	-	-	0.08	0.68	1.59	100
28	-	-	-	-	-	-	-	0.72	1.81	100
29	-	-	-	-	-	-	-	0.98	2.02	100
30	-	-	-	-	-	-	-	1.06	2.25	100
31	-	-	-	-	-	-	-	1.02	2.5	100
32	-	-	-	-	-	-	-	0.83	2.77	100
33	-	-	-	-	-	-	-	-	2.95	100
34	-	-	-	-	-	-	-	-	2.94	100
35	-	-	-	-	-	-	-	-	2.61	100
36	-	-	-	-	-	-	-	-	2	100
37	-	-	-	-	-	-	-	-	1.13	100
38	-	-	-	-	-	-	-	-	-	100
39	-	-	-	-	-	-	-	-	-	100
40	-	-	-	-	-	-	-	-	-	100
41	-	-	-	-	-	-	-	-	-	100
42	-	-	-	-	-	-	-	-	-	100
43	-	-	-	-	-	-	-	-	-	-
44	-	-	-	-	-	-	-	-	-	-
45	-	-	-	-	-	-	-	-	-	-

<교육직 남자공무원 퇴직률>

(단위: %)

재직 기간	연령										
	18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0	0.13	0.25	1.28	3.93	3.84	2.31	1.8	2.97	4.58	6.06	100
1	-	0.86	0.91	3.97	4.11	2.47	2.01	1.45	1.89	2.49	100
2	-	0.39	0.82	3.47	3.72	2.61	2.17	1.65	2.25	2.97	100
3	-	-	0.62	2.83	3.6	2.28	2.02	2.27	2.96	3.91	100
4	-	-	0.38	2.17	2.51	2.13	2.03	2.04	2.57	4.93	100
5	-	-	0.16	1.19	2.43	1.92	1.24	1.42	3.25	5.34	100
6	-	-	0.09	0.64	1.73	1.82	1.16	0.45	2.21	4.65	100
7	-	-	-	0.25	0.88	1.5	1.04	0.51	2.04	4.56	100
8	-	-	-	0.03	0.71	1.31	1.05	0.49	1.74	3.8	100
9	-	-	-	0.05	0.4	1.32	0.9	1.22	2.05	3.88	100
10	-	-	-	0.04	0.28	1.18	0.88	1.12	1.95	4.1	100
11	-	-	-	0.01	0.24	1	0.9	1.04	1.75	5.98	100
12	-	-	-	0.12	0.15	0.93	0.24	0.94	1.07	7.54	100
13	-	-	-	-	0.11	0.92	0.23	0.88	0.96	6.53	100
14	-	-	-	-	0.05	0.54	0.73	0.84	0.63	4.24	100
15	-	-	-	-	0.02	0.24	0.61	0.18	0.48	5.9	100
16	-	-	-	-	0.02	0.2	0.32	0.21	0.28	4.51	100
17	-	-	-	-	-	0.16	0.45	0.28	0.37	4.66	100
18	-	-	-	-	-	0.08	0.39	0.38	0.52	4.01	100
19	-	-	-	-	-	0.04	0.35	0.47	0.54	3.52	100
20	-	-	-	-	-	0.02	0.31	0.49	0.54	3.15	100
21	-	-	-	-	-	0.01	0.26	0.54	0.88	2.96	100
22	-	-	-	-	-	-	0.23	0.53	0.9	2.94	100
23	-	-	-	-	-	-	0.2	0.68	1.02	3.05	100
24	-	-	-	-	-	-	0.16	0.74	1.22	3.16	100
25	-	-	-	-	-	-	0.09	0.61	1.42	3.2	100
26	-	-	-	-	-	-	0.03	0.63	1.79	3.24	100
27	-	-	-	-	-	-	-	0.47	1.88	3.36	100
28	-	-	-	-	-	-	-	0.32	2.69	3.61	100
29	-	-	-	-	-	-	-	0.2	2.94	4.04	100
30	-	-	-	-	-	-	-	0.11	2.98	5.03	100
31	-	-	-	-	-	-	-	0.01	2.8	5.84	100
32	-	-	-	-	-	-	-	0.73	2.52	7.72	100
33	-	-	-	-	-	-	-	-	2.2	7.25	100
34	-	-	-	-	-	-	-	-	1.87	7.77	100
35	-	-	-	-	-	-	-	-	1.45	7.76	100
36	-	-	-	-	-	-	-	-	0.95	7.16	100
37	-	-	-	-	-	-	-	-	0.34	6.16	100
38	-	-	-	-	-	-	-	-	-	5.11	100
39	-	-	-	-	-	-	-	-	-	4.43	100
40	-	-	-	-	-	-	-	-	-	4.56	100
41	-	-	-	-	-	-	-	-	-	5.8	100
42	-	-	-	-	-	-	-	-	-	8.3	100
43	-	-	-	-	-	-	-	-	-	-	100
44	-	-	-	-	-	-	-	-	-	-	100
45	-	-	-	-	-	-	-	-	-	-	100

<교육직 여자공무원 퇴직률>

(단위: %)

재직기간 \ 연령	연령										
	18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0	0.05	0.05	1.32	2.03	2.73	2.94	2.59	0.84	1.12	4.66	100
1	-	0.02	1.81	1.93	2.26	2.58	2.06	0.75	1.11	4.61	100
2	-	0.01	1.76	1.78	1.93	2.05	1.98	1.16	2.76	5.5	100
3	-	-	2.86	1.53	1.8	1.88	2.04	0.95	1.75	2.76	100
4	-	-	3.2	1.14	1.4	1.82	1.76	1.15	0.93	4.4	100
5	-	-	3.39	0.91	1.08	1.31	1.75	1.64	0.22	3.32	100
6	-	-	3.14	0.6	0.84	1.07	1.51	1.25	0.39	2.78	100
7	-	-	0.65	0.34	0.65	0.85	1.24	1	0.61	2.81	100
8	-	-	-	0.16	0.53	0.71	0.92	0.77	0.79	5.63	100
9	-	-	-	0.03	0.43	0.49	0.66	0.75	0.87	3.64	100
10	-	-	-	-	0.36	0.44	0.62	0.33	0.84	2.43	100
11	-	-	-	0.12	0.31	0.4	0.46	0.41	0.75	2.6	100
12	-	-	-	0.02	0.25	0.41	0.47	0.26	0.66	2.52	100
13	-	-	-	-	0.18	0.34	0.45	0.47	0.66	3.63	100
14	-	-	-	-	0.12	0.36	0.4	0.44	0.74	4.6	100
15	-	-	-	-	0.05	0.31	0.34	0.35	0.83	5.19	100
16	-	-	-	-	-	0.32	0.43	0.53	0.92	5.33	100
17	-	-	-	-	0.08	0.24	0.33	0.46	0.99	4.04	100
18	-	-	-	-	-	0.12	0.34	0.55	1.07	3.82	100
19	-	-	-	-	-	0.17	0.36	0.65	1.22	4.84	100
20	-	-	-	-	-	0.15	0.37	0.78	1.45	5.07	100
21	-	-	-	-	-	0.09	0.38	0.88	1.75	5.62	100
22	-	-	-	-	-	0.04	0.36	0.96	2.06	6.44	100
23	-	-	-	-	-	-	0.31	1	2.19	7.46	100
24	-	-	-	-	-	-	0.2	0.96	2.75	8.49	100
25	-	-	-	-	-	-	0.08	0.68	2.69	9.34	100
26	-	-	-	-	-	-	0.31	0.68	3.97	9.99	100
27	-	-	-	-	-	-	0.22	0.8	4.51	10.61	100
28	-	-	-	-	-	-	-	1.04	5.99	11.48	100
29	-	-	-	-	-	-	-	1.35	5.81	12.65	100
30	-	-	-	-	-	-	-	2.13	7.47	14.07	100
31	-	-	-	-	-	-	-	2.52	7.59	15.58	100
32	-	-	-	-	-	-	-	1.4	7.23	16.9	100
33	-	-	-	-	-	-	-	-	6.42	16.44	100
34	-	-	-	-	-	-	-	-	5.26	17.09	100
35	-	-	-	-	-	-	-	-	3.83	15.51	100
36	-	-	-	-	-	-	-	-	2.26	13.23	100
37	-	-	-	-	-	-	-	-	0.64	10.81	100
38	-	-	-	-	-	-	-	-	-	9.78	100
39	-	-	-	-	-	-	-	-	-	6.94	100
40	-	-	-	-	-	-	-	-	-	5.45	100
41	-	-	-	-	-	-	-	-	-	3.99	100
42	-	-	-	-	-	-	-	-	-	2.35	100
43	-	-	-	-	-	-	-	-	-	-	100
44	-	-	-	-	-	-	-	-	-	-	100
45	-	-	-	-	-	-	-	-	-	-	100

② 사망률

<남자공무원 사망률>

연령 \ 연도	2022	2023	2030	2040	2060	2080
25	0.0002339	0.0002289	0.0001957	0.0001520	0.0000915	0.0000534
30	0.0002945	0.0002888	0.0002504	0.0001978	0.0001209	0.0000705
35	0.0003407	0.0003345	0.0002928	0.0002348	0.0001456	0.0000847
40	0.0005474	0.0005375	0.0004715	0.0003796	0.0002363	0.0001373
45	0.0007255	0.0007115	0.0006196	0.0004960	0.0003103	0.0001833
50	0.0010789	0.0010579	0.0009182	0.0007295	0.0004504	0.0002646
55	0.0016528	0.0016187	0.0013918	0.0010909	0.0006610	0.0003856
60	0.0028716	0.0028085	0.0023949	0.0018601	0.0011114	0.0006419
65	0.0050344	0.0049185	0.0041667	0.0032117	0.0018949	0.0010840
70	0.0088773	0.0087314	0.0077419	0.0063275	0.0040502	0.0024422
75	0.0154534	0.0152496	0.0138471	0.0117591	0.0081608	0.0053657
80	0.0306900	0.0303185	0.0277984	0.0241969	0.0181472	0.0132699
85	0.0569191	0.0565643	0.0540305	0.0499580	0.0421137	0.0346040
90	0.0988036	0.0986481	0.0973284	0.0943948	0.0872767	0.0786322
95	0.1615500	0.1615500	0.1615500	0.1615500	0.1615500	0.1568638
100	0.2489920	0.2489920	0.2489920	0.2489920	0.2489920	0.2489920

<여자공무원 사망률>

연령 \ 연도	2022	2023	2030	2040	2060	2080
25	0.0001325	0.0001266	0.0001074	0.0000668	0.0000225	0.0000072
30	0.0001561	0.0001528	0.0001113	0.0000668	0.0000225	0.0000072
35	0.0002134	0.0002074	0.0001688	0.0001239	0.0000690	0.0000383
40	0.0002958	0.0002884	0.0002530	0.0002021	0.0001256	0.0000737
45	0.0003870	0.0003801	0.0003298	0.0002632	0.0001640	0.0000963
50	0.0004976	0.0004814	0.0004160	0.0003303	0.0002019	0.0001168
55	0.0008782	0.0008617	0.0007380	0.0005803	0.0003474	0.0001981
60	0.0013624	0.0013386	0.0011521	0.0009096	0.0005377	0.0003015
65	0.0019388	0.0019073	0.0016511	0.0013179	0.0007869	0.0004453
70	0.0038170	0.0037760	0.0033728	0.0027829	0.0017161	0.0010074
75	0.0080382	0.0080069	0.0074495	0.0063916	0.0041721	0.0026140
80	0.0178307	0.0177726	0.0168722	0.0152156	0.0113114	0.0080082
85	0.0436482	0.0435371	0.0419038	0.0388554	0.0314640	0.0246537
90	0.1012404	0.1012404	0.1001023	0.0940132	0.0789044	0.0657279
95	0.1833399	0.1833399	0.1833399	0.1814142	0.1632502	0.1453545
100	0.3019328	0.3019328	0.3019328	0.3019328	0.2935897	0.2732642

③ 퇴직연금선택률

<비교육직 남자공무원 퇴직연금선택률>

(단위: %)

재직 기간	연령									
	36	37	38	39	40	45	50	55	60	
10	40.60	40.88	41.28	41.45	41.51	42.42	46.09	52.18	79.30	
11	40.77	40.97	41.31	41.49	41.58	42.72	46.63	53.32	88.49	
12	40.80	41.02	41.47	41.68	41.85	43.14	46.65	53.60	89.75	
13	41.02	41.07	41.48	41.69	41.97	43.99	47.08	53.83	91.55	
14	41.11	41.21	41.80	42.23	42.57	44.98	47.49	54.08	91.68	
15	42.32	42.32	42.74	43.48	43.79	45.97	47.79	54.54	91.71	
16	43.95	45.30	45.52	45.61	45.71	47.08	48.36	55.50	92.28	
17	45.25	46.06	46.81	47.12	47.39	48.41	49.31	56.46	93.04	
18	46.33	46.90	47.44	47.70	48.06	50.12	50.67	56.73	93.34	
19	-	47.67	48.34	48.82	48.95	51.46	52.56	60.72	93.95	
20	-	-	48.73	49.75	50.19	52.66	55.15	66.25	94.37	
21	-	-	-	50.04	50.71	53.60	58.08	71.67	94.94	
22	-	-	-	-	50.83	54.12	60.87	75.82	95.55	
23	-	-	-	-	-	55.01	62.88	78.77	96.17	
24	-	-	-	-	-	55.45	65.04	81.22	97.00	
25	-	-	-	-	-	57.26	68.17	82.97	97.45	
26	-	-	-	-	-	59.16	72.58	86.36	97.80	
27	-	-	-	-	-	60.98	78.04	88.36	98.16	
28	-	-	-	-	-	-	82.83	91.07	98.56	
29	-	-	-	-	-	-	86.76	92.58	98.95	
30	-	-	-	-	-	-	89.62	94.28	99.23	
31	-	-	-	-	-	-	91.90	95.44	99.41	
32	-	-	-	-	-	-	92.75	96.28	99.51	
33	-	-	-	-	-	-	-	96.96	99.60	
34	-	-	-	-	-	-	-	97.51	99.71	
35	-	-	-	-	-	-	-	97.95	99.82	
36	-	-	-	-	-	-	-	98.30	99.94	
37	-	-	-	-	-	-	-	98.64	100.00	
38	-	-	-	-	-	-	-	-	100.00	
39	-	-	-	-	-	-	-	-	100.00	
40	-	-	-	-	-	-	-	-	100.00	
41	-	-	-	-	-	-	-	-	100.00	
42	-	-	-	-	-	-	-	-	100.00	
43	-	-	-	-	-	-	-	-	-	
44	-	-	-	-	-	-	-	-	-	
45	-	-	-	-	-	-	-	-	-	

<비교육직 여자공무원 퇴직연금선택률>

(단위: %)

재직 기간	연령									
	36	37	38	39	40	45	50	55	60	
10	44.20	45.02	45.43	45.35	44.77	38.36	37.50	48.04	77.80	
11	46.39	47.37	47.91	47.95	47.48	41.68	41.05	51.38	79.07	
12	48.39	49.52	50.19	50.35	50.02	44.90	44.46	54.56	80.42	
13	50.21	51.47	52.27	52.57	52.38	48.00	47.76	57.64	81.83	
14	51.82	53.22	54.16	54.59	54.55	50.99	50.94	60.60	83.31	
15	53.23	54.76	55.84	56.44	56.57	53.88	54.03	63.47	84.85	
16	54.44	56.12	57.34	58.09	58.39	56.64	57.02	66.28	86.44	
17	55.45	57.26	58.64	59.54	60.03	59.26	59.94	69.01	88.03	
18	56.26	58.21	59.72	60.79	61.45	61.72	62.75	71.65	89.59	
19	-	58.96	60.61	61.82	62.65	64.02	65.47	74.21	91.07	
20	-	-	61.27	62.63	63.60	66.11	68.10	76.67	92.42	
21	-	-	-	63.17	64.30	68.02	70.63	79.01	93.62	
22	-	-	-	-	64.71	69.72	73.08	81.22	94.63	
23	-	-	-	-	-	71.25	75.46	83.30	95.47	
24	-	-	-	-	-	72.61	77.76	85.24	96.13	
25	-	-	-	-	-	73.87	80.00	87.01	96.67	
26	-	-	-	-	-	75.06	82.19	88.64	97.09	
27	-	-	-	-	-	76.27	84.32	90.12	97.43	
28	-	-	-	-	-	-	86.39	91.46	97.72	
29	-	-	-	-	-	-	88.35	92.66	97.97	
30	-	-	-	-	-	-	90.22	93.72	98.19	
31	-	-	-	-	-	-	91.96	94.67	98.39	
32	-	-	-	-	-	-	93.53	95.51	98.58	
33	-	-	-	-	-	-	-	96.23	98.75	
34	-	-	-	-	-	-	-	96.86	98.92	
35	-	-	-	-	-	-	-	97.39	99.07	
36	-	-	-	-	-	-	-	97.87	99.21	
37	-	-	-	-	-	-	-	98.28	99.35	
38	-	-	-	-	-	-	-	-	99.48	
39	-	-	-	-	-	-	-	-	99.63	
40	-	-	-	-	-	-	-	-	99.78	
41	-	-	-	-	-	-	-	-	99.95	
42	-	-	-	-	-	-	-	-	100.00	
43	-	-	-	-	-	-	-	-	-	
44	-	-	-	-	-	-	-	-	-	
45	-	-	-	-	-	-	-	-	-	

<교육직 남자공무원 퇴직연금선택률>

(단위: %)

재직기간 \ 연령	연령										
	36	37	38	39	40	45	50	55	60	65	
10	26.12	27.83	29.53	31.24	32.93	41.46	49.98	58.50	67.02	75.55	
11	20.39	21.84	23.30	24.75	26.21	33.48	40.75	48.03	55.31	62.57	
12	18.85	20.15	21.45	22.74	24.04	30.52	37.00	43.49	49.97	56.45	
13	19.34	20.72	22.11	23.50	24.88	31.83	38.76	45.71	52.65	59.59	
14	18.31	20.05	21.80	23.54	25.29	34.01	42.73	51.46	60.18	68.90	
15	14.57	16.81	19.05	21.30	23.54	34.75	45.96	57.17	68.38	79.60	
16	9.35	12.08	14.81	17.54	20.27	33.93	47.59	61.24	74.90	88.56	
17	3.41	6.58	9.77	12.95	16.14	32.05	47.97	63.89	79.81	95.72	
18	0.22	3.43	6.92	10.43	13.94	31.45	48.96	66.48	84.00	99.64	
19	-	10.45	13.80	17.15	20.49	37.24	53.98	70.72	87.47	99.94	
20	-	-	30.75	33.44	36.12	49.53	62.93	76.35	89.76	100.00	
21	-	-	-	50.57	52.46	61.91	71.36	80.80	90.25	99.70	
22	-	-	-	-	61.00	67.92	74.84	81.76	88.68	95.60	
23	-	-	-	-	-	66.75	73.37	79.99	86.60	93.21	
24	-	-	-	-	-	62.48	70.40	78.32	86.23	94.15	
25	-	-	-	-	-	60.55	69.64	78.73	87.83	96.92	
26	-	-	-	-	-	61.62	71.18	80.74	90.31	99.88	
27	-	-	-	-	-	66.62	75.47	84.31	93.16	100.00	
28	-	-	-	-	-	-	82.90	89.26	95.63	100.00	
29	-	-	-	-	-	-	90.66	93.71	96.75	99.80	
30	-	-	-	-	-	-	95.77	96.35	96.93	97.52	
31	-	-	-	-	-	-	96.58	97.21	97.86	98.49	
32	-	-	-	-	-	-	96.19	97.35	98.53	99.70	
33	-	-	-	-	-	-	-	97.21	98.85	100.00	
34	-	-	-	-	-	-	-	96.89	98.97	100.00	
35	-	-	-	-	-	-	-	96.59	98.88	100.00	
36	-	-	-	-	-	-	-	96.42	98.60	100.00	
37	-	-	-	-	-	-	-	96.39	98.29	100.00	
38	-	-	-	-	-	-	-	-	98.28	99.76	
39	-	-	-	-	-	-	-	-	98.73	99.69	
40	-	-	-	-	-	-	-	-	100.00	100.00	
41	-	-	-	-	-	-	-	-	97.95	100.00	
42	-	-	-	-	-	-	-	-	95.05	99.70	
43	-	-	-	-	-	-	-	-	-	100.00	
44	-	-	-	-	-	-	-	-	-	99.99	
45	-	-	-	-	-	-	-	-	-	100.00	

<교육직 여자공무원 퇴직연금선택률>

(단위: %)

재직 기간	연령										
	36	37	38	39	40	45	50	55	60	65	
10	26.94	28.76	30.58	32.39	34.21	43.30	52.37	61.45	70.53	79.61	
11	19.37	20.42	21.48	22.53	23.59	28.87	34.16	39.44	44.72	50.01	
12	33.86	35.60	37.34	39.07	40.81	49.50	58.18	66.87	75.56	84.24	
13	35.94	37.73	39.51	41.30	43.08	52.02	60.95	69.90	78.83	87.77	
14	38.89	40.97	43.06	45.14	47.22	57.64	68.05	78.46	88.87	99.28	
15	39.61	41.54	43.47	45.40	47.33	56.98	66.64	77.30	86.96	97.63	
16	42.14	43.80	45.46	47.11	48.77	57.07	65.38	74.68	86.00	96.30	
17	44.72	46.51	48.29	50.07	51.86	60.76	69.68	78.58	87.50	96.41	
18	47.07	49.02	50.97	52.93	54.88	64.64	74.41	84.17	93.94	100.00	
19	-	50.07	51.81	53.55	55.29	63.99	72.68	82.39	92.10	99.99	
20	-	-	53.06	55.07	57.09	67.17	77.25	87.32	97.40	100.00	
21	-	-	-	66.57	68.07	75.56	83.03	90.52	98.01	100.00	
22	-	-	-	-	73.61	79.82	86.03	92.24	98.45	100.00	
23	-	-	-	-	-	79.55	86.65	93.76	99.68	100.00	
24	-	-	-	-	-	83.44	87.46	92.47	99.51	100.00	
25	-	-	-	-	-	84.30	88.81	93.32	98.85	100.00	
26	-	-	-	-	-	85.47	89.23	93.00	97.77	99.88	
27	-	-	-	-	-	87.71	91.35	95.01	98.67	100.00	
28	-	-	-	-	-	-	93.10	95.39	98.20	99.92	
29	-	-	-	-	-	-	97.72	98.35	98.98	100.00	
30	-	-	-	-	-	-	98.63	99.15	99.69	100.00	
31	-	-	-	-	-	-	98.73	99.20	99.68	100.00	
32	-	-	-	-	-	-	98.77	99.24	99.93	100.00	
33	-	-	-	-	-	-	-	99.42	99.88	100.00	
34	-	-	-	-	-	-	-	97.97	99.16	100.00	
35	-	-	-	-	-	-	-	98.29	99.06	99.85	
36	-	-	-	-	-	-	-	97.35	98.60	99.85	
37	-	-	-	-	-	-	-	96.89	98.45	99.80	
38	-	-	-	-	-	-	-	-	99.19	100.00	
39	-	-	-	-	-	-	-	-	98.35	99.80	
40	-	-	-	-	-	-	-	-	98.51	100.00	
41	-	-	-	-	-	-	-	-	98.82	99.71	
42	-	-	-	-	-	-	-	-	98.20	100.00	
43	-	-	-	-	-	-	-	-	-	100.00	
44	-	-	-	-	-	-	-	-	-	100.00	
45	-	-	-	-	-	-	-	-	-	100.00	

□ **재무적 가정의 근거와 적용 내역**

- 기획재정부장관이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할인율, 보수상승률, 물가상승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재무적 가정의 적용 근거

① **할인율(기획재정부장관 제시)**

- 할인율의 선택은 「연금 회계처리지침」 적용대상이 되는 연금사업 간에 서로 일치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충분히 객관적·합리적이어야 하며,
- 보고기간 말 현재 국고채의 수익률을 참조하여 결정하되, 지급 시기에 상응하는 적절한 만기의 현행 국고채수익률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기획재정부장관 제시값에 따르면, 예상지급 시기와 상응하는 국고채 만기가 있는 경우 이에 상응하는 적절한 만기의 국고채수익률을 적용하고, 예상지급 시기와 상응하는 국고채 만기가 없는 경우 국고채수익률을 사용하여 예상지급 시기까지 보간법⁹⁾을 통해 합리적으로 추정된 값을 할인율로 적용합니다.

<만기에 따른 국고채 수익률의 과거 추이>

(단위 : %)

구 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국고채(1년)	2.66	2.44	1.70	1.43	1.54	1.84	1.52	0.84	0.91	2.63
국고채(3년)	2.79	2.59	1.80	1.44	1.80	2.10	1.53	0.99	1.38	3.19
국고채(5년)	3.00	2.84	1.98	1.53	2.00	2.31	1.59	1.23	1.71	3.31
국고채(10년)	3.28	3.19	2.31	1.75	2.28	2.50	1.70	1.50	2.06	3.36
국고채(20년)	3.46	3.38	2.48	1.82	2.33	2.48	1.71	1.61	2.13	3.32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2.12.31. 발표자료 기준

② **보수상승률(기획재정부장관 제시)**

- 기획재정부 「'20년 장기재정전망 공통지침」 직역연금 보수상승률 적용
- * 「연금 회계처리지침」 문단15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제시한 보수상승률('20년 장기재정전망 공통지침 기준)을 채택하였으며, 평가모형 내에서 자동 반영되는 승급률이 포함된 값임. 단, 전기말 보수상승 가정은 승급효과를 제외한 공무원처우개선율에 해당함.

9) 보간법 : 주어진 값 사이에 측정되지 않는 임의의 값을 구해야 할 경우 주어진 값을 함수로 활용하여 값을 구하는 방법

③ 물가상승률(기획재정부장관 제시)

- 기획재정부 「'20년 장기재정전망 공통지침」 물가상승률 적용

○ 재무적 가정의 적용 내역

(단위 : %)

구분	2022년도 연금충당부채 평가 재무가정(PBO)			2021년도 연금충당부채 평가 재무가정(PBO)		
	할인율*	물가상승률*	보수상승률*	할인율	물가상승률	보수상승률
2022				1.80	2.5(실적)	3.3(실적)
2023	1.75	5.1(실적)	3.6(실적)	1.88	2.0	4.2
2024	1.86			1.96	2.0	4.1
2025	1.96			2.05	2.0	4.1
2026	2.06			2.14	2.0	4.1
2027	2.15			2.19	2.0	4.1
2028	2.20			2.25	2.0	4.1
2029	2.25			2.30	2.0	4.1
2030	2.30			2.35	2.0	4.1
2031	2.34			2.40	2.0	4.2
2032	2.39			2.41	2.0	4.1
2033	2.40			2.42	2.0	4.1
2034	2.41			2.43	2.0	4.1
2035	2.42	2021년과 동일	2021년과 동일	2.44	2.0	4.1
2036	2.42			2.45	2.0	4.1
2037	2.43			2.46	2.0	4.1
2038	2.44			2.47	2.0	4.1
2039	2.45			2.47	2.0	4.1
2040	2.46			2.48	2.0	4.1
2050	2.47			2.49	2.0	4.0
2060	2.47			2.49	2.0	3.9
2070	2.47			2.49	2.0	3.8
2080	2.47			2.49	2.0	3.7
2090	2.47			2.49	2.0	3.6
2100	2.47			2.49	2.0	3.6

* 할 인 율 : 만기별 과거 10년간 국고채 수익률 평균 및 예상지급시기와 상응하는 국고채 만기가 없는 경우, 국고채수익률을 사용하여 예상지급시기까지 보간법을 통해 합리적으로 추정

* 물가상승률 : 기획재정부 「'20년 장기재정전망 공통지침」 적용. 단, '16년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16~'20년까지 5년간 연금액 한시 동결

* 보수상승률 : 기획재정부 「'20년 장기재정전망 공통지침」 직역연금 보수상승률 적용

※ 보수상승률을 명목임금상승률과 같은 수준으로 결정

3.5 연금충당부채의 산정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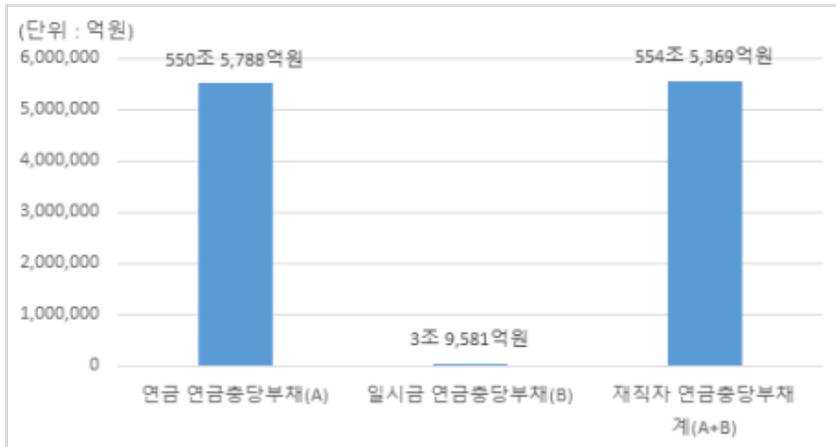
□ 재직자 연금충당부채 산정결과

<재직자 연금충당부채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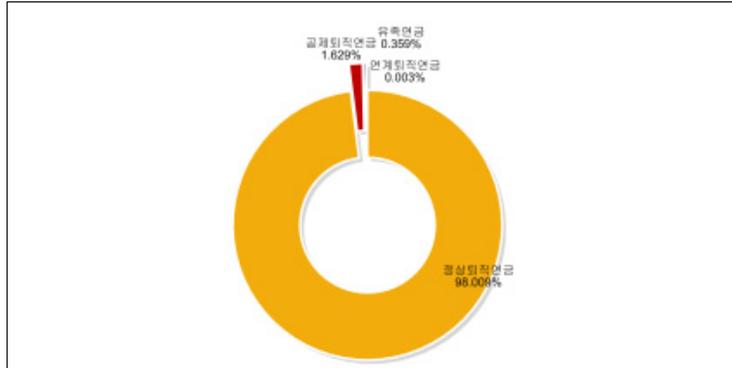
(단위 : 억원, 2022년 12월말 기준)

구 분	금 액
재직자 연금충당부채(AL)	
연금급여(A)	
정상퇴직연금(배우자 유족연금 포함)	5,396,197
공제퇴직연금(배우자 유족연금 포함)	89,670
유족연금(재직자 사망시)	19,762
연계퇴직연금	159
연금 연금충당부채 소계	5,505,788
일시금급여(B)	
퇴직연금일시금	28,959
퇴직일시금	3,117
공제일시금	3,623
유족연금일시금	2,007
유족일시금, 유족연금 부가금 등	1,875
일시금 연금충당부채 소계	39,581
재직자 연금충당부채(AL) 계(A+B)	5,545,3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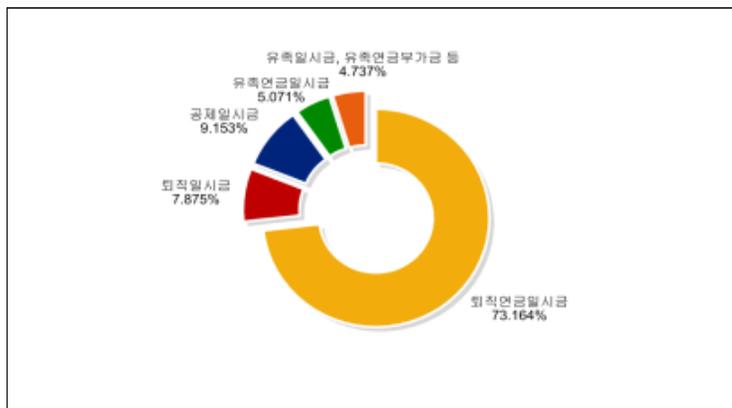
<재직자 연금충당부채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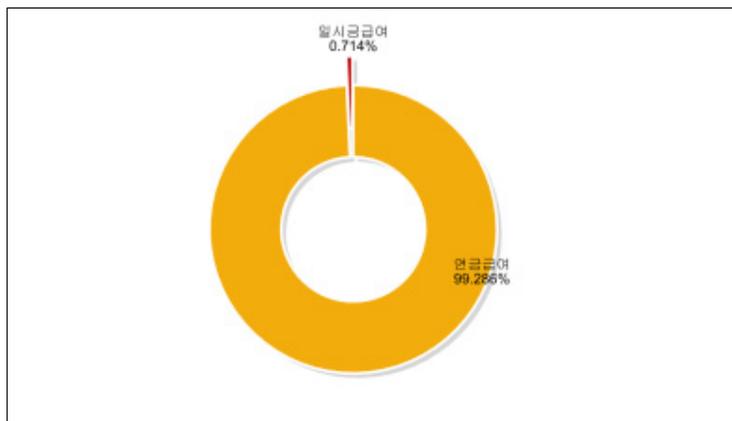
<재직자 연금충당부채(연금) 급여별 비중>



<재직자 연금총당부채(일시금) 급여별 비중>



<재직자 연금총당부채 급여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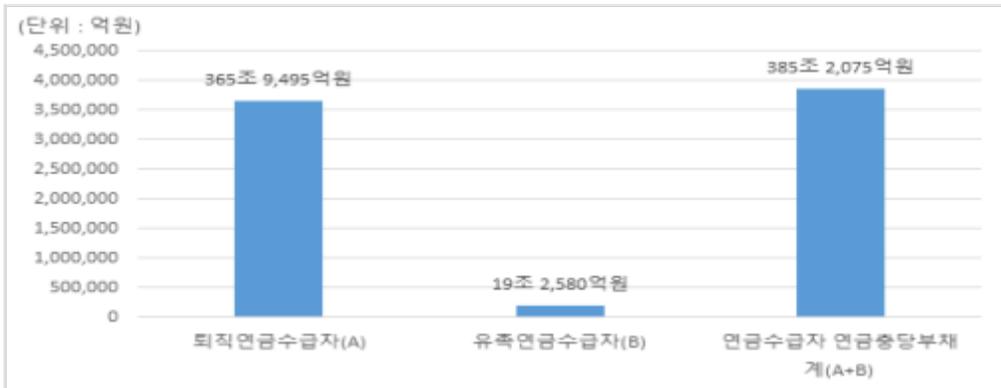
□ 연금수급자 연금충당부채 산정결과

<연금수급자 연금충당부채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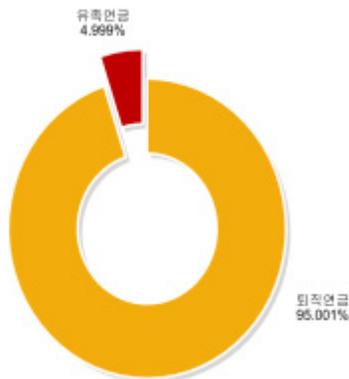
(단위 : 억원, 2022년 12월말 기준)

구 분	금 액
연금수급자 연금충당부채(AL)	
퇴직연금수급자(A)	3,659,495
유족연금수급자(B)	192,580
연금수급자 연금충당부채(AL) 계(A+B)	3,852,075

<연금수급자 연금충당부채 분포도>



<연금수급자 연금충당부채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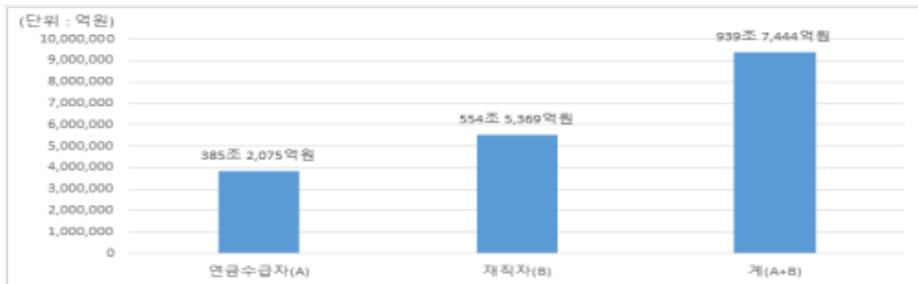
□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 산정결과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 내역>

(단위 : 억원, 2022년 12월말 기준)

구 분	금 액
연금충당부채(AL)	
연금수급자 연금충당부채(A)	
퇴직연금수급자	3,659,495
유족연금수급자	192,580
수급자 연금충당부채 소계	3,852,075
재직자 연금 및 일시금 연금충당부채(B)	
연금	5,505,788
일시금	39,581
재직자 연금충당부채 소계	5,545,369
연금충당부채(AL) 계(A+B)	9,397,444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 분포도>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 비중>



□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 산정결과 요약

○ 평가방식과 부채개념(2022회계연도 기준)

- 평가방식 : 예측단위적립방식(PUCM, Projected Unit Cost Method)
- 부채개념 : 예측급여채무(PBO, Projected Benefit Obligation)

○ 산정금액(2022년 12월 31일 기준)

- 연금수급자 연금충당부채 : 385조 2,075억원
- 재직자 연금충당부채 : 554조 5,369억원
-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 : 939조 7,444억원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 분포와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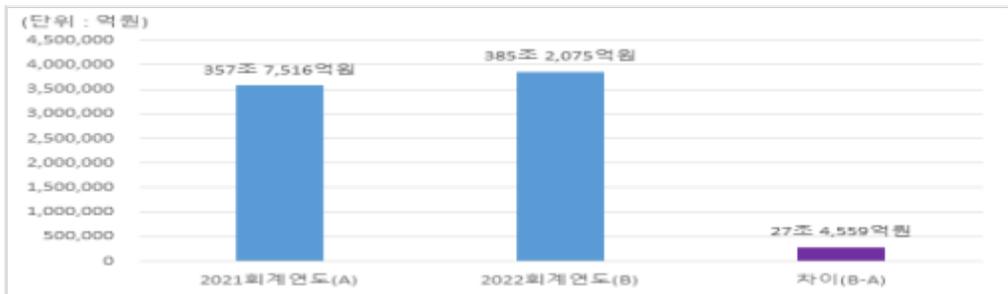
3.6 회계연도별 연금충당부채의 변동내역

□ 전년도 평가결과와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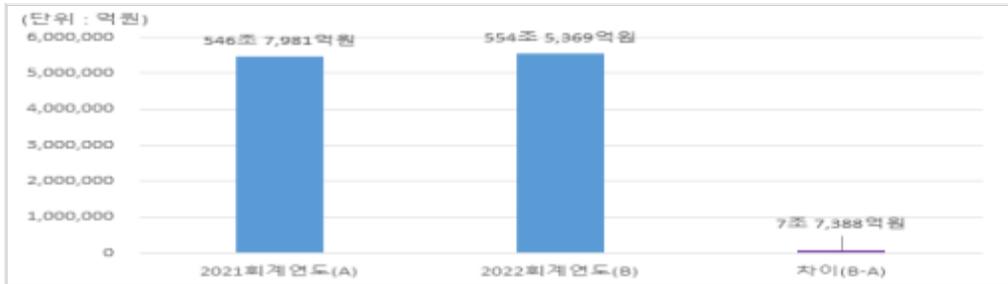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의 연도별 비교>

구 분	2021회계연도(A) (PBO)	2022회계연도(B) (PBO)	차이(B-A)
연금수급자 연금충당부채	357조 7,516억원	385조 2,075억원	27조 4,559억원
재직자 연금충당부채	546조 7,981억원	554조 5,369억원	7조 7,388억원
연금충당부채 계	904조 5,497억원	939조 7,444억원	35조 1,947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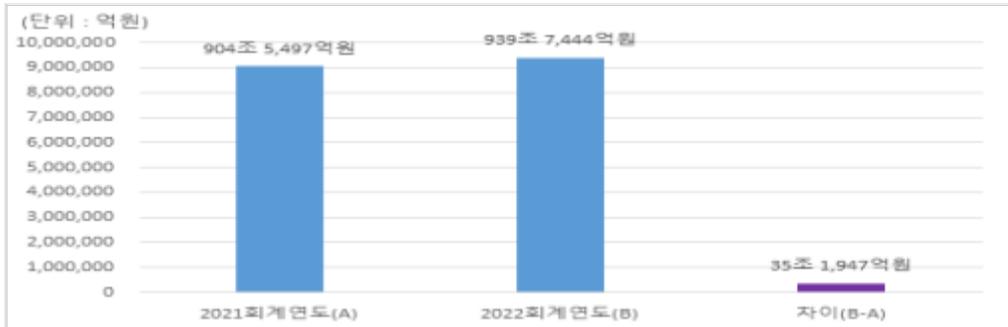
<연금수급자 연금충당부채의 연도별 비교>



<재직자 연금충당부채의 연도별 비교>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의 연도별 비교>



□ 연도별 연금충당부채 변동내역

<연도별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의 변동내역>

(단위 : 억원, 2022년 12월말 기준)

구 분	금 액	
	당 기	전 기
기초잔액(A)_PBO평가	9,045,497	8,297,895
당기근무원가(B) ¹⁾	328,880	296,173
이자원가(C) ²⁾	162,819	170,107
연금비용		
과거근무원가(D) ³⁾	-	-
보험수리적 손익(E) ⁴⁾	41,089	447,465
연금비용 소계(F=B+C+D+E)	532,788	913,745
퇴직급여 지급액(G)	180,841	166,143
기말잔액(H=A+F-G)	9,397,444	9,045,497

- 1) 2021년말 추정환 2022년 1년 근무 시 표준보험료 × (1+이자율) = 323,065억원 × (1+1.80%)
 - 2) 2021회계연도 연금충당부채(PBO) × 이자율 = 9,045,497억원 × 1.80%
 - 3) 공무원연금제도 변경에 따라 과거기간 근무용역에 대한 연금충당부채의 현재가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그 증감액
 - 4) 가정과 실제의 차이,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화 등으로 연금충당부채의 현재가치의 증감이 있을 경우 발생(기말연금충당부채 - 기초연금충당부채 + 회계연도중 지급의무가 확장된 금액 - 이자원가 - 당기근무원가 - 과거근무원가)
- * 이자율(%) : 2021회계연도에 추정환 2022년 적용 이자율(1년만기 국고채수익률 10년평균)

<'21년도 대비 증감내역>

구 분	내 용	증 감
당기근무원가	재직자가 1년간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충당부채 증가분의 현재가치	32.9조원↑
이자원가	'21년도 충당부채(PBO)의 이자 발생분	16.3조원↑
	(할인율) 국고채 이자율 하락에 따른 할인율 감소 반영 ('21년 1.80%~2.49%) → '22년 1.75%~2.47%)	9.0조원↑
	(물가상승률) '20년 장기재정전망 공통지침 적용 →가정 변동 없음	-
보험수리적 손익	(보수상승률) '20년 장기재정전망 공통지침 적용 →가정 변동 없음	-
	(공무원생명표) 2022년 공무원생명표 적용	1.3조원↑
	(기타) '22년 재직자, 연금수급자 등 가정과 실제 차이	6.2조원↓
연금지급액	'22년도 충당부채 산정대상 급여 지급액 반영	18.1조원↑
계	(당기근무원가+이자원가+과거근무원가+보험수리적 손익) - 연금지급액	35.2조원↑

3.7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에 대한 민감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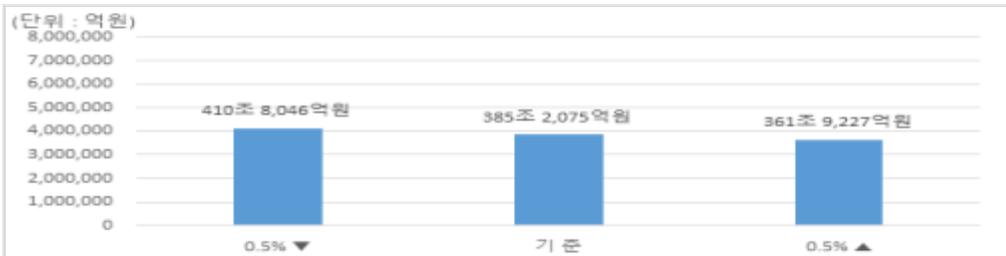
□ 할인율 변화에 따른 연금충당부채 민감도 분석 : 0.5% pt 상·하향 조정

<할인율 변화에 따른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 민감도>

(단위 : 억원, 2022년 12월말 기준)

구 분	0.5% ▼	기 준	0.5% ▲
연금수급자 연금충당부채	4,108,046	3,852,075	3,619,227
재직자 연금충당부채	6,387,648	5,545,369	4,836,119
연금충당부채 계	10,495,694	9,397,444	8,455,346
기준과 차이	1,098,250	-	△942,098

<할인율 변화에 따른 연금수급자 연금충당부채 민감도>



<할인율 변화에 따른 재직자 연금충당부채 민감도>



<할인율 변화에 따른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 민감도>



□ 보수상승률 변화에 따른 연금충당부채 민감도 분석 : 0.5% pt 상·하향 조정

<보수상승률 변화에 따른 공무원연금 연금총당부채 민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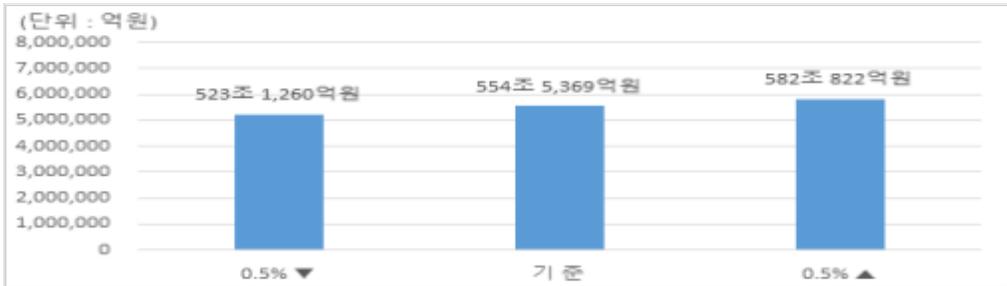
(단위 : 억원, 2022년 12월말 기준)

구 분	0.5% ▼	기 준	0.5% ▲
연금수급자 연금총당부채	3,851,530	3,852,075	3,852,592
재직자 연금총당부채	5,231,260	5,545,369	5,820,822
연금총당부채 계	9,082,790	9,397,444	9,673,414
기준과 차이	△314,654	-	275,970

<보수상승률 변화에 따른 연금수급자 연금총당부채 민감도>



<보수상승률 변화에 따른 재직자 연금총당부채 민감도>



<보수상승률 변화에 따른 공무원연금 연금총당부채 민감도>



□ 물가상승률 변화에 따른 연금총당부채 민감도 분석 : 0.5% pt 상·하향 조정

<물가상승률 변화에 따른 공무원연금 연금총당부채 민감도>

(단위 : 억원, 2022년 12월말 기준)

구 분	0.5% ▼	기 준	0.5% ▲
연금수급자 연금총당부채	3,618,207	3,852,075	4,106,682
재직자 연금총당부채	5,149,925	5,545,369	5,981,403
연금총당부채 계	8,768,132	9,397,444	10,088,085
기준과 차이	△629,312	-	690,641

<물가상승률 변화에 따른 연금수급자 연금총당부채 민감도>



<물가상승률 변화에 따른 재직자 연금총당부채 민감도>



<물가상승률 변화에 따른 공무원연금 연금총당부채 민감도>



3.8 연금충당부채 평가 관련 기타 사항 : 표준보험료

□ 공무원연금 표준보험료의 산정 결과

<2022회계연도 공무원연금 표준보험료 내역>

(단위 : 억원, 2022년 12월말 기준)

구 분	금 액
연 금	
정상퇴직연금	310,631
공제퇴직연금	5,136
유족연금	1,253
연계퇴직연금	201
연금 계	317,221
일시금	6,761
표준보험료 계	323,982

<공무원연금 표준보험료 분포도>



<공무원연금 표준보험료 비중>



□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에 대한 표준보험료의 민감도

- 할인율 변화에 따른 표준보험료 민감도 분석 : 0.5% pt 상·하향 조정

(단위 : 억원, 2022년 12월말 기준)

구 분	0.5% ▼	기 준	0.5% ▲
표준보험료	387,549	323,982	272,300

<할인율 변화에 따른 공무원연금 표준보험료 민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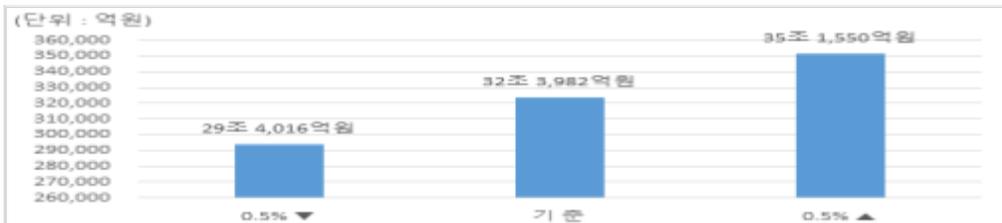
- 보수상승률 변화에 따른 표준보험료 민감도 분석 : 0.5% pt 상·하향 조정

<보수상승률 변화에 따른 공무원연금 표준보험료 민감도>

(단위 : 억원, 2022년 12월말 기준)

구 분	0.5% ▼	기 준	0.5% ▲
표준보험료	294,016	323,982	351,550

<보수상승률 변화에 따른 공무원연금 표준보험료 민감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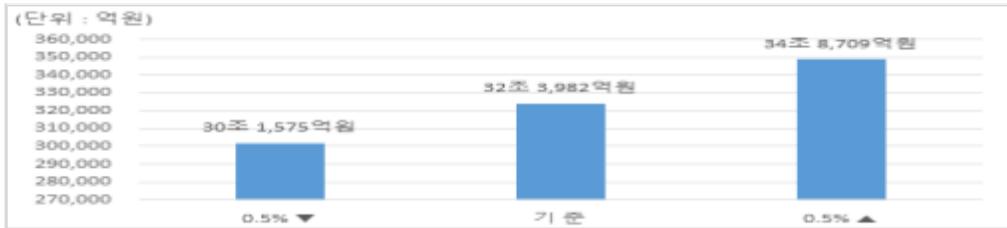
- 물가상승률 변화에 따른 표준보험료 민감도 분석 : 0.5% pt 상·하향 조정

<물가상승률 변화에 따른 공무원연금 표준보험료 민감도>

(단위 : 억원, 2022년 12월말 기준)

구 분	0.5% ▼	기 준	0.5% ▲
표준보험료	301,575	323,982	348,709

<물가상승률 변화에 따른 공무원연금 표준보험료 민감도>



소부록 1 : 「연금 회계처리지침」에 대한 설명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국가회계기준) 제44조에서는 연금충당부채를 기획재정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11년 8월 3일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연금회계준칙」과 「연금회계 평가 및 공시 지침」이 제정되었으며, 2015년 「연금 회계처리지침」으로 개정되었습니다.

공적연금 연금충당부채의 적용대상, 평가방법 등 회계처리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연금 성격(교환거래 및 비교환거래 여부) 및 국가 지급의무 등을 고려하여 연금충당부채 인식대상으로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을 제시하고 있으며, 평가방법으로서 예측단위적립방식(PUCM)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공적연금 중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연금충당부채만을 국가재무제표 본문에 계상하는 이유는, 첫째, 공무원과 군인이 제공한 근로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국가가 공무원연금과 군인 연금을 제공하고 있으며, 둘째, 이 제도의 재원 부족에 대하여 국가가 보전할 의무를 법률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예측 가능한 모든 부채를 계상하는 발생주의 국가회계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고 국제적인 연금회계처리 추세와도 일치합니다.

연금충당부채 산정을 위한 확정급여채무의 개념으로는 예측급여채무(PBO)를 채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측급여채무는 연금가입자에 대해 장래의 보수인상분을 반영한 급여 수준을 기준으로 산정된 평가일 현재 기발생한 연금급여액의 현재가치로 정의됩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평가방식으로는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부합되는 예측단위적립방식(PUCM)을 채택하게 되어 있습니다(2011회계연도와 2012회계연도 제외). 예측단위적립방식에서는 매 회계연도 말 연금개시일 기준 미래추정연금지급액을 산정하고 전체추정근무기간 중 당기말 누적근무기간에 해당하는 비율로 미래추정지급액을 적절히 할당하여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계정보의 이해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무제표의 주석 및 필수보충정보의 제공 범위 등 공시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의 주석사항으로 연금현황, 연금충당부채의 변동내용, 산정내용 및 보험수리적 가정이 있으며, 사학연금과 국민연금의 주석사항으로 연금현황, 장기재정추계에 관한 제반 사항이 있습니다. 또한, 연금사업의 개요, 재원조달방법, 운용성과 및 연금충당부채 평가방법과 세부 평가결과(공무원연금과 군인연금) 그리고 재정추계방법과 세부 추계결과(사학연금과 국민연금)를 포함한 연금보고서를 작성,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할 필요가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보다 세부적으로 설명하면, 우선, 예측급여채무(PBO)개념과 예측단위적립방식(PUCM)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매 근무기간에 추가적인 연금비용이 발생한다고 보아 매 기간별로 별도로 연금충당부채를 측정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예상퇴직시점의 장래 추정보수와 추정 근무기간을 반영하여 추정연금지급액을 계산하고 이 추정연금지급액을 근무기간 비율 등에 따라 적절하게 배분한 값을 재정상태표일 기준으로 할인하여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여야 합니다. 배분(기간귀속)할 때는 재직기간, 재직기간에 따른 연금지급률, 연금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기준보수의 특성을 모두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에 있어서는 평가시점 현재 최적의 가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구통계적 가정(퇴직률, 승급률 등)과 재무적 가정(할인율, 보수상승률 등)으로 구분하여 가정 산출 및 채택 원칙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무적 가정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기획재정부장관이 제시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며 할인율은 국고채 수익률을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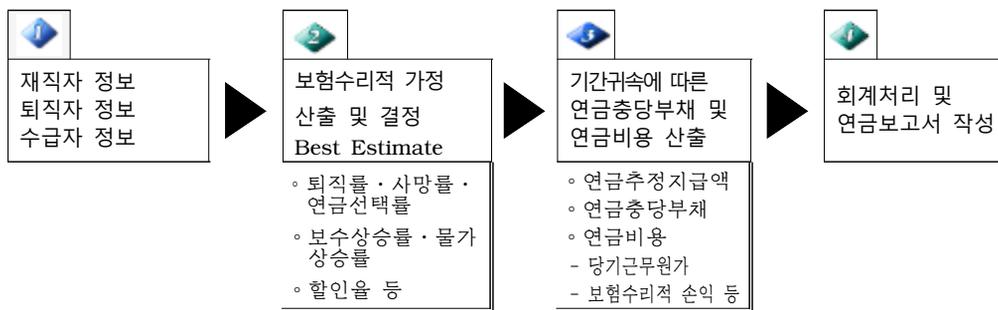
공시를 위해 주석 및 필수보충정보(연금보고서)의 주요 세부사항별 작성방법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주석사항의 경우 연금사업의 현황 및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 연금충당부채의 변동 내용(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장기재정추계의 주요 내역(국민연금, 사학연금), 적용된 보험수리적 가정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필수보충정보(연금보고서)의 경우 연금사업의 개요, 기금의 조성과 운용사항, 주요 통계, 연금충당부채의 평가방법과 결과(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국민연금, 사학연금)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부록 2 :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의 평가모형에 대한 설명

「연금 회계처리지침」에 따라 매 회계연도 결산을 위하여 공무원연금의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고 그 결과를 담은 연금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정확성·객관성·신뢰성 있는 방식으로 공무원연금의 연금충당부채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공무원 재직자·퇴직자·수급자 정보에 기초하여 보험수리적 가정을 산출·결정한 후에 기간귀속에 따른 연금충당부채 및 연금비용을 산정하여 회계처리를 할 수 있는 설계도가 필요합니다.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 산출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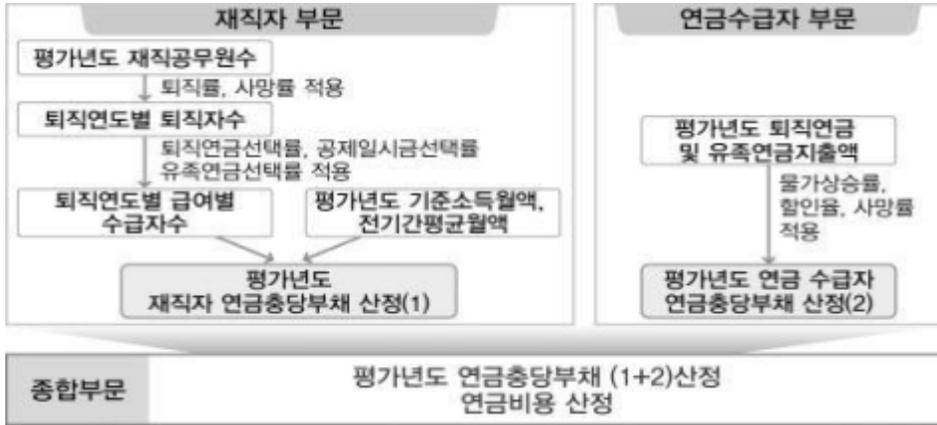


이를 위하여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의 산정을 위한 평가모형이 ‘평가모형의 합리성’, ‘보험수리적 가정의 상호정합성’, ‘회계처리지침의 적절한 반영’의 세 가지 평가원칙을 두고 2011년에 새로이 구축되었습니다.¹⁰⁾ ‘평가모형의 합리성’ 원칙에 따라, 재정상태표일 현재 재직 중이거나 연금수급 중인 공무원의 정보와 제도의 제반 경험을 바탕으로 보험수리적 기법을 이용하여 공무원의 연금추정지급액(PVFB, Present Value of Future Benefits)을 산출하고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과거 재직기간에 상응하는 기간귀속률을 적용하여 연금충당부채와 표준보험료를 계산합니다. ‘보험수리적 가정의 상호정합성’ 원칙에 따라, 평가에 적용되는 퇴직률, 사망률, 각종 연금선택률, 경제기초율 등이 서로 모순이 되지 않도록 산출·적용되며, ‘연금 회계처리지침의 적절한 반영’ 원칙 하에, 모든 평가과정이 「연금 회계처리지침」을 그대로 준수하도록 합니다. 예컨대, 예측단위적립방식(PUCM)으로 예측급여채무(PBO) 개념의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되, 특례조항에 입각하여 2011~2012회계연도의 경우에는 누적급여채무(ABO) 개념으로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였습니다.

10) 공단에서는 2002년 및 2003년 두 해에 걸쳐 예측단위적립방식(PUCM, 당시 재정경제부 산하 「국가회계기준위원회」 발주 연구용역의 일환) 및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ENACM, 공단 발주 KDI 연구용역의 일환)에 입각하여 연금충당부채 평가모형을 구축한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측단위적립방식이란 급여할당(benefit allocation) 차원에서 기간귀속의 형태로 연금추정지급액을 안분하는 과정에서 {연금충당부채→표준보험료}의 순으로 계산하는 급부평가방식(benefit valuation method)인 반면 가입연령정상비용방식이란 비용할당(cost allocation) 차원에서 보수귀속의 형태로 연금추정지급액을 적절히 나누는 과정에서 {표준보험료→연금충당부채}의 순으로 계산하는 비용평가방식(cost valuation method)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공무원연금 연금부채 및 표준보험료 평가(김재경외, 200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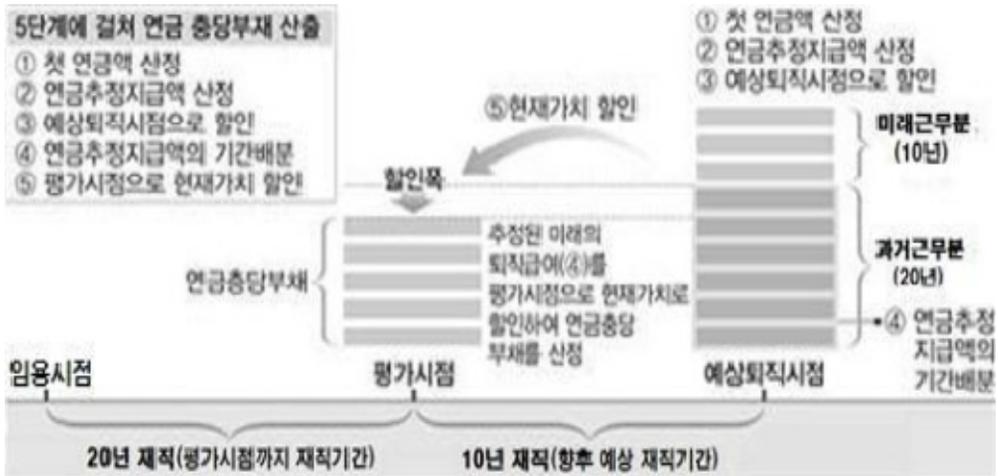
평가모형의 주요 골격 및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 평가모형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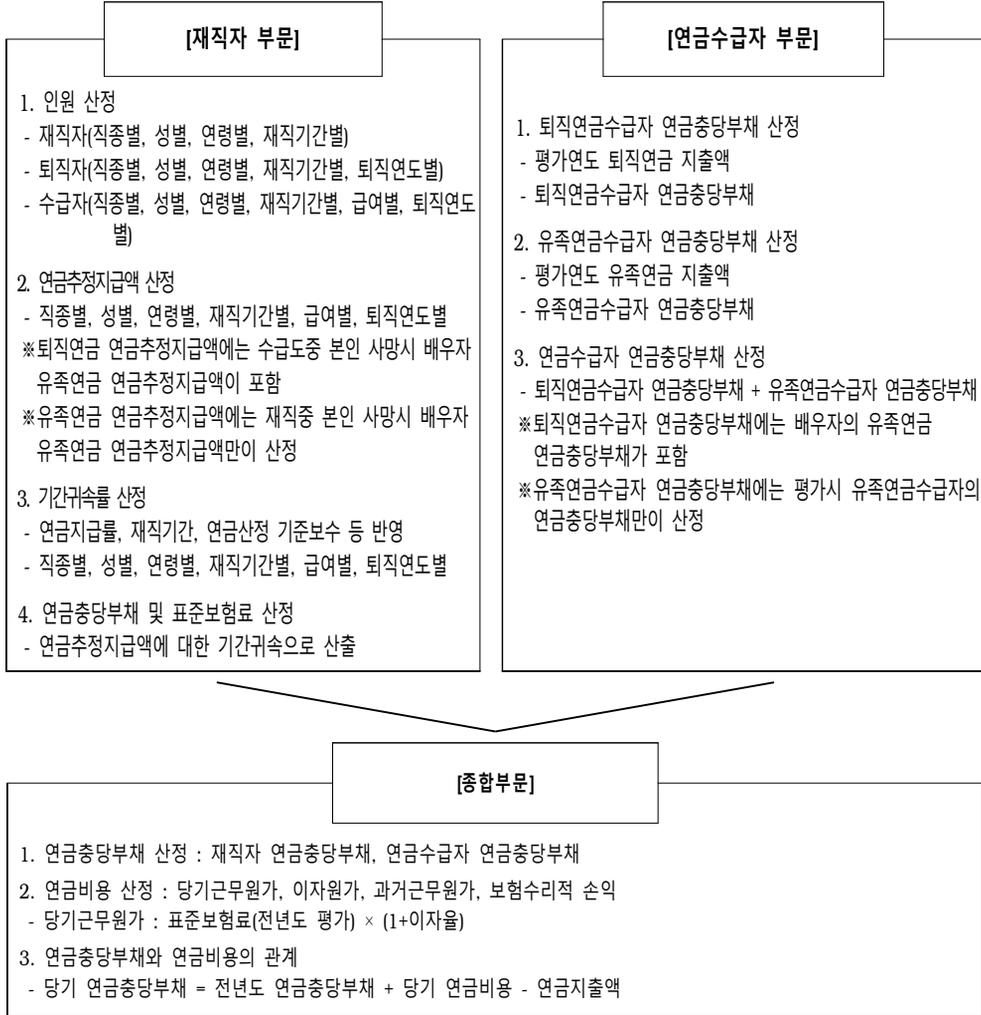


- 성별, 연령별, 재직기간별, 직종별 분류체계 적용 -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 산정 개요>



<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 평가모형 세부 내역 >



첫째,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 평가모형은 크게 ‘재직자부문’, ‘수급자부문’, ‘종합부문’ 등 세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연금추정지급액을 측정하고 이 값을 적절히 나누는(proration) 과정을 통하여 연금충당부채(AL, Accrued Liability) 및 표준보험료(NC, Normal Cost)를 계산하게 되는 보험수리 평가의 모든 과정이 요구되는 ‘재직자부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종합부문’에서는, 당기근무원가(SC, Service Cost), 이자원가, 과거근무원가, 보험수리적 손익 등 연금비용(PC, Pension Cost)을 계산함과 동시에 회계연도 연금충당부채, 직전연도 연금충당부채, 회계연도 연금비용 및 회계연도 연금지출액(PE, Pension Expenditure)의 관계를 제시합니다. 재직자부문의 표준보험료와 종합부문의 당기근무원가에 대한 회계적 측면에서의 상관관계 역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재직자부문의 연금충당부채 및 표준보험료를 산출하는 계산과정이 일반적인 보험

수리적 평가과정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민영부문의 보험수리적 평가방식에서는 1) 연금추정지급액에 대한 기간배분 및 현재가치로의 할인을 통해 퇴직 때 연금충당부채(확정급여 채무)를 산출하며 이를 시점별 퇴직확률로 가중평균하여 총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하고 있으며, 2)이러한 모든 계산은 개인별(individual basis)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본 평가모형에서는, 우선, 직종별·성별·연령별·재직기간별·급여별·퇴직연도별 개인의 연금추정지급액, 연금충당부채 및 표준보험료를 추산하고, 이 값에 직종별·성별·연령별·재직기간별·급여별·퇴직연도별 수급자인원을 적용하여 직종별·성별·연령별·재직기간별·급여별·퇴직연도별 그룹의 연금추정지급액, 연금충당부채 및 표준보험료를 산출합니다. 다음, 이 값을 급여별 및 퇴직연도별로 합산함으로써 직종별·성별·연령별·재직기간별 그룹의 연금추정지급액, 연금충당부채 및 표준보험료를 산출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금충당부채 및 표준보험료를 직종별·성별·연령별·재직기간별 수급인원으로 나눌 경우 민영부문에서의 퇴직확률을 고려한 총 연금충당부채와 같은 값이 산출됩니다. 민영부문의 평가 관례를 따르지 않은 이유는, 퇴직연금, 유족연금, 연계퇴직연금 등 산정하여야 할 급여가 11가지에 이를 뿐만 아니라 수차례 연금개혁(2000년, 2009년, 2015년)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기간귀속률이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재직연도에 따른 비례할당’, ‘연금지급률에 따른 비례할당’이 아닌 상당히 비선형적인 기간귀속 방법론(non-linear attribution method)에 기초하여 산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과정이 다름에도 최종 결과치는 민영부문의 계산결과와 같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그룹별(직종별·성별·연령별·재직기간별)로 산정하는 이유는, 우선, 『연금 회계처리지침』에서 관련 값을 그룹별로 계산할 수 있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문단18과 문단19, 연금추정지급액은 개인별 또는 그룹별 예상퇴직시점과 장래 추정보수를 반영하여 ... 산정한다). 이러한 내용의 지침 배경은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즉, 민영부문의 경우 기금적립(funding), 보험료 징수, 급여 제공 등 차원에서 개인별 산정 필요성이 상당히 크지만, 공적연금의 경우 단순 회계인식 차원에서 평가작업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개인별 산정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덜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계산환경 및 계산처리의 단순화를 위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산정해야 하는 급여가 민영부문의 경우 퇴직일시금 1종이지만 공무원연금의 경우 퇴직연금, 유족연금 등 11종에 달할 뿐만 아니라 연금충당부채 산정을 위해 적용되는 기간귀속률이 민영부문의 경우 단순 선형이지만 공무원연금의 경우 수차례 연금개혁으로 비선형적 기간귀속률이 적용됩니다. 결과적으로, 민영부문보다 계산과정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복잡하므로 계산과정 및 처리의 단순화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의 재정추계 구분과 같이 본 평가모형 역시 직종별·성별·연령별·재직기간별로 그룹화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의 장점으로 재정추계의 각종 기초율을 거의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꼽을 수 있습니다. 40년 구간 재직기간, 40세 구간 연령, 남·여, 비교육직·교

육직으로 구분된다고 가정할 경우 공무원그룹이 약 6,400개 하위그룹으로 분류되어 계산된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6,400=40*40*2*2$). 공무원을 백만 명으로 가정할 때, 평균 156명 정도로 그룹화되어 그들의 평균보수가 적용되는 과정에서 각종 수치가 계산된다고 보면 됩니다. 물론 이들 그룹에 각각의 개인보수를 적용하면 엄밀한 의미에서 개인별 연금충당부채가 산정될 것입니다.

셋째,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 산정을 위한 평가모형에 사용되는 기간귀속 방법론 (attribution method)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재직연도에 따른 비례할당', '연금지급률에 따른 비례할당'등 일반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방법과는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2009년 연금개혁 및 2015년 연금개혁에 따른 지급률, 연금산정 기준보수의 변화를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즉, 기간귀속률(할당률)의 산정에 있어 연금개혁 전후를 기점으로 시간에 걸쳐 일정하지 않은 연금지급률 그리고 연금산정을 위한 기준보수의 변화를 모두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수급자의 첫 급여가 재직기간, 연금지급률, 연금산정기준보수에 의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의 기간귀속률은 첫급여(단가)의 계산 후에서나 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하면, 본 모형에서는 재직기간에 상응한 첫 급여의 산정 후에야 그 급여의 비교를 통한 기간귀속률 도출 및 연금추정지급액 할당의 계산과정이 가능합니다. 첫 급여가 총액이기도 한 일시금의 경우, 연금추정지급액(PVFB)에 기간귀속률을 적용함으로써 연금충당부채 및 표준보험료가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연금충당부채, 표준보험료를 산정한 후에야 기간귀속률이 산출되는 흥미로운 계산구조가 발생합니다.

그 외 특징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연금 회계처리지침」에서는 표준보험료 혹은 표준부담금과 당기근무원가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명히 규정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본 평가모형에서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표준보험료는 일반적인 보험수리적 접근방식과 같게 기초시점에서의 연금추정지급액에서 당해연도 재직기간 몫을 적절히 나누어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구하도록 하되, 회계연도 당기근무원가란 국제회계기준(IFRS)을 준용하여 전회계연도에 산출한 당해연도 표준보험료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sc(t) = NC(t) \times (1 + \text{할인율}(t))$). 다음 연금급여흐름의 현재가치를 산정함에 따라 사망률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기대여명을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PBO 산정 때 연금 급여의 현재가치 산정을 위한 보수에는 앞으로 퇴직시점까지의 직급상승률이 포함되도록 설계되었으며, 배우자 간 나이 차이는 3세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평가모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연금 연금충당부채 평가 연구(김재경·김정록·송승섭, 2012)'의 평가모형부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② 군인연금(국방부)

□ 연금사업의 개요(Pension in general)

1. 설치 목적

- 군인연금은 국가를 위하여 일정기간 성실하게 복무한 군인이 퇴직·사망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본인이나 그 유족에게 국가보상적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가방위에 필요한 전력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60년 공무원 연금에 포함 되어 설치되었으며,
- 조기전역 등 군복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1963년 군인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 제정하였고, 연금지급을 위한 수입·지출 등의 목적으로 군인연금특별회계법을 제정하여 연금지급을 위한 특별회계와 연금지급 충당준비금을 조성하기 위한 기금으로 운영하다가 2007년부터 기금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 주요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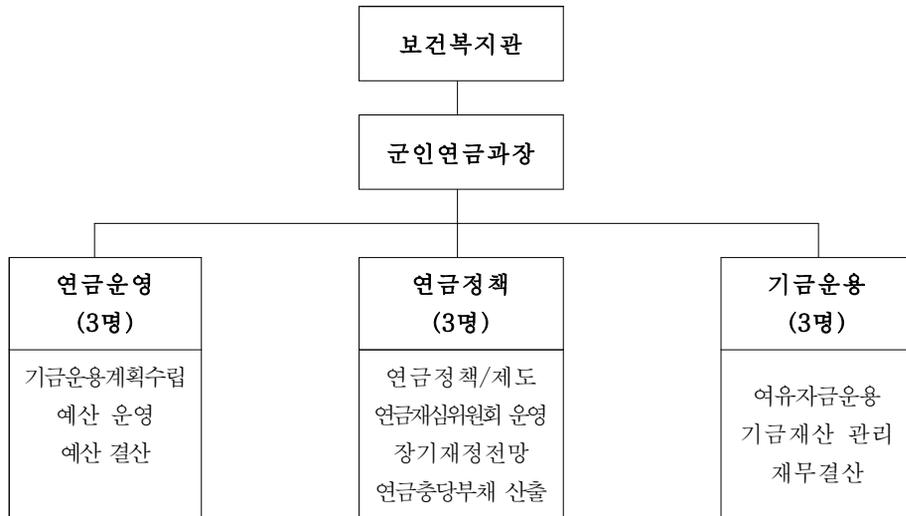
- '60.01.01 : 공무원연금법(제31조)에 공무원과 공동으로 규정
- '63.01.28 : 군인연금법(제37조)과 군인연금특별회계법(제5조) 제정
- '70.01.01 : 소급기여금 제도 실시
- '85.01.01 : 사망조위금(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제도 신설
- '91.10.01 : 퇴직수당 신설 및 가산금제도 폐지
- '01.01.01 : 연금 부족분 국가부담 법제화
- '06.10.04 : 소득심사제도 시행
- '07.01.01 : 군인연금특별회계를 폐지하고, 기금으로 일원화
- '07.07.24 : 유족이 아닌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 대한 급여 지급순위 조정
- '11.05.19 : 군인이 퇴직한 후에 재직시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가 확정된 때에는 그때부터 상이연금 지급
- '13.07.01 : 군인연금재정 안정화 및 합리적 제도운동을 위해 공적연금개혁의 일환으로 군인연금법 개정(기여금 인상, 급여산정 기준 보수 변경, 소득상한제 적용 등)
- '14.10.15 : 배우자의 유족인정 범위 확대(군 복무당시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와 이혼하고 61세이후 그 배우자와 재결합 한 경우 유족인정)
- '15.01.01 : 퇴직연금 등 급여 종류의 변경 신청 허용

- '16.03.02 : 급여 중 민사집행법에서 정하는 금액 이하는 압류금지
- '16.06.30 : 공무상 요양기간 연장, 재요양제도 신설
- '17.11.28 : 재심 무죄 판결자 등에 대한 이자가산 규정 신설, '11.05.19 전 퇴직 후 장애상태 확정자에 대한 상이연금 지급
- '18.03.01 : 공상 간부가 민간병원 진료 시 공무상요양비(건강보험공단부담금) 지원
- '18.05.29 : 군사기밀을 누설하는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급여 전액 제한 규정 신설
- '19.04.23 : 사망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재분류된 군인들에 대한 급여 (순직유족연금, 사망보상금, 사망조위금, 퇴직수당)의 청구 시효를 '사망일' 에서 '순직 결정일' 로부터 기산하는 조항 신설
- '19.07.01 : 연금수급권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연금 압류를 방지하는 군인 연금 평생안심통장 도입(현행 185만원 한도)
- '19.09.03 : 외국 거주자에 대한 신상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1년 이상 외국 거주자도 매년 신상신고서 제출 대상에 포함
연금에 형사 피의자의 도피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직무상 범죄행위로 지명수배·통보된 자에 대해 퇴역연금액의 2분의 1을 지급 유보
- '19.12.10 : 군인재해보상법 개정
순직 유족연금 지급률 일원화(본인 기준소득월액의 43%) 및 유족가산제도(유족 1명당 5%씩, 최대 4명까지 20% 가산) 도입
- '20.06.11 : 분할연금제도 도입 시행
퇴역연금 전액 정지대상 확대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인상 및 장애발생 원인에 따른 차등화 (전상, 특수직무 공상 신설)
사망보상금 보상 수준 소폭 변경
군인사망조위금 소폭 인상
- '20.06.11 : 분할연금제도 도입 시행
퇴역연금 전액 정지대상 확대
일반장애 장애보상금 인상 및 장애발생 원인에 따른 차등화 (전상, 특수직무 공상 신설)
사망보상금 보상 수준 소폭 변경
군인사망조위금 소폭 인상(본인 기준소득월액의 1.95배→2배)

○ '20.07.01 : 유족연금 이전 청구 시 소멸시효 미적용

3. 연금사업 현황

○ 인원현황



※ '12.21일자로 연금지급업무는 국군재정관리단으로 이관(퇴직연금과17명, 퇴직급여과10명)

※ '21.3.30일자로 재해심의 업무는 군인재해보상과(7명)로 이관

○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수입	계	26,556	28,065	28,556	29,580	31,011	32,327	33,813	34,673	35,202	36,392
	국가부담금 / 보전금	22,019	23,009	23,327	23,993	25,046	26,076	27,278	27,826	28,182	29,220
	기여금 / 반환금	4,537	5,056	5,229	5,587	5,965	6,251	6,535	6,847	7,020	7,172
지출	계	25,763	26,923	28,690	29,566	30,660	32,208	33,646	34,482	35,330	37,269
	군인연금	25,759	26,919	28,685	29,563	30,657	32,205	33,642	34,479	35,327	37,258
	기금운영비	4	4	5	3	3	3	4	3	3	11
부족분 총당 (기금적립금사용)		-	-	134	-	-	-	-	-	128	877

4. 연금사업의 급여구성과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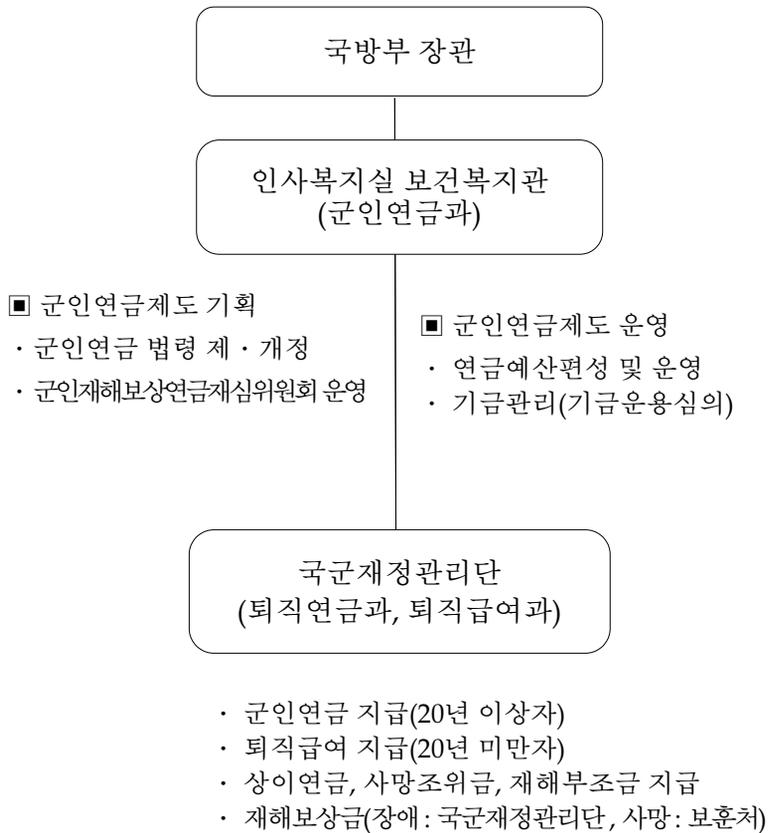
구분	대상	지급액	지급처
퇴역연금	• 19년 6월 이상 복무 후 퇴직한 자	• 전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복무년수×1.9%)	국군 재정 관리단
퇴역연금 일시금	• 19년 6월 이상 복무 후 퇴역연급에 같 음하여 일시금 희망자	• 기준소득월액×복무년수× [0.975+{(복무년수-5)×0.0065}]	
퇴역연금 공제일시금	• 20년 초과 복무기간 중 일정기간을 일 시금으로 신청한 자 * 퇴역연금 지급시 지급	• 기준소득월액×공제복무년수× {0.975+(공제복무년수×0.0065)}	
퇴직 일시금	• 5년 ~ 19년 5월 복무 후 퇴직한 자	• 기준소득월액×복무년수× [0.975+{(복무년수-5)×0.0065}]	
	• 5년 미만 복무 후 퇴직한 자	• 기준소득월액×복무년수×0.78	
퇴직수당	• 1년 이상 복무 후 퇴직(사망)한 자	• 기준소득월액×복무연수× 복무연수별 지급비율(6.5%~39%)	
상이연금	•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퇴 직한 자	• 기준소득월액의 32.5%(7급)~52%(1급) ※ 장애보상금·보훈연금 별도지급	
순직유족연 급	• 복무 중 공무상 사망	• 기준소득월액의 43% • 유족 1명당 5%씩, 최대 4명까지 20% 가산 ※ 사망조위금, 사망보상금, 보훈급여금, 유족연금부가금(20년 이상) 별도지급	
순직유족연 급일시금	• 복무 중 공무상 사망한 경우 순직유족연급에 같음하여 유족이 원할때	• 퇴역연금일시금액과 동일	
퇴역·상이 유족연금	• 퇴역, 상이연금 수급자가 사망 또는 19년 6월 이상 복무자 중 공무 외 사망	• 퇴역연금·상이연금의 70% (13.7월 이후 신규 임용자는 퇴역연금·상 이연금의 60%)	
퇴역 유족연금 부가금	• 19년 6월 이상 복무 중 사망한 경 우 퇴역유족연금 선택자	• 퇴역연금 일시금의 25% * 유족연금 병급	
퇴역 유족연금 특별부가금	• 퇴역·상이연금 수급월로부터 3년 이 내 사망자	• 퇴역유족연금부가금 × (36 - 퇴역·상이연금 수 령 월 수)/36 * 유족연금 병급	
퇴역 유족연금 일시금	• 19년 6월이상 복무자가 군복무중 사 망한 경우 퇴역유족연금에 같음하여 유족이 원할 때	• 퇴역연금일시금액과 동일	
퇴직유족 일시금	• 19년 6월 미만 복무한 군인이 사망시	• 퇴직일시금액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보상금(공무 중 사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사: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0배 (전 계급 적용 '20년 3.2억원) - 특수직무순직: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45배(전 계급 적용 '20년 2.4억원) - 일반순직: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24배 (최소 '20년 1.3억원) ※ 해외근무시 별도 가산(재외근무수당 36배) 	국가 보훈처 (지급위탁)
재해보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인이 군복무중 부상 또는 사망한 경우(병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보상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장애: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의 3~9배 (1급 9배, 2급 6배, 3급 4.5배, 4급 3배) - 전상: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2.5배 - 특수직무공상: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의 1.88배 * 일반장애 장애보상금은 병사만 해당, 전상·특수직무공상 장애보상금은 간부, 병사 해당 ** 간부의 일반장애 보상은 상해보험(맞춤형 복지) 시행 중 ※ 해외근무시 별도 가산(재외근무수당 12~4배) 	
사망조위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군인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자녀가 사망한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사망: 기준소득월액의 2배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최고 180%, 최저 50% 금액 지급 • 배우자, 직계존속, 자녀 사망: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0.65배 	국군재정 관리단
재해부조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재, 화재 등 재해로 인해 재산상 손해(주택)를 입은 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또는 배우자 소유, 상시 거주하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소유의 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과: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3.9배 • 반과: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2.6배 • 1/3과: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3배 	

5. 재원조달 방식과 비용부담 방식

재원조달	비용부담
재산수입	연금지급금
경상이전 수입	기금운영비
정부내부수입	공자기금예탁
차입금 및 여유자금회수	여유자금운용

6. 감독관리체계(관리기관의 주요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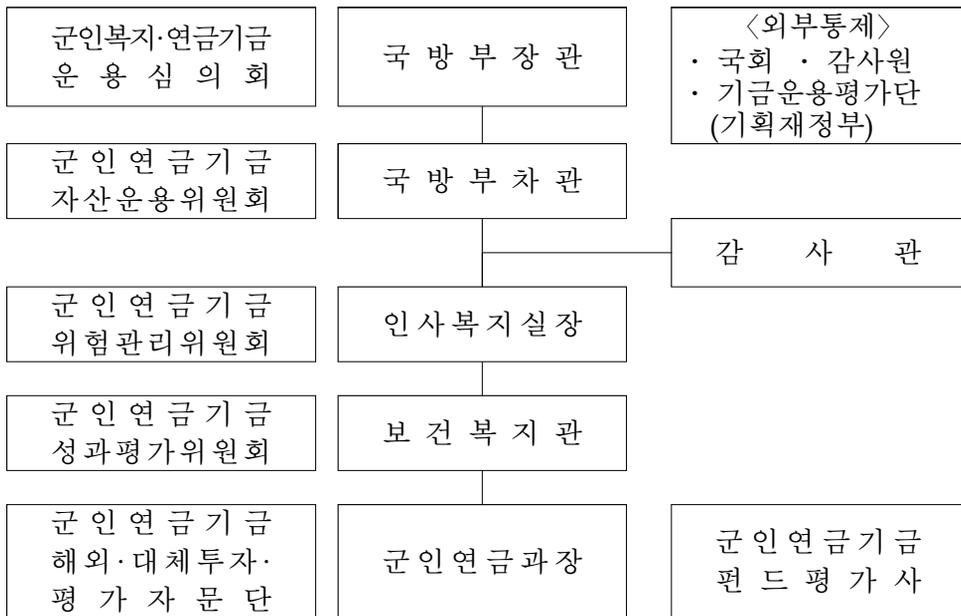
□ 연금사업의 기금운용(Fund Management Section)

1. 기금의 조성과 운용 현황

(’22년말, 단위 : 억원)

조 성		운 용		'22잔고
○ 적립금 및 결산잉여금	3,691	○ 연금충당	4,692	(1)-(2)
○ 전입금기여금	444,633	○ 연금지급금	442,376	
○ 운용수익 등	12,439	○ 관리비 등	1,624	
계(1)	460,763	계(2)	448,692	12,071

2. 기금운용체계



○ 군인복지·연금기금운용심의회

구성	· 위원장 : 차관 · 위원 : 위원Pool
심의내용	·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 심의 · 자산운용지침 제·개정 및 기금운용에 관한 정책 방향 제시

○ 군인연금기금 자산운용위원회

구성	· 위원장 : 보건복지관 · 위 원 : 외부 전문가 6인(재무분석사, 채권·주식전문가 등)
심의내용	· 자산배분계획 등 여유자금의 운용방향과 지침 개정사항 심의 · 거래 금융기관, 투자상품 선정에 관한 사항 등

○ 군인연금기금 위험관리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 · 위 원 : 전문가 5명(과반수 이상 위험관리 외부전문가 구성)
심의내용	· 위험관리 전략 및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자산운용 현황 및 운용자산의 주요 변동사항 점검 등

○ 군인연금기금 성과평가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외부위원 중에서 선임 · 위 원 : 전문가 5명(과반수 이상 성과평가 외부전문가 구성)
심의내용	· 성과평가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 · 여유자금 운용의 성과평가 등

3. 기금투자관리

구 분	주요 내용
위탁펀드 점검	○ 성과평가 및 위험 관리, 월별 위탁펀드 점검업무 ※ 자산운용위원회 심의를 통해 실적부진펀드 환매 ○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위험관리위원회의 점검 실시
운용보고서 징구	○ 정기 운용보고서 서면 징구 ○ 수익률, 이상변동내역 등 확인
외부전문기관 활용	○ 펀드평가, 투자폴 제공정보 활용, 일일 모니터링

4. 기금운용성과

○ 군인연금기금 보유 현황

(단위 : 억원)

년도	부동산	금 용					
		단기	확정상품	채권형	주식	대체	합계
2011	2,358	-	1,000	1,712	342	721	3,775
2012	2,348	-	500	3,457	-	621	4,578
2013	2,338	-	200	5,364	-	482	6,046
2014	2,327	-	500	6,667	-	460	7,627
2015	2,317	-	-	7,764	-	235	7,999
2016	2,718	-	-	7,993	-	207	8,200
2017	2,707	-	-	8,662	-	205	8,867
2018	2,697	-	-	8,723	-	96	8,819
2019	2,678	-	-	9,558	-	85	9,643
2020	2,668	-	-	10,128	-	76	10,204
2021	2,880	-	-	10,372	-	76	10,448
2022	2,780	-	-	8,978	-	76	9,054

○ 운용 수익

(단위 : 억원, %)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수익률	장기금	1.98	1.55	2.34	2.47	2.44	1.71	3.32	△2.75	6.95	3.68	3.58	△6.28
	단기금	3.26	3.38	2.65	2.40	1.71	1.36	1.28	1.68	1.73	1.01	0.80	2.17
	잔여수익률	2.53	2.08	2.45	2.42	2.26	1.66	2.99	△2.06	6.07	3.24	3.16	△5.08
수익액	142	140	193	228	234	106	285	△204	620	341	338	△538	

□ 주요현황

1. 퇴직자 추이

(단위 : 명, %)

구 분	퇴 직 자 수			전년대비 증감인원	증감률(%)
	합 계	20년이상	20년미만		
1996년	18,121	2,260	15,861	1,398	8.4
1997년	16,498	1,099	15,399	△1,623	△9.0
1998년	15,119	2,120	12,999	△1,379	△8.4
1999년	14,914	2,643	12,271	△205	△1.4
2000년	16,690	2,352	14,338	1,776	11.9
2001년	17,721	2,326	15,395	1,031	6.2
2002년	18,133	2,360	15,773	412	2.3
2003년	15,421	1,804	13,617	△2,712	△15.0
2004년	16,337	2,144	14,193	916	5.9
2005년	15,404	2,290	13,114	△933	△5.7
2006년	15,978	1,895	14,083	574	3.7
2007년	17,008	2,550	14,458	1,030	6.4
2008년	19,122	2,744	16,378	2,114	12.4
2009년	16,944	3,219	13,725	△2,178	△11.4
2010년	20,776	3,307	17,469	3,832	22.6
2011년	18,172	2,914	15,258	△2,604	△12.5
2012년	19,936	2,897	17,039	1,764	9.7
2013년	20,469	2,701	17,768	533	2.7
2014년	19,650	2,976	16,674	△819	△4.0
2015년	20,775	3,445	17,330	1,125	5.7
2016년	21,165	2,925	18,240	390	1.9
2017년	19,910	2,895	17,015	△1,255	△5.9
2018년	18,804	3,117	15,687	△1,106	△5.6
2019년	18,099	3,384	14,715	△705	△3.7
2020년	18,724	3,144	15,580	625	3.5
2021년	19,151	3,393	15,758	427	2.3
2022년	18,523	3,356	15,167	△628	△3.3

2. 연금종류별 수급자 추이

(단위 : 명)

구 분	합 계	퇴역연금	유족연금	상이연금	분할연금
1996년	49,321	39,378	9,445	498	-
1997년	50,137	39,732	9,860	545	-
1998년	51,687	40,795	10,306	586	-
1999년	53,534	42,154	10,714	666	-
2000년	55,418	43,494	11,195	729	-
2001년	57,380	44,871	11,689	820	-
2002년	59,061	46,068	12,096	897	-
2003년	60,892	47,302	12,647	943	-
2004년	62,679	48,495	13,197	987	-
2005년	64,577	49,828	13,732	1,017	-
2006년	66,030	50,674	14,307	1,049	-
2007년	68,044	52,124	14,831	1,089	-
2008년	70,259	53,713	15,417	1,129	-
2009년	72,934	55,766	16,019	1,149	-
2010년	75,677	57,906	16,590	1,181	-
2011년	78,103	59,648	17,271	1,184	-
2012년	80,262	61,200	17,881	1,181	-
2013년	82,313	62,632	18,493	1,188	-
2014년	84,565	64,297	19,080	1,188	-
2015년	87,134	66,250	19,718	1,166	-
2016년	89,098	67,586	20,358	1,154	-
2017년	91,071	69,005	20,919	1,147	-
2018년	93,126	70,409	21,573	1,144	-
2019년	95,281	71,983	22,164	1,134	-
2020년	97,153	73,281	22,700	1,135	37
2021년	99,454	74,903	23,241	1,149	161
2022년	101,386	76,276	23,689	1,148	273

* 타기관 이체 및 연금정지자 제외

** 분할연금 2020.6.11. 시행

3. 기금조성 추이

(단위 : 억원, %)

구 분	기금조성액		기금수입 ¹⁾	기금지출 ²⁾	재산수입 ³⁾	
	금 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996년	3,840	△9.7%	308	722	228	△29.2%
1997년	4,144	7.9%	304	0.36	291	27.3%
1998년	4,642	12.0%	498	0.03	382	31.2%
1999년	3,880	△16.4%	413	1,175	327	△14.3%
2000년	3,401	△12.3%	459	938	457	39.7%
2001년	3,589	5.5%	188	0.04	187	△59.1%
2002년	4,551	26.8%	962	0	169	△9.6%
2003년	4,491	△1.3%	623	684	226	33.7%
2004년	2,505	△44.2%	△600	1,386	204	△9.8%
2005년	2,659	6.1%	154	0	154	△24.4%
2006년	3,410	28.3%	751	0	149	△3.1%
2007년	4,739	39.0%	19,397	18,068	212	42.2%
2008년	4,766	0.6%	19,350	19,323	287	35.2%
2009년	4,653	△2.4%	20,459	20,572	274	△4.7%
2010년	3,844	△17.4%	21,277	22,086	258	△5.7%
2011년	6,207	61.5%	25,521	23,158	193	△25.3%
2012년	7,057	13.7%	25,680	24,830	173	△10.3%
2013년	8,624	22.2%	27,362	25,795	137	△20.8%
2014년	10,302	19.5%	28,634	26,956	171	24.8%
2015년	10,425	1.2%	28,826	28,704	164	△4.1%
2016년	11,042	5.9%	30,194	29,577	179	9.1%
2017년	11,676	5.7%	31,305	30,671	149	△16.8%
2018년	11,623	△0.5%	32,459	32,512	132	△11.4%
2019년	12,444	7.1%	34,481	33,660	181	37.1%
2020년	13,017	4.6%	35,070	34,497	178	△1.7%
2021년	13,483	3.6%	35,824	35,358	222	24.7%
2022년	12,071	△10.5%	35,882	37,293	221	0.9%

1) 기금수입 : 적립금, 결산잉여금, 전입금 및 기여금, 운용수익 등

2) 기금지출 : 연금총당, 연금지급금, 관리비 등

3) 재산수입 : 금융자산 이자수입, 건물대여료

□ 연금사업의 연금총당부채 평가(Actuarial Section)

1. 연금충당부채 평가대상 급여 종류

1.1. 연금충당부채 평가대상 급여

- 군인연금 연금충당부채 평가대상은 「군인연금법」 제7조(급여의 종류)의 급여 중 퇴직수당을 제외한 급여입니다. 퇴직수당은 국가가 100% 비용을 부담하므로 연금충당부채에 포함하지 않고 퇴직수당충당부채로 별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 퇴직급여: 퇴역연금, 퇴역연금일시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 퇴직유족급여: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부가금,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퇴직유족일시금
-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급여)의 급여 중 상이연금과 상이유족연금도 연금충당부채 평가대상 급여입니다.
 - 군인연금제도에서 상이전역자는 「군인 재해보상법」의 상이연금과 「군인연금법」의 퇴역연금 중 본인에게 유리한 급여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20년 이상 복무한 퇴직자의 경우). 상이연금과 상이유족연금은 재해보상적 급여로 국가가 100% 비용을 부담하지만 퇴역연금과 퇴역유족연금의 성격을 포함한다고 보아 연금충당부채 평가대상에 포함합니다.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의 연계퇴직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도 연금충당부채 평가대상입니다.

<연금충당부채 평가대상 급여 종류>

「군인연금법」 제7조	평가대상	「군인 재해보상법」 제7조	평가 대상
1. 퇴직급여		1. 공무상요양비	×
가. 퇴역연금	○	2. 장애급여	
나. 퇴역연금일시금	○	가. 상이연금	○
다. 퇴역연금공제일시금	○	나. 장애보상금	×
라. 퇴직일시금	○	3. 재해유족급여	
2. 퇴직유족급여		가. 상이유족연금	○
가. 퇴역유족연금	○	나. 순직유족연금	×
나. 퇴역유족연금부가금	○	다. 순직유족연금일시금	×
다. 퇴역유족연금특별부가금	○	라. 사망보상금	×
라. 퇴역유족연금일시금	○	4. 부조급여	
마. 퇴직유족일시금	○	가. 재난부조금	×
3. 퇴직수당	×	나. 사망조위금	
		1) 군인사망조위금	×
		2) 가족사망조위금	×

2. 연금충당부채 평가대상 인원 현황

2.1 2022회계연도 인원 현황

○ 재직자 및 수급자 현황

- 재정상태표일 기준 재직자는 191,403명, 수급자는 104,281명입니다.
- 수급자에는 타 직역연금 가입에 따른 연금이체자 및 지급정지자 6,506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2회계연도 평가대상 인원 현황>

(단위: 명)

구분		인원	비중
재직자	재직자 계	191,403	100%
	- 장교	61,976	32%
	- 준/부사관	129,427	68%
수급자	수급자 계	104,281	100%
	- 퇴역연금	83,055	80%
	- 상이연금	1,240	1%
	- 유족연금	19,986	19%

- 재직자 중 재정상태표일 기준으로 연금수급권을 확보한(20년 이상 복무한) 인원은 43,293명(23%)입니다.

<재직자 중 연금수급권 확보자 현황>

(단위: 명)

구분	20년 이상 복무자	20년 미만 복무자	계
재직자 계	43,293	148,110	191,403
- 장교	9,886	52,090	61,976
- 준/부사관	33,407	96,020	129,427

2.2 인원 변동 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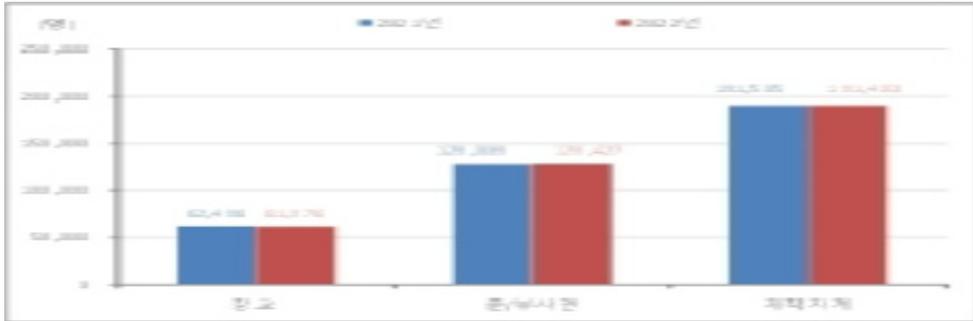
○ 재직자 변동 내역

- 2022년 재직자는 2021년에 비해 102명 감소했습니다.
- 준/부사관은 418명 증가했으나, 장교가 520명 감소했습니다. 부사관 계급에서는 상/원사가 2,360명 증가했고 장교 계급에서는 위관급이 536명 감소했습니다.

<재직자 변동 내역>

(단위: 명)

구분	2021	2022	변동 내역
재직자 계	191,505	191,403	△102
- 장교	62,496	61,976	△520
- 준/부사관	129,009	129,427	+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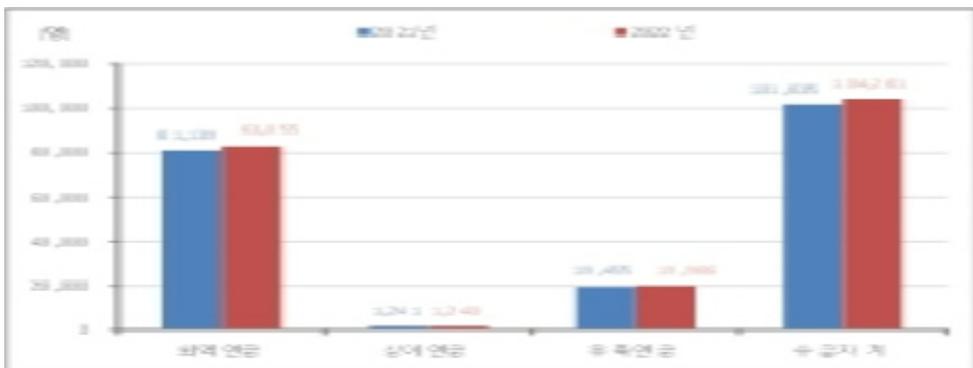
○ 수급자 연말인원 변동 내역

- 2022년 수급자는 2021년에 비해 2,446명 증가했습니다.
- 퇴역연금수급자는 1,916명 증가, 유족연금수급자 531명 증가했으나 상이연금수급자는 1명 감소했습니다.

<수급자 변동 내역>

(단위: 명)

구분	2021	2022	변동 내역
수급자 계	101,835	104,281	+2,446
- 퇴역연금	81,139	83,055	+1,916
- 상이연금	1,241	1,240	△1
- 유족연금	19,455	19,986	+531



3. 연금충당부채 평가 방식

3.1 2022회계연도 군인연금 연금충당부채 산정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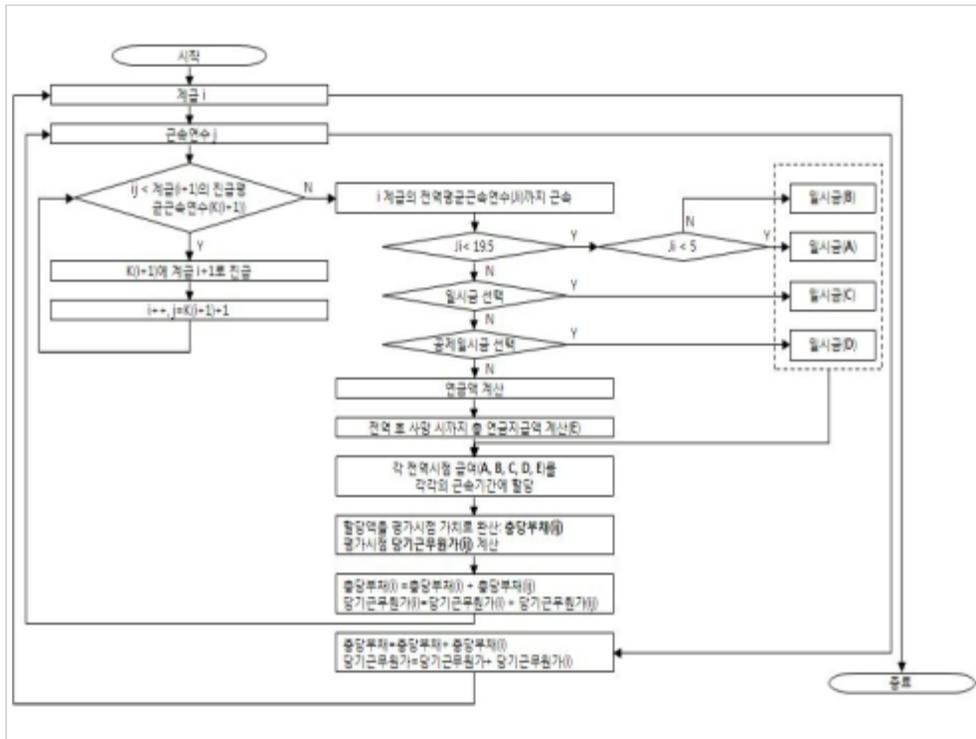
- 예측단위적립방식과 예측급여채무방식 적용
 - 급여/근무연수 방식인 예측단위적립방식(PUCM, Projected Unit Cost Method)을 적용하여 연금충당부채와 당기근무원가를 산정합니다.
 - 재정상태표일 현재의 연금수급권 획득 여부에 관계없이 미래의 재직기간과 보수상승을 고려하는 예측급여채무(PBO, Projected Benefit Obligation) 방식으로 연금추정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재직자 연금충당부채와 수급자 연금충당부채를 구분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군인연금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합니다.

3.2 재직자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

- 재정상태표일 기준 재직자(복무 중인 현역 군인)를 계급과 근속연차 그룹으로 구분하여 그룹별 연금충당부채와 당기근무원가를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재직자 연금충당부채 산정 세부절차
 - 각 그룹별로 장래의 진급을 고려하여 계급별/전역종류별/복무기간별 예상 전역 인원과 전역시점을 추정합니다.
 - 계급: 대장~전문하사의 16개 계급으로 구분하며, 준위의 경우 육군 항공운항 특기자, 육군 기술행정 특기자 중 상사 이하 진급자, 육군 기술행정 특기자 중 원사 진급자, 해공군의 4가지로 상세하게 구분합니다.
 - 전역종류: 정상전역, 일반사망전역, 상이전역, 공무사망전역, 연계전역의 5가지로 구분합니다. 단, 공무사망전역자에게 지급하는 순직유족연금과 순직유족연금일시금은 연금충당부채 평가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복무기간: 정상전역과 일반사망전역은 19.5년 이상, 5년~19.5년, 5년 미만의 3가지, 상이전역, 공무사망전역, 연계전역은 19.5년 이상, 19.5년 미만의 2가지로 구분합니다.
 - 예상전역시점의 계급, 전역종류, 복무기간에 따라 연금수급자와 일시금수급자를 구분하고, 해당 시점의 보수 및 「군인연금법」과 「군인 재해보상법」의 급여 산정식에 따라 일시금급여와 연금급여를 산정합니다.
 - 일시금수급자는 예상전역시점에 일시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급여지급이 종료되고 연금수급자는 모든 인원이 소멸할 때까지 급여를 지급하는 것으로 연금추정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1개 계급/근속연차 그룹에 대해 발생하는 연금추정지급액을 구하고 재직기간에 대한 기간귀속, 할인율 적용의 과정을 거쳐 연금충당부채와 당기근무원가를 산정합니다.
- 그룹별 연금충당부채와 당기근무원가를 모두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재직자의 연금충당부채와 당기근무원가를 산정합니다.

<재직자 연금충당부채 산정 과정>



3.3 수급자 연금충당부채 산정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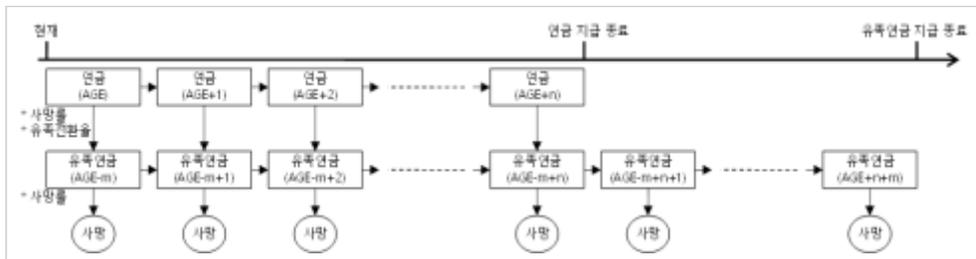
- 재정상태표일 현재 연금을 수급 중인 수급자를 연금종류별로 구분하여 연금종류별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연금종류: 퇴역연금, 상이연금,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 연금종류별로 사망률, 유족전환율 등의 인구통계적 가정 상이
- 퇴역연금과 상이연금 수급자는 사망 후 유족으로 전환되어 발생하는 퇴역유족연금과 상이유족연금 수급자의 연금추정지급액까지 산정합니다.
- 수급자의 경우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하기 위한 기간귀속이 불필요하므로 연금추정지급액을 평가시점으로 할인한 금액이 곧 연금충당부채가 됩니다.
- 2020년 6월 11일 시행된 「군인연금법」에 따라 분할연금 수급자가 발생했으나 별도의 기초율을 설정할 정도로 실적치가 충분하지 못해 분할연금 수급자는

퇴역연금 수급자로 취급하여 연금충당부채를 산출했습니다.

- 2022년 12월 기준 분할연금 수급자 수: 259명(이체·정지자 3명 포함)

- 수급자 연금충당부채 산정 세부절차
 - 재정상태표일 기준 연금종류별 수급자의 연령별 인원과 평균연금액을 기초 자료로 사용하여 연금종류별 인원이 모두 사망할 때까지 지급해야 할 연금추정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 연금추정지급액에 할인율을 적용하여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합니다.
 - 연금종류별 연금충당부채를 합산하여 수급자 연금충당부채를 산정합니다.

<수급자 연금충당부채 산정 과정>



4.보험수리적 가정의 적용내역과 산출근거

4.1 재무적가정

- 보수상승률
 - 2021회계연도의 보수상승률 가정과 동일한 가정을 적용합니다.
 - *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의 직역연금 보수상승률 가정
 - 2023년은 실적치를 적용합니다.
- 물가상승률
 - 2021회계연도의 물가상승률 가정과 동일한 가정을 적용합니다.
 - * '2020~2060년 장기재정전망'의 물가상승률 가정
 - 2023년은 실적치를 적용합니다.
- 할인율
 - 「연금회계처리 지침」에 따라 만기별 국고채수익률을 적용합니다.
 - 2022회계연도의 할인율은 1년, 3년, 5년, 10년, 20년 만기별 국고채수익률의 최근 10년(2013~2022년) 평균값을 적용하고, 만기 사이의 구간은 선형보간법으로 산출한 값을 적용합니다.

<만기별 국고채수익률 추이>

(단위: %)

연도	1년 만기	3년 만기	5년 만기	10년 만기	20년 만기
2013	2.66	2.79	3.00	3.28	3.46
2014	2.44	2.59	2.84	3.19	3.38
2015	1.70	1.80	1.98	2.31	2.48
2016	1.43	1.44	1.53	1.75	1.82
2017	1.54	1.80	2.00	2.28	2.33
2018	1.84	2.10	2.31	2.50	2.48
2019	1.52	1.53	1.59	1.70	1.71
2020	0.84	0.99	1.23	1.50	1.61
2021	0.91	1.38	1.71	2.06	2.13
2022	2.63	3.19	3.31	3.36	3.32

* 출처: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ECOS)

○ 재무적 가정 적용 내역

(단위: %)

연도	2022회계연도			2021회계연도		
	보수상승률	물가상승률	할인율	보수상승률	물가상승률	할인율
2022	-	-	-	3.3(실적)	2.5(실적)	1.80
2023	3.6(실적)	5.1(실적)	1.75	4.2	2.0	1.88
2024	2021 회계연도와 동일	2021 회계연도와 동일	1.86	4.1	2.0	1.96
2025			1.96	4.1	2.0	2.05
2026			2.06	4.1	2.0	2.14
2027			2.15	4.1	2.0	2.19
2028			2.20	4.1	2.0	2.25
2029			2.25	4.1	2.0	2.30
2030			2.30	4.1	2.0	2.35
2031			2.34	4.2	2.0	2.40
2032			2.39	4.1	2.0	2.41
2033			2.40	4.1	2.0	2.42
2034			2.41	4.1	2.0	2.43
2035			2.42	4.1	2.0	2.44
2036			2.42	4.1	2.0	2.45
2037			2.43	4.1	2.0	2.46
2038			2.44	4.1	2.0	2.47
2039			2.45	4.1	2.0	2.47
2040			2.46	4.1	2.0	2.48
2041			2.46	4.1	2.0	2.49
2042			2.47	4.1	2.0	2.49
2043			2.47	4.1	2.0	2.49
2044			2.47	4.1	2.0	2.49
2045			2.47	4.1	2.0	2.49
2046			2.47	4.1	2.0	2.49
2047			2.47	4.1	2.0	2.49
2048			2.47	4.1	2.0	2.49
2049			2.47	4.1	2.0	2.49
2050			2.47	4.0	2.0	2.49
2051			2.47	4.0	2.0	2.49
2052			2.47	4.0	2.0	2.49
2053			2.47	4.0	2.0	2.49
2054			2.47	4.0	2.0	2.49
2055			2.47	4.0	2.0	2.49
2056			2.47	4.0	2.0	2.49
2057	2.47	4.0	2.0	2.49		
2058	2.47	4.0	2.0	2.49		
2059	2.47	3.9	2.0	2.49		
2060	2.47	3.9	2.0	2.49		
2070	2.47	3.8	2.0	2.49		
2080	2.47	3.7	2.0	2.49		
2090	2.47	3.6	2.0	2.49		
2100	2.47	3.6	2.0	2.49		

4.2 인구통계적 가정

○ 인구통계적 가정은 크게 전역자, 수급자, 인력운영에 관련된 가정으로 구분하며,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역자 관련 가정

- 계급별/전역종류별/복무기간별 전역자 인원수/비율
- 계급별/전역종류별/복무기간별 전역자 평균근속연수
- 계급별/전역종류별/복무기간별 전역자 평균연령
- 계급별/전역종류별/복무기간별 전역자 평균연금지급개월수
- 계급별/전역종류별 전역자 퇴직급여선택률
- 계급별/전역종류별 사망전역자 유족전환율
- 계급별/전역종류별 사망전역자 유족종류별 평균연령
- 계급별/복무기간별 전역자 평균추가호봉
- 계급별 19.5년 이상 복무/퇴역연금공제일시금 선택자 평균공제복무연수
- 계급별 상이전역자 평균상이등급

- 수급자 관련 가정

- 연금종류별 연금수급자의 연령별 사망률
- 연금종류별 사망자의 평균연금지급개월수
- 연금종류별 사망자의 연령별/유족종류별 전환율
- 연금종류별 사망자의 유족종류별 연령
- 연금종류별/계급별/연령별 소득심사 인원비율, 감면금액비율
- 연금종류별/계급별/연령별 지급정지 인원비율, 정지금액비율

- 기타 재직자 인력운영 관련 가정

- 계급별 운영률 및 계급별 진급평균근속연수

※ 주요 인구통계적 가정의 세부 적용내역은 [부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연금충당부채 산정내역

5.1 2022회계연도 연금충당부채 산정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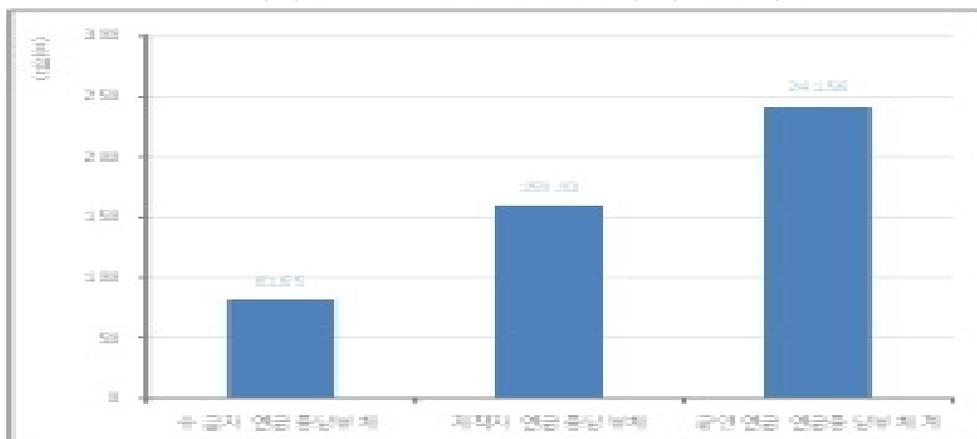
- 2022회계연도 군인연금 연금충당부채는 241조 5,809억 원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재직자 연금충당부채는 장교 38조 6,570억 원, 준/부사관 121조 2,740억 원으로 총 159조 9,311억 원이며, 이 중 준/부사관의 연금충당부채가 76%를 차지합니다.
- 수급자 연금충당부채는 총 81조 6,498억 원이며, 이 중 퇴역연금이 75조 5,759억 원으로 93%를 차지합니다.

<2022회계연도 군인연금 연금충당부채 산정내역>

(단위: 억 원)

구분	금액
수급자 연금충당부채	816,498
- 퇴역연금	755,759
- 상이연금	6,753
- 유족연금	53,987
재직자 연금충당부채	1,599,311
- 장교	386,570
- 준/부사관	1,212,740
연금충당부채 계	2,415,809

<2022회계연도 군인연금 연금충당부채 산정내역>



5.2 2021회계연도 연금충당부채 대비 증감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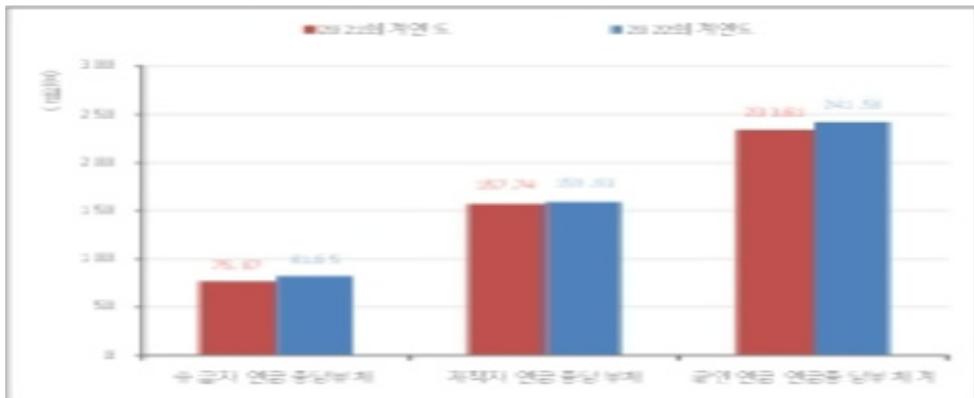
- 2022회계연도 연금충당부채는 전년 대비 7조 9,751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수급자 연금충당부채는 5조 7,826억 원 증가하였고, 재직자 연금충당부채는 2조 1,925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2022회계연도 군인연금 연금충당부채 증감내역>

(단위: 억 원)

구분	2021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증감
수급자 연금충당부채	758,672	816,498	+57,826
재직자 연금충당부채	1,577,386	1,599,311	+21,925
연금충당부채 계	2,336,058	2,415,809	+79,751

<군인연금 연금충당부채 증감내역>



6. 회계연도별 연금충당부채 변동내역

6.1 군인연금 연금충당부채 변동내역

- 2022회계연도 군인연금 연금충당부채는 241조 5,809억 원, 당기근무원가는 10조 6,012억 원입니다.

<2022회계연도 군인연금 연금충당부채 변동내역>

(단위: 억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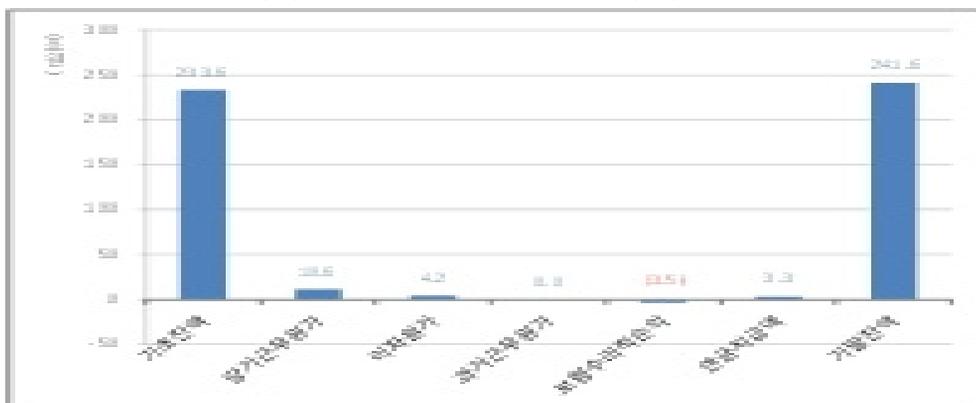
구분	당기	전기
기초잔액 (A)	2,336,058	2,148,620
당기근무원가 (B)	106,012	102,714
이자원가 ¹⁾ (C)	42,049	44,047
과거근무원가 (D)	-	-
보험수리적손익 ²⁾ (E)	△ 35,221	72,125
연금비용 소계 (F=B+C+D+E)	112,840	218,886
연금지급액 (G)	33,090	31,448
기말잔액 (H=A+F-G)	2,415,809	2,336,058

1) 2021회계연도 연금충당부채 × 이자율* = 233조 6,058억 원 × 1.80%

* 이자율: 2021회계연도 연금충당부채 평가시 2022년에 적용한 할인율

2)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의 차이,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화 등으로 인한 연금충당부채의 현재가치의 증감액

<2022회계연도 군인연금 연금충당부채 변동내역>



6.2 2021회계연도 대비 증감내역 분석

- 향후 70년(2023~2092년)간 할인율 가정이 평균 0.02%p 감소하여 연금충당부채가 2.2조 원 증가했습니다.
 - 2021회계연도 연금충당부채 산출 시 2023~2092년 평균 할인율 2.44%
 - 2022회계연도 연금충당부채 산출 시 2023~2092년 평균 할인율 2.42%
- 재직자·수급자 인원 변동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의 차이로 인해 5.7조 원 감소했습니다.

<2021회계연도 대비 증감내역 분석>

(단위: 억 원)

구분	내용	금액
당기근무원가	재직자가 1년 근무함으로써 발생하는 충당부채 증가분의 현재가치	106,012
이자원가	2021회계연도 연금충당부채의 이자발생분	42,049
과거근무원가	제도 변경에 따른 충당부채 증감분	-
보험수리적손익	보험수리적 손익 계	△35,221
	할인율 변동	21,920
	(기타) 재직자, 수급자 변동 및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의 차이	△57,142
연금지급액	2022회계연도 충당부채 산정 대상 급여 지급액	33,090
계	(당기근무원가 + 이자원가 + 과거근무원가 + 보험수리적손익) - 연금지급액	79,751

7. 주요 보험수리적 가정에 대한 민감도분석

7.1 할인율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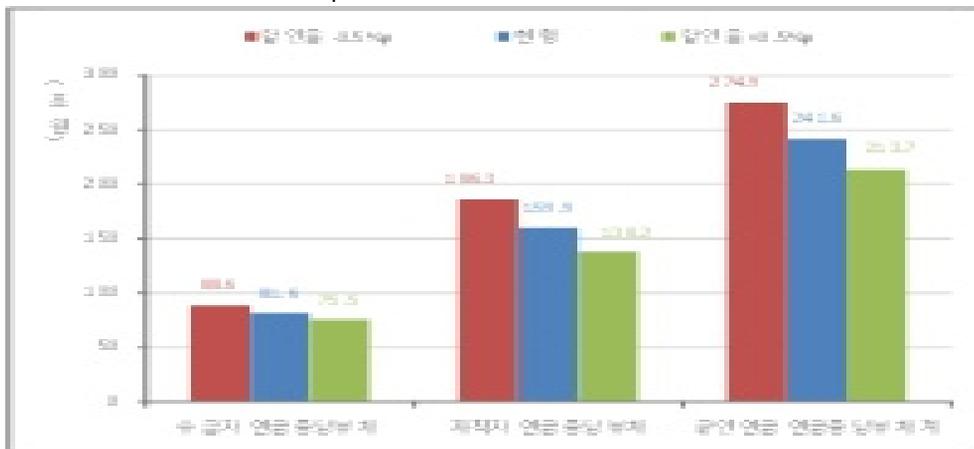
- 할인율이 높아지면 현재 시점으로 할인한 금액이 감소하므로 연금충당부채가 감소합니다.

<할인율 변동에 의한 군인연금 연금충당부채 변동내역>

(단위: 억 원)

구분	-1.0%p	-0.5%p	-0.1%p	현행	+0.1%p	+0.5%p	+1.0%p
수급자 연금충당부채	963,877	885,510	829,621	816,498	803,694	755,483	701,333
재직자 연금충당부채	2,185,852	1,863,458	1,648,091	1,599,311	1,552,379	1,381,574	1,201,024
연금충당부채 계	3,149,729 (+30.4%)	2,748,968 (+13.8%)	2,477,712 (+2.6%)	2,415,809	2,356,073 (△2.5%)	2,137,057 (△11.5%)	1,902,357 (△21.3%)

<할인율 변동(±0.5%p)에 의한 군인연금 연금충당부채 변동내역>



7.2 물가상승률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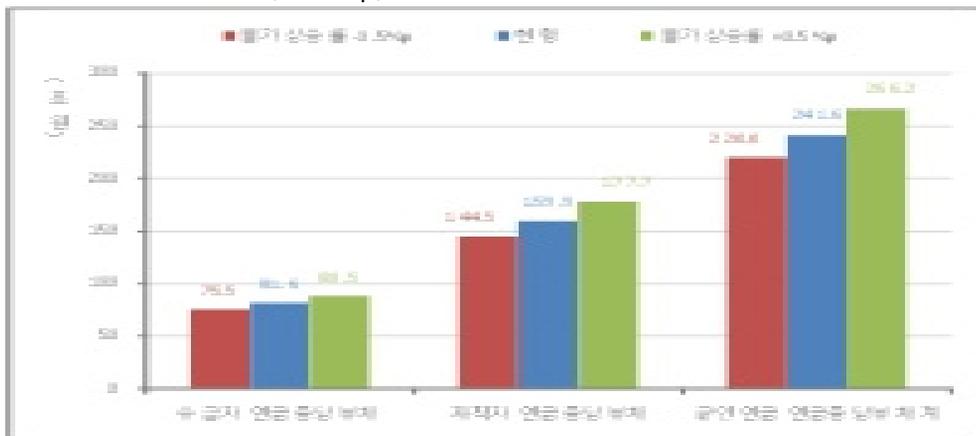
- 물가상승률이 높아지면 연금인상률이 높아져 연금지급액이 증가하므로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합니다.

<물가상승률 변동에 의한 군인연금 연금충당부채 변동내역>

(단위: 억 원)

구분	-0.5%p	현행	+0.5%p
수급자 연금충당부채	755,434	816,498	884,804
재직자 연금충당부채	1,444,868	1,599,311	1,777,222
연금충당부채 계	2,200,303 (△8.9%)	2,415,809	2,662,026 (+10.2%)

<물가상승률 변동(±0.5%p)에 의한 군인연금 연금충당부채 변동내역>



7.3 보수상승률 변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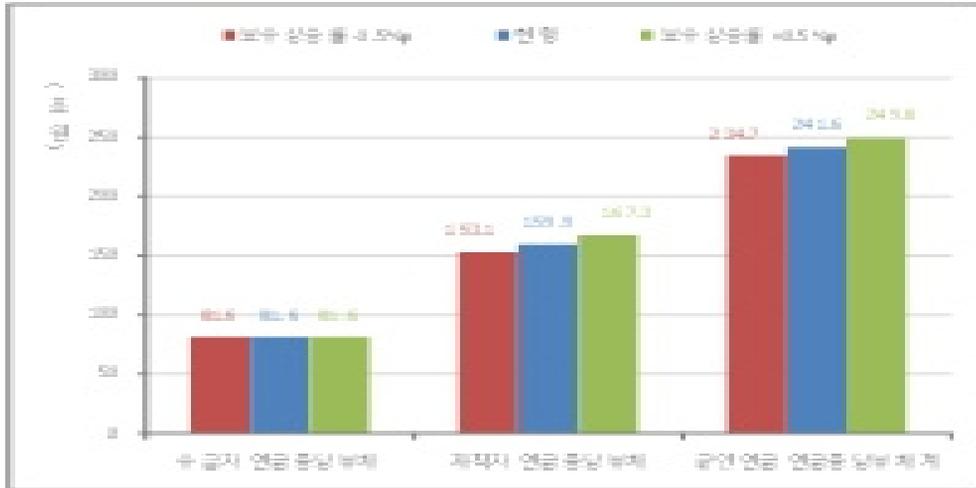
- 보수상승률이 높아지면 재직자의 퇴직급여가 높아져 연금지급액이 증가하므로 연금충당부채가 증가합니다.
- 수급자 연금충당부채는 보수상승률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보수상승률 변동(±0.5%p)에 의한 군인연금 연금충당부채 변동내역>

(단위: 억 원)

구분	-0.5%p	현행	+0.5%p
수급자 연금충당부채	816,498	816,498	816,498
재직자 연금충당부채	1,530,835	1,599,311	1,673,177
연금충당부채 계	2,347,333 (△2.8%)	2,415,809	2,489,674 (+3.1%)

<보수상승률 변동에 의한 군인연금 연금충당부채 변동내역>



8. 퇴직수당충당부채 산정내역

8.1 퇴직수당충당부채 산정방식

- 재정상태표일 기준 재직자를 계급과 근속연차 그룹으로 구분하여 미래 재직기간과 보수상승률을 고려하여 그룹별 퇴직수당충당부채를 산정한 후 모든 그룹의 합계를 구해 총 퇴직수당충당부채를 산정합니다.
- 복무기간이 1년 미만인 그룹은 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퇴직수당충당부채를 산정하지 않습니다(「군인연금법」 제37조).
- 복무기간이 33년을 초과하는 그룹은 본래 복무기간 대신 33년을 적용하여 퇴직수당충당부채를 산정합니다(「군인연금법 시행령」 제39조).
- 2013년 7월 군인연금법이 개정되어 근속연수별 퇴직수당지급률이 변경되었으며, 퇴직수당 산정을 위한 기준보수도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퇴직수당지급액 = {보수월액 × 총근속연수 × 근속연수별 퇴직수당지급률 × (2013년 7월 이전 근속연수 / 총근속연수)} + {기준소득월액 × 총근속연수 × 근속연수별 퇴직수당지급률 × (2013년 7월 이후 근속연수 / 총근속연수)}
 - 퇴직수당지급률 변경내역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과거 군인연금법과 현재 군인연금법의 퇴직수당지급률 비교>

(단위: %)

구분	과거 군인연금법 보수월액	현재 군인연금법 기준소득월액
기준보수		
1년 이상 5년 미만	10	6.50
5년 이상 10년 미만	35	22.75
근속연수 10년 이상 15년 미만	45	29.25
15년 이상 20년 미만	50	32.25
20년 이상	60	39.00

8.2 퇴직수당충당부채 산정내역

- 2022회계연도 군인연금 퇴직수당충당부채는 5조 9,115억 원으로 2021회계연도 대비 2,408억 원(4.3%) 증가하였습니다.

<군인연금 퇴직수당충당부채 증감내역>

(단위: 억 원)

구분	2021회계연도	2022회계연도	증감
금액	56,707	59,115	+2,408

8.3 퇴직수당충당부채 변동내역

<군인연금 퇴직수당충당부채 변동내역>

(단위: 억 원)

구분	당기	전기
기초잔액 (A)	56,707	54,301
당기근무원가 (B)	4,217	4,033
이자원가 ¹⁾ (C)	1,021	1,113
과거근무원가 (D)	-	-
퇴직수당비용 소계 (E=B+C+D)	5,238	5,146
보험수리적손익 ²⁾ (F)	299	124
퇴직수당충당부채 설정액 (G=E+F)	5,536	5,270
퇴직수당지급액 (H)	3,128	2,864
기말잔액 (I=A+G-H)	59,115	56,707

1) 2021회계연도 퇴직수당충당부채 × 이자율* = 5조 6,707억 원 × 1.80%

* 이자율: 2021회계연도 연금충당부채 평가시 2022년에 적용한 할인율

2) 보험수리적 가정과 실제의 차이, 보험수리적 가정의 변화 등으로 인한 연금충당부채의 현재가치의 증감액

[부록] 주요 인구통계적 가정의 세부 적용내역

1. 전역자 관련 가정

1.1 정상전역자 관련 가정

- 전역자의 복무기간이 19.5년 이상이면 연금수급권자, 19.5년 미만이면 일시금수급권자이므로 전역자를 복무기간별 비율에 따라 구분합니다.
- 19.5년 미만 복무한 전역자의 경우 5년 이상/미만 복무 여부에 따라 퇴직일시금 산정방식이 상이합니다.
- 19.5년 이상 복무한 정상전역자는 퇴역연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 퇴역연금일시금 중 한 가지 급여를 선택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전역 후 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경우 전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수급하므로 전역한 해의 평균연금지급개월수가 필요합니다.
- 19.5년 이상 복무한 정상전역자 중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자는 본인의 복무기간 중 일정기간은 연금으로 수급하고, 나머지 기간은 일시금으로 수급하므로 평균공제복무연수가 필요합니다.
- 19.5년 이상 복무한 정상전역자 중 연금(퇴역연금,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선택한 자는 전역 당시 연령에 따라 해당 연령의 신규 퇴역연금수급자가 됩니다.

<정상전역자 관련 가정 1>

계급	복무집단별 인원비율			복무집단별 평균근속연수			평균연령
	19.5이상	5~19.5	5미만	19.5이상	5~19.5	5미만	
대장	1.000000	0.000000	0.000000	36.79	-	-	59
중장	1.000000	0.000000	0.000000	35.22	-	-	58
소장	1.000000	0.000000	0.000000	33.76	-	-	56
준장	1.000000	0.000000	0.000000	32.08	-	-	55
대령	1.000000	0.000000	0.000000	32.55	-	-	55
중령	0.995798	0.004202	0.000000	28.84	16.00	-	51
소령	0.802452	0.192098	0.005450	21.68	14.79	3.00	45
대위	0.002604	0.607639	0.389757	20.00	8.11	3.10	43
중위	0.000000	0.004874	0.995126	-	5.71	2.52	-
소위	0.000000	0.000000	1.000000	-	-	0.81	-
준위	0.998024	0.001976	0.000000	31.49	13.78	-	54
원사	1.000000	0.000000	0.000000	32.82	-	-	53
상사	0.847826	0.152174	0.000000	25.18	16.05	-	45
중사	0.018896	0.941043	0.040061	21.33	6.72	4.06	42
하사	0.000000	0.088117	0.911883	-	5.61	3.88	-

<정상전역자 관련 가정 2>

계급	19.5이상 연금선택률			공제연수	평균연금 지급개월수
	연금	공제	일시금	19.5이상	19.5이상
대장	1.000000	0.000000	0.000000	-	6
중장	1.000000	0.000000	0.000000	-	6
소장	1.000000	0.000000	0.000000	-	6
준장	1.000000	0.000000	0.000000	-	6
대령	0.980392	0.011765		9.09	6
중령	0.983122	0.014768		6.05	6
소령	0.949066	0.037351		1.68	6
대위	1.000000	0.000000	0.000000	-	6
중위	-	-	-	-	-
소위	-	-	-	-	-
준위	0.964356	0.027723		7.09	6
원사	0.921839	0.057471		9.15	6
상사	0.846154	0.067061		5.18	6
중사	0.780000	0.080000		0.96	6
하사	-	-	-	-	-

1.2 일반사망전역자 관련 가정

- 전역자의 복무기간이 19.5년 이상이면 연금수급권자, 19.5년 미만이면 일시금 수급권자이므로 전역자를 복무기간별 비율에 따라 구분합니다.
- 19.5년 미만 복무한 전역자의 경우 5년 이상/미만 복무 여부에 따라 유족일시금 산정방식이 상이합니다.
- 19.5년 이상 복무한 일반사망전역자는 퇴역유족연금, 퇴역유족연금일시금 중 한 가지 급여를 선택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전역 후 연금을 수급하게 되는 경우 전역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금을 수급하므로 전역한 해의 평균연금지급개월수가 필요합니다.
- 19.5년 이상 복무한 일반사망전역자 중 퇴역유족연금을 선택한 자의 유족의 연령은 일반사망전역자의 연령에 의해 결정됩니다.
- 19.5년 미만 복무한 일반사망전역자 중 유족이 존재하면 유족일시금을, 유족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유족특례급여를 지급하므로 19.5년 미만 복무 전역자에 대한 유족존재율이 필요합니다.
- 19.5년 이상 복무한 일반사망전역자의 유족에게 민법상 유족의 우선순위에 따라 퇴역유족연금을 지급하므로 각 유족형태별 전환율이 필요합니다.
- 유족은 전환 당시 연령에 따라 해당 연령의 신규 퇴역유족연금수급자가 됩니다.

<일반사망전역자 관련 가정 1>

계급	총전역 인원수	복무집단별 인원비율			복무집단별 평균근속연수		
		19.5이상	5~19.5	5미만	19.5이상	5~19.5	5미만
대장	0	-	-	-	-	-	-
중장	0	-	-	-	-	-	-
소장	0	-	-	-	-	-	-
준장	0	-	-	-	-	-	-
대령	2	1.000000	0.000000	0.000000	28.31	-	-
중령	2	0.500000	0.500000	0.000000	26.48	16.00	-
소령	3	0.333333	0.666667	0.000000	21.73	14.43	-
대위	5	0.000000	0.000000	1.000000	-	-	4.18
중위	2	0.000000	0.000000	1.000000	-	-	1.68
소위	0	-	-	-	-	-	-
준위	3	1.000000	0.000000	0.000000	30.51	-	-
원사	9	1.000000	0.000000	0.000000	27.52	-	-
상사	17	0.647059	0.352941	0.000000	23.39	16.63	-
중사	11	0.000000	0.000000	1.000000	-	-	3.99
하사	9	0.000000	0.000000	1.000000	-	-	2.39

<일반사망전역자 관련 가정 2>

계급	19.5이상 연금선택률			평균연령 19.5이상	19.5이상 유족전환율		
	연금	일시금	무유족		배우자	자녀	부모
대장	-	-	-	-	-	-	-
중장	-	-	-	-	-	-	-
소장	-	-	-	-	-	-	-
준장	-	-	-	-	-	-	-
대령	1.000000	0.000000	0.000000	52	1.000000	0.000000	0.000000
중령	1.000000	0.000000	0.000000	50	1.000000	0.000000	0.000000
소령	1.000000	0.000000	0.000000	45	1.000000	0.000000	0.000000
대위	-	-	-	-	-	-	-
중위	-	-	-	-	-	-	-
소위	-	-	-	-	-	-	-
준위	1.000000	0.000000	0.000000	50	1.000000	0.000000	0.000000
원사	0.888889	0.111111	0.000000	48	1.000000	0.000000	0.000000
상사	0.727273	0.272727	0.000000	43	1.000000	0.000000	0.000000
중사	-	-	-	-	-	-	-
하사	-	-	-	-	-	-	-

<일반사망전역자 관련 가정 3>

계급	19.5이상 유족형태별 평균연령			5~19.5 유족존재율		5미만 유족존재율		평균연금 지급개월수
	배우자	자녀	부모	유족	무유족	유족	무유족	19.5이상
대장	-	-	-	-	-	-	-	-
중장	-	-	-	-	-	-	-	-
소장	-	-	-	-	-	-	-	-
준장	-	-	-	-	-	-	-	-
대령	50.00	-	-	-	-	-	-	6
중령	48.00	-	-	1.000000	0.000000	-	-	6
소령	43.00	-	-	1.000000	0.000000	-	-	6
대위	-	-	-	-	-	1.000000	0.000000	-
중위	-	-	-	-	-	1.000000	0.000000	-
소위	-	-	-	-	-	-	-	-
준위	48.00	-	-	-	-	-	-	6
원사	46.00	-	-	-	-	-	-	6
상사	41.00	-	-	1.000000	0.000000	-	-	6
중사	-	-	-	-	-	1.000000	0.000000	-
하사	-	-	-	-	-	1.000000	0.000000	-

1.3 상이전역자 관련 가정

- 19.5년 이상 복무 전역자의 경우 퇴역연금 선택 가능하므로 상이전역자는 19.5년 이상/미만으로 구분합니다.
- 19.5년 이상 복무 전역자의 경우 상이연금 대신 퇴역연금을 선택하여 수급할 수 있으나 상이전역자 중 퇴역연금을 선택한 자에 대한 통계자료 추출이 불가능하므로 모든 상이전역자는 상이연금을 선택하여 수급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 상이연금은 최종기준소득월액에 상이등급별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상이전역자 관련 가정 1>

계급	총전역 인원수	복무집단별 인원비율		복무집단별 평균근속연수		19.5이상 연금선택률	
		19.5이상	19.5미만	19.5이상	19.5미만	상이연금	퇴역연금
대장	0	-	-	-	-	-	-
중장	0	-	-	-	-	-	-
소장	0	-	-	-	-	-	-
준장	0	-	-	-	-	-	-
대령	0	-	-	-	-	-	-
중령	0	-	-	-	-	-	-
소령	3	0.500000	0.500000	21.30	14.00	1.000000	0.000000
대위	3	0.000000	1.000000	-	5.55	-	-
중위	0	-	-	-	-	-	-
소위	0	-	-	-	-	-	-
준위	0	-	-	-	-	-	-
원사	1	1.000000	0.000000	27.52	-	1.000000	0.000000
상사	3	1.000000	0.000000	23.73	-	1.000000	0.000000
중사	7	0.000000	1.000000	-	6.51	-	-
하사	4	0.000000	1.000000	-	2.59	-	-

<상이전역자 관련 가정 2>

계급	평균상이등급		평균연령		평균연금지급개월수	
	19.5이상	19.5미만	19.5이상	19.5미만	19.5이상	19.5미만
대장	-	-	-	-	-	-
중장	-	-	-	-	-	-
소장	-	-	-	-	-	-
준장	-	-	-	-	-	-
대령	-	-	-	-	-	-
중령	-	-	-	-	-	-
소령	5.10	5.10	44	37	6	6
대위	-	5.32	-	32	-	6
중위	-	-	-	-	-	-
소위	-	-	-	-	-	-
준위	-	-	-	-	-	-
원사	5.00	-	48	-	6	-
상사	3.87	-	45	-	6	-
중사	-	5.43	-	28	-	6
하사	-	5.00	-	23	-	6

1.4 공무사망전역자 관련 가정

- 19.5년 이상/미만 복무 여부에 따라 순직유족연금 산정방식이 상이합니다.
- 19.5년 이상 복무한 공무사망전역자의 유족에게 민법상 유족의 우선순위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므로 각 유족형태별 전환율이 필요합니다.
- 19.5년 미만 복무한 공무사망전역자의 유족에게 민법상 유족의 우선순위에 따라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므로 각 유족형태별 전환율이 필요합니다.
- 유족은 전환 당시 연령에 따라 해당 연령의 신규 순직유족연금 수급자가 됩니다.

<공무사망전역자 관련 가정 1>

계급	총전역 인원수	복무집단별 인원비율		복무집단별 평균근속연수		평균연령	
		19.5이상	19.5미만	19.5이상	19.5미만	19.5이상	19.5미만
대장	0	-	-	-	-	-	-
중장	0	-	-	-	-	-	-
소장	0	-	-	-	-	-	-
준장	0	-	-	-	-	-	-
대령	1	1.000000	0.000000	28.50	-	52	-
중령	1	1.000000	0.000000	28.00	-	50	-
소령	2	0.000000	1.000000	-	17.37	-	41
대위	7	0.000000	1.000000	-	6.56	-	32
중위	5	0.000000	1.000000	-	2.50	-	26
소위	3	0.000000	1.000000	-	0.80	-	24
준위	1	0.500000	0.500000	26.46	10.13	49	46
원사	2	1.000000	0.000000	25.14	-	45	-
상사	10	0.777778	0.222222	25.52	16.10	45	37
중사	10	0.000000	1.000000	-	4.00	-	28
하사	13	0.000000	1.000000	-	1.59	-	22

<공무사망전역자 관련 가정 2>

계급	19.5이상 유족전환율				19.5미만 유족전환율			
	배우자	자녀	부모	무유족	배우자	자녀	부모	무유족
대장	-	-	-	-	-	-	-	-
중장	-	-	-	-	-	-	-	-
소장	-	-	-	-	-	-	-	-
준장	-	-	-	-	-	-	-	-
대령	1.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	-	-	-
중령	1.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	-	-	-
소령	-	-	-	-	1.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대위	-	-	-	-	0.637963	0.000000	0.362037	0.000000
중위	-	-	-	-	0.000000	0.000000	1.000000	0.000000
소위	-	-	-	-	0.000000	0.000000	1.000000	0.000000
준위	1.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1.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원사	1.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	-	-	-
상사	1.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1.000000	0.000000	0.000000	0.000000
중사	-	-	-	-	0.285714	0.000000	0.714286	0.000000
하사	-	-	-	-	0.000000	0.000000	1.000000	0.000000

<공무사망전역자 관련 가정 3>

계급	19.5이상 유족형태별 평균연령			19.5미만 유족형태별 평균연령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	자녀	부모
대장	-	-	-	-	-	-
중장	-	-	-	-	-	-
소장	-	-	-	-	-	-
준장	-	-	-	-	-	-
대령	50	-	-	-	-	-
중령	48	-	-	-	-	-
소령	-	-	-	39	-	-
대위	-	-	-	30	-	58
중위	-	-	-	-	-	52
소위	-	-	-	-	-	50
준위	47	-	-	44	-	-
원사	43	-	-	-	-	-
상사	43	-	-	35	-	-
중사	-	-	-	26	-	54
하사	-	-	-	-	-	48

<공무사망전역자 관련 가정 4>

계급	평균연금지급개월수	
	19.5이상	19.5미만
대장	-	-
중장	-	-
소장	-	-
준장	-	-
대령	6	-
중령	6	-
소령	-	6
대위	-	6
중위	-	6
소위	-	6
준위	6	6
원사	6	-
상사	6	6
중사	-	6
하사	-	6

1.5 연계전역자 관련 가정

<연계전역자 관련 가정>

계급	전역인원수	평균근속연수	평균연령
대장	0.00	-	-
중장	0.00	-	-
소장	0.00	-	-
준장	0.00	-	-
대령	0.00	-	-
중령	1.50	15.75	42
소령	13.60	14.32	39
대위	14.00	10.60	36
중위	8.75	2.90	28
소위	0.00	-	-
준위	0.00	-	-
원사	0.00	-	-
상사	0.00	-	-
중사	7.67	9.48	32
하사	1.33	3.78	27

2. 수급자 관련 가정

2.1 사망률

○ 산정방법

- 군인연금수급자의 2006년 1월~2019년 12월 데이터를 기초로, 2019년 3월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를 사용하여 사망률을 예측하였습니다.
- 사망률 실적치 보정은 비모수적 커널 회귀모형을 사용했고, 예측치는 일반국민 대비 상대비율을 주성분 분석을 이용해 산출하였습니다.
- 100세 사망률은 1로 가정하였습니다.

2.1.1 퇴역연금수급자의 연령별 사망률

<퇴역연금수급자의 연령별 사망률(2023년 적용값)>

연령	사망률	연령	사망률	연령	사망률
37	0.0005005984	58	0.0024518980	79	0.0244844134
38	0.0005429511	59	0.0025698530	80	0.0283707210
39	0.0005724634	60	0.0027062337	81	0.0330640364
40	0.0006011980	61	0.0029005780	82	0.0385665962
41	0.0006349269	62	0.0030972487	83	0.0446879766
42	0.0006905775	63	0.0033324140	84	0.0511869695
43	0.0007673721	64	0.0036192760	85	0.0584848707
44	0.0008533776	65	0.0039212238	86	0.0666187281
45	0.0009316667	66	0.0042186243	87	0.0756667741
46	0.0010078818	67	0.0045109734	88	0.0856921981
47	0.0010927894	68	0.0049225884	89	0.0967719460
48	0.0011913190	69	0.0056628308	90	0.1089671754
49	0.0012976337	70	0.0067867509	91	0.1223589327
50	0.0014165334	71	0.0081634315	92	0.1370120289
51	0.0015320630	72	0.0096092360	93	0.1529927657
52	0.0016543407	73	0.0110374937	94	0.1703625801
53	0.0017779833	74	0.0125046428	95	0.1891776707
54	0.0018929374	75	0.0141568478	96	0.2094886255
55	0.0020139916	76	0.0161109412	97	0.2313203091
56	0.0021503567	77	0.0184629920	98	0.2547036440
57	0.0023059901	78	0.0212387140	99	0.2796423379

2.1.2 상이연금수급자의 연령별 사망률

<상이연금수급자의 연령별 사망률(2023년 적용값)>

연령	사망률	연령	사망률	연령	사망률
22	0.0036648983	48	0.0220885258	74	0.0754610231
23	0.0039169525	49	0.0234103642	75	0.0785980518
24	0.0042015755	50	0.0248033702	76	0.0818116239
25	0.0045191444	51	0.0261605194	77	0.0851203774
26	0.0048700499	52	0.0275088238	78	0.0885615359
27	0.0052546970	53	0.0289932145	79	0.0921108362
28	0.0056735046	54	0.0305195176	80	0.0958173377
29	0.0061269057	55	0.0321128911	81	0.0996123860
30	0.0066153482	56	0.0337202303	82	0.1035509019
31	0.0071392944	57	0.0353533872	83	0.1076144037
32	0.0076992215	58	0.0370999699	84	0.1117794323
33	0.0082956218	59	0.0389289694	85	0.1160379896
34	0.0089290029	60	0.0407859319	86	0.1203859987
35	0.0095998877	61	0.0426599953	87	0.1248538268
36	0.0103088149	62	0.0447657919	88	0.1294197086
37	0.0110563390	63	0.0469107474	89	0.1340927490
38	0.0119560501	64	0.0491366705	90	0.1509911570
39	0.0126330660	65	0.0513360829	91	0.1695475428
40	0.0135844973	66	0.0536569192	92	0.1898517117
41	0.0144737728	67	0.0560047717	93	0.2119955357
42	0.0154593993	68	0.0583565041	94	0.2360641449
43	0.0164266811	69	0.0609964618	95	0.2621354116
44	0.0174639091	70	0.0637685200	96	0.2902794336
45	0.0185333326	71	0.0666219873	97	0.3205306643
46	0.0197433103	72	0.0695150817	98	0.3529319519
47	0.0209222466	73	0.0724801926	99	0.3874884340

2.1.3 유족연금수급자의 연령별 사망률

<유족연금수급자의 연령별 사망률(2023년 적용값)>

연령	사망률	연령	사망률	연령	사망률
7	0.0000496876	38	0.0005366257	69	0.0044948455
8	0.0000496876	39	0.0005565008	70	0.0049561901
9	0.0000596251	40	0.0005763758	71	0.0054202730
10	0.0000496876	41	0.0006061883	72	0.0059158015
11	0.0000496876	42	0.0006360009	73	0.0064569650
12	0.0000596251	43	0.0006856885	74	0.0071011986
13	0.0000795001	44	0.0007254385	75	0.0079135140
14	0.0000993751	45	0.0007651886	76	0.0090084504
15	0.0001093127	46	0.0008248137	77	0.0105362988
16	0.0001192502	47	0.0009043138	78	0.0126639122
17	0.0001291877	48	0.0009738764	79	0.0153303792
18	0.0001391252	49	0.0010533765	80	0.0182508725
19	0.0001590002	50	0.0011328766	81	0.0211845401
20	0.0001788752	51	0.0012123767	82	0.0241564818
21	0.0001987503	52	0.0012819393	83	0.0279928367
22	0.0002086878	53	0.0013415644	84	0.0324995034
23	0.0002186253	54	0.0014011895	85	0.0377656210
24	0.0002285628	55	0.0014707521	86	0.0438353050
25	0.0002285628	56	0.0015701272	87	0.0506607701
26	0.0002186253	57	0.0016993149	88	0.0582947453
27	0.0002285628	58	0.0018185650	89	0.0667958183
28	0.0002484378	59	0.0019378152	90	0.0762108590
29	0.0002683129	60	0.0020670029	91	0.0865925966
30	0.0003080629	61	0.0022359406	92	0.0979761836
31	0.0003378755	62	0.0024346909	93	0.1103909137
32	0.0003676880	63	0.0022962237	94	0.1238660810
33	0.0003776255	64	0.0023561040	95	0.1384016853
34	0.0003975006	65	0.0026777256	96	0.1539918680
35	0.0004273131	66	0.0030975666	97	0.1706131939
36	0.0004571256	67	0.0035428676	98	0.1882012165
37	0.0004968757	68	0.0040271313	99	0.2066973483

2.2 유족전환율

○ 산정방법

- 사망자의 연령과 유족형태별(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무유족) 전환비율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회귀식을 설정하여 산정하였습니다.
- 부모, 손자녀, 조부모로 전환되는 경우는 실적치가 없으므로 연금종류에 관계없이 전환율을 0으로 가정하였습니다.

2.2.1 퇴역연금 사망자의 배우자 전환율

<퇴역연금 사망자의 배우자 전환율>

연령	배우자 전환율	연령	배우자 전환율	연령	배우자 전환율
37	0.614436	59	0.970310	81	0.848099
38	0.643292	60	0.973215	82	0.834964
39	0.671024	61	0.975141	83	0.821258
40	0.697596	62	0.976117	84	0.806980
41	0.722981	63	0.976173	85	0.792127
42	0.747151	64	0.975337	86	0.776692
43	0.770090	65	0.973637	87	0.760668
44	0.791781	66	0.971101	88	0.744042
45	0.812216	67	0.967756	89	0.726799
46	0.831390	68	0.963627	90	0.708921
47	0.849302	69	0.958739	91	0.690388
48	0.865956	70	0.953117	92	0.671172
49	0.881360	71	0.946781	93	0.651243
50	0.895523	72	0.939755	94	0.630568
51	0.908460	73	0.932056	95	0.609107
52	0.920188	74	0.923703	96	0.586813
53	0.930727	75	0.914713	97	0.563634
54	0.940098	76	0.905101	98	0.539512
55	0.948325	77	0.894879	99	0.514380
56	0.955432	78	0.884060	100	0.488159
57	0.961447	79	0.872652		
58	0.966397	80	0.860663		

2.2.2 퇴역연금 사망자의 자녀 전환율

<퇴역연금 사망자의 자녀 전환율>

연령	자녀 전환율	연령	자녀 전환율	연령	자녀 전환율
37	0.213468	59	0.007415	81	0.014596
38	0.196916	60	0.004840	82	0.016369
39	0.181059	61	0.002692	83	0.018122
40	0.165910	62	0.000947	84	0.019836
41	0.151476	63	0.000000	85	0.021496
42	0.137763	64	0.000000	86	0.023084
43	0.124772	65	0.000000	87	0.024584
44	0.112503	66	0.000000	88	0.025978
45	0.100952	67	0.000000	89	0.027248
46	0.090112	68	0.000000	90	0.028377
47	0.079975	69	0.000000	91	0.029346
48	0.070530	70	0.000000	92	0.030134
49	0.061763	71	0.000000	93	0.030722
50	0.053659	72	0.000538	94	0.031088
51	0.046202	73	0.001716	95	0.031209
52	0.039374	74	0.003034	96	0.031061
53	0.033154	75	0.004472	97	0.030618
54	0.027523	76	0.006011	98	0.029851
55	0.022459	77	0.007633	99	0.028730
56	0.017939	78	0.009320	100	0.027222
57	0.013941	79	0.011055	/	
58	0.010441	80	0.012819		

2.2.3 퇴역연금 사망자의 무유족 전환율

<퇴역연금 사망자의 무유족 전환율>

연령	무유족 전환율	연령	무유족 전환율	연령	무유족 전환율
37	0.172096	59	0.022275	81	0.137305
38	0.159792	60	0.021945	82	0.148667
39	0.147917	61	0.022167	83	0.160620
40	0.136494	62	0.022936	84	0.173184
41	0.125543	63	0.023827	85	0.186377
42	0.115086	64	0.024663	86	0.200224
43	0.105138	65	0.026363	87	0.214748
44	0.095716	66	0.028899	88	0.229980
45	0.086832	67	0.032244	89	0.245953
46	0.078498	68	0.036373	90	0.262702
47	0.070723	69	0.041261	91	0.280266
48	0.063514	70	0.046883	92	0.298694
49	0.056877	71	0.053219	93	0.318035
50	0.050818	72	0.059707	94	0.338344
51	0.045338	73	0.066228	95	0.359684
52	0.040438	74	0.073263	96	0.382126
53	0.036119	75	0.080815	97	0.405748
54	0.032379	76	0.088888	98	0.430637
55	0.029216	77	0.097488	99	0.456890
56	0.026629	78	0.106620	100	0.484619
57	0.024612	79	0.116293	/	
58	0.023162	80	0.126518		

2.2.4 상이연금 사망자의 배우자 전환율

<상이연금 사망자의 배우자 전환율>

연령	배우자 전환율	연령	배우자 전환율	연령	배우자 전환율
22	0.000000	49	0.855965	76	0.986763
23	0.000000	50	0.873905	77	0.988854
24	0.000000	51	0.890422	78	0.984012
25	0.000000	52	0.905540	79	0.978062
26	0.011047	53	0.919291	80	0.967469
27	0.067950	54	0.931709	81	0.955466
28	0.122444	55	0.942833	82	1.000000
29	0.174691	56	0.952708	83	1.000000
30	0.224825	57	0.961381	84	1.000000
31	0.272963	58	0.968905	85	1.000000
32	0.319201	59	0.975337	86	1.000000
33	0.363618	60	0.978226	87	1.000000
34	0.406280	61	0.978381	88	1.000000
35	0.447242	62	0.978008	89	1.000000
36	0.486546	63	0.977226	90	1.000000
37	0.524228	64	0.976151	91	1.000000
38	0.560314	65	0.974905	92	1.000000
39	0.594827	66	0.973611	93	1.000000
40	0.627783	67	0.972394	94	1.000000
41	0.659195	68	0.971379	95	1.000000
42	0.689072	69	0.970696	96	1.000000
43	0.717423	70	0.970478	97	1.000000
44	0.744256	71	0.970858	98	1.000000
45	0.769579	72	0.971974	99	1.000000
46	0.793400	73	0.973970	100	1.000000
47	0.815730	74	0.976995		
48	0.836580	75	0.981205		

2.2.5 상이연금 사망자의 자녀 전환율

<상이연금 사망자의 자녀 전환율>

연령	자녀 전환율	연령	자녀 전환율	연령	자녀 전환율
22	0.000000	49	0.055500	76	0.000000
23	0.000000	50	0.050297	77	0.004590
24	0.000000	51	0.044930	78	0.012654
25	0.000000	52	0.039451	79	0.021938
26	0.000000	53	0.033908	80	0.032531
27	0.000000	54	0.028351	81	0.044534
28	0.000000	55	0.022830	82	0.000000
29	0.000000	56	0.017395	83	0.000000
30	0.000000	57	0.012095	84	0.000000
31	0.000000	58	0.006979	85	0.000000
32	0.074913	59	0.002094	86	0.000000
33	0.079297	60	0.000000	87	0.000000
34	0.082784	61	0.000000	88	0.000000
35	0.085418	62	0.000000	89	0.000000
36	0.087239	63	0.000000	90	0.000000
37	0.088290	64	0.000000	91	0.000000
38	0.088608	65	0.000000	92	0.000000
39	0.088234	66	0.000000	93	0.000000
40	0.087208	67	0.000000	94	0.000000
41	0.085570	68	0.000000	95	0.000000
42	0.083360	69	0.000000	96	0.000000
43	0.080620	70	0.000000	97	0.000000
44	0.077392	71	0.000000	98	0.000000
45	0.073721	72	0.000000	99	0.000000
46	0.069650	73	0.000000	100	0.000000
47	0.065225	74	0.000000		
48	0.060492	75	0.000000		

2.2.6 상이연금 사망자의 부모 전환율

<상이연금 사망자의 부모 전환율>

연령	부모 전환율	연령	부모 전환율	연령	부모 전환율
22	1.000000	49	0.079116	76	0.004139
23	1.000000	50	0.067418	77	0.000000
24	1.000000	51	0.057149	78	0.000000
25	1.000000	52	0.048224	79	0.000000
26	0.977527	53	0.040558	80	0.000000
27	0.915969	54	0.034063	81	0.000000
28	0.857709	55	0.028650	82	0.000000
29	0.802494	56	0.024229	83	0.000000
30	0.750106	57	0.020711	84	0.000000
31	0.700353	58	0.018003	85	0.000000
32	0.578154	59	0.016014	86	0.000000
33	0.528808	60	0.014652	87	0.000000
34	0.482553	61	0.013824	88	0.000000
35	0.439235	62	0.013439	89	0.000000
36	0.398714	63	0.013404	90	0.000000
37	0.360864	64	0.013630	91	0.000000
38	0.325569	65	0.014025	92	0.000000
39	0.292723	66	0.014500	93	0.000000
40	0.262226	67	0.014966	94	0.000000
41	0.233985	68	0.015334	95	0.000000
42	0.207912	69	0.015515	96	0.000000
43	0.183920	70	0.015424	97	0.000000
44	0.161927	71	0.014970	98	0.000000
45	0.141852	72	0.014067	99	0.000000
46	0.123614	73	0.012625	100	0.000000
47	0.107132	74	0.010552	/	
48	0.092326	75	0.007756		

2.2.7 상이연금 사망자의 무유족 전환율

<상이연금 사망자의 무유족 전환율>

연령	무유족 전환율	연령	무유족 전환율	연령	무유족 전환율
22	0.000000	49	0.009419	76	0.009098
23	0.000000	50	0.008380	77	0.006556
24	0.000000	51	0.007499	78	0.003334
25	0.000000	52	0.006785	79	0.000000
26	0.011426	53	0.006243	80	0.000000
27	0.016081	54	0.005877	81	0.000000
28	0.019847	55	0.005687	82	0.000000
29	0.022815	56	0.005668	83	0.000000
30	0.025069	57	0.005813	84	0.000000
31	0.026684	58	0.006113	85	0.000000
32	0.027732	59	0.006555	86	0.000000
33	0.028277	60	0.007122	87	0.000000
34	0.028383	61	0.007795	88	0.000000
35	0.028105	62	0.008553	89	0.000000
36	0.027501	63	0.009370	90	0.000000
37	0.026618	64	0.010219	91	0.000000
38	0.025509	65	0.011070	92	0.000000
39	0.024216	66	0.011889	93	0.000000
40	0.022783	67	0.012640	94	0.000000
41	0.021250	68	0.013287	95	0.000000
42	0.019656	69	0.013789	96	0.000000
43	0.018037	70	0.014098	97	0.000000
44	0.016425	71	0.014172	98	0.000000
45	0.014848	72	0.013959	99	0.000000
46	0.013336	73	0.013405	100	0.000000
47	0.011913	74	0.012453		
48	0.010602	75	0.011039		

3. 재직자의 인력운영 관련 가정

3.1 운영률 및 진급평균근속연수

<계급별 운영률(2023년 적용값) 및 진급평균근속연수>

계급	운영률	계급	진급평균근속연수
대장	1.000000	대장	34.16
중장	1.000000	중장	32.11
소장	0.990476	소장	30.00
준장	0.995413	준장	28.38
대령	1.000000	대령	24.12
중령	1.000000	중령	18.05
소령	0.992992	소령	10.96
대위	0.997000	대위	3.15
중위	0.981030	중위	1.00
소위	0.980972	소위	-
준위	0.945048	준위1*	25.00
		준위2*	16.00
		준위3*	-
		준위4*	25.00
원사	0.995010	원사	24.00
상사	0.965992	상사	13.00
중사	0.984998	중사	4.00
하사	0.889989	하사	-

* 준위1~4 구분

- 준위1: 육군 기술행정 특기자 중 원사에서 진급한 자
- 준위2: 육군 기술행정 특기자 중 상사 이하 계급에서 진급한 자
- 준위3: 육군 항공운항 특기자
- 준위4: 해공군

③ 사립학교교직원연금(교육부)

1. 연금사업의 개요(Pension in general)

1) 연금사업 특성 및 연혁

가. 제도의 특성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1조는 사학연금제도의 목적이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임을 밝히고 있다. 사립학교 교직원과 국·공립학교 교직원간의 처우 형평성 유지 및 교직원 생활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 1975년에 도입된 사학연금제도는 사회연대성의 원칙과 보험의 원칙을 적용하여 사회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사회경제제도로서 사회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나. 제도의 주요내용별 연혁

[표 1-1] 사학연금제도의 주요내용별 개정 연혁

[적용대상]

연 도	내 용
1975. 1. 1	○ 사립학교 교원(명예교수, 시간강사, 조건부로 임명된 자 제외)
1978. 1. 1	○ 사립학교 사무직원(임시, 조건부 임명자 및 보수를 받지 않는 자 제외)
1981. 3.20	○ 특수학교 교직원
1984. 1. 1	○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과 연구요원
2005. 5.31	○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의 사무직원 ○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직원 ○ 공단의 임·직원('12.1.26이후 임명 임원부터 제외)
2006. 3.24	○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직원
2011.12.28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교직원
2013. 1.18	○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교직원
2016. 3. 1	○ 서울대병원(치과병원) 및 국립대병원(치과병원) 임상교수요원 및 직원

[비용부담률]

연 도	내 용
1975. 1. 1	○ 개인 55/1000, 법인 35/55, 국가 20/55
1978. 1. 1	○ 개인 55/1000, 법인(교원 : 35/55, 직원 : 55/1000), 국가 20/55(교원분)
1980. 1. 1	○ 재해보상부담금 신설(해당 학교경영기관 별도 부담)
1983. 1. 1	○ 재해보상부담률 변경(1.5/55)
연 도	내 용
1985. 1. 1	○ 재해보상부담률 인하(1.0/55)
1996. 1. 1	○ 개인 65/1000, 법인(교원 : 40/65, 직원 : 65/1000), 국가 25/65(교원분)
1999. 1. 1	○ 개인 75/1000, 법인(교원 : 45/75, 직원 : 75/1000), 국가 30/75(교원분)
2001. 1. 1	○ 개인 85/1000, 법인(교원 : 50/85, 직원 : 85/1000), 국가 35/85(교원분) ○ 재해보상부담률 인상(2.5/55) <2002.1.1부터 시행>
2006. 1. 1	○ 병역복무기간 산입 시 사용자 부담금의 국가부담
2010. 1. 1	○ 개인 63/1000, 법인(교원 : 37.05/63, 직원 : 63/1000), 국가 25.95/63(교원분) ⇒ 2011년 : 6.7%, 2012년 : 7%
2014. 3. 1	○ 퇴직수당부담률 개정(대상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를 제외한 전 학교기관) ⇒ 분담률 - (학교경영기관) 퇴직수당 소요액의 100분의 40 - (공단) 236억원<중전과 동일>, - (국가) 퇴직수당 총 소요액에서 학교경영기관 및 공단 부담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016. 1. 1	○ 개인 80/1000, 법인(교원 : 47.05/80, 직원 : 80/1000), 국가 32.95/80(교원분) ⇒ 2017년 : 8.25%, 2018년 : 8.50%, 2019년 : 8.75%, 2020년 : 9.00%
2017. 1. 1	○ 36년 또는 정년초과 재직교직원 부담금 납부 제외

(주) 법인 교원분, 국가부담금, 재해보상부담금은 교직원 개인부담금 합계액에 대한 비율임

[재직기간]

연 도	내 용
1975. 1. 1	○ 교원으로 임용된 달부터 퇴직, 사망한 달까지의 연월수를 재직기간으로 인정 ○ 사립학교 재직기간 합산 인정 (퇴직 후 3년 이내 재임용) ○ 교원 재직기간 소급통산 인정('70.1.1~'74.12.31)
1976. 1. 1	○ 교육공무원 재직기간의 합산 인정 ○ 재직기간 상한을 30년으로 제한
1978. 1. 1	○ 사무직원의 소급통산 인정('73.1.1~'77.12.31)
1980. 1. 1	○ 재직기간 상한을 30년에서 33년으로 연장 ○ 교직원의 소급통산 기간을 1961.12.4까지 연장
1981. 3.20	○ 특수학교 교직원의 소급통산 인정
1983. 1. 1	○ 공무원 및 군인연금법 적용받은 전 재직기간의 합산 인정 ○ 임용 전 사병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및 군 입대휴직 전 기간 재직기간 인정
1984. 1. 1	○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의 교수, 연구요원의 소급통산 인정 ○ 소급통산 기간을 1948.8.15(정부수립일)까지 연장

1984. 7. 1	○ 타 법인 근무기간의 소급통산 인정
2001. 1. 1	○ 임용 전 사병복무기간 산입을 임의산입제로 전환
2005. 5.31	○ 대학원 설치 등 연구기관 사무직원, 평생교육시설 교직원 등의 소급통산 인정
2010. 1. 1	○ 재직기간 합산 특례 인정('96.1.1~'09.12.31) ○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미 수령기간 소급통산 기간에서 제외 ○ 퇴직수당 계산 시 재직기간 감축사유에 강등 추가

연 도	내 용
2013.11.23	○ 사무직원 노조 전임자 휴직시 그 전체기간 퇴직수당 재직기간으로 인정
2016. 1. 1	○ 재직기간 및 납부기간 상한 36년으로 연장 ⇒ 시행당시 재직자는 재직기간별 단계적 연장 - 21년 이상자33년, 17년 이 상자~21년 미만자34년, 15년 이상자~17년 미만자35년, 15년 미만자36년
2016.12.20	○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79.1.1~'92.5.31.) 재직기간 산입
2017. 1. 1	○ 재직기간 계산 : 교원 및 사무직원의 정년까지 ⇒ 정년 규정화 : [교원] 초·중등 62세, 대학 65세 [사무직원] 60세

[보수월액 또는 기준소득월액]

연 도	내 용
1975. 1. 1	○ 부담금 및 급여의 산정기초를 봉급월액으로 함
1980. 7. 1	○ 부담금 및 급여의 산정기초를 봉급월액에서 보수월액으로 변경함
1999. 1. 1	○ 연금산정기초의 변경(최종보수→3년 평균 보수월액)
2003. 2.24	○ 성과급적 연봉제 적용 교직원의 보수월액 산정방법 변경(직급, 호봉, 근무 연수 해당 봉급월액 상당+기말수당, 정근수당)
2010. 1. 1	○ 부담금 및 급여의 산정기초를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 ○ 연금 산정기초 변경(3년 평균 보수월액→전 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 ○ 소득상한 설정 - 부담금 및 연금액 상한 : 공무원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8배 - 기타 급여액 상한 · 교원 : 국립대총장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높은 금액 · 직원 : 일반직 2급 공무원의 기준소득월액 중 가장 높은 금액
2012. 1.26	○ 소득의 범위 조정 : 학교에서 지급받은 근로소득 중 부담금 및 급여산정을 위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수당 등은 교육부장관이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 기준소득월액의 하한 설정 ○ 기준소득월액 상한 감소 시 전년도 기준소득월액 적용
2013.11.23	○ 소득의 조사 등 자료 제공을 관계기관에 요청시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
2016. 1. 1	○ 연금산정 기준소득 소득재분배 기능 도입 - 전체지급률 중 지급률 1.0%, 재직기간 30년까지만 공무원 전체 평균소득 반영 ○ 기준소득 상한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의 1.6배로 하향 조정
2017. 1. 1	○ 연금법상 정년초과 근무기간도 평균기준소득월액 산정시 포함

[급여제도]

연 도	내 용
1975. 1. 1	○ 사학연금제도 도입
1980. 1. 1	○ 퇴직연금공제일시금 및 유족연금부가금제도 신설 ○ 퇴직연금액의 상한 인상(보수연액의 70%→75%)
1981. 5. 1	○ 순직부조금액을 보수월액의 36배로 통일

연 도	내 용
1983. 1. 1	○ 퇴직연금액의 상한 인상(보수연액의 75%→76%) ○ 직무상 요양기간을 1년에서 실제요양기간 2년으로 연장 ○ 재해부조금의 보수월액의 3배에서 6배 범위 내로 인상
1985. 1. 1	○ 상병수당, 분만수당 폐지 ○ 5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퇴직 및 유족급여 가산금제도 신설(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액의 20%) ○ 5년 미만 재직자의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 인상(개인부담금×재직월수+이자 → 퇴직시 보수월액×재직년수) ○ 교직원 및 교직원의 배우자·직계존속 사망에 대한 사망조위금제도 신설 ○ 유족연금특별부가금제도 신설
1986. 1. 1	○ 재해부조금 지급에 있어 대상주택 및 재해범위 확대
1988. 1. 1	○ 유족연금 지급률 인상(퇴직·장해연금의 50%→70%) ○ 국적 상실자에 대한 연금청산제도 실시
1988.12.29	○ 사망조위금 인상(교직원 사망 시 보수월액 1배→3배)
1991.10. 1	○ 5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퇴직 및 유족급여 가산금 인상(퇴직일시금 또는 퇴직연금일시금액의 20%→5년 이상 20%, 10년 이상 25%, 20년 이상 30%)
1996. 1. 1	○ 퇴직·유족급여가산제도의 폐지와 퇴직수당제도 신설 : 재직기간별로 보수월액의 10%~60% 지급, *1991.12.27 이전 퇴직자 가산금 합산 가능 ○ 퇴직연금수급자의 유족연금 1/2 감액 지급 ○ 조기퇴직연금제도 및 퇴직연금 지급개시연령제도 도입 ○ 퇴직연금 지급정지대상기관 확대('01년 시행)
2000. 1.12	○ 형벌 등에 의한 급여제한 사유가 해제됨에 따라 잔여금을 지급할 경우 원금만 지급하던 것을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
2001. 1. 1	○ 국가의 지원근거 신설 ○ 국가의 책임준비금 적립근거 마련 ○ 재해부조금·사망조위금을 재해보상기금에서 지급('02년) ○ 직무상요양 지급범위를 화상 등 특수한 치료비까지 확대 ○ 연금액 조정방법 변경(CPI기준으로 조정, 5년마다 정책조정) ○ 연금지급개시연령 적용대상 확대(기존 재직자까지) ○ 연금지급 정지대상 확대(공공기관 재취업→소득세법상 근로소득, 사업소득까지 확대 : 5년 이내 시행)
2003. 1. 1	○ 5년 미만자 퇴직일시금 인상(보수월액×재직기간×1.2)
2005. 9. 1	○ 연금액 조정방법 변경(조정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변경, 공무원보수와

2010. 1. 1	<p>CPI변동률±2%p 차이 내에서 조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간병비 및 보철구 수당 지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망조위금 지급대상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 : 본인, 배우자, 부모(배우자 부모 포함), 자녀 - 금액 : 기준소득월액의 0.65배 또는 1.95배(본인 사망) ○ 연금 지급률 인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균보수월액×2%→평균기준소득월액×재직기간별 적용 비율×1.9% ○ 연금지급 개시연령 변경(65세, 신규 임용자) ○ 유족연금 지급률 인하(70%→60%, 신규 임용자) ○ 연금액 조정방법 변경('10~'14 : 보수·물가 차이±3%p 내 조정, '15~ : CPI) ○ 형벌 등에 의한 급여제한 사유 구체화('09.1.1부터) : 직무와 관련 없는 과실 제외 등
------------	--

연 도	내 용
2011. 5.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조급여 산정기초의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해부조금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1.3~1.9배 - 사망조위금(가족 사망) : 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65%
2011.11.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미만 재직자 유족연금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 미만 근무자 :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2,600 - 20년 이상 근무자 : 사망 당시 기준소득월액의 1만분의 3,250
2013.10.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족연금 수급권자인 유족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의 나이 상향 (18세미만→19세미만) 조정
2016.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금 지급률 인하 : 1.9%→1.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년간 단계적[5년(연 0.022%) → 5년(연 0.01%)→10년(연 0.004%씩)] 인하 ○ 연금지급 개시연령 모든 재직자에 대해 단계적으로 65세로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년간 단계적 연장 : 2022년~2023년 61세 → 2024년~2026년 62세 → 2027년~2029년 63세 → 2030년~2032년 64세 → 2033년~ 65세 ○ 연금수급자 5년간('16~'20년) 연금액 인상 동결 ○ 연금액 전액정지 대상에 선거직 취임 및 정부 출자·출연기관 재취업시에도 포함하여 소득심사 강화 ○ 연금 수급요건 20년에서 10년으로 완화 ○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지급요건 : 10년 이상 ○ 퇴직(유족)일시금 지급요건 : 10년 미만 ○ 이혼시 분할연금 도입 : 재직기간 중 5년 이상 혼인기간에 대해 퇴직연금 또는 조기 퇴직연금을 균등하게 분할하여 그 배우자에게 지급 ○ 비직무상 장애연금 도입 : 비직무상 질병·장애시에도 지급(금액은 직무상 장애연금의 50% 수준) ○ 유족연금 지급률 70%에서 60%로 조정(현 유족연금수급자는 70% 유지)
2018. 3.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미만자의 급여를 퇴직연금일시금 산정공식 적용 ○ '공무원연금법'의 '공무원연금법' 및 '공무원 재해보상법' 분법으로 사학연금에 적용되는 각각의 해당규정을 준용 ○ 직무상유족연금 지급률 인상(38% + 유족 1인당(4명까지) 5% 가산) 및 최고·최저

2018. 9.21	보상기준 금액(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0%에서 160% 범위 내) 설정 ○ 직무상유족보상금 산정기준(공무원 전체 기준소득월액 평균액) 및 지급률(24배) 변경 ○ 용어 변경(장애, 유족연금, 재해부조금, 직무상요양비 ⇒ 장애, 퇴직 유족연금·직무상유족연금, 재난부조금, 요양급여 등) ○ 재할급여(재활운동비 및 심리상담비) 신설 ○ 사망조위금(본인) 인상(2배) 및 최고·최저 보상기준 금액(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50%에서 160% 범위 내) 설정 ○ 분할연금 수급요건 변경(5년 이상의 혼인기간에서 별거 또는 가출 등 제외) 및 선 청구제 도입
2019. 1.29	○ 퇴직(연금)일시금 및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의 분할제도(배우자였던 교
2019. 3. 5	직원의 퇴직급여 청구 전에 이혼한 경우) 신설
2019.12.10	○ 직무상 요양급여 본인일부 부담금 직접 지급
	○ 특수요양급여비용 산정기준 개정
2022.10.18	○ 급여청구절차 간소화
	○ 사무직원의 공무원연금법상 형벌 등에 따른 급여제한 예외규정 삭제
	○ 양육책임 불이행 유족 급여제한 제도 도입

2) 연금사업 현황

가. 학교기관 수 및 인원수

[표 1-2] 사학연금제도 가입현황

(단위 : 기관, 명,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학교기관 수	6,468 (△1.45)	6,209 (△4.00)	5,996 (△3.43)	5,845 (△2.52)	5,689 (△2.67)
당연 입의	2,362 4,106	2,360 3,849	2,360 3,636	2,356 3,489	2,354 3,335
교직원 수	320,326 (0.86)	323,697 (1.05)	327,864 (1.29)	330,322 (0.75)	333,231 (0.88)
교원 직원	169,093 151,233	163,245 160,452	159,900 167,964	156,632 173,690	152,832 180,399
퇴직자 수	34,074 (12.63)	34,672 (1.76)	33,099 (△4.54)	34,270 (3.54)	35,406 (3.31)
교원 직원	18,380 15,694	19,054 15,618	17,620 15,479	16,908 17,362	17,501 17,905
연금수급자 수	75,914 (9.67)	83,177 (9.57)	90,989 (9.39)	98,730 (8.50)	106,896 (8.27)

퇴직연금	67,607	73,831	80,594	87,273	94,086
유족연금	7,392	8,206	8,942	9,643	10,511
연계연금	785	1,001	1,307	1,661	2,143
장해연금	130	139	146	153	156
연금선택률	90.0	89.3	90.9	90.9	89.0

(주) ()는 증감률임

나. 급여지급 현황

[표 1-3] 급여종류별 지급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금급여	26,563	29,184	31,683	34,373	38,597
재해보상급여	464	459	465	448	521
퇴직수당	6,080	6,427	6,900	6,754	7,477
합 계	33,107	36,070	39,048	41,575	46,595
증 감 률	12.0	8.9	8.3	6.5	12.1

(주) 연금급여 : 퇴직급여, 유족급여, 연금이체급여, 연계급여 포함, 결산수치

다. 부담금 징수 현황

[표 1-4] 급여종류별 부담금 징수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연금부담금	31,330	33,052	35,091	35,955	36,406
재해보상부담금	690	730	777	794	806
퇴직수당부담금	6,020	6,337	6,770	6,653	7,364
합 계	38,040	40,119	42,638	43,402	44,576
증 감 률	8.8	5.5	6.3	1.8	2.7

3) 사학연금제도 가입대상 및 급여내용

가. 가입대상

사학연금제도 가입대상은 사학연금법이 당연히 적용되는지 아니면 학교기관의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따라 당연적용 대상과 임의적용 대상으로 구분된다. 당연적용 대상은 사립학교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특수학교 중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사무직원을 말하며, 임의적용 대상은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와 이를 설치·경영하는 학교경영기관에 근무하는 교원 및 사무직원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임의적용 대상에는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사립학교(유치원)의 교원 및 사무직원, 법률에 따라 고등학교과정 이하의 학교 또는 대학원을 설치·운영하는 연구기관의 교수요원, 연구요원 및 교직원,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또는 동법 제33조에 따른 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교원 및 사무직원, 공단 직원, 국가가 국립대학법인으로 설치하는 국립대학교의 교원, 직원 및 조교(공무원연금법 적용자 제외)가 있다. 2016년 3월1일부터는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및 국립대학병원 설치법과 서울대학교치과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에 따라 법인으로 설치한 서울대학교병원, 서울대학교치과병원, 국립대병원 및 국립대학치과병원의 임상교수요원과 직원이 새로운 사학연금 가입대상으로 확대되었다.

나. 급여의 종류

급여는 크게 재직 중 급여와 퇴직 후 급여로 구분된다. 교직원의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 및 재해에 대하여는 재직 중 급여를 지급하고, 교직원의 퇴직·장해 및 사망에 대하여는 퇴직 후 급여를 지급한다.

[표 1-5] 사학연금제도의 급여 종류

구 분		급여 종류
재직 중 급여		사망조위금, 재난부조금, 요양급여, 재활운동비, 심리상담비, 간병급여
퇴직 후 급여	퇴직급여	퇴직연금, 조기퇴직연금, 퇴직연금일시금, 퇴직연금공제일시금, 퇴직일시금, 분할연금, 분할연금일시금, 분할일시금
	퇴직유족급여	퇴직유족연금, 퇴직유족연금부가금, 퇴직유족연금특별부가금, 퇴직유족일시금, 퇴직유족연금일시금
	장해유족급여	장해유족연금, 직무상유족연금, 직무상유족보상금
	장해급여	장해연금, 장해일시금, 비직무상 장해연금, 비직무상 장해일시금
	퇴직수당	퇴직수당
	연계급여	연계퇴직연금, 연계퇴직유족연금

(주) 연계급여의 근거 법률 :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연계에 관한 법률」

4) 재원조달 및 비용부담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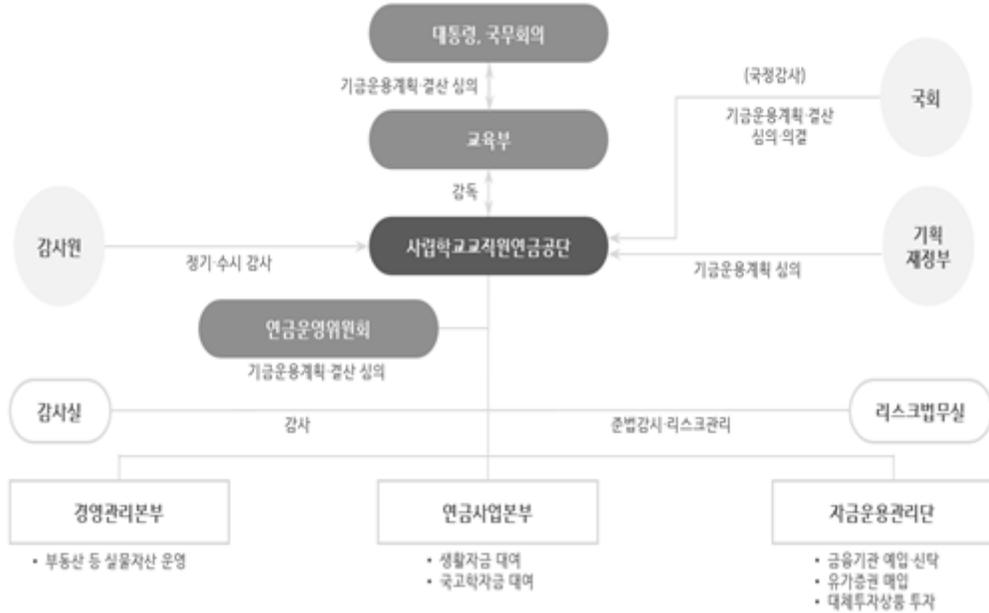
사학연금은 각출형제도를 채택하여 가입자인 사학교직원과 사용자인 학교경영기관 및 국가가 각각 일정률씩 공동으로 비용을 부담한 부담금과 적립된 기금의 운용수익으로 재원을 조달하고 있다. 다만, 재해보상급여에 대해서는 법인이 전액 부담하고 있고, 퇴직수당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서는 공단이 매년 236억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와 법인이 일부 또는 전액을 분담하는 비각출형제도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사학연금은 급여 수준이 급여산식에 따라 사전적으로 결정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한 재원조달은 사후적으로 결정되는 확정급여형설계방식을 취하고 있다.

[표 1-6] 사학연금 비용부담률 현황

부담금 종류		비용부담률		부담자
		교원	사무직원	
연금	개인부담금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90.0	기준소득월액의 1,000분의 90.0	교직원
	법인부담금	개인부담금의 9,000분의 5,294	개인부담금과 같은 금액	법인
	국가부담금	개인부담금의 9,000분의 3,706	-	국가
재해보상부담금		개인부담금 합계액의 454/10,000		법인
퇴직수당	공단부담금	1992년도 퇴직수당 비용으로 부담한 금액(연 236억원)		공단
	국가부담금	(공단부담분을 제외한) 초·중·고 국가 전액 / 대학 60%		국가
	법인부담금	대학 40%		법인

5) 관리감독 체계

[그림 1.1]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관리감독 체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3의 규정에 의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하 사학연금공단)이 관리·운용하고 있으며, 국가재정법 제74조에 의한 기금운용심의회로 연금운영위원회를 두어 기금운용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자산운용위원회가 국가재정법 제76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따른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다. 연금급여, 인건비 및 관리비 등을 포함한 전체 기금운용계획은 이사회 및 연금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교육부를 경유하여 기획재정부에서 최종안을 작성하며, 국무회의 심의 후 최종적으로 국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다.

공단의 주요사업은 크게 부담금의 징수, 제 급여의 결정과 지급, 사립학교 교직원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기금증식을 위한 예탁·신탁·유가증권 투자 및 안정성이 보장된 수익사업과 소유부동산을 이용하여 직접 운영하는 사업, 교직원 복지증진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가가 공단에 위탁하는 사업, 기타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관리에 부수되는 사업으로 구분된다.

2. 연금사업의 기금운용(Fund Management Section)

1) 기금의 조성 및 운용 현황

가. 기금조성 현황

[표 2-1] 기금조성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기 금		수 입	지 출	포괄손익 누 계액	조성액
	기금액	증가율				
2018년	182,846	0.4	40,526	40,909	1,138	755
2019년	204,940	12.1	52,920	34,498	3,671	22,093
2020년	229,566	12.0	49,113	33,606	9,120	24,627
2021년	257,659	12.2	57,679	36,295	6,709	28,093
2022년	237,607	△7.78	54,108	45,330	△28,830	△20,052

(주) 1. 포괄손익 :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자본조정 항목)

2. 2012년부터 국립대법인연금기금 (기금액 : 5,546원) 포함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운용

[표 2-2] 부문별 투자액과 비중

(단위 : 억원, %)

구 분	금융투자부문	대여사업부문	유형자산 등	기금 합계
액 수	210,956	19,792	6,859	237,607
비 중	88.8	8.3	2.9	100.0

(주) 2022년 말 현재

[표 2-3] 부문별 투자액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금융투자부문	대여사업부문	유형자산 등	기금 합계
2018년	158,889	19,551	4,406	182,846
2019년	180,187	19,032	5,721	204,940
2020년	205,191	19,210	5,165	229,566
2021년	230,703	20,425	6,531	257,659
2022년	210,956	19,792	6,859	237,607

[표 2-4] 금융투자자산의 부문별 투자액과 비중

(단위 : 억원, %)

구 분	채권부문	주식부문	대체투자부문	기타 부문	합계
액 수	74,218	84,446	53,306	3,398	215,368
비 중	34.5	39.2	24.7	1.6	100.0

(주) 연도말 기준 재해보상기금 등 포함

2) 기금운용 체계

가. 사학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법률 제2650호 : 1973.12.20.)에 근거하여 설립되었으며,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1조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부상·장해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설립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 사학연금공단 기금운용 조직

사학연금공단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자산배분 정책 등 의사결정과 효율적 투자 관리를 위하여 이사회, 연금운영위원회, 자산운용위원회, 리스크관리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기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 수탁자책임위원회 등 법적·자율적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그림 2.1] 사학연금 기금운용 조직

(2022. 12. 31. 기준)



[표 2-5] 기금운용 관련 제 위원회

구 분	연금운영 위원회	자산운용 위원회	리스크관리위 원회	투자심의 위원회	기금운용성과 평가위원회	수탁자책임 위원회
기 능 (목 적)	연금제도, 연금 재정계산, 기금 운용계획·결산 등 심의	자산운용에 관한 주요 의사결정사항 심의	자산운용 위험관리 실무에 대한 주요사항 심의	대체투자 및 신종 증권 투자 관련 주요사항 심의·의결	자금운용 관련 연간 성과평가, 인력성과평가 및 보상기준 등 심의	수탁자 책임 활동 이행 관련 주요사항 심의·의결
설치년도	2001년도	2005년도	2009년도	2008년도	2015년도	2021년
설치근거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제53조의4	국가재정법 제76조, 자산 운용지침 4.2.1, 자금 운용규칙 제9조	자산운용지침 4.3.1, 자금 운용규칙 제11조	자산운용지침 4.2.1, 자금 운용규칙 제10조	자산운용지침 4.3.1, 자금 운용규칙 제12조	자산운용지침 4.2 자금운용 규칙 제10조
성 격	심의기구	심의·의결기구	심의·의결 기구	심의·의결 기구	심의·의결 기구	심의·의결 기구
구 성 원	위원수	9명 (내부 2명, 외부 7명)	7명 (내부 2명, 외부 5명)	8명 (내부 3명, 외부 5명)	7명 (내부 2명, 외부 5명)	5명 (내부 1명, 외부 4명)
	위원장	이사장	경영관리 본부장	외부위원 중 호선	자금운용관리 단장	외부위원 중 호선

(주) 위원 수는 위원장 포함임

[그림 2.2] 기금운용 프로세스

구 분	내 용	비 고
자금운용관련 제 규정	자산운용지침(IPS), 자금운용규칙	자산운용위원회 심의 → 연금운영위원회 심의
기금운용계획	연금운영위원회	관련부처 협의, 정부 및 국회 승인
연간 자금운용계획	연간 투자규모, 자산군별 투자규모	총장기 전략적 자산배분안에 근거하여 수립
월간 자금운용계획	월 수입·지출 규모, 자산군별·상품별 투자규모 결정	자금운용계획 대비 실적 월간단위로 점검
자금운용	자금운용계획에 의거한 신종증권 대체자산 리스크점검, 리스크관리위원회, 투자심의위원회 심의	국내증권팀, 해외증권팀, 기업금융팀, 부동산인프라팀
자금운용 성과평가	일간·월간·연간 성과평가 기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 심의	기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 운영

3) 기금 투자관리

가. 기금운용 원칙

사학연금기금의 설치목적인 안정적 급여 지급을 위한 책임준비금을 확보하기 위해 안정성·유동성·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허용된 위험한도 내에서 기금 수익을 최대한 증대시킬 수 있도록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기금운용 자산군 분류

구 분	금융자산				실물자산	기타
	채권	주식	대체투자	단기자금		
기금운용 자산군	국내채권, 해외채권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대체, 해외대체	현금성	부동산(3개 회관)	교직원 자 금대여

다. 자산배분 전략

자산배분전략은 전략적 자산배분과 전술적 자산배분으로 구분된다. 전략적 자산배분(SAA : Strategic Asset Allocation)은 자산배분 모형을 통해 도출된 자산배분 대안 중 목표수익률, 허용위험한도 및 시장상황을 고려하여 자산군별 자산배분 비중을 결정하는 것으로, 중기 자금운용계획을 바탕으로 향후 5년의 기간에 대한 자산배분 목표를 설정한 후 현행 자산배분에서 중장기 전략적 자산배분(안)으로 조정하기 위한 연도별 이행 자산배분(안)을 설정하고 있다. 반면, 전술적 자산배분(TAA : Tactical Asset Allocation)은 시장상황과 운영여건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산배분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자산배분 비중 변동 허용범위 내에서 자산군별 배분비중을 조정하는 것으로, 전략적 자산배분의 이행 자산배분(안)을 기준으로 연간 자금운용계획 및 월간 자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고 있다.

허용 위험 한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향후 5년 동안의 Shortfall Risk ≤ 15.0% ⇒ 향후 5년 동안의 누적 운용수익률이 같은 기간의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Shortfall Risk)을 15% 이하로 함
----------------	---

자산 배분 수립 절차	자산배분은 중장기자산에 대해 자산배분 비중을 설정하는 과정으로 기금의 목표수익률과 허용위험한도 등을 기초로 하여 실행하고, 평균-분산 최적화(MVO : Mean-Variance Optimization) 모형 등을 통해 도출하며, 중장기 전략적 자산배분(안)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함
----------------------	--

라. 위험관리 체계

금융자산 운용업무에 내재된 각종 위험의 효율적 통제 및 자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하여 기금운용 안전성과 자산 건전성 확보를 원칙으로 기금운용 위험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다. 운용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고 점검하는 1차적인 책임을 자금운용부서에서 부담하며, 리스크범무실은 항시적 모니터링 기능을 수행한다.

자산 운용 위험 종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장위험 : 주가, 이자율, 환율 등의 시장가격 변화에 따라 보유 유가증권의 가치가 하락할 위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신용위험 : 거래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또는 신용도 저하에 따라 투자원리금 등을 당초 약정한대로 회수할 수 없게 되는 위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유동성위험 : 예기치 못한 자금수요에 대응하지 못하여 손실을 입게 될 위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운영위험 : 적절하지 않은 내부통제 제도나 업무처리 절차, 시스템 오류, 직원의 실수 또는 부정 등으로 인해 기금에 손실이 초래될 위험
----------------------	---

이밖에, 위험관리 조직으로는 리스크관리위원회 및 운용부서와 별도 조직인 리스크법무실로 구성되어 있다.

마. 성과평가

자산운용에 대한 성과는 투자의사결정 주체별 평가가 가능하도록 자산배분 요인과 포트폴리오 요인을 감안하되, 외부 시장위험에 대한 요인도 함께 고려하여 평가한다. 성과평가는 1년을 주기로 하며 연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근 3년의 장기 실적을 반영한 평가도 병행하고 있다. 성과평가는 자산운용 조직으로부터 독립된 리스크법무실에서 수행하고 외부 위탁운용자산은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아 반영하고 있다. 성과평가의 객관성과 적정성 강화를 위해 최종평가는 기금운용성과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바. 공시 및 의결권 행사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금현황, 기금운용원칙, 기금운용기준, 기금운용현황, 의결권 행사내역 등을 공시하고 있다. 또한, 기금의 의결권 행사는 기금의 가입자 및 수혜자의 이익향상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장기적으로 주주 가치 증대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주요
공시
사항

☑ 조성·지출·적립 현황, 자산군별 투자현황 및 수익률, 재정상태표 및 재정 운영표, 자산군별 포트폴리오 운용현황, 자산군별 투자종목 현황, 책임투자 관련 현황, 위탁운용사 및 거래증권사 현황, 자산운용지침과 기금운용계획, 의결권 행사내역 등

사. 자산부문별 운용원칙

국내채권 직접운용은 장기 안정적인 수익확보를 위하여 채권종류별, 발행자별, 만기구조별 등으로 분산투자 함을 원칙으로, 발행자의 신용과 무위험채권과의 스프레드 등을 고려하여 투자하되, 시장상황에 따라 듀레이션을 조절하여 초과수익을 창출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국내주식 직접운용의 경우 허용된 위험한도 내에서 수익을 최대한 증식시킬 수 있도록 하되, 투자위험 최소화를 위하여 주식종목 섹터별 분산투자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외부 전문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수익률을 제고하고 위험을 분산하기 위하여 실시함을 위탁운용의 운용원칙으로 삼고 있으며, 대체투자자산의 경우에는 대체투자자산의 다양성 및 비정형성 등의 특성을 감안하여 안정성과 수익성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 안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하여 만기보유를 원칙으로 한다.

이외에도 해외투자자산 운용시 시장의 효율성, 통제가능성, 정보이용의 용이성, 투명성, 유동성, 위험수준, 거래비용, 거래프로세스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특히 직접운용은 장기투자를 지향하고 허용된 위험한도 내에서 기금의 수익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위탁운용은 국내·외 외부 위탁운용사의 풍부한 경험과 숙련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험을 분산하고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 2022년도 금융자산 배분계획

[표 2-6] 2022년 자산군별 수익·위험 추정

(단위 : %)

구 분	국내 채권	해외 채권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국내 대체	해외 대체
기대수익률	2.00	2.12	5.81	6.52	3.92	4.11
위험도	4.00	4.40	12.94	12.50	8.47	8.45

[표 2-7] 2022년 자산군별 배분 및 허용범위

(단위 : 억원, %)

구분	합계	국내 채권	해외 채권	국내 주식	해외 주식	현금성	국내 대체	해외 대체
금액	249,643	74,842	14,820	49,401	59,281	2,640	23,465	25,194
(비중)	100.0	30.0	5.9	19.8	23.7	1.1	9.4	10.1
허용범위	-	±10.0	±4.0	±5.0	±4.0	-	±5.0	±5.0

4) 기금운용성과

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투자 현황

[표 2-8] 부문별 투자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금액	비중								
유가증권	158,889	86.9	180,187	87.9	205,191	89.4	230,703	89.5	210,956	88.8
연금기금대여	19,551	10.7	19,032	9.3	19,210	8.4	20,425	7.9	19,792	8.3
유형자산	2,866	1.6	2,769	1.4	2,744	1.2	4,009	1.6	4,025	1.7
유동자산 등	1,540	0.8	2,952	1.4	2,421	1.0	2,522	1.0	2,834	1.2
합계	182,846	100.0	204,940	100.0	229,566	100.0	257,659	100.0	237,607	100.0

(주) 연도말 기준임

나.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금융자산 현황

[표 2-9] 금융자산 보유 현황

(단위 : 억원, %)

구분	채권형		주식형		대체형		단기자산		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2018년	69,511	43.3	57,060	35.6	31,355	19.6	2,386	1.5	160,312
2019년	69,875	38.1	73,339	39.9	38,988	21.2	1,416	0.8	183,619
2020년	72,502	34.7	89,360	42.7	43,197	20.7	4,069	1.9	209,128
2021년	81,629	34.7	99,828	42.5	49,988	21.3	3,488	1.5	234,933
2022년	74,218	34.5	84,446	39.2	53,306	24.7	3,398	1.6	215,368

(주) 연도말 기준 재해보상기금 등 포함

[표 2-10] 금융자산 (평균)수익률 현황

(단위 : %)

구 분	채권형	주식형	대체형	단기자산	계
2018년	4.8	△14.8	8.3	1.6	△2.5
2019년	4.6	19.0	10.4	1.7	10.9
2020년	1.8	24.2	5.0	0.9	11.3
2021년	0.3	16.0	23.8	0.7	11.5
2022년	△6.0	△8.0	8.1	2.2	△7.9
최근 3년평균	△1.4	5.7	12.0	1.2	4.5
최근 5년평균	1.0	3.7	10.9	1.4	4.3

(주) 3년 평균, 5년 평균 수익률은 기하평균으로 산출

(주) 기하평균 수익률 = $\{(1+r1)(1+r2) \cdots (1+rn)\}^{1/n} - 1$

다.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대여자산 현황

[표 2-11] 대여자산 운영 및 수익률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대여자산(대여사업 대여금)			비 중(연금기금 대비)		수익률
	지급	상환	잔액	연금기금액	비중	
2018년	9,493	10,207	19,551	182,846	10.7	3.58
2019년	9,795	10,314	19,032	204,940	9.3	3.43
2020년	11,096	10,918	19,210	229,566	8.4	2.99
2021년	11,034	9,819	20,425	257,659	7.9	2.88
2022년	8,345	8,978	19,792	237,607	8.3	3.91

(주) 대여자산 수익률 = 당년도 대여자 / [(전년도 대여자잔액+당년도 대여자잔액)/2]

(주) 2016년부터 결산시 대여상환금에 미수금을 포함하여, 보고서 작성 시 결산정리전표를 제외한 보조원장 금액으로 작성함

라.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의 유형자산 현황

[표 2-12] 유형자산 운영 현황

(단위 : 억원,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금액	비중								
연금기금	182,846	100.0	204,940	100.0	229,566	100.0	257,659	100.0	237,607	100.0
유형자산	2,866	1.6	2,769	1.4	2,744	1.2	4,009	1.6	4,025	1.7

(주) 연도말 기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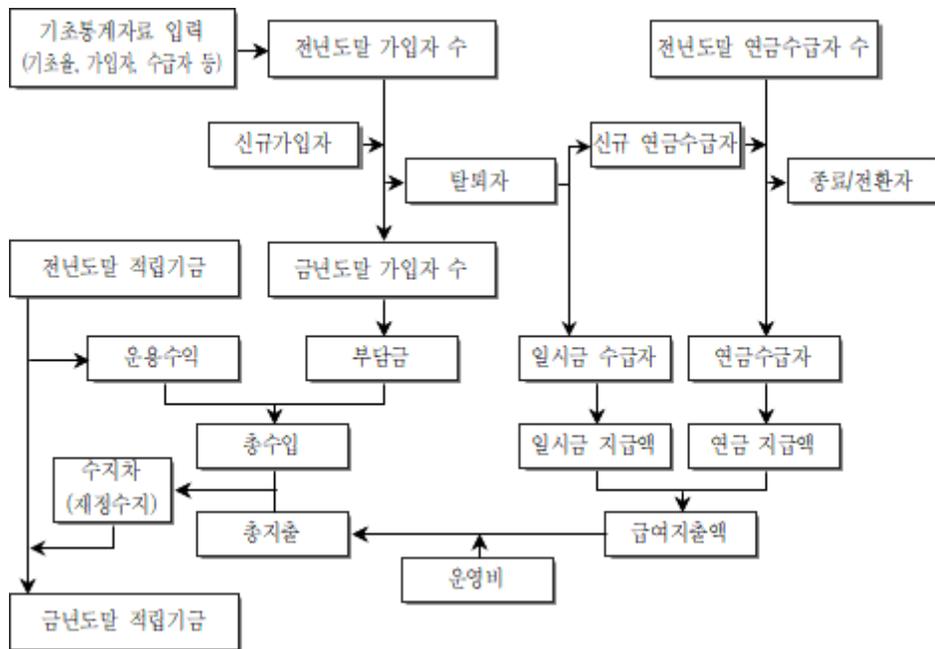
3. 연금사업의 장기 재정추계

1) 장기 재정추계 모형과 방법

가. 모형의 구조

장기 재정추계 모형은 가입자 개인별 확률모형으로써 인원수 추계와 수입 및 지출 추계, 그리고 재정수지 추계로 구분된다.

[그림 3.1] 사학연금 재정추계 모형의 흐름도



나. 추계방법

인원수 추계는 가입자 부문과 연금수급자 부문으로 구성된다. 가입자 수는 학령인구의 전망치를 기초로 사립학교교직원에 대한 수요로서 산출된다. 대학 부속병원 직원의 경우에는 전체 인구수, 5세 연령군단별 인구비중 및 각 연령군단별 의료비 지출 전망을 이용하여 별도로 산출한다. 신규가입자 수는 연말 가입자 수 추계치와 퇴직자

수[퇴직력] 및 사망자 수[사망률]에 기반하여 산정된다. 연금수급자 수는 가입자 수 추계과정에서 산출된 퇴직자를 대상으로 연금선택률을 적용하여 신규 퇴직연금, 유족연금, 연계연금수급자로 구분된다.

재정수입은 부담금수입과 기금운용수익의 합으로 계산된다. 부담금 수입은 가입자를 대상으로 산출되고, 운용수익은 전년도 적립기금과 금년 재정수지를 재원으로 하며 이에 운용수익률을 적용하여 추계한다. 재정지출은 급여지출액과 운영비로 이루어진다. 급여지출액은 퇴직자 및 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급여산식에 의해 산출하며, 운영비는 개인부담금 납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최종적으로 금년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인 재정수지를 연초 기금적립액에 합산함으로써 연말 기금적립액을 계산한다.

2) 보험수리적 가정

가. 거시경제변수

재정추계를 위한 거시경제변수에는 임금상승률, 이자율, 물가상승률이 있다. 임금상승률과 이자율은 각각 재직자의 기준소득증가율 및 기금운용수익률의 산출을 위한 기본 입력변수로 사용된다, 재정추계에는 기획재정부의 장기재정전망협의회가 주요 분야 재정전망의 통일성을 위해 제시한 「장기재정전망공통지침」(2020년 3월)의 거시경제변수가 적용되었다.

[표 3-1] 거시경제변수

(단위 : %)

연 도	임금상승률	이자율	물가상승률
2022	4.040	2.976	1.900
2025	4.083	3.207	2.000
2030	4.134	3.321	2.000
2035	4.114	3.398	2.000
2040	4.086	3.346	2.000
2045	4.113	3.374	2.000
2050	4.040	3.337	2.000
2055	3.991	3.254	2.000
2060	3.907	3.221	2.000

2065	3.878	3.154	2.000
2070	3.823	3.125	2.000
2075	3.751	3.059	2.000
2080	3.668	2.987	2.000
2085	3.653	2.945	2.000
2090	3.634	2.913	2.000

나. 제도변수

제도변수로는 퇴직력, 기준소득증가율, 연금선택률, 연금실권율, 유유족률, 부부연령차 등이 있으며, 과거 경험 실적치를 기초로 산정된다. 퇴직력은 최근 약 3~5년 정도의 경험 실적자료를 기초로 재직기간 및 입직연령별로 기초 퇴직력을 산출한 후 Greville 3차 7항식으로 보정하여 추정하며 성별과 교직원별 구분에 따라 각각 산출한다. 기준소득증가율은 2010년부터의 모든 재직자의 기준소득월액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교직원별 구분, 재직기간, 학교급 및 「장기재정전망공통지침」상의 명목임금상승률을 설명변수로 하는 스플라인 모형(cubic natural regression spline)에 따라 산출한다. 연금선택률은 재직기간을 설명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모형으로 산출하고, 전액연금선택률 및 유족연금선택률은 선택 비율 계산 시의 선택자 수를 가중치로 하는 선택 비율의 가중평균을 적용한다. 또한 연계연금선택률은 연계연금 선택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20년 미만 가입자에 대해 지수분포의 누적분포함수를 이용하여 추정한다. 유족연금소멸률은 관련 통계자료의 부족으로 산출이 어려운 바, 일본 후생연금의 추정방법을 참조하여 우리나라 통계청 국민생명표 사망률의 85% 수준을 적용하였다. 유유족률로는 2010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결과의 성별·연령별 유배우자율을 보정하여 적용하였으며, 부부연령차는 평균 3세를 가정하였다. 이외 소급·합산반납금은 개인 부담금 총액 대비 반납금 비율의 최근 3개년 평균 수치를 적용하여 추정하였고, 소득심사에 의한 연금지급액 감소를 반영하기 위해 전체 연금지급액 대비 감액 연금액 비율의 3년 평균을 사용하였다. 관리운영비는 가장 최근의 수치에 물가상승률을 반영함으로써 추정하였다.

다. 인구변수

인구변수에는 신규가입자 수와 사망률이 있다. 신규가입자는 사학연금 전체 가입자 규모를 결정짓는 핵심요소로 연도 말 가입자 수 추계를 바탕으로 일정 산식을 이용해 산출(신규가입자 수 = 전년도 말 가입자 - 당년도말 가입자 + 사망자 + 퇴직자)한다.

사망률은 1999년부터의 재직자 및 수급자의 사망 자료를 이용, 정합적 사망률 모형인 Li-Lee 모형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정합적 모형은 밀접한 연관을 지닌 인구 집단의 경우 사망률에 있어 나타나는 상당한 수준의 연관성을 반영하기 위한 모형으로 사학연금 가입자의 사망률이 일반 국민보다 낮지만 인간 수명의 한계로 인해 이러한 차이가 계속 벌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전제로 한다.

3) 장기재정 전망 결과

가. 인원수

전망결과에 따르면 재직자 수는 2090년 131,691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이에 기반한 사학연금 재직자 수 역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2020년대의 급격한 학령인구 축소에 비해 사학연금 재직자 수의 완만한 감소는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대학 부속병원 직원 수에 기인한 것이다. 퇴직자 수 역시 재직자 수와 동일한 감소 추세를 나타낸다. 반면 전체 연금수급자 수는 2022년 103,314명에서 2090년 312,761명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2058년에는 연금수급자 수가 재직자 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표 3-2] 인원수 전망 결과

(단위 : 명)

연도	재직자	퇴직자	퇴직(유족)연금 수급자 (A)	연계연금 수급자(B)	총 연금수급자 (A+B)
2022	319,602	30,368	101,841	1,473	103,314
2025	313,679	29,125	120,946	1,632	122,578
2030	311,391	27,900	146,878	1,920	148,798
2035	300,849	26,664	168,501	2,252	170,753
2040	290,184	25,748	188,446	2,738	191,184
2045	282,821	25,305	208,530	3,375	211,905
2050	271,071	24,419	224,387	4,436	228,823
2055	255,975	23,240	233,234	6,807	240,041
2060	235,557	20,961	242,412	13,080	255,492
2065	215,478	19,008	247,262	23,937	271,199
2070	194,945	17,195	249,224	37,611	286,835
2075	176,149	15,789	248,525	51,740	300,265
2080	160,119	14,709	245,486	64,358	309,844
2085	145,656	13,541	240,095	75,072	315,167
2090	131,691	12,168	230,719	82,042	312,761

나. 재정수지 및 연금기금

부담금수입과 운용수익을 포함한 총수입은 명목가격으로 2022년 45,956억원에서 2062년에 최대 67,465억원까지 증가한 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추계 최종년도인 2090년에는 59,04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난다. 급여지출과 운영비 지출액을 포함한 총 지출액은 2022년 38,457억원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90년에는 2022년의 약 4.62배인 177,768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한 재정수지는 재정흑자 규모가 점차 감소, 2029년에 최초의 재정적자 발생 이후 2090년에 118,728억원의 적자를 나타낼 때까지 그 규모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연금기금액은 2022년 230,892억원에서 재정흑자가 예상되는 2028년까지 251,248억원으로 증가하다가 이듬해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2049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으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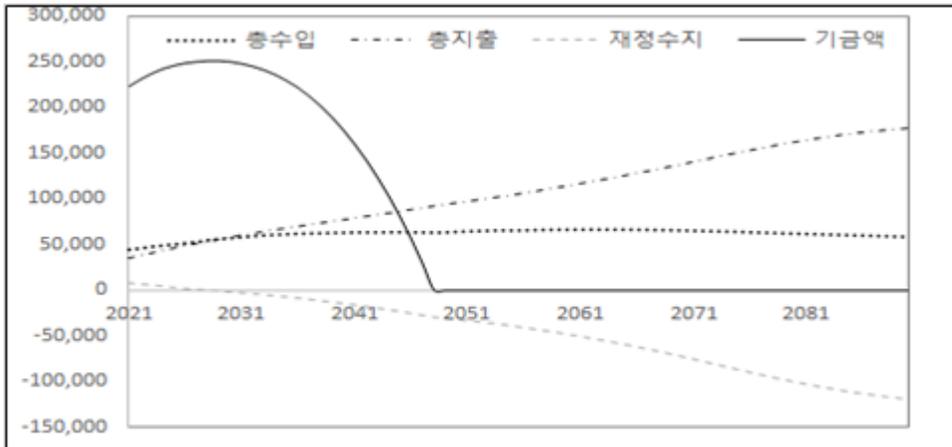
[표 3-3] 장기 재정전망(명목가격) 결과

(단위 : 억원)

연도	총수입	총지출	재정수지	기금액
2022	45,956	38,457	7,500	230,892
2025	50,575	46,925	3,650	246,212
2030	57,721	58,752	△1,031	250,192
2035	62,120	68,639	△6,519	229,219
2040	63,907	77,759	△13,852	175,210
2045	64,516	87,025	△22,509	80,598
2050	64,826	96,242	△31,415	0
2055	66,387	105,040	△38,653	0
2060	67,374	115,308	△47,934	0
2065	67,373	126,315	△58,941	0
2070	66,504	138,629	△72,125	0
2075	64,804	151,315	△86,512	0
2080	62,851	162,864	△100,013	0
2085	60,998	171,984	△110,986	0
2090	59,040	177,768	△118,728	0

[그림 3.2] 재정수지 및 연금기금액 추이

(단위 : 억원)



다. 주요 재정지표

주요 재정지표로는 부양률, 지출율, 수입률, 수지율, 적자보전율이 있다. 재직자 수 대비 연금수급자 수로 정의되는 부양률은 2022년 32.33%에서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90년 237.50%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어 연금재정안정화가 위협에 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반면 기

준소득총액 대비 지출액 비율로 정의되는 지출율은 부과방식 하에서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부과보험료율과 동일한 지표로서 2022년 18.54%에서 2090년 54.20%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입률은 2022년 22.16%에서 2024년 22.44%에 이르기까지 상승한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다가 연금기금이 소진되는 2049년부터 법정부담률인 18.0%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출액에 대한 수입액의 비율인 수지율은 2022년 119.50%에서 점차 하락하여 2090년에는 33.21%에 달하게 되는데, 이는 재정지출액이 재정수입액의 약 83.7%에서 약 3배까지 증가함으로써 시간의 경과와 함께 재정상태 악화가 가속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적자보전율은 기준소득총액 대비 재정적자 규모를 보전하기 위한 추가적인 비용부담률로 재정적자가 처음 발생하는 2029년 0.01%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90년에는 36.20%에 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표 3-4] 주요 재정지표 추계 결과

(단위 : %)

연도	부양률	지출률	수입률	수지율	적자보전율
2022	32.33	18.54	22.16	119.50	△3.62
2025	39.08	20.81	22.43	107.78	△1.62
2030	47.79	22.32	21.92	98.24	0.39
2035	56.76	23.33	21.12	90.50	2.22
2040	65.88	24.42	20.07	82.19	4.35
2045	74.93	25.51	18.91	74.13	6.60
2050	84.42	26.72	18.00	67.36	8.72
2055	93.78	28.48	18.00	63.20	10.48
2060	108.46	30.81	18.00	58.43	12.81
2065	125.86	33.75	18.00	53.34	15.75
2070	147.14	37.52	18.00	47.97	19.52
2075	170.46	42.03	18.00	42.83	24.03
2080	193.51	46.64	18.00	38.59	28.64
2085	216.38	50.75	18.00	35.47	32.75
2090	237.50	54.20	18.00	33.21	36.20

(단) 1) 지출률=지출/기준소득총액, 2) 수입률=수입/기준소득총액, 3) 수지율=수입/지출
4) 적자보전율=적자(지출-수입)/기준소득총액

4) 민감도 분석

민감도 분석은 추계에 적용된 다양한 가정들이 변화할 시 추계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재정추계에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추계결과의 불확실성을 보완하기 위한 과정이다. 민감도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로 4개의 조합 시나리오와 8개의 개별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조합 시나리오는 인구전망 및 거시경제상황에 따라 중위-비관, 중위-낙관, 저위-중립 및 고위-중립을 가정하였으며, 각 시나리오별 재정추계결과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5] 재정추계에 따른 민감도 분석 결과

(단위 : 억원)

구 분		기금 최고시점	기금 최고액	재정수지 역전시점	기금 고갈시점	2090년 적자규모
기본 가정 (중위-중립)		2028년	251,248	2029년	2049년	118,728
중위-낙관		2037년	291,468	2038년	2057년	159,592
중위-비관		2026년	238,700	2027년	2044년	84,473
고위-중립		2033년	265,284	2034년	2055년	118,797
저위-중립		2026년	244,815	2027년	2045년	113,854
기금운용 수익률	-1.0%p	2025년	231,715	2026년	2045년	118,728
	-0.5%p	2026년	240,026	2027년	2047년	118,728
	+0.5%p	2030년	266,373	2031년	2050년	118,728
	+1.0%p	2033년	287,236	2034년	2053년	118,728
임금 상승률	-10%	2026년	243,907	2027년	2046년	115,874
	- 5%	2028년	247,200	2029년	2047년	117,346
	+ 5%	2029년	256,167	2030년	2050년	119,940
	+10%	2030년	261,971	2031년	2050년	120,988
물가 상승률	-0.5%p	2032년	262,772	2033년	2054년	105,267
	-0.3%p	2030년	257,256	2031년	2052년	110,479
	+0.3%p	2027년	247,019	2028년	2046년	127,531
	+0.5%p	2026년	244,934	2027년	2045년	133,730
연금 선택률	-5.0%	2028년	244,617	2029년	2048년	113,417
	+5.0%	2029년	258,218	2030년	2049년	124,038
퇴직률	-5.0%	2030년	260,227	2031년	2051년	121,482
	+5.0%	2027년	244,626	2028년	2047년	115,860
사망률	-5.0%	2028년	250,674	2029년	2048년	120,068
	+5.0%	2029년	251,952	2030년	2049년	117,439
연계연금	-10%	2028년	250,906	2029년	2048년	118,057

선택률	+10%	2029년	251,639	2030년	2049년	119,398
부담률	+1.0%p	2033년	285,056	2034년	2054년	115,447
	+2.0%p	2038년	341,221	2039년	2060년	112,167

5) 재정평가

사학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9년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측되어, 현재 비용부담률은 추계 전 기간 동안의 지급여력을 확보하기에는 크게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급여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주된 재원이 부담금수입인 점을 고려하여 추계 최종년도 기준으로 일정 수준의 재정안정 목표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추가적인 비용부담 수준을 추계해 보았다. 재정안정 목표로는 세 가지를 설정하였는데, 추계 최종연도의 적립배율 2배 유지, 추계기간 동안 재정흑자의 유지, 그리고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가 바로 그것이다. 여기서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란 추계기간의 마지막 20년(2071년~2090년) 동안 최대적립배율과 최소적립배율의 차이가 최소적립배율의 5% 범위 내에서 유지되는 것을 의미한다.

재정추계 결과에 의하면 추계 최종연도의 적립배율이 1배와 2배가 되기 위해서는 각각 보험료율이 24.74%와 24.96%로 인상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난다. 이보다 엄격한 재정안정 목표인 추계기간 내 수지흑자 유지를 위해서는 보다 높은 수준인 28.21%의 보험료율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가장 안정적 재정상태인 일정 적립배율 유지[2090년 말 기준 20.88배]를 위해서는 비용부담률을 29.11%까지 인상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 3-6] 재정안정 목표를 충족시키는 비용부담률

(단위 : %)

구 분	적립배율 1배 유지	적립배율 2배 유지	수지흑자 유지	일정한 적립배율 유지
비용부담률	24.74	24.96	28.21	29.11

결론적으로 재정안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비용부담률을 최대 29.11% 수준까지 인상해야 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2090년 적립배율을 1배 수준으로 유지하는 최소 목표를 설정한 경우조차도 비용부담률을 24.74%까지 인상해야 할 것으로 나타나 향후 재정안정화 방안의 검토 시 부담률 인상뿐만 아니라 급여를 적정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시사하고 있다.

4. 주요 통계

1) 학교기관 증가 추이

(단위 : 기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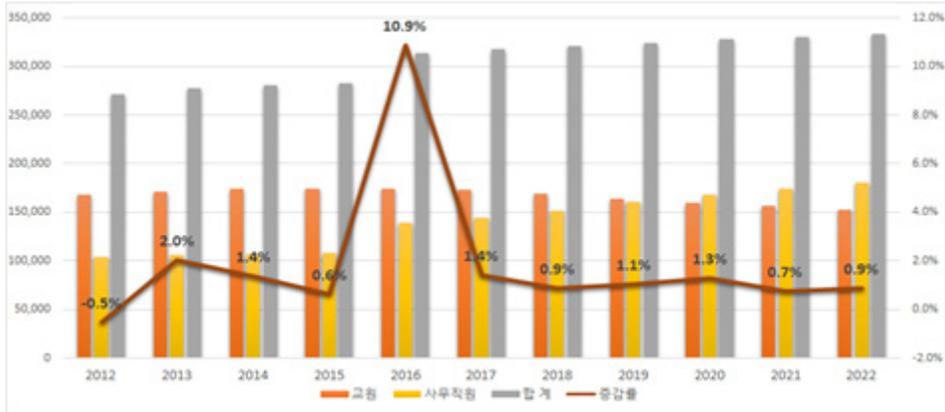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당연적용	2,386	2,396	2,381	2,386	2,376	2,368	2,362	2,360	2,360	2,356	2,354
임의적용	3,774	3,887	4,009	4,112	4,193	4,195	4,106	3,849	3,636	3,489	3,335
합 계	6,160	6,283	6,390	6,498	6,569	6,563	6,468	6,209	5,996	5,845	5,689
증 감 률	2.8	2.0	1.7	1.7	1.1	△0.1	△1.4	△4.0	△3.4	△2.5	△2.7



2) 교직원 증가 추이(교원, 사무직원)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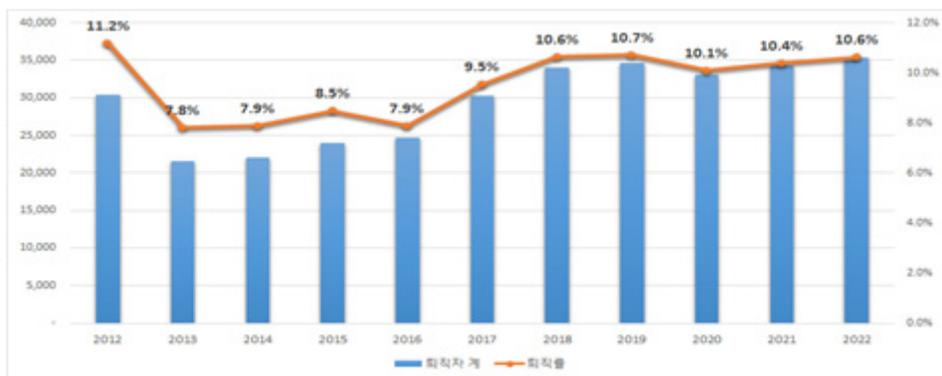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교원	167,631	171,323	173,797	174,454	174,397	173,115	169,093	163,245	159,900	156,632	152,832
사무직원	103,784	105,636	106,924	108,013	138,759	144,487	151,233	160,452	167,964	173,690	180,399
합계	271,415	276,959	280,721	282,467	313,156	317,602	320,326	323,697	327,864	330,322	333,231
증감률	△0.5	2.0	1.4	0.6	10.9	1.4	0.9	1.1	1.3	0.7	0.9



3) 직종별 퇴직자 추이(교원, 사무직원)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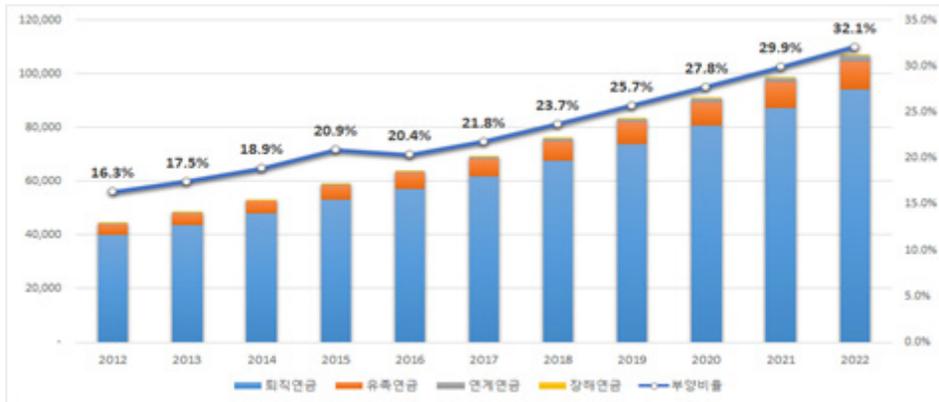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퇴직자	교원	12,815	11,727	12,001	13,457	13,618	13,947	18,380	19,054	17,620	16,908	17,501
	사무직원	17,529	9,865	10,080	10,482	11,049	12,869	15,694	15,618	15,479	17,362	17,905
	계	30,344	21,592	22,081	23,939	24,667	26,816	34,074	34,672	33,099	34,270	35,406
교직원 수	271,415	276,959	280,721	282,467	313,156	317,602	320,326	323,697	327,864	330,322	333,231	
퇴직률	11.2	7.8	7.9	8.5	7.9	9.5	10.6	10.7	10.1	10.4	10.6	



4) 연금수급자 증가추이(퇴직, 유족, 장애, 연계연금)

(단위 :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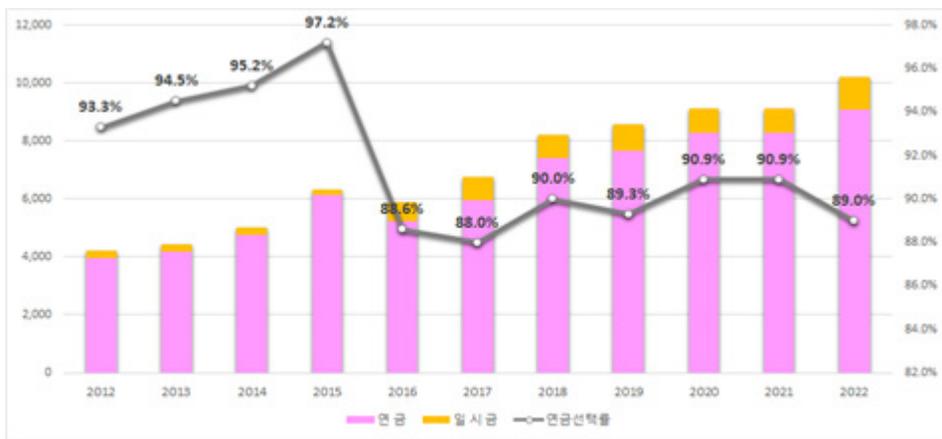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퇴직연금	40,116	43,697	47,782	53,170	57,084	61,692	67,607	73,831	80,594	87,273	94,086
유족연금	3,999	4,435	4,921	5,416	6,064	6,714	7,392	8,206	8,942	9,643	10,511
연계연금	137	154	240	371	511	684	785	1,001	1,307	1,661	2,143
장애연금	105	121	97	102	123	128	130	139	146	153	156
부양비율	16.3	17.5	18.9	20.9	20.4	21.8	23.7	25.7	27.8	29.9	32.1



5) 연금선택자 추이

(단위 : 명, %)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연 금	3,943	4,180	4,755	6,130	5,851	5,945	7,396	7,662	8,283	8,289	9,083
일 시 금	282	242	242	177	760	810	819	920	833	831	1,122
연금선택률	93.3	94.5	95.2	97.2	88.6	88.0	90.0	89.3	90.9	90.9	89.0



6) 급여지출 증가추이(연금, 재해보상, 퇴직수당)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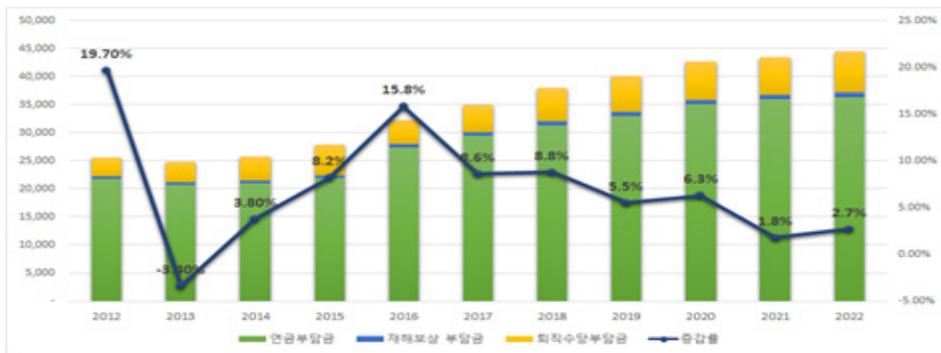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퇴직급여	14,647	16,000	17,571	19,729	21,099	22,893	25,056	27,545	29,928	32,505	36,503
유족급여	876	985	1,089	1,213	1,317	1,401	1,507	1,639	1,755	1,868	2,094
재해보상급여	318	324	340	358	383	418	464	459	465	448	521
퇴직수당	3,338	3,642	4,191	5,439	4,215	4,854	6,080	6,427	6,900	6,754	7,477
증 감 륜	11.8	9.2	10.7	15.3	1.0	9.4	12.0	8.9	8.3	6.5	12.1



7) 부담금 징수 현황

(단위 : 억원, %)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연금부담금	21,861	20,689	21,069	21,908	27,416	29,536	31,330	33,052	35,091	35,955	36,406
재해보상 부담금	431	444	460	477	595	647	690	730	777	794	806
퇴직수당 부담금	3,320	3,619	4,155	5,402	4,171	4,780	6,020	6,337	6,770	6,653	7,364
합 계	25,612	24,752	25,684	27,787	32,182	34,963	38,040	40,119	42,638	43,402	44,576
증 감 륜	19.7	△3.4	3.8	8.2	15.8	8.6	8.8	5.5	6.3	1.8	2.7



8) 연금수입 및 지출 증가추이

(단위 : 억원,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수입	금액	31,033	29,664	27,682	33,649	40,313	48,028	41,664	56,591	58,233	64,388	25,278
	증감률	34.0	△4.4	△6.7	21.6	19.8	19.1	△13.3	35.8	2.9	10.6	△60.7
지출	금액	18,040	19,313	21,827	28,058	30,131	29,543	40,909	34,498	33,606	36,295	45,330
	증감률	7.4	7.1	13.0	28.5	7.4	△2.0	38.5	△15.7	△2.6	8.0	24.9



9) 기금조성현황(연금, 재해보상)

(단위 : 억원, %)

연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연금	131,627	141,978	147,833	153,424	163,606	182,091	182,846	204,940	229,566	257,659	237,607
재해보상	616	747	915	1,073	1,319	1,553	1,864	2,203	2,562	2,883	3,039
증감률	11.0	7.9	4.2	3.9	6.7	11.4	0.6	12.1	12.1	12.2	△7.6



10) 연금기금 투자현황

(단위 : 억원, %)

연 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유가증권	105,777	112,800	119,901	125,973	137,005	156,044	158,889	180,187	205,191	230,703	210,956
공공자금	-	-	-	-	-	-	-	-	-	-	-
대 여	22,239	21,728	21,015	20,246	20,759	20,265	19,551	19,032	19,210	20,425	19,792
유형자산 등	3,611	7,450	6,917	7,205	5,842	5,782	4,406	5,721	5,165	6,530	6,859
합 계	131,627	141,978	147,833	153,424	163,606	182,091	182,846	204,940	229,566	257,659	237,607
증감률	11.0	7.9	4.1	3.8	6.6	11.3	0.4	12.1	12.0	12.2	△7.8



[부 록] 재정추계 기초율

1. 퇴직력

1-1. 남자 교원

임용연령 재직기간	25	30	35	40	45	50	55
0	0.0248	0.0405	0.0407	0.0273	0.0492	0.0745	0.1008
5	0.0431	0.0444	0.0268	0.0363	0.0289	0.0394	0.0614
10	0.0139	0.0128	0.0157	0.0110	0.0199	0.0496	0.7645
15	0.0023	0.0076	0.0061	0.0082	0.0258	0.5662	
20	0.0052	0.0110	0.0081	0.0277	0.5600		
25	0.0077	0.0182	0.0553	0.3816			
30	0.0389	0.1103	0.4331				
35	0.3878	1.0923					

1-2. 여자 교원

임용연령 재직기간	25	30	35	40	45	50	55
0	0.1476	0.1898	0.1402	0.1066	0.1238	0.1413	0.1642
5	0.1852	0.0817	0.0434	0.0368	0.0400	0.0580	0.0488
10	0.0423	0.0181	0.0084	0.0138	0.0093	0.0380	0.2991
15	0.0077	0.0073	0.0173	0.0074	0.0275	0.3069	
20	0.0088	0.0127	0.0173	0.0607	0.5687		
25	0.0065	0.0215	0.0577	0.9424			
30	0.0389	0.0946	0.8521				
35	0.1949	1.0760					

1-3. 남자 사무직원

임용연령 재직기간	25	30	35	40	45	50	55
0	0.1016	0.1185	0.1953	0.1088	0.0992	0.1253	0.2005
5	0.3920	0.1798	0.0614	0.0527	0.0360	0.0487	0.4897
10	0.0189	0.0174	0.0280	0.0309	0.0280	1.2208	
15	0.0085	0.0164	0.0118	0.0263	0.6109		
20	0.0161	0.0186	0.0454	0.5157			
25	0.0158	0.0570	0.6560				
30	0.0966	0.4576					
35	1.0431						

1-4. 여자 사무직원

임용연령 재직기간	25	30	35	40	45	50	55
0	0.2660	0.2962	0.3306	0.2826	0.2867	0.3528	0.5110
5	0.1887	0.1304	0.0584	0.0590	0.0746	0.0894	0.5029
10	0.0386	0.0142	0.0216	0.0100	0.0352	0.1212	
15	0.0125	0.0131	0.0083	0.0280	0.8690		
20	0.0167	0.0183	0.0500	0.0060			
25	0.0171	0.0562	0.3895				
30	0.0843	0.5983					
35	1.0606						

2. 기준소득증가율

2-1. 교원

재직기간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특수학교
1	1.1345	1.1345	1.1306	1.1282	1.1189	1.1311
2	1.1218	1.1218	1.1179	1.1155	1.1062	1.1184
3	1.1098	1.1098	1.1059	1.1035	1.0942	1.1064
4	1.0994	1.0994	1.0955	1.0931	1.0838	1.0960
5	1.0911	1.0911	1.0872	1.0848	1.0755	1.0877
6	1.0848	1.0848	1.0809	1.0785	1.0692	1.0814
7	1.0801	1.0801	1.0762	1.0738	1.0645	1.0767
8	1.0766	1.0766	1.0728	1.0703	1.0610	1.0733
9	1.0741	1.0741	1.0702	1.0678	1.0585	1.0707
10	1.0722	1.0722	1.0683	1.0659	1.0565	1.0688
11	1.0706	1.0706	1.0667	1.0643	1.0550	1.0672
12	1.0693	1.0693	1.0655	1.0630	1.0537	1.0659
13	1.0681	1.0681	1.0643	1.0618	1.0525	1.0648
14	1.0669	1.0669	1.0630	1.0606	1.0513	1.0635
15	1.0655	1.0655	1.0617	1.0592	1.0499	1.0622
16	1.0640	1.0640	1.0602	1.0577	1.0484	1.0606
17	1.0624	1.0624	1.0586	1.0561	1.0468	1.0590
18	1.0608	1.0608	1.0569	1.0545	1.0452	1.0574
19	1.0592	1.0592	1.0553	1.0529	1.0436	1.0558
20	1.0577	1.0577	1.0538	1.0514	1.0421	1.0543
21	1.0563	1.0563	1.0524	1.0500	1.0407	1.0529
22	1.0550	1.0550	1.0511	1.0487	1.0394	1.0516
23	1.0538	1.0538	1.0499	1.0475	1.0382	1.0504
24	1.0527	1.0527	1.0488	1.0464	1.0371	1.0493
25	1.0516	1.0516	1.0477	1.0453	1.0360	1.0482
26	1.0505	1.0505	1.0467	1.0442	1.0349	1.0472
27	1.0495	1.0495	1.0456	1.0432	1.0339	1.0461
28	1.0484	1.0484	1.0445	1.0421	1.0328	1.0450
29	1.0473	1.0473	1.0435	1.0410	1.0317	1.0440
30	1.0463	1.0463	1.0424	1.0400	1.0306	1.0429
31	1.0452	1.0452	1.0413	1.0389	1.0296	1.0418
32	1.0441	1.0441	1.0402	1.0378	1.0285	1.0407
33	1.0430	1.0430	1.0392	1.0367	1.0274	1.0396

* 명목임금상승률 4% 가정 시의 기준소득증가율

2-2. 직원

재직 기간	유치원	초등 학교	중학교	고등 학교	대학교	병원	특수 학교	법인
1	1.1486	1.1486	1.1447	1.1423	1.1329	1.1352	1.1452	1.1315
2	1.1358	1.1358	1.1320	1.1295	1.1202	1.1224	1.1324	1.1188
3	1.1239	1.1239	1.1200	1.1176	1.1082	1.1105	1.1205	1.1068
4	1.1134	1.1134	1.1096	1.1071	1.0978	1.1000	1.1101	1.0964
5	1.1052	1.1052	1.1013	1.0989	1.0895	1.0918	1.1018	1.0881
6	1.0988	1.0988	1.0950	1.0925	1.0832	1.0854	1.0955	1.0818
7	1.0941	1.0941	1.0903	1.0878	1.0785	1.0807	1.0908	1.0771
8	1.0907	1.0907	1.0868	1.0844	1.0751	1.0773	1.0873	1.0736
9	1.0882	1.0882	1.0843	1.0819	1.0725	1.0747	1.0848	1.0711
10	1.0862	1.0862	1.0823	1.0799	1.0706	1.0728	1.0828	1.0692
11	1.0847	1.0847	1.0808	1.0784	1.0690	1.0713	1.0813	1.0676
12	1.0834	1.0834	1.0795	1.0771	1.0677	1.0700	1.0800	1.0663
13	1.0822	1.0822	1.0783	1.0759	1.0666	1.0688	1.0788	1.0651
14	1.0810	1.0810	1.0771	1.0747	1.0653	1.0676	1.0776	1.0639
15	1.0796	1.0796	1.0757	1.0733	1.0640	1.0662	1.0762	1.0625
16	1.0781	1.0781	1.0742	1.0718	1.0624	1.0647	1.0747	1.0610
17	1.0765	1.0765	1.0726	1.0702	1.0608	1.0631	1.0731	1.0594
18	1.0748	1.0748	1.0710	1.0685	1.0592	1.0614	1.0715	1.0578
19	1.0732	1.0732	1.0694	1.0669	1.0576	1.0598	1.0699	1.0562
20	1.0717	1.0717	1.0679	1.0654	1.0561	1.0583	1.0683	1.0547
21	1.0703	1.0703	1.0665	1.0640	1.0547	1.0569	1.0669	1.0533
22	1.0690	1.0691	1.0652	1.0627	1.0534	1.0556	1.0657	1.0520
23	1.0679	1.0679	1.0640	1.0616	1.0522	1.0545	1.0645	1.0508
24	1.0667	1.0667	1.0629	1.0604	1.0511	1.0533	1.0633	1.0497
25	1.0656	1.0656	1.0618	1.0593	1.0500	1.0522	1.0623	1.0486
26	1.0646	1.0646	1.0607	1.0583	1.0490	1.0512	1.0612	1.0475
27	1.0635	1.0635	1.0596	1.0572	1.0479	1.0501	1.0601	1.0465
28	1.0625	1.0625	1.0586	1.0562	1.0468	1.0490	1.0591	1.0454
29	1.0614	1.0614	1.0575	1.0551	1.0458	1.0480	1.0580	1.0443
30	1.0603	1.0603	1.0564	1.0540	1.0447	1.0469	1.0569	1.0433
31	1.0592	1.0592	1.0554	1.0529	1.0436	1.0458	1.0559	1.0422
32	1.0582	1.0582	1.0543	1.0519	1.0425	1.0448	1.0548	1.0411
33	1.0571	1.0571	1.0532	1.0508	1.0415	1.0437	1.0537	1.0400

* 명목임금상승률 4% 가정 시의 기준소득증가율

3. 2020~2060 연도별 사망률

3-1. 남자

연도 연령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20	0.000032	0.000024	0.000019	0.000015	0.000011	0.000009	0.000007	0.000005	0.000004
21	0.000036	0.000028	0.000022	0.000017	0.000013	0.000010	0.000008	0.000006	0.000005
22	0.000042	0.000033	0.000026	0.000020	0.000016	0.000013	0.000010	0.000008	0.000006
23	0.000050	0.000040	0.000031	0.000025	0.000020	0.000016	0.000012	0.000010	0.000008
24	0.000058	0.000046	0.000037	0.000030	0.000024	0.000019	0.000015	0.000012	0.000010
25	0.000066	0.000054	0.000043	0.000035	0.000028	0.000023	0.000018	0.000015	0.000012
26	0.000076	0.000062	0.000050	0.000041	0.000033	0.000027	0.000022	0.000018	0.000014
27	0.000087	0.000071	0.000058	0.000047	0.000038	0.000031	0.000025	0.000021	0.000017
28	0.000097	0.000079	0.000065	0.000053	0.000043	0.000035	0.000029	0.000024	0.000019
29	0.000108	0.000089	0.000073	0.000060	0.000049	0.000040	0.000033	0.000027	0.000022
30	0.000121	0.000099	0.000081	0.000067	0.000055	0.000045	0.000037	0.000030	0.000025
31	0.000136	0.000111	0.000091	0.000075	0.000061	0.000050	0.000041	0.000034	0.000028
32	0.000150	0.000123	0.000101	0.000083	0.000068	0.000056	0.000046	0.000038	0.000031
33	0.000166	0.000136	0.000112	0.000092	0.000075	0.000062	0.000051	0.000042	0.000034
34	0.000184	0.000152	0.000125	0.000103	0.000085	0.000070	0.000057	0.000047	0.000039
35	0.000206	0.000170	0.000141	0.000116	0.000096	0.000079	0.000066	0.000054	0.000045
36	0.000229	0.000189	0.000157	0.000130	0.000107	0.000089	0.000074	0.000061	0.000050
37	0.000252	0.000209	0.000173	0.000144	0.000119	0.000099	0.000082	0.000068	0.000056
38	0.000277	0.000230	0.000191	0.000159	0.000132	0.000110	0.000091	0.000076	0.000063
39	0.000307	0.000255	0.000213	0.000177	0.000148	0.000123	0.000102	0.000085	0.000071
40	0.000338	0.000282	0.000234	0.000195	0.000162	0.000135	0.000113	0.000094	0.000078
41	0.000372	0.000310	0.000258	0.000215	0.000179	0.000149	0.000124	0.000103	0.000086
42	0.000406	0.000338	0.000282	0.000235	0.000196	0.000163	0.000136	0.000113	0.000094
43	0.000444	0.000370	0.000309	0.000257	0.000215	0.000179	0.000149	0.000125	0.000104
44	0.000490	0.000409	0.000342	0.000286	0.000239	0.000199	0.000167	0.000139	0.000116
45	0.000543	0.000455	0.000381	0.000319	0.000267	0.000224	0.000187	0.000157	0.000131
46	0.000601	0.000504	0.000423	0.000355	0.000298	0.000250	0.000209	0.000176	0.000147
47	0.000661	0.000556	0.000467	0.000393	0.000330	0.000278	0.000234	0.000197	0.000165
48	0.000726	0.000612	0.000515	0.000434	0.000366	0.000308	0.000260	0.000219	0.000184
49	0.000803	0.000678	0.000572	0.000483	0.000407	0.000344	0.000290	0.000245	0.000207

연령	연도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50	0.000893	0.000755	0.000638	0.000539	0.000455	0.000385	0.000325	0.000274	0.000232	
51	0.000992	0.000838	0.000709	0.000599	0.000506	0.000428	0.000362	0.000306	0.000258	
52	0.001095	0.000925	0.000782	0.000661	0.000559	0.000472	0.000399	0.000337	0.000285	
53	0.001204	0.001017	0.000859	0.000725	0.000613	0.000517	0.000437	0.000369	0.000312	
54	0.001327	0.001119	0.000944	0.000797	0.000672	0.000567	0.000478	0.000403	0.000340	
55	0.001469	0.001237	0.001042	0.000878	0.000739	0.000623	0.000524	0.000442	0.000372	
56	0.001634	0.001374	0.001156	0.000972	0.000818	0.000688	0.000579	0.000487	0.000409	
57	0.001813	0.001524	0.001281	0.001077	0.000905	0.000761	0.000640	0.000538	0.000452	
58	0.002002	0.001683	0.001415	0.001189	0.000999	0.000840	0.000706	0.000593	0.000498	
59	0.002206	0.001854	0.001558	0.001310	0.001101	0.000925	0.000777	0.000653	0.000549	
60	0.002440	0.002050	0.001723	0.001448	0.001217	0.001023	0.000859	0.000722	0.000607	
61	0.002711	0.002278	0.001915	0.001609	0.001352	0.001136	0.000955	0.000802	0.000674	
62	0.003015	0.002533	0.002129	0.001789	0.001503	0.001262	0.001061	0.000891	0.000749	
63	0.003339	0.002805	0.002357	0.001980	0.001663	0.001397	0.001173	0.000985	0.000828	
64	0.003680	0.003092	0.002597	0.002182	0.001833	0.001540	0.001294	0.001087	0.000913	
65	0.004042	0.003393	0.002849	0.002392	0.002008	0.001686	0.001415	0.001188	0.000997	
66	0.004498	0.003785	0.003185	0.002680	0.002255	0.001898	0.001597	0.001343	0.001130	
67	0.005066	0.004281	0.003617	0.003056	0.002582	0.002181	0.001843	0.001557	0.001315	
68	0.005749	0.004885	0.004150	0.003525	0.002995	0.002544	0.002161	0.001836	0.001559	
69	0.006521	0.005574	0.004765	0.004073	0.003481	0.002975	0.002543	0.002173	0.001857	
70	0.007387	0.006362	0.005479	0.004719	0.004063	0.003499	0.003013	0.002594	0.002233	
71	0.008321	0.007211	0.006249	0.005414	0.004691	0.004064	0.003521	0.003050	0.002643	
72	0.009389	0.008180	0.007126	0.006208	0.005407	0.004709	0.004102	0.003572	0.003111	
73	0.010637	0.009306	0.008140	0.007120	0.006227	0.005446	0.004763	0.004165	0.003642	
74	0.012070	0.010591	0.009292	0.008152	0.007151	0.006273	0.005503	0.004826	0.004233	
75	0.013654	0.012014	0.010570	0.009299	0.008179	0.007195	0.006328	0.005565	0.004894	
76	0.015330	0.013526	0.011932	0.010526	0.009284	0.008188	0.007221	0.006368	0.005616	
77	0.017132	0.015167	0.013426	0.011883	0.010517	0.009307	0.008236	0.007288	0.006448	
78	0.019201	0.017073	0.015179	0.013494	0.011994	0.010661	0.009475	0.008420	0.007482	
79	0.021722	0.019413	0.017347	0.015499	0.013846	0.012369	0.011048	0.009868	0.008813	

연령	연도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80		0.024804	0.022288	0.020025	0.017990	0.016160	0.014514	0.013036	0.011706	0.010512
81		0.028331	0.025597	0.023124	0.020887	0.018865	0.017036	0.015384	0.013891	0.012541
82		0.032025	0.029100	0.026439	0.024019	0.021818	0.019816	0.017996	0.016342	0.014839
83		0.035615	0.032563	0.029767	0.027209	0.024868	0.022725	0.020766	0.018974	0.017335
84		0.039229	0.036105	0.033226	0.030573	0.028129	0.025877	0.023804	0.021894	0.020137
85		0.043482	0.040251	0.037256	0.034480	0.031907	0.029523	0.027315	0.025270	0.023377
86		0.049830	0.046385	0.043173	0.040178	0.037388	0.034787	0.032365	0.030109	0.028007
87		0.060146	0.056290	0.052675	0.049286	0.046110	0.043134	0.040347	0.037735	0.035290
88		0.076531	0.072004	0.067734	0.063710	0.059917	0.056344	0.052978	0.049807	0.046822
89		0.100664	0.095198	0.090015	0.085101	0.080445	0.076033	0.071854	0.067896	0.064149
90		0.132383	0.125821	0.119564	0.113600	0.107916	0.102500	0.097343	0.092432	0.087758
91		0.168254	0.160670	0.153399	0.146430	0.139755	0.133361	0.127241	0.121383	0.115777
92		0.202189	0.193902	0.185920	0.178234	0.170835	0.163717	0.156869	0.150285	0.143955
93		0.228832	0.220277	0.212004	0.204006	0.196277	0.188810	0.181598	0.174635	0.167914
94		0.246924	0.238465	0.230258	0.222297	0.214579	0.207097	0.199847	0.192823	0.186021
95		0.259547	0.251366	0.243408	0.235667	0.228141	0.220825	0.213715	0.206808	0.200099
96		0.271735	0.263838	0.256137	0.248628	0.241309	0.234176	0.227227	0.220459	0.213867
97		0.287921	0.280200	0.272653	0.265277	0.258071	0.251033	0.244160	0.237449	0.230899
98		0.310523	0.302831	0.295296	0.287917	0.280693	0.273620	0.266698	0.259925	0.253298
99		0.339600	0.331812	0.324168	0.316666	0.309306	0.302087	0.295006	0.288064	0.281258
1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3-2. 여자

연령	연도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20	0.000024	0.000018	0.000015	0.000011	0.000009	0.000007	0.000005	0.000004	0.000003	
21	0.000027	0.000021	0.000017	0.000012	0.000010	0.000007	0.000006	0.000005	0.000004	
22	0.000026	0.000021	0.000016	0.000012	0.000009	0.000008	0.000007	0.000006	0.000004	
23	0.000026	0.000020	0.000016	0.000012	0.000010	0.000008	0.000007	0.000005	0.000004	
24	0.000028	0.000022	0.000018	0.000014	0.000011	0.000010	0.000007	0.000006	0.000004	
25	0.000035	0.000028	0.000023	0.000018	0.000016	0.000012	0.000009	0.000007	0.000006	
26	0.000042	0.000035	0.000029	0.000022	0.000019	0.000016	0.000013	0.000010	0.000009	
27	0.000048	0.000039	0.000032	0.000026	0.000021	0.000017	0.000014	0.000012	0.000010	
28	0.000051	0.000043	0.000034	0.000028	0.000023	0.000019	0.000015	0.000013	0.000011	
29	0.000056	0.000046	0.000038	0.000030	0.000025	0.000022	0.000017	0.000013	0.000011	
30	0.000065	0.000054	0.000045	0.000036	0.000030	0.000024	0.000020	0.000016	0.000013	
31	0.000076	0.000064	0.000052	0.000043	0.000036	0.000028	0.000024	0.000019	0.000017	
32	0.000087	0.000072	0.000060	0.000050	0.000040	0.000033	0.000027	0.000022	0.000018	
33	0.000102	0.000083	0.000071	0.000057	0.000046	0.000040	0.000032	0.000026	0.000021	
34	0.000119	0.000100	0.000084	0.000066	0.000056	0.000044	0.000039	0.000030	0.000024	
35	0.000143	0.000118	0.000097	0.000079	0.000067	0.000054	0.000046	0.000037	0.000031	
36	0.000159	0.000133	0.000110	0.000090	0.000074	0.000061	0.000052	0.000043	0.000036	
37	0.000168	0.000138	0.000116	0.000096	0.000078	0.000065	0.000055	0.000046	0.000039	
38	0.000166	0.000138	0.000115	0.000095	0.000078	0.000065	0.000053	0.000047	0.000037	
39	0.000163	0.000136	0.000113	0.000093	0.000079	0.000064	0.000055	0.000044	0.000038	
40	0.000165	0.000139	0.000115	0.000095	0.000079	0.000068	0.000056	0.000046	0.000039	
41	0.000176	0.000148	0.000124	0.000101	0.000084	0.000071	0.000059	0.000050	0.000042	
42	0.000195	0.000162	0.000137	0.000112	0.000095	0.000077	0.000065	0.000054	0.000046	
43	0.000210	0.000175	0.000146	0.000123	0.000103	0.000085	0.000070	0.000058	0.000049	
44	0.000229	0.000190	0.000161	0.000131	0.000111	0.000092	0.000078	0.000065	0.000054	
45	0.000248	0.000207	0.000174	0.000145	0.000122	0.000102	0.000086	0.000071	0.000060	
46	0.000271	0.000230	0.000192	0.000160	0.000134	0.000113	0.000096	0.000081	0.000069	
47	0.000298	0.000252	0.000210	0.000176	0.000149	0.000126	0.000105	0.000088	0.000075	
48	0.000321	0.000271	0.000228	0.000191	0.000162	0.000135	0.000115	0.000098	0.000082	
49	0.000336	0.000283	0.000241	0.000200	0.000171	0.000142	0.000121	0.000103	0.000086	

연령	연도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50		0.000349	0.000296	0.000250	0.000210	0.000178	0.000150	0.000126	0.000109	0.000090
51		0.000374	0.000318	0.000271	0.000225	0.000193	0.000163	0.000136	0.000117	0.000098
52		0.000413	0.000349	0.000297	0.000247	0.000211	0.000178	0.000150	0.000128	0.000110
53		0.000460	0.000390	0.000329	0.000276	0.000234	0.000196	0.000168	0.000143	0.000121
54		0.000507	0.000430	0.000363	0.000304	0.000259	0.000216	0.000184	0.000155	0.000133
55		0.000550	0.000465	0.000391	0.000329	0.000277	0.000234	0.000198	0.000168	0.000142
56		0.000596	0.000504	0.000423	0.000354	0.000298	0.000252	0.000211	0.000177	0.000149
57		0.000639	0.000538	0.000453	0.000378	0.000320	0.000268	0.000225	0.000190	0.000162
58		0.000695	0.000587	0.000492	0.000410	0.000346	0.000291	0.000242	0.000207	0.000172
59		0.000767	0.000645	0.000544	0.000453	0.000385	0.000322	0.000270	0.000227	0.000191
60		0.000865	0.000729	0.000610	0.000511	0.000430	0.000360	0.000302	0.000255	0.000215
61		0.000980	0.000825	0.000691	0.000578	0.000486	0.000411	0.000343	0.000290	0.000243
62		0.001109	0.000930	0.000784	0.000654	0.000551	0.000464	0.000390	0.000329	0.000277
63		0.001226	0.001033	0.000869	0.000726	0.000611	0.000514	0.000429	0.000365	0.000304
64		0.001349	0.001139	0.000953	0.000794	0.000670	0.000563	0.000472	0.000399	0.000333
65		0.001492	0.001253	0.001051	0.000877	0.000740	0.000620	0.000520	0.000439	0.000366
66		0.001681	0.001415	0.001188	0.000993	0.000842	0.000708	0.000592	0.000502	0.000420
67		0.001929	0.001630	0.001375	0.001154	0.000981	0.000827	0.000698	0.000594	0.000498
68		0.002254	0.001916	0.001619	0.001371	0.001167	0.000994	0.000839	0.000720	0.000610
69		0.002649	0.002261	0.001924	0.001642	0.001406	0.001203	0.001025	0.000882	0.000749
70		0.003102	0.002671	0.002287	0.001969	0.001696	0.001463	0.001255	0.001091	0.000934
71		0.003576	0.003098	0.002668	0.002312	0.002006	0.001739	0.001501	0.001313	0.001128
72		0.004098	0.003563	0.003087	0.002691	0.002344	0.002042	0.001775	0.001557	0.001344
73		0.004678	0.004090	0.003556	0.003111	0.002720	0.002384	0.002077	0.001831	0.001585
74		0.005434	0.004765	0.004158	0.003648	0.003198	0.002809	0.002459	0.002173	0.001889
75		0.006374	0.005602	0.004903	0.004315	0.003794	0.003342	0.002930	0.002594	0.002261
76		0.007409	0.006534	0.005738	0.005055	0.004457	0.003937	0.003461	0.003075	0.002690
77		0.008500	0.007517	0.006628	0.005860	0.005184	0.004592	0.004052	0.003608	0.003173
78		0.009713	0.008628	0.007640	0.006782	0.006028	0.005361	0.004749	0.004243	0.003751
79		0.011254	0.010046	0.008945	0.007978	0.007131	0.006371	0.005674	0.005094	0.004527

연령	연도	2020	2025	2030	2035	2040	2045	2050	2055	2060
80		0.013292	0.011932	0.010688	0.009578	0.008606	0.007731	0.006927	0.006247	0.005586
81		0.015697	0.014167	0.012761	0.011496	0.010390	0.009382	0.008451	0.007660	0.006890
82		0.018341	0.016654	0.015085	0.013671	0.012424	0.011281	0.010220	0.009317	0.008431
83		0.021207	0.019374	0.017669	0.016106	0.014726	0.013450	0.012264	0.011242	0.010241
84		0.024536	0.022570	0.020725	0.019016	0.017506	0.016092	0.014774	0.013626	0.012501
85		0.028176	0.026065	0.024079	0.022222	0.020575	0.019022	0.017569	0.016294	0.015040
86		0.033395	0.031069	0.028865	0.026789	0.024944	0.023190	0.021535	0.020074	0.018642
87		0.041614	0.038928	0.036374	0.033936	0.031764	0.029692	0.027728	0.025976	0.024262
88		0.054582	0.051332	0.048220	0.045230	0.042558	0.039986	0.037541	0.035346	0.033194
89		0.073871	0.069834	0.065961	0.062188	0.058820	0.055540	0.052415	0.049589	0.046817
90		0.099802	0.094828	0.090032	0.085304	0.081084	0.076930	0.072976	0.069359	0.065822
91		0.130086	0.124188	0.118482	0.112796	0.107722	0.102695	0.097864	0.093430	0.089098
92		0.160051	0.153461	0.147054	0.140608	0.134856	0.129105	0.123583	0.118460	0.113466
93		0.185149	0.178203	0.171430	0.164540	0.158404	0.152230	0.146282	0.140729	0.135339
94		0.203859	0.196855	0.190021	0.182998	0.176752	0.170421	0.164335	0.158605	0.153043
95		0.218263	0.211380	0.204635	0.197671	0.191479	0.185162	0.179070	0.173323	0.167768
96		0.232389	0.225631	0.219003	0.212125	0.206001	0.199732	0.193688	0.187936	0.182405
97		0.249980	0.243272	0.236696	0.229822	0.223703	0.217430	0.211346	0.205556	0.199981
98		0.273228	0.266464	0.259810	0.252845	0.246638	0.240239	0.234046	0.228106	0.222391
99		0.302333	0.295400	0.288577	0.281425	0.275010	0.268401	0.261989	0.255832	0.249889
1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1.000000

4. 총 가입자 수 및 신규가입자 수

(단위 : 명)

구분 연도	총 가입자수	신규 가입자수	구분 연도	총 가입자수	신규 가입자수	구분 연도	총 가입자수	신규 가입자수
2022	319,602	27,582	2045	282,821	23,640	2069	198,995	13,395
2023	317,931	28,603	2046	280,573	22,923	2070	194,945	13,145
2024	315,569	27,398	2047	278,056	22,504	2071	191,009	12,943
2025	313,679	27,235	2048	275,694	22,380	2072	187,110	12,675
2026	312,448	27,434	2049	273,385	22,208	2073	183,342	12,517
2027	312,370	28,221	2050	271,071	22,105	2074	179,692	12,380
2028	312,927	28,799	2051	268,625	21,816	2075	176,149	12,246
2029	311,936	27,146	2052	266,045	21,463	2076	172,748	12,160
2030	311,391	27,355	2053	263,111	20,894	2077	169,471	12,065
2031	310,444	26,770	2054	259,717	20,241	2078	166,318	11,986
2032	308,707	25,743	2055	255,975	19,498	2079	163,183	11,795
2033	306,700	25,471	2056	252,066	18,947	2080	160,119	11,645
2034	303,806	24,287	2057	248,020	18,417	2081	157,166	11,534
2035	300,849	23,706	2058	243,886	17,856	2082	154,243	11,343
2036	298,239	23,731	2059	239,699	17,253	2083	151,353	11,146
2037	295,704	23,622	2060	235,557	16,819	2084	148,476	10,916
2038	293,474	23,762	2061	231,496	16,487	2085	145,656	10,721
2039	291,454	23,807	2062	227,515	16,175	2086	142,860	10,490
2040	290,184	24,478	2063	223,550	15,796	2087	140,049	10,210
2041	289,062	24,684	2064	219,526	15,355	2088	137,237	9,930
2042	287,492	24,167	2065	215,478	14,960	2089	134,448	9,667
2043	286,006	24,015	2066	211,422	14,595	2090	131,691	9,412
2044	284,486	23,866	2067	207,279	14,134			
			2068	203,140	13,761			

5. 재직기간별 연금선택률

구분 재직 기간	퇴직연금	유족연금	전액연금
10	0.3769	0.725386	0.946242
11	0.4284	0.725386	0.946242
12	0.4814	0.725386	0.946242
13	0.5349	0.725386	0.946242
14	0.5876	0.725386	0.946242
15	0.6384	0.725386	0.946242
16	0.6862	0.725386	0.946242
17	0.7304	0.725386	0.946242
18	0.7705	0.725386	0.946242
19	0.8062	0.725386	0.946242
20	0.8375	0.725386	0.946242
21	0.8646	0.725386	0.946242
22	0.8877	0.725386	0.946242
23	0.9074	0.725386	0.946242
24	0.9239	0.725386	0.946242
25	0.9376	0.725386	0.946242
26	0.9491	0.725386	0.946242
27	0.9585	0.725386	0.946242
28	0.9662	0.725386	0.946242
29	0.9725	0.725386	0.946242
30	0.9777	0.725386	0.946242
31	0.9819	0.725386	0.946242
32	0.9854	0.725386	0.946242
33	0.9882	0.725386	0.946242
34	0.9904	0.725386	0.946242
35	0.9923	0.725386	0.946242
36	0.9937	0.725386	0.946242

6. 연계연금 선택률

구분 연도	연계연금 선택률	구분 연도	연계연금 선택률	구분 연도	연계연금 선택률
2022	0.08185	2044	0.21491	2068	0.21491
2023	0.09483	2045	0.21491	2069	0.21491
2024	0.10762	2046	0.21491	2070	0.21491
2025	0.12023	2047	0.21491	2071	0.21491
2026	0.13266	2048	0.21491	2072	0.21491
2027	0.14492	2049	0.21491	2073	0.21491
2028	0.15700	2050	0.21491	2074	0.21491
2029	0.16892	2051	0.21491	2075	0.21491
2030	0.18066	2052	0.21491	2076	0.21491
2031	0.19224	2053	0.21491	2077	0.21491
2032	0.20365	2054	0.21491	2078	0.21491
2033	0.21491	2055	0.21491	2079	0.21491
2034	0.21491	2056	0.21491	2080	0.21491
2035	0.21491	2057	0.21491	2081	0.21491
2036	0.21491	2058	0.21491	2082	0.21491
2037	0.21491	2059	0.21491	2083	0.21491
2038	0.21491	2060	0.21491	2084	0.21491
2039	0.21491	2061	0.21491	2085	0.21491
2040	0.21491	2062	0.21491	2086	0.21491
2041	0.21491	2063	0.21491	2087	0.21491
2042	0.21491	2064	0.21491	2088	0.21491
2043	0.21491	2065	0.21491	2089	0.21491
		2066	0.21491	2090	0.21491

7. 유족연금 소멸률

구분 연령	남자	여자	구분 연령	남자	여자	구분 연령	남자	여자
≤15	0.00013	0.00011	48	0.00212	0.00092	81	0.04264	0.02025
16	0.00016	0.00012	49	0.00234	0.001	82	0.04686	0.02269
17	0.00019	0.00013	50	0.00258	0.00107	83	0.05149	0.02542
18	0.00022	0.00014	51	0.00283	0.00114	84	0.05657	0.02847
19	0.00025	0.00016	52	0.00308	0.0012	85	0.06213	0.03189
20	0.00027	0.00017	53	0.00335	0.00126	86	0.06822	0.0357
21	0.00029	0.00019	54	0.00363	0.00133	87	0.07487	0.03996
22	0.00031	0.0002	55	0.00393	0.00141	88	0.08215	0.04472
23	0.00033	0.00021	56	0.00425	0.00149	89	0.09011	0.05003
24	0.00035	0.00022	57	0.00458	0.0016	90	0.09879	0.05596
25	0.00037	0.00022	58	0.00492	0.00171	91	0.10825	0.06256
26	0.00039	0.00022	59	0.00527	0.00183	92	0.11856	0.06991
27	0.00041	0.00022	60	0.0057	0.00197	93	0.12978	0.07808
28	0.00043	0.00024	61	0.00628	0.00212	94	0.14197	0.08717
29	0.00046	0.00026	62	0.00692	0.0023	95	0.15521	0.09726
30	0.00049	0.00029	63	0.00762	0.00258	96	0.16955	0.10844
31	0.00052	0.00032	64	0.00839	0.00289	97	0.18506	0.12083
32	0.00055	0.00034	65	0.00923	0.00325	98	0.20182	0.13451
33	0.00059	0.00036	66	0.01017	0.00364	99	0.21987	0.14961
34	0.00062	0.00038	67	0.01119	0.00408	100	0.23929	0.16624
35	0.00067	0.00041	68	0.01232	0.00458	101	0.26012	0.18451
36	0.00072	0.00043	69	0.01356	0.00514	102	0.2824	0.20453
37	0.00078	0.00046	70	0.01493	0.00576	103	0.30617	0.2264
38	0.00085	0.0005	71	0.01643	0.00646	104	0.33144	0.25022
39	0.00091	0.00052	72	0.01809	0.00724	105	0.35821	0.27607
40	0.00098	0.00055	73	0.0199	0.00812	106	0.38647	0.30401
41	0.00106	0.00058	74	0.0219	0.00911	107	0.41615	0.33408
42	0.00117	0.00061	75	0.0241	0.01021	108	0.44718	0.36627
43	0.00129	0.00064	76	0.02651	0.01145	109	1.00000	0.40052
44	0.00144	0.00068	77	0.02916	0.01283	110	1.00000	0.43676
45	0.00159	0.00073	78	0.03208	0.01439	111	1.00000	0.47481
46	0.00176	0.00079	79	0.03527	0.01613	112	1.00000	1.00000
47	0.00193	0.00085	80	0.03878	0.01807	113	1.00000	1.00000

8. 유유족률(유배우자율)

구분 연령	남자	여자	구분 연령	남자	여자	구분 연령	남자	여자
19	0.002236	0.003554	51	0.602622	0.590464	83	0.561429	0.113882
20	0.002762	0.007142	52	0.610541	0.587005	84	0.54989	0.093762
21	0.003727	0.011781	53	0.615353	0.585935	85	0.424967	0.044321
22	0.006775	0.01805	54	0.618861	0.580543	86	0.417069	0.041272
23	0.011385	0.028965	55	0.620936	0.5785	87	0.392791	0.034229
24	0.015866	0.044622	56	0.628409	0.569938	88	0.381934	0.031593
25	0.023907	0.067888	57	0.626309	0.562893	89	0.348007	0.025208
26	0.040179	0.105329	58	0.631036	0.558728	90	0.338885	0.022111
27	0.062007	0.155485	59	0.630976	0.552139	91	0.324248	0.015926
28	0.09464	0.217173	60	0.639092	0.545119	92	0.304482	0.013853
29	0.149623	0.284981	61	0.642746	0.533606	93	0.279564	0.015913
30	0.207002	0.352098	62	0.643649	0.528483	94	0.243523	0.014462
31	0.268457	0.406523	63	0.645852	0.519202	95	0.256174	0.011402
32	0.327641	0.462309	64	0.643169	0.499694	96	0.219373	0.007221
33	0.372523	0.495778	65	0.645398	0.484621	97	0.214794	0.012937
34	0.411281	0.522035	66	0.647465	0.470487	98	0.208204	0.007605
35	0.443559	0.547961	67	0.649557	0.453988	99	0.122236	0.003915
36	0.474152	0.564827	68	0.650107	0.438474	100	0.134357	0.004054
37	0.488419	0.57623	69	0.644695	0.419596	101	0	0.004941
38	0.506256	0.583226	70	0.645139	0.400404	102	0	0.004941
39	0.512059	0.584677	71	0.643862	0.379119	103	0	0.004941
40	0.524435	0.593753	72	0.640021	0.358108	104	0	0.004941
41	0.532726	0.593035	73	0.63928	0.331157	105	0	0.004941
42	0.538138	0.594549	74	0.636435	0.321617	106	0	0.004941
43	0.548559	0.594893	75	0.634973	0.297598	107	0	0.004941
44	0.557938	0.594717	76	0.628441	0.26334	108	0	0.004941
45	0.566286	0.59527	77	0.622637	0.250313	109	0	0.004941
46	0.576741	0.598427	78	0.620335	0.226692	110	0	0.004941
47	0.581304	0.595949	79	0.610042	0.201687	111	0	0.004941
48	0.587243	0.595718	80	0.599466	0.177723	112	0	0.004941
49	0.591452	0.593149	81	0.590279	0.154327	113	0	0.004941
50	0.598342	0.590867	82	0.579819	0.133641	114	0	0.004941

④ 국민연금(보건복지부)

1. 연금사업의 개요 (Pension in general)

1) 연금사업 연혁

○ 설립목적

-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합니다.

○ 설치연혁

- 1986.12.31 : 국민연금법 공포
- 1987. 9.18 : 국민연금관리공단 설립
- 1988. 1. 1 : 국민연금제도 실시(10인이상 사업장) 및 기금설치 운영
- 1992. 1. 1 : 사업장 적용범위 확대(5인이상 사업장)
- 1993. 1. 1 : 특례노령연금 지급
- 1995. 7. 1 : 농어촌지역 가입확대 적용
- 1999. 4. 1 : 도시지역 가입확대 적용(전국민 연금제도 시행)
- 1999.11. 5 : 기금운용본부 설치
- 2003. 7. 1 : 5인 미만 사업장 단계별 확대 적용(~ 2006. 1. 1)
- 2007. 7.23 : "국민연금공단"으로 명칭변경
- 2008. 1. 1 : 완전노령연금(가입기간 20년 이상) 지급개시
- 2010. 7. : 기금적립금 300조원 돌파
- 2011. 1. 1 :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따른 징수업무 이관
- 2011.10. 5 :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 시행
- 2012.12. 1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근로능력평가 사업 시행
- 2013. 2. : 기금적립금 400조원 돌파
- 2014. 7. 1 : 기초연금 사업 시행
- 2015. 9. : 기금적립금 500조원 돌파
- 2015.12.23 : 전국민 노후준비서비스 시행
- 2016. 8. 1 : 실업크레딧 제도 시행
- 2017. 7. : 기금적립금 600조원 돌파
- 2018. 7. :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도입
- 2019. 7. : 기금적립금 700조원 돌파
- 2022. 7.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제도 시행

2) 연금사업 현황(인원과 재정 현황)

○ 기금 실운영기관 조직 및 정원현황

- 조직

- 본 부 : 13실 6센터, 디지털혁신본부, 기금운용본부, 준법감시인, 국민연금연구원
- 하부조직 : 지역본부 7개소, 지사 112개소, 지역노후준비지원센터 112개소, 장애심사센터

《 조직도 》



- 정 원

(22. 12. 31 기준, 단위 : 명)

계	임원	1급	2급	3급	4급~6급	기금	일반직 또는 별정직	연구	기능	별정	공무직
7,301	6	55	241	851	4,284	380	5	43	2	2	1,432

○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수입 계	1,350,128	1,454,176	1,640,734	1,912,467	1,752,350
자체수입(A)	617,512	662,516	723,935	940,440	875,672
연금보험료수입	443,735	478,001	512,171	535,402	559,140
운용수익 등	173,777	184,515	211,764	405,038	316,532
정부내부수입	101	102	102	102	103
여유자금회수	732,515	791,558	916,697	971,925	876,575
지출 계	1,350,128	1,454,176	1,640,734	1,912,467	1,752,350
사업비(B)	209,436	230,102	259,355	294,166	343,425
기금운영비(C)	4,939	5,019	5,184	5,274	5,370
여유자금운용	1,135,753	1,219,055	1,376,195	1,613,027	1,403,555
기금재정수지(D)	403,137	427,395	459,396	641,000	526,877
연도말 누적적립금	6,387,811	7,366,538	8,337,276	9,487,194	8,904,657

* 기금재정수지(D) = 자체수입(A) - [사업비(B) + 기금운영비(C)]

* 연도말 누적적립금은 결산기준, 평가가 반영된 누적 적립금임

○ 주요 통계현황

- 가입자 추이

(단위 : 천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사업장가입자	13,818	14,158	14,320	14,581	14,786
지역가입자	7,695	7,232	6,898	6,827	6,846
임의(계속)가입자	801	826	889	940	866
계	22,314	22,216	22,107	22,348	22,498

- 연금수급자 추이

(단위 : 천명)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노령연금	3,779	4,090	4,468	4,894	5,397
장애연금	79	81	81	78	77
유족연금	742	793	842	892	951
일 시 금	170	199	197	206	218
계	4,770	5,163	5,588	6,070	6,643

- 종류별 연금급여액 추이

(단위 : 억원)

구 분	2018년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노령연금	173,840	190,693	218,169	250,833	295,441
장애연금	4,059	4,276	4,314	3,849	3,914
유족연금	20,576	22,636	24,284	26,125	28,818
일 시 금	9,052	10,039	9,774	10,561	12,029
계	207,527	227,643	256,541	291,368	340,201

3) 연금사업의 급여구성과 내용

○ 급여의 종류

구 분	종 류	내 용
연금급여 (매월 지급)	노령연금	노후 소득보장을 위한 급여 -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
	장애연금	장애로 인한 소득감소에 대비한 급여
	유족연금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의 생계보호를 위한 급여
일시금급여	반환일시금	연금을 받지 못하거나 더 이상 가입할 수 없는 경우 청산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사망일시금	유족연금 및 반환일시금을 받지 못할 경우 장제비적 성격으로 지급하는 급여

4) 재원조달방식과 비용부담방식

- 재원의 조달 :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금, 적립금 및 공단의 수입지출, 결산상 잉여금
- 비용부담방식
 - 연금보험료 : 근로자 4.5%, 사용자 4.5%, 자영자 9%
 - 정부보조금 지원(정액지원 : 100억원)

5) 감독관리체계(관리기관의 주요사업)

- 관리·운용주체
 -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리·운영하되, 그 업무를 국민연금법 제102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국민연금공단에 위탁
- 관리기관의 주요사업
 - 연금보험료 징수사업
 - 가입자와 사용자로부터 가입기간동안 매월 연금 보험료를 징수하여 국민연금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
 - 연금급여 지급사업
 - 국민의 노령·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기여
 - 종류 :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일시금(사망, 반환)
 - 국민연금 사옥확보사업
 - 안정적인 사무공간 확보, 본부지방이전을 위한 사옥 신축 및 보유사옥 관리·운영, 지방이전 직원에 대한 주거지원으로 업무능률 향상 및 민원편의 도모
 - 복지사업
 - 휴양시설 설치·운영 및 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등을 통한 가입자 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 및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 증진을 도모하여 국민연금 제도의 장기적 안정과 발전에 기여
 - 국민연금기금 여유자금 운용사업
 - 국민연금사업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연금보험료 등으로 조성된 여유자금을 금융부문에 투자·운영
 - 종류 : 주식, 채권, 해외주식, 해외채권, 대체투자 등

6) 연금사업에 영향을 주는 쟁점이슈 : 해당없음

2. 연금사업의 기금운용 (Fund Management Section)

1) 기금의 구성과 운용 현황

○ 기금 조성

- 2022년말 연금보험료 등 조성액은 1,190.0조원이고, 연금급여 등으로 299.5조원을 지출하여 890.5조원을 운용 중입니다.

(22.12월말 기준, 단위 : 조원, %)

조 성		지 출		운 용	
1,190.0		299.5		890.5 (100.0)	
· 연금보험료 등	738.7	· 연금급여	288.6	· 금융부문	889.8 (99.9)
· 운용수익	451.3	· 관리운영비 등	10.9	· 복지· 기타	0.6 (0.1)

* 금액은 반올림치리로 인해 합계에서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운용 현황

- 2022년말 적립금은 890.5조원으로 '21년말 대비 6.1% 감소하였습니다.

(시가기준, 단위 : 억원, %, %p)

구 분	2022년 말(A)		2021년 말(B)		증감(A-B)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융부문 ¹⁾	8,898,353	99.9	9,481,060	99.9	△582,707	0.0
주 식	3,662,671	41.1	4,224,324	44.5	△561,653	△3.4
채 권	3,764,909	42.3	4,063,681	42.8	△298,772	△0.5
대체투자	1,462,322	16.4	1,193,054	12.6	269,268	3.8
복지부문 ²⁾	2,036	0.02	2,005	0.02	31	0.00
기타부문 ³⁾	4,267	0.05	4,128	0.04	139	0.01
기금자산 계	8,904,657	100.0	9,487,194	100.0	△582,537	-

1) 금융부문 : 환헤지를 위한 통화선도 평가금액은 각 자산군에 배부할 수 없으나 금융부문에 가산되므로 각 자산군별 합산 금액이 금융부문 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

2) 복지부문 : 복지타운건립, 보육·노인시설 대여, 생계자금, 신용회복지원자금, 노후긴급자금

3) 기타부문 : 공단사옥건립비 등

* 금액은 반올림치리로 인해 합계에서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기금운용체계

○ 기금운용 의사결정체계



3) 기금투자관리

○ 기금운용원칙

- 기금은 투자하는 자산의 전체 수익률 변동성과 손실위험 허용범위 안에서 안정적으로 운용하되, 가입자와 미래세대의 부담완화를 위하여 수익률 제고합니다.
- 국가경제 및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연금급여 지급이 원활하도록 유동성을 고려하여 운용합니다.

○ 자산배분정책

- 목표수익률
 - 기금은 장기 운용수익률이 [실질경제성장률 + 소비자물가상승률 ± 조정치]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위험한도 : 향후 5년 동안의 Shortfall Risk ≤ 15%

- 전략적 자산배분

- 기금의 특성을 고려하여 설정된 목표수익률과 위험한도를 기초로 하여 자산배분을 실시하되, 재정추계에서 적용한 예상수익률, 기금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장기전망 등을 고려합니다.
- 기금운용위원회는 매년 향후 5년의 기간에 대한 자산배분 목표를 설정한 후 이의 이행을 위하여 시장전망과 연금 수급상황의 변화를 반영한 연간 기금운용계획 수립합니다.
-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자금의 대여, 복지시설의 설치, 기타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는 매년 신규 여유자금의 1% 이내에서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합니다.

- 목표 초과수익률

- 액티브운용을 통하여 전략적 자산배분에 의한 수익률(벤치마크 수익률) 대비 초과수익을 추구합니다.
- 기금운용위원회는 기금이 안정적인 초과수익을 얻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략적 자산배분에 의한 위험을 포함한 총 위험을 고려하여 금융부문 전체(대체투자 제외)의 목표 액티브위험과 목표 정보비율(IR)을 정하여 목표 초과수익률을 결정하고, 목표 초과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이를 자산군별로 배분합니다.

- 전술적 자산배분

- 전략적 자산배분에 기초한 각 자산군별 배분비중을 기준으로 일정범위의 변동폭 이내에서 기금이 운용되도록 합니다.
- 경제 상황의 변화 및 금융시장 전망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에서 정한 전략적 자산배분을 전술적으로 조정할 수 있으며, 각 자산군별 비중이 투자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그 근거를 명확히 하여 기금운용위원회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자산군 분류

-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금융부문, 복지부문 및 기타 부문으로 나누어 운용합니다.
- 기금의 금융부문은 국내주식, 해외주식, 국내채권, 해외채권, 대체투자 및 기타 금융상품으로 나누어 운용합니다.

- 환헤지 정책

- 환헤지 정책은 포트폴리오의 변동성 축소, 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수익률 제고, 대규모 환손실로부터 기금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해외투자 및 외화단기자금에 의한 외환익스포저는 헤지하지 않는 것을 원

직합니다.

- 미국 달러화(USD) 이외 통화로 표시된 해외채권은 미국 달러화에 대해 100% 헤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pm 10\%p$ 범위에서 환헤지 비율 조정합니다.
- 기금운용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총 외환익스포저의 일정 비율 이내에서 외화익스포저 규모를 전술적으로 조정합니다.
- 외환익스포저가 특정 통화에 집중되지 않도록 전략적 통화구성을 마련하여 관리하되, 해외주식·해외채권은 벤치마크의 통화구성을 추종하고 해외대체투자는 통화블록별 범위를 구성하여 관리합니다.

- 여유자금의 벤치마크 지수

구 분	벤치마크지수
국내주식	KOSPI
해외주식	MSCI AC World Index (ex Korea, unhedged-to-KRW)
국내채권	Customized Index
해외채권	Barclays Capital Global Aggregate Index (ex Korea, hedged-to-KRW)
대체투자	세부자산군별 벤치마크 수익률의 가중평균 (목표비중 설정방식 마련전까지는 실제비중 사용)

4) 기금운용성과

- 국민연금법 제107조 3항에 의하여 당해연도 기금의 운용 내용 및 사용 내역은 다음연도 6월말까지 기금운용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거쳐 확정 후 공시합니다.
- 2022년도 기금운용성과는 2023년 6월말에 확정 후 추후 제출합니다.

3. 연금사업의 장기재정추계 (Financial Projection Section) (2018년 제 4차 재정계산 자료)

I. 장기재정추계의 요약

1) 재정전망의 주요가정

○ 인구 가정

- 인구추계의 전문성을 인정하여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16) 중위가정을 기본으로 적용합니다.

<표1 > 인구가정

구분	2015	2020	2030	2040	2050	2060	2088	
합계출산율(명)	1.24	1.24	1.32	1.38				
기대수명(세)	남	79.0	80.3	82.7	84.7	86.3	87.8	90.8
	여	85.2	86.2	87.8	89.1	90.2	91.2	93.4

※ 최근의 저출산 경향을 고려, 대안으로 '저출산' 및 '출산율 1.05' 가정을 추가로 검토

○ 경제변수 및 노동변수 가정

-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자료를 기초로 총요소생산성, 금리, 임금, 물가전망에 대해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변수 및 노동변수 전망치를 설정하고 기획재정부 통합추계위원회의 의견(국가재정운용계획 '17~'21 반영)을 반영합니다.

<표2 > 경제변수 및 노동변수 가정

구분	'18~'20	'21~'23	'31~'40	'41~'50	'51~'60	'61~'70	'71~'80	'81~'88	'18~'88
실질경제성장률(%)	3.0	2.3	1.4	1.0	0.8	0.5	0.6	0.6	1.1
실질임금상승률(%)	2.1	2.1	2.1	2.0	1.9	1.8	1.7	1.6	1.9
실질금리(%)	1.1	1.4	1.5	1.4	1.4	1.3	1.2	1.1	1.3
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2.0	2.0	2.0	2.0
기금투자수익률(%)	4.9	4.8	4.6	4.5	4.5	4.4	4.4	4.3	4.5

주: 제시된 경제변수 가정은 해당기간의 단순평균임

○ 제도변수 가정

- 재정추계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제도발전위원회 논의를 거쳐 확정합니다.

<표3 > 제도변수 가정

구분	2017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이후
국민연금 가입률(%)	90.5	91.1	92.0	92.6	93.0
지역가입자 비율(%)	36.4	33.5	30.5	28.2	26.4
납부예외자비율(%)	49.2	48.1	44.7	42.2	40.0
지역가입자 징수율(%)	68.9	68.3	70.1	71.6	73.2

2) 재정전망결과

■ 재정수지 전망

- 3차 재정계산과 비교하여 수지적자 및 기금소진 시점이 앞당겨졌습니다.
 - 적립기금은 2041년까지 증가하고(최대적립기금 1,778조원), 2042년부터 수지적자가 발생하여 2057년에 소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표4 > 재정수지전망

구분	최대적립기금 시점	수지적자 시점	기금소진 시점
4차 재정계산	2041년(1,778조원)	2042년	2057년(△124조원)
3차 재정계산	2043년(2,561조원)	2044년	2060년(△281조원)

- GDP 대비 적립기금 규모는 48.2%(2034년)까지 증가한 후 감소

■ GDP 대비 급여지출 및 부과방식 비용률(보험료 부과대상 소득 총액 대비 급여지출 비율)

- GDP 대비 급여지출은 2020년 1.4%에서 점차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9%대 수준에 도달합니다.
- 부과방식비용률은 2020년 5.2%에서 점차 증가하여 장기적으로 29% 수준을 유지합니다.

<표5 > GDP 대비 급여지출 및 부과방식 비용률

구분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88
GDP 대비 급여지출	1.4%	2.5%	4.1%	5.8%	7.5%	8.9%	9.4%	9.4%
부과방식비용률	5.2%	9.0%	14.9%	20.8%	26.8	29.7%	29.5%	28.8%

3) 민감도 분석

- 확정적인(deterministic) 추계방법을 보완하기 위해 민감도 분석 실시하였습니다.
 - 재정추계의 주요 가정에 변화를 주고 이에 따른 추계결과의 변화를 검토함으로써 주요 가정 및 추계결과가 가지는 불확실성 범위를 가늠합니다.
 - 조합시나리오: 인구 및 거시경제변수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인구 시나리오(고위, 중위, 저위, 저출산1), 출산율1.052)를 기준으로 이에 대응하는 거시경제변수 중립 시나리오를 설정합니다.

1) 통계청 중위인구(출산율, 기대여명, 국제이동률 모두 중위)에서 출산율을 저위수준으로 변경
 2) 통계청 중위인구에서 출산율이 향후에도 1.05명('17년 실적)으로 지속된다는 가정

- 개별시나리오: 주요변수를 기준으로 개별변수를 설정하며, 시나리오로 설정하는 개별변수 이외의 다른 변수들은 기본가정을 사용합니다.

<표6 > 민감도분석 결과

시나리오	적립기금		부과방식비용률			GDP 대비 급여지출				
	수지적자	기금소진	2060년	2070년	2088년	2060년	2070년	2088년		
기본가정(중위중립)	2042년	2057년	26.8%	29.7%	28.8%	7.5%	8.9%	9.4%		
조합시나리오	저위중립	2041년	2056년	30.0%	34.9%	37.5%	8.0%	9.9%	11.4%	
	고위중립	2042년	2058년	24.3%	26.0%	23.7%	7.0%	8.2%	8.2%	
	중위낙관	2044년	2059년	24.4%	26.8%	25.6%	6.7%	8.0%	8.2%	
	중위비관	2040년	2056년	29.7%	33.2%	32.6%	8.4%	10.1%	10.9%	
	저출산 대안	2042년	2057년	28.6%	33.3%	34.9%	7.8%	9.6%	10.8%	
	출산율 1.05 대안	2042년	2057년	29.3%	34.7%	37.7%	7.9%	9.8%	11.4%	
개별시나리오	기금투자 수익률	기본가정+0.1%pt	2042년	2058년	26.8%	29.7%	28.8%	7.5%	8.9%	9.4%
		기본가정-0.1%pt	2041년	2057년	26.8%	29.7%	28.8%	7.5%	8.9%	9.4%
	임금 상승률	기본가정+0.4%pt	2042년	2057년	25.5%	28.2%	27.1%	8.4%	10.3%	11.6%
		기본가정-0.4%pt	2041년	2057년	28.2%	31.4%	30.7%	6.7%	7.7%	7.7%
	경제활동 참가율	기본가정+0.3%pt	2042년	2057년	26.8%	29.8%	28.9%	7.5%	9.0%	9.5%
		기본가정-0.3%pt	2042년	2057년	26.8%	29.7%	28.8%	7.5%	8.9%	9.4%
	임의 가입자	기본가정+0.1%pt	2042년	2057년	26.8%	29.7%	28.8%	7.5%	8.9%	9.4%
		기본가정-0.1%pt	2042년	2057년	26.8%	29.7%	28.8%	7.5%	8.9%	9.4%
	임의계속 가입자	기본가정+1.0%pt	2042년	2057년	26.8%	29.7%	28.8%	7.5%	8.9%	9.4%
		기본가정-1.0%pt	2042년	2057년	26.8%	29.7%	28.8%	7.5%	8.9%	9.4%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비율	기본가정+1.1%pt ('35년 이후)	2042년	2057년	26.8%	29.8%	28.9%	7.5%	8.9%	9.4%
		기본가정-1.1%pt ('35년 이후)	2042년	2057년	26.7%	29.7%	28.8%	7.5%	8.9%	9.4%
	지역가입자 징수율	기본가정+0.3%pt ('35년 이후)	2042년	2057년	26.8%	29.7%	28.8%	7.5%	8.9%	9.4%
		기본가정-0.3%pt ('35년 이후)	2042년	2057년	26.8%	29.7%	28.8%	7.5%	8.9%	9.4%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사업장 대비)	기본가정+0.5%pt ('35년 이후)	2042년	2057년	26.8%	29.7%	28.8%	7.5%	8.9%	9.5%
		기본가정-0.5%pt ('35년 이후)	2042년	2057년	26.8%	29.7%	28.8%	7.5%	8.9%	9.5%
	관리비, 크레딧 국고 지원	관리운영비1.6%, 출산 크레딧 30%	2041년	2057년	27.0%	29.9%	29.0%	7.5%	9.0%	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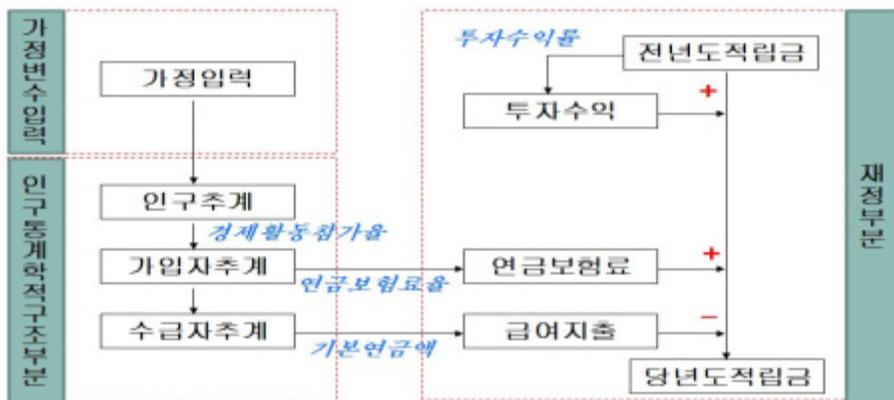
II. 장기재정추계방법

1) 추계모형

■ 모형의 특징과 구조

- 국민연금의 재정추계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재정추계모형은 가입자가 연금제도에 가입하여 사망으로 연금수급을 마감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연금제도 내용에 맞추어 세부적으로 구현하고 이를 통해 가입자, 보험료수입, 수급자, 급여지출 등을 계산하는 연금 수리적 모형(actuarial model)입니다.
- 재정추계모형은 크게 “가정변수입력부분”, “인구통계학적 추계부분” 및 “재정추계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가정변수입력부분”에서는 재정추계에 적용되는 거시경제변수 및 제도 관련 변수(보험료율, 급여조건³⁾, 소득수준 및 납부예외자비율 등) 등의 외생변수를 설정합니다.
 - “인구통계학적 추계부분”은 인구전망을 토대로 경황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를 전망하며, 가입자를 기준으로 수급조건에 따라 수급자를 산출합니다.
 - “재정추계부분”에서는 연금보험료수입, 연금급여지출, 투자수익, 적립금 등 재정전망 결과를 산출합니다.
- 실질적으로 재정추계모형은 모든 연산과정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 모듈들로 구성되어있으며, 모듈의 실행순서에 의해서 먼저 산출된 결과는 다음 모듈들의 입력 자료로 이용되는 구조입니다.

[그림 1]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모형의 구조



3) 수급연령, 가입기간, 소득활동여부 등

2) 추계방법

■ 인구추계

- 인구추계는 인구변동 요인인 출생·사망·국제이동에 대한 미래변동을 예측한 후 이를 인구균형방정식(demographic balancing equation)을 적용하여 다음 해 인구를 산출해 나가는 코호트요인법(cohort component method)을 사용합니다.
- 연도별·성별·연령별 인구 수는 전년도 성별·연령별 인구 수에 사망자를 차감하고 국제이동자 및 출생아 수를 더하여 산출하며, 출생아 수는 출산율과 출생성비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가입자추계

- 가입자추계는 인구추계의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연령별·가입종별(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 가입자 수를 산출합니다.
- 먼저 성별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의 전망으로 미래의 가입대상(18~59세) 연령범위의 인구 중 경제활동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제활동인구(labor force)를 추계하고, 이에 국민연금 가입률을 적용하여 전체 가입자를 추계한 후 지역가입비율을 적용하여 지역가입자와 사업장 가입자를 구분합니다.
- 임의가입자 및 임의계속가입자 추계와 추납보험료 납부제도 반영은 2018년 4차 재정계산부터 적용합니다.⁴⁾
- 18~59세를 대상으로 하는 임의가입자는 비가입자⁵⁾ 대비 가입자 비율, 60세 이상을 대상으로 하는 임의계속가입자는 가입자 및 대기자 대비 가입자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추납은 연금 수급이 가까워진 50세 이상을 대상으로 반영합니다.

■ 가입기간별 가입자추계

- 가입기간은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으로 가입기간별 가입자를 추정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의 가입자를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및 대기자⁶⁾로 구분하고, 가입종별 간, 공적연금 간 이동 및 사망, 국외이주로 인한 제도에서의 완전탈퇴를 고려하여 가입자의 이동률을 추정하고 가입상태와 보험료 납부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가입기간의 변화 과정을 모형화합니다.

4) 규모가 크지 않은 점과 본인의 의사에 따라 가입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예측이 힘든 점을 고려하여 기존 3차 재정계산에서는 제외되었으나 최근 들어 증가세가 뚜렷하게 나타남에 따라 4차 재정계산 추계모형에 반영

5) 인구 중 국민연금 가입자가 아닌 자를 비가입자로 정의

6) 대기자란 과거 국민연금의 가입이력이 있으나 현재 가입하고 있지 않고 연금을 수급하고 있지 않은 자를 말함

- 가입자의 이동행태에 따른 이동률을 적용하여 가입종별 간 계속가입자, 재가입자, 탈퇴자 등을 산출하게 되며, 신규가입률을 적용하여 신규가입자를 산출합니다.

■ 수급자추계

가. 노령연금

- 노령연금은 수급연령인 60세⁷⁾에 도달하고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자들을 대상으로 신규수급자를 산출하는데, 가입기간별로 구분된 가입자 및 대기자 중에서 신규수급자를 산출합니다.
 - 즉, 가입자의 가입기간 분류에 의해서 연도별·성별·연령별·가입기간별로 가입자 및 대기자가 산출되므로, 연령과 가입기간으로 노령연금 수급조건을 만족하는 대상자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는 자를 신규수급자로 산출합니다.
- 수급자는 매년 새롭게 발생하는 신규수급자와 전년도에 이어서 수급하게 되는 계속수급자로 구분하며 총 수급자는 신규수급자와 계속수급자의 합으로 산출합니다.
 - 계속수급자는 전년도 총 수급자에 생존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노령연금 수급연령 이전에 수급이 가능한 조기노령연금은 수급조건으로 연령 및 가입기간 이외에 소득활동 여부⁸⁾와 수급에 대한 본인의 의사결정이 있습니다.
 -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를 산출하기 위해서 조기수급률을 적용하며, 조기수급률은 가입자 및 대기자 중에서 연령조건과 가입기간 조건을 만족하면서 소득활동을 하지 않고 조기수급에 대한 의사를 가진 자의 비율로 정의하여 실적자료를 통해서 산출합니다.
- 노령연금 수급자 중 소득활동으로 인한 감액을 적용받는 자들의 비율을 재직수급률로 정의하고 이를 노령연금 수급자에 적용하여 소득활동에 따른 급여⁹⁾를 받게 되는 수급자를 산출합니다.
- 노령연금 수급의 연기를 신청하는 자는 연기신청률을 적용하여 산출하며 급여액은 연기기간에 따른 가산율을 반영합니다.

7) 2013년 61세에서 매 5년마다 1세씩 상향되어 2033년 이후 65세가 됨

8) 수급자의 소득활동 기준은 국민연금법에서 정하고 있음

9) 소득활동에 따른 급여액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감액하여 지급함

나. 장애연금

- 장애연금의 신규수급자는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에 장애발생률을 적용하여 그 규모가 결정됩니다.
- 장애발생률은 1개월 이상의 가입기간을 가진 가입자 중 장애연금 신규수급자수의 비율¹⁰⁾로 구하며, 최근 실적(2013~2015년 평균값)을 이용하여 산출합니다.
- 장애연금의 계속수급자는 총 수급자에서 사망 등으로 수급이 종료되거나, 다른 급여와 중복급여가 발생하여 장애연금을 선택하지 않은 자를 수급자 수에서 제외하여 산출합니다.

다. 유족연금

- 유족연금은 가입자, 가입자이었던 자, 노령연금 수급자, 장애연금 수급자가 사망 시 유족이 있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 사망률을 적용하여 사망자를 산출한 다음 유유족률(有遺族率)을 적용하여 사망자 중 유족이 있는 자를 구하고, 사망자에서 수급자로의 전환은 사망자와 수급자의 관계를 이용합니다.
 - 유유족률(有遺族率)은 사망자 중 유족이 있는 자의 비율로 정의하며, 노령연금 수급자, 장애연금 수급자,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로 구분을 두어 발생사유별로 각각 유유족률(有遺族率)을 산출합니다.
- 유족연금의 계속수급자는 사망, 25세 도달, 재혼 등으로 수급이 종료되는 자들을 제외해 나가며, 제도 내 중복급여 발생으로 유족연금을 선택하지 않은 자를 제외합니다.
 - 25세 도달로 수급이 종료되는 자는 수급자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재혼으로 수급이 종료되는 자는 재혼으로 인한 실권율을 산출하여 적용합니다.
 - 유족연금 수급자는 자신의 기여에 의한 노령연금이 발생가능하며, 또한 노령연금 수급자 중에서 가족의 기여에 의한 유족연금이 중복적으로 발생가능합니다.
 - 유족연금 수급자 중에서 자신의 노령연금과 중복급여가 발생하는 경우, 그 선택한 급여가 노령연금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30%를 수급하는 자로 결정하고, 반대인 경우에는 노령연금 수급자 수에서 차감합니다.
 - 마찬가지로 노령연금 수급자 중에서 유족연금과 중복급여가 발생하는 경

10)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한 대상이 기존 가입자에서 2016년 5월 국민연금법 개정 이후부터 가입자이었던 자까지로 적용이 확대되었으나 관련 실적자료가 불충분하여 장애발생률은 가입자 중 장애연금 신규수급자 수의 비율로 산출

우, 그 선택한 급여가 노령연금인 경우에는 유족연금의 30%를 지급하는 자로 결정하고, 반대인 경우에는 노령연금 지급자 수에서 차감합니다.

라. 일시금

- 반환일시금 지급자추계는 지급사유별로 지급자수와 급여액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합니다.
 - '60세 도달자'는 가입기간별 가입자추계 결과를 사용하여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 중에서 60세에 도달하였으나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자들로 산출합니다.
 - '사망으로 인한 반환일시금의 지급자'는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가입자이었던 자를 대상으로 사망률과 유유족률(有遺族率)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국외이주로 인한 지급자'는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 중 국외이주로 인한 반환일시금 지급률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국외이주로 인한 반환일시금 지급률은 '1개월 이상의 가입자 및 가입자이었던 자' 중에서 발생한 국외이주로 인한 반환일시금 지급자로 정의하고 실적을 통해서 산출합니다.

■ 보험료수입, 급여지출 및 적립기금 추계

가. 보험료수입 추계

- 보험료수입은 가입자 수, 가입자의 소득, 보험료율, 소득신고자비율(=1-납부예외자비율), 징수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 가입자의 평균소득은 성별·연령별로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구분하여 산출합니다.
 -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은 먼저 기준소득월액 상한에 속한 가입자의 경우 A값 상승률에 따라 상승하는 것으로 가정하고, 그 외 가입자의 경우 다시 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구분하여 5인 이상 사업장의 가입자는 거시경제변수에서 설정된 임금상승률에 따라 상승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의 가입자는 5인 이상 사업장가입자 소득의 일정 수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가정하며, 최종적으로 이를 통합한 평균값을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으로 설정합니다.
 - 지역가입자의 평균소득은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의 일정 수준을 적용합니다.
 - 성별·연령별 평균소득은 각 가입종별 전체 평균소득에 가입종별 소득지

수11)를 적용함으로써 성별·연령별 소득의 차이가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합니다.

- 지역가입자의 징수율과 납부예외자 비율은 성별 및 연령과 상관성이 높으므로 성별·연령별로 세분화하여 적용합니다.
- 보험료수입은 가입종별로 구분하여 각각 산출한 다음 합산합니다.
 - 사업장가입자의 보험료수입은 사업장가입자의 평균소득에 보험료율과 징수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지역가입자의 보험료수입은 납부예외자를 제외한 소득신고자의 평균소득에 보험료율과 징수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나. 기본연금액 추계

- 기본연금액은 신규수급자의 급여액을 산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 가입기간 및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을 이용하여 기본연금액의 계산을 위한 급여수준 및 가입자 본인의 소득평균(B값)을 산출합니다.
 - 즉, 수급자의 가입기간이 속해 있는 기간에 따라 급여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각 가입시점별로 소득에 차이가 발생하므로 보험료를 납부한 시점의 급여수준과 소득이 현실적으로 추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가입기간 동안 가입종별의 이동 및 연금보험료의 납부 여부를 추적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 연도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A값)은 가입종별 가입자 소득의 평균으로 산출합니다.

다. 급여지출 추계

- 급여지출액은 수급자와 이들의 평균급여액의 곱으로 산출되며, 신규수급자의 급여액과 계속수급자의 급여액을 각각 산출하여 합산합니다.
 - 신규수급자의 평균급여액은 기본연금액에 각 연금별 급여수준 조건을 부과하여 산출합니다.
 - 계속수급자의 평균급여액은 전년도 총 수급자의 평균급여액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11) 추계모형에서 방법론상 성별·연령별 평균소득을 추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개념으로서 가입자 전체의 평균소득 대비 성별·연령별 가입자의 평균소득의 상대적 비율로 정의

라. 적립기금 추계

- 총수입은 연금보험료 수입, 기금투자수입의 합이고, 총지출은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급여총액과 관리운영비로 구성되며, 총수입과 총지출의 수지차가 전년도에 적립기금에 누적되어 금년도의 적립기금이 됩니다.
- 당해 연도 기금투자수입은 전년도 말 적립기금에 당해 연도의 기금투자 수익률 가정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Ⅲ. 주요가정

1) 인구변수 가정

■ 인구 가정

- 인구 가정은 2016년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5~2065년)의 중위가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2065년 이후에 대해서는 연금정책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추가 제공한 50년(~2115년)에 대한 추계결과를 사용합니다.
- 재정추계위원회에서는 통계청의 시나리오 및 출산율 및 사망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검토 후 인구가정을 설정합니다.
- 통계청 중위가정을 대표 가정으로 제시하되 최근 급격하게 낮아진 합계출산율과 그에 따른 장기적인 생산인구감소가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재정추계 결과를 추가 검토합니다.

■ 출산율 가정

- 연령별 출산율은 특정연령의 가임기 여성인구 1천 명당 출산한 아이수이며, 합계출산율은 연령별출산율을 따른다면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의미합니다.
- 합계출산율은 1971년 4.54명을 정점으로 일부 불규칙한 변동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11년 1.24명에서 2012년 1.30명으로 증가하였으나, 2013년에는 1.19명으로 다시 감소하였고, 2014년 1.21명, 2015년에는 1.24명으로 2011년 수준을 회복합니다.
-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2050년 1.38명까지 상승 후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표7> 합계출산율 가정

(단위 : 명)

구분	2015	2020	2030	2050년 이후
합계출산율	1.24	1.24	1.32	1.38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2016.

- 3차 재정계산에서는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11)의 중위가정을 사용합니다.
- 금번 4차 재정계산에서 합계출산율 최종수준은 1.38명으로 3차 재정계산의 합계출산율 가정보다 다소 낮은 수준입니다.

■ 출생성비 가정

- 출생성비(출생한 여아 100명당 남아수)는 2007년에 정상성비에 진입한 후 2011년 이후 105명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점을 감안, 최근 3년 평균 출생성비가 유지될 것으로 가정합니다.

■ 사망률 가정

- 유소년 인구 및 고령층의 사망이 감소하면서 기대수명(0세에서의 기대여명)은 지난 30년간 급격히 증가되었으나 최근 들어 증가속도가 크게 둔화, 남녀 간의 격차도 줄어드는 추세로 남자의 기대수명이 여자보다 빠르게 향상되고 있습니다.
- 남자 기대수명은 2015년 79.0세에서 2065년 88.4세로 9.4세 증가 이후 2088년에 90.8세, 여자는 2015년 85.2세에서 2065년 91.6세로 6.4세 증가 이후 2088년에 93.4세로 전망합니다.

<표8> 기대수명 가정

(단위 : 세)

구분	2015	2020	2030	2040	2050	2060	2065
남자	79.0	80.3	82.7	84.7	86.3	87.8	88.4
여자	85.2	86.2	87.8	89.1	90.2	91.2	91.6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2016.

- 3차 재정계산에서는 남자 기대수명이 2010년 77.2세에서 2060년 86.6세, 여자는 2010년 84.1세에서 2060년 90.3세로 가정합니다.

- 최근의 기대수명이 3차 재정계산의 전망보다 증가되었고, 남자의 기대수명도 지속해서 개선되고 있어 금번 4차 재정계산에서는 2060년 기대수명이 남자 1.2세, 여자 0.9세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

■ 국제이동 가정

- 국제이동에 의한 인구 증가는 2015년 8만명(인구천명당 1.6명)에서 2020년 6만 4천명(인구천명당 1.2명), 2065년에는 3만 2천명(인구천명당 0.7명)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표9> 국제순이동률 가정

(단위 : 인구천명당)

구분	2015	2020	2030	2040	2050	2065년이후
국제순이동률	1.6	1.2	0.6	0.7	0.7	0.7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결과』, 2016. 순이동률은 국제 순이동자 수를 특정연도 인구로 나눈 비율

2) 경제변수 가정

■ 경제변수 가정 설정

-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장기 경제전망치를 기초로 중요소생산성, 금리, 임금, 물가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를 토대로 경제변수와 노동변수 전망치를 설정하고 통합재정추계의원회의 의견(국가재정운용계획 2017~2021)을 반영합니다.
- 경제변수 가정은 장래 인구추계를 기반으로 전망되며, 임금상승률, 금리 및 기금투자수익률, 물가상승률 등 주요 거시경제 전망은 경제성장률 전망과 일관성 있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 이에 따라 먼저 실질경제성장률을 전망하고, 그 전망치와 부합하는 실질 임금상승률, 실질금리를 전망한 후 물가상승률에 대한 가정과 결합하여 명목임금상승률 및 명목금리의 전망치를 도출합니다.

■ 경제성장률, 임금상승률, 금리, 물가상승률 전망

- 실질경제성장률은 2018~2020년 기간 중 연평균 3.0%에서 2021~2030년 2.3%, 2041~2050년 1.0%, 2051~2060년 0.8%로 둔화되고, 그 이후 기간에는 0.5%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 특히 2020년 이후 취업자 증가율이 감속세로 전환되고 자본추적도 증가세가

- 둔화되는 등 인구고령화의 효과로 인하여 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둔화됩니다.
- 2060년 이후 경제성장률은 인구구조가 어느 정도 안정적인 추이를 보이면서 0.5% 수준의 안정적인 모습으로 예상됩니다.
 - 실질임금상승률은 2018~2020년 연평균 2.1%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장기적으로 1% 중반대로 전망됩니다.
 - 이는 우리경제가 정상상태(steady-state)에 근접해 감에 따라 자본축적 속도가 둔화되고, 이에 따라 한계노동생산성 증가율도 일정 수준으로 수렴하는데 기인
 - 실질금리는 2018~2020년 1.1%에서 2040년 1% 중반 대까지 상승하다가 그 이후 소폭 하락하여 장기적으로 1% 초반대로 전망됩니다.
 - 실질금리는 인구구조 고령화 가운데 인당 노동생산성 증가세가 확대되는 2040년까지 상승하다가 그 이후 소폭 하락세를 예상합니다.
 - 물가상승률은 현재 물가안정목표인 2.0% 수준을 지속하는 것으로 전망됩니다.
 - 물가상승률은 장기적으로 통화당국의 정책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보고 현재 물가안정 목표로 설정합니다.

<표10> 경제변수 가정

(단위 : %)

구분	2018~ 2020	2021~ 2030	2031 ~2040	2041 ~2050	2051 ~2060	2061 ~2070	2071~ 2080	2081~ 2088
실질경제성장률	3.0	2.3	1.4	1.0	0.8	0.5	0.6	0.6
실질임금상승률	2.1	2.1	2.1	2.0	1.9	1.8	1.7	1.6
실질금리	1.1	1.4	1.5	1.4	1.4	1.3	1.2	1.1
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2.0	2.0	2.0

주 : 제시된 경제변수 가정은 해당 기간의 단순평균임.

■ 경제활동참가율 가정

- 성별 및 연령별로 구분된 인구집단별로 경제활동참가율 결정모형을 설정하고 각 설명변수의 변화를 예측하여 2030년까지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전망하고, 2030년 이후 전망은 외국의 추이와 제도적 요인의 변화를 감안하는 시계열 연장방법으로 추계합니다.

<표11> 경제활동참가율 가정(남자)

(단위 : %)

연령계층	2016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88
15~19	8.1	9.7	10.0	10.0	10.0	10.0	10.0	10.0	10.0
20~24	45.8	44.0	43.2	46.1	49.0	51.9	54.3	56.2	57.7
25~29	78.2	75.8	77.8	79.3	80.9	82.5	83.8	84.9	85.7
30~34	92.1	91.3	90.5	90.4	90.3	90.2	90.2	90.1	90.1
35~39	94.3	94.6	93.3	93.1	92.9	92.6	92.4	92.3	92.2
40~44	94.7	94.7	93.2	92.9	92.6	92.3	92.1	91.9	91.7
45~49	93.9	93.5	91.9	91.6	91.3	90.9	90.7	90.4	90.3
50~54	91.5	91.0	90.3	89.9	89.5	89.1	88.8	88.5	88.3
55~59	86.8	87.9	89.2	88.8	88.4	88.1	87.7	87.5	87.3
60~64	74.6	77.9	81.9	81.3	80.6	79.9	79.3	78.9	78.5
65~69	58.2	60.1	62.6	62.1	61.7	61.3	60.9	60.6	60.4
70~74	42.9	44.9	48.6	47.1	45.7	44.2	43.0	42.0	41.2
75세 이상	26.0	25.0	25.9	25.2	24.6	23.9	23.3	22.9	22.5
계 ¹⁾	73.9 (78.9)	73.8 (80.0)	71.5 (81.2)	66.4 (81.0)	62.3 (80.1)	60.1 (80.3)	57.9 (80.5)	57.3 (80.1)	57.7 (80.2)

1) ()값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임

<표12> 경제활동참가율 가정(여자)

(단위 : %)

연령계층	2016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88
15~19	9.6	11.0	11.0	11.0	11.0	11.0	11.0	11.0	11.0
20~24	56.6	51.7	51.5	53.4	55.4	57.4	59.0	60.4	61.4
25~29	75.0	76.8	80.0	81.0	82.1	83.1	83.9	84.6	85.2
30~34	62.3	66.2	72.9	75.8	77.8	79.9	81.9	83.3	83.8
35~39	58.0	59.3	62.2	68.4	72.7	76.3	79.3	82.1	83.2
40~44	64.7	64.7	68.5	74.1	76.4	78.2	80.3	83.1	84.2
45~49	70.0	73.7	77.8	79.1	80.4	81.7	82.9	83.7	84.4
50~54	67.0	71.6	75.9	77.9	80.0	82.0	83.4	84.3	84.9
55~59	58.9	63.2	68.6	70.6	72.5	74.5	76.1	77.4	78.4
60~64	49.0	50.9	56.1	57.8	59.5	61.2	62.6	63.7	64.6
65~69	35.8	37.8	41.5	42.3	43.1	43.8	44.5	45.0	45.4
70~74	25.9	28.4	29.8	28.5	27.1	25.8	24.7	23.8	23.1
75세 이상	13.8	15.2	15.2	14.7	14.1	13.6	13.1	12.7	12.4
계 ¹⁾	52.1 (58.4)	53.5 (61.0)	52.9 (64.4)	49.9 (66.8)	47.4 (68.2)	46.8 (70.1)	46.6 (71.9)	47.3 (73.0)	48.0 (73.7)

1) ()값은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경제활동참가율임

■ 기금투자수익률 가정

- 4차 재정계산에서는 기존의 3년 만기 회사채수익률에 1.1배하는 방식에서 자산군별 수익률을 자산배분 비중으로 가중평균하는 bottom-up 방식으로 변경합니다.
- 주식투자비중 증가 및 투자다변화를 고려하여 방법론을 변경합니다.
 - 3차 재정계산 시, 금리의 1.1배를 적용한 기금운용수익률 전망치는 현실에 비해 높게 설정되어 실현수익률과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 재정추계에 적용되는 기금운용수익률과 중기자산배분안의 목표수익률간의 일관성 부재에 따른 차이가 발생합니다.
 - 과거 채권위주의 자산배분에서 해외투자 및 주식투자 비중을 늘리는 자산배분으로 정책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반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 기금투자수익률은 자산군별(국내채권, 국내주식, 해외채권, 해외주식, 대체투자)로 수익률을 가정하여 합산합니다.
 - 자산군별 포트폴리오는 중기자산배분(안)¹²⁾을 활용합니다.
- 향후 2018년~2023년은 현재의 중기자산배분상 기대수익률 산출체계에 따른 자산군별 기대수익률 및 중기자산배분(안)을 적용하여 기금수익률 도출하고, 2024년 이후는 재정추계위원회의 가정과 방법론에 따른 결과를 활용합니다.

<표13> 자산군별 수익률

(단위 : %)

구분	'18~'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88
국내채권	2.7	3.0	3.1	3.1	3.0	2.9	2.8	2.7
국내주식	6.3	5.8	4.9	4.7	4.5	4.4	4.5	4.6
해외채권	2.4	3.0	3.5	3.5	3.5	3.5	3.5	3.5
해외주식	6.3	6.3	6.2	6.1	6.1	6.1	6.1	6.1
대체투자	4.6	5.7	5.1	5.0	4.9	4.8	4.7	4.6

주 : 제시된 값은 해당기간의 단순평균임

<표14> 기금투자수익률 가정

(단위 : %)

구분	'18~'20	'21~'30	'31~'40	'41~'50	'51~'60	'61~'70	'71~'80	'81~'88
기금투자수익률	4.9	4.8	4.6	4.5	4.5	4.4	4.4	4.3

주 : 제시된 값은 해당기간의 단순평균임

12) 2018년 자산배분은 2017년 중기자산배분 상 2018년 자산군별 비중을 적용, 2019~2023년 자산배분은 2018 중기자산배분(안) 적용, 2023년 이후는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가정

3) 제도변수 가정

- 4차 재정계산에서는 그간 축적된 자료를 활용하고 자의적 가정을 최소화하기 위해 3차 재정계산과 달리¹³⁾ 다음의 두 가지 방식의 논의 및 검토를 거쳐 최종 제도변수 가정을 결정합니다.
 - 첫 번째로는 제도변수의 시계열적 패턴 및 장기적 추세를 분석하기 적합한 시계열 분석을 활용합니다.
 - 두 번째로는 연금제도 변화, 인구구조 및 경제활동상태 변화 등, 시계열 모형에서 분석하기 어려운 사회·경제적 변화를 고려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률¹⁴⁾ 가정

- 국민연금 가입률은 2013년 89.3%, 2017년 90.5%로 꾸준히 증가하여 왔으나, 그 증가속도는 3차 재정계산 당시 보다 감소합니다.
- 이러한 증가 추세를 반영하기 위해 국민연금 가입률은 2000년~2017년 가입률 자료를 시계열모형에 적용시켜 전망하는 것으로 가정하되, 전망기간이 길어질수록 예측오차가 커지는 점을 반영하여 2035년 93%수준까지만 상승시키고, 그 이후에는 93%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표15> 국민연금 가입률 가정

(단위 : %)

구분	2017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이후
국민연금 가입률	90.5	91.1	92.0	92.6	93.0

■ 지역가입자 비율 가정

- 최근 지역가입자 비율은 2013년 41.6%에서 2017년 36.4%로 감소하였으며, 지난 3차 재정계산 가정과 동일하게 지역가입자 비율 감소 경향이 뚜렷합니다.
- 한국은 자영자 감소 추세에도 여전히 자영자 비율이 2017년 현재 25.4% 수준으로 높은 편이고, 최근 미국과 일본의 비임금근로자 비율이 다시 높아진 점, 그리고 전망기간에 따른 예측오차를 고려하여 지역가입자 비율은 2035년 26.4%까지만 감소시킨 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13) 제3차 재정계산(2013)에서는 경제활동인구 분석에 기반하여 가입자를 추계하고 선진국 연금제도 및 정책목표를 반영하여 제도변수를 가정

14) 국민연금 가입률은 경제활동인구(18세~59세)대비 국민연금 가입자 비율임

<표16> 지역가입자 비율 가정

(단위 : %)

구분	2017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이후
지역가입자 비율	36.4	33.5	30.5	28.2	26.4

■ 납부예외자 비율 가정

- 최근 납부예외자 비율은 2013년 53.7%에서 2017년 49.2%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나, 이는 소득과약 향상에 따른 납부예외자 비율 감소에 기인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 납부예외자 비율은 비경제활동인구와 실업인구를 합한 인원의 약 50%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하되, 제도개선에 따른 효과와 전망기간에 따른 예측오차를 고려하여 2035년에 40%까지 감소한 후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표17> 지역가입자 납부예외자 비율 가정

(단위 : %)

구분	2017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이후
납부예외자 비율	49.2	48.1	44.7	42.2	40.0

■ 징수율 가정

- 사업장가입자 징수율은 최근 2017년 실적 98.6%가 향후에도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 지역가입자 징수율의 최근 실적은 2013년 66.9%에서 2017년 68.9%로 상승 추세, 이러한 추세를 반영하기 위하여 보험료 미납자를 분석한 결과, 미납자의 장기체납 경향이 고착화되고 있으나, 신규미납자 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계속미납자는 장래에도 80% 수준을 유지하고 신규미납자 감소추세도 일정기간 지속되는 것으로 가정, 이에 따라 징수율은 2017년 68.9%에서 2035년 73.2%까지 상승한 후 유지되는 것으로 설정합니다.

<표18> 징수율 가정

(단위 : %)

구분	2017년	2020년	2025년	2030년	2035년 이후
사업장가입자 징수율	98.6				
지역가입자 징수율	68.9	68.3	70.1	71.6	73.2

■ 소득수준 가정

- 지역가입자 소득수준은 2017년 51.1%에서 2032년 47.7%까지 하락하고, 이 비율이 2042년까지 비율을 유지한 후, 다시 상승하여 2060년 49.7%, 2088년 50.9%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설정합니다.

<표19> 사업장가입자 소득 대비 지역가입자 소득의 비율

(단위 : %)

구분	2017년	...	2032~2042년	...	2060년 이후	2088년
사업장가입자 소득 대비 지역가입자 소득	51.1		47.7		49.7	50.9

■ 공적연금 연계신청률 가정

- 법 개정(2009.8)으로 국민연금과 직역연금(공무원, 군인, 사학 등)의 통산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인 경우 연계신청을 통해 각 기관에서 기여한 가입기간만큼 연계연금을 지급 합니다.
- 연계급여를 반영하기 위해 공적연금 연계신청률을 설정하며, 공적연금 연계신청률은 연계대상자 대비 연계급여 신청자의 비율로 정의합니다.

<표20> 공적연금 연계신청률

(단위 : %)

구분		2018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88
공무원연금	남	7.1	8.9	17.8						
	여	5.5	6.8	13.7						
사학연금		2.5	5.0	16.5	26.6	35.4	43.2	50.1	56.1	59.9
군인연금		0.6								

■ 기타

○ 관리운영비 가정

- 관리운영비는 최근의 실적을 초기치로 하여 임금상승률로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 관리운영비 중에서 국고부담과 기금전입금에 대한 가정은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은 국고부담이 1.64%, 기금 98.36%인 것으로 가정하되, 그 이후는 국민연금사업에 대한 국고지원의 강화를 명시하기 위하여 국고와 기금전입금 부담이 각각 50%로 동일한 것으로 가정합니다.

<표21> 관리운영비와 국고부담 비율에 대한 가정

(단위 : 억원, %)

구분	2017년	2018~2022	2023년 이후
관리운영비 총액	6,235	임금상승률에 연동하여 상승	
국고 부담 비율	1.64	1.64	50.0

○ 크레딧 가정

- 3차 재정계산과 동일하게 4차 재정계산에서도 출산/군복무 크레딧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IV. 추계결과

1) 추계기간

○ 2018년을 기준으로 ‘향후 70년’인 2088년까지 국민연금에 대한 재정수지를 추계합니다.

2) 인구구조

<표22> 인구구조 및 노인부양비

(단위 : 천명, %)

구분	인구				구성비			노인 부양비 (나)/(가)
	계	18세미만	18-64세 (가)	65세이상 (나)	18세미만	18-64세	65세이상	
2018	51,635	8,255	35,999	7,381	16.0	69.7	14.3	20.5
2019	51,811	8,066	36,051	7,694	15.6	69.6	14.8	21.3
2020	51,974	7,958	35,882	8,134	15.3	69.0	15.6	22.7
2025	52,610	7,706	34,396	10,508	14.6	65.4	20.0	30.6
2030	52,941	7,431	32,556	12,955	14.0	61.5	24.5	39.8
2035	52,834	7,187	30,471	15,176	13.6	57.7	28.7	49.8
2040	52,198	6,855	28,222	17,120	13.1	54.1	32.8	60.7
2045	51,051	6,367	26,505	18,179	12.5	51.9	35.6	68.6
2050	49,433	5,832	24,788	18,813	11.8	50.1	38.1	75.9
2055	47,430	5,417	23,439	18,574	11.4	49.4	39.2	79.2
2060	45,246	5,178	21,531	18,536	11.4	47.6	41.0	86.1
2065	43,024	5,003	19,748	18,273	11.6	45.9	42.5	92.5
2070	40,803	4,810	18,666	17,328	11.8	45.7	42.5	92.8
2075	38,631	4,561	17,815	16,255	11.8	46.1	42.1	91.2
2080	36,539	4,257	16,931	15,351	11.7	46.3	42.0	90.7
2085	34,534	3,961	16,223	14,350	11.5	47.0	41.6	88.5
2088	33,379	3,814	15,765	13,800	11.4	47.2	41.3	87.5

<표23> 가입자수 및 수급자수

(단위 : 천명, %)

구분	가입자수(가)	수급자수				제도부양비 (나)/(가)
		전체	노령연금(나)	장애연금	유족연금	
2018	21,818	4,413	3,669	83	662	16.8
2019	21,867	4,758	3,963	89	706	18.1
2020	21,832	5,127	4,280	95	752	19.6
2025	21,377	6,816	5,699	121	995	26.7
2030	20,355	8,504	7,132	145	1,227	35.0
2035	18,944	10,526	8,948	161	1,417	47.2
2040	17,766	12,848	11,140	163	1,545	62.7
2045	16,487	14,713	12,918	161	1,634	78.4
2050	15,574	15,998	14,167	153	1,678	91.0
2055	14,399	16,582	14,793	145	1,644	102.7
2060	13,285	17,069	15,416	127	1,527	116.0
2065	12,621	17,000	15,548	109	1,344	123.2
2070	12,076	16,164	14,926	98	1,141	123.6
2075	11,484	15,180	14,152	90	938	123.2
2080	11,022	14,265	13,437	83	745	121.9
2085	10,530	13,256	12,579	80	598	119.5
2088	10,193	12,725	12,094	78	553	118.6

<표24> 인구 대비 수급자수 비율(65세 이상)

(단위 : 천명, %)

구분	수급자수(65세 이상)				인구 대비 수급자수 비율(65세 이상)			
	전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전체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2018	3,074	2,675	17	382	41.6	36.2	0.2	5.2
2019	3,317	2,876	18	423	43.1	37.4	0.2	5.5
2020	3,601	3,115	20	466	44.3	38.3	0.2	5.7
2025	5,230	4,496	32	702	49.8	42.8	0.3	6.7
2030	7,212	6,220	44	949	55.7	48.0	0.3	7.3
2035	9,534	8,314	54	1,166	62.8	54.8	0.4	7.7
2040	11,919	10,526	61	1,332	69.6	61.5	0.4	7.8
2045	13,806	12,287	62	1,457	75.9	67.6	0.3	8.0
2050	15,328	13,734	60	1,533	81.5	73.0	0.3	8.1
2055	15,958	14,378	55	1,525	85.9	77.4	0.3	8.2
2060	16,484	15,008	47	1,428	88.9	81.0	0.3	7.7
2065	16,503	15,197	40	1,266	90.3	83.2	0.2	6.9
2070	15,740	14,626	33	1,081	90.8	84.4	0.2	6.2
2075	14,763	13,844	28	891	90.8	85.2	0.2	5.5
2080	13,890	13,159	24	707	90.5	85.7	0.2	4.6
2085	12,900	12,312	22	566	89.9	85.8	0.2	3.9
2088	12,374	11,829	21	525	89.7	85.7	0.1	3.8

3) 재정추계결과

<표25> 재정수지전망

(단위 : 십억원, %)

연도	적립기금	수입			지출		수지차	적립배율	보험료율	적립기금 (2017년 불변가액)
		총수입	보험료 수입	투자 수익	총지출	연금급여				
2018	671,383	73,386	43,704	29,682	23,645	23,009	49,741	26.3	9.0	659,512
2020	780,610	84,745	48,028	36,717	29,190	28,500	55,556	24.8	9.0	737,031
2025	1,078,656	107,458	59,620	47,838	48,264	47,835	59,194	21.1	9.0	922,431
2030	1,378,515	132,884	71,537	61,347	73,509	72,985	59,375	17.9	9.0	1,067,730
2035	1,641,860	156,078	83,537	72,541	109,643	109,003	46,435	14.6	9.0	1,151,822
2040	1,776,319	174,861	95,926	78,934	163,722	162,941	11,139	10.8	9.0	1,128,676
2041	1,777,883	177,213	98,183	79,029	175,649	174,837	1,564	10.1	9.0	1,107,519
2042	1,768,941	179,062	100,426	78,635	188,003	187,158	-8,942	9.5	9.0	1,080,342
2045	1,673,943	183,658	108,758	74,899	227,237	226,286	-43,580	7.6	9.0	963,359
2050	1,244,339	182,881	125,396	57,485	298,884	297,728	-116,004	4.6	9.0	648,613
2055	384,976	162,463	140,908	21,555	377,053	375,651	-214,590	1.6	9.0	181,752
2057	-123,881	147,200	147,200	-	415,992	414,477	-268,791	0.3	9.0	-56,215
2060		157,690	157,690	-	485,289	483,593	-327,599		9.0	
2065		180,876	180,876	-	607,810	605,764	-426,934		9.0	
2070		208,618	208,618	-	713,127	710,663	-504,509		9.0	
2075		238,404	238,404	-	815,338	812,381	-576,934		9.0	
2080		274,085	274,085	-	931,141	927,604	-657,056		9.0	
2085		313,103	313,103	-	1,045,131	1,040,906	-732,028		9.0	
2088		337,382	337,382	-	1,119,935	1,115,234	-782,553		9.0	

<표26> 부과방식비용률 및 GDP 대비 급여지출 추이

(단위 : 십억원, %)

연도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총액 (가)	급여지출 (나)	GDP (다)	GDP대비 보험료부과대 상소득총액 (가)/(다)	GDP대비 급여지출 (나)/(다)	부과방식 비용률 (나)/(가)
2018	502,305	23,009	1,806,963	27.8	1.3	4.6
2020	549,469	28,500	1,984,946	27.7	1.4	5.2
2025	678,436	47,835	2,445,452	27.7	2.0	7.1
2030	811,739	72,985	2,924,580	27.8	2.5	9.0
2035	947,973	109,003	3,407,651	27.8	3.2	11.5
2040	1,091,203	162,941	3,928,053	27.8	4.1	14.9
2045	1,241,018	226,286	4,486,486	27.7	5.0	18.2
2050	1,434,787	297,728	5,096,405	28.2	5.8	20.8
2055	1,613,011	375,651	5,760,773	28.0	6.5	23.3
2060	1,805,740	483,593	6,454,771	28.0	7.5	26.8
2065	2,072,279	605,764	7,181,179	28.9	8.4	29.2
2070	2,390,572	710,663	7,966,870	30.0	8.9	29.7
2075	2,732,050	812,381	8,869,334	30.8	9.2	29.7
2080	3,141,781	927,604	9,909,947	31.7	9.4	29.5
2085	3,589,548	1,040,906	11,068,147	32.4	9.4	29.0
2088	3,868,136	1,115,234	11,816,028	32.7	9.4	28.8

○ 저출산 시나리오 재정추계결과

- 최근의 저출산 경향을 고려하여 '저출산15' 및 '출산율 1.05명16' 인구가정을 추가로 검토합니다.
- 저출산 시나리오의 경우 수지적자(2042년) 및 기금소진 시점(2057년)은 기본가정과 동일하나,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부과방식비용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표27> 저출산 고려 시 재정전망

인구가정	최대적립기금 시점	수지적자 시점	기금소진 시점
저출산	2041년(1,775조원)	2042년	2057년(△209조원)
출산율 1.05명	2041년(1,773조원)	2042년	2057년(△239조원)

<표28> 저출산 고려 시 부과방식비용률

(단위 : %)

인구 가정	2020	2030	2040	2050	2060	2070	2080	2088
저출산	5.2	9.0	15.0	21.3	28.6	33.3	35.2	34.9
출산율 1.05명	5.2	9.0	15.0	21.5	29.3	34.7	37.7	37.7

15) 통계청 중위인구(출산율, 기대여명, 국제이동률 모두 중위)에서 출산율을 저위수준으로 변경

16) 통계청 중위인구에서 출산율이 향후에도 1.05명('17년 실적)으로 지속된다는 가정

V. 민감도분석

1) 민감도분석을 위한 시나리오

■ 시나리오 설정 방법

- 조합시나리오는 인구 및 거시경제변수의 상관성을 고려하여 인구 및 거시경제변수 전망 가정을 함께 변화시키며, 금번 재정계산에서는 기본가정으로 설정한 시나리오(중위중립) 외에 6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합니다.
 - 인구 시나리오에서의 고위, 저위, 저출산 대안, 출산율 1.05 대안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이에 대응하는 거시경제변수 중립 시나리오의 4가지를 설정합니다.
 - 인구 중위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거시경제변수의 낙관, 비관 시나리오 2가지를 설정합니다.
- 개별 시나리오는 주요변수를 기준으로 설정하며, 시나리오로 설정하는 개별변수 이외의 다른 변수들은 기본가정을 사용합니다.
 - 개별 변수에 대한 민감도분석은 주요 경제변수와 장래 불확실성이 큰 제도관련변수를 포함시켜, 기금투자수익률, 임금상승률, 경제활동참가율, 납부예외자 비율, 지역가입자 징수율,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관리운영비 및 크레딧 급여 국고지원 비율 변수에 대한 시나리오를 설정합니다.
 - 관리운영비 및 크레딧 급여 국고지원 비율 변수를 제외한 개별 변수에 대한 시나리오는 기본가정을 중심으로 $\pm\alpha$ 의 변동폭을 적용합니다.¹⁷⁾
 - 개별 변수별 α 값은 해당 변수의 실적추이와 이어지는 전망 가정 수준을 함께 고려하여 설정된 변동폭으로 설정합니다.
 - 또한, 경제변수와 제도변수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제변수는 변화 시작 연도에서부터 고정된 α 를 설정하고, 제도변수는 목표 연도(target year) 이후에는 경제변수와 마찬가지로 고정된 α 를 설정하되, 목표 연도 이전까지는 시점별로 변화되는 α_t 를 설정합니다.

■ 조합시나리오

- 인구 가정에 따른 6가지 시나리오(기본가정 시나리오 포함)
 - 통계청(2016년) 저위, 중위, 고위 3가지 시나리오와 최근의 저출산 현상을 고려한 저출산 대안, 출산율 1.05 대안 2가지 시나리오의 인구전망에 따른 각각의 거시경제변수를 전망합니다.
 - 인구전망 관련, 통계청에서는 인구변동요인(출산, 사망, 국제이동)별 중위가정을 조합하여 인구성장 중위 시나리오를 설정하였으며, 인구변동

17) 지난 3차 재정계산에서와 달리 변수별 수준 및 특성을 고려하여 개별 변수 시나리오 설정

요인별 저위(고위)가정을 조합하여 인구성장 저위(고위) 시나리오를 설정합니다.

- 저출산 대안 시나리오는 인구변동요인별 가정에서 출산율 요인은 저위가정, 사망과 국제이동 요인에 대해서는 중위가정을 조합합니다.
- 출산율 1.05 대안 시나리오는 인구변동요인별 가정에서 출산율 요인은 2017년 합계출산율 실적에 해당하는 1.05 수준 유지, 사망과 국제이동 요인에 대해서는 중위가정을 조합합니다.
- 거시경제변수 관련, 저위, 중위, 고위 및 저출산 인구전망에 따른 거시경제변수를 각각 전망하였으며, 이를 경제변수 ‘중립’으로 나타냅니다.
- 거시경제변수 가정에 따른 2가지 시나리오
 - 통계청 중위 인구전망에 대하여 중요소생산성 증가율 가정을 비관과 낙관으로 설정한 2가지 시나리오입니다.

<표> 조합시나리오의 구분

구분	인구			경제변수 (중요소생산성)	비고			
	출산	사망	국제이동					
시나리오1	저위			중립	저위중립			
시나리오2	중위			비관	중위비관			
기본가정							중립	중위중립
시나리오3							낙관	중위낙관
시나리오4	고위			중립	고위중립			
시나리오5	저위	중위		중립	저출산 대안			
시나리오6	1.05	중위		중립	출산율 1.05 대안			

<표30> 인구추계의 출산율(합계출산율) 변화가정

(단위: 명)

구분	2015	2020	2025	2030	2035	2050년 이후
고위가정	1.24	1.38	1.50	1.57	1.62	1.64
중위가정	1.24	1.24	1.28	1.32	1.36	1.38
저위가정	1.24	1.10	1.07	1.07	1.10	1.12

<표31> 인구추계의 국제이동력(순국제이동률) 변화가정

(단위: 인구 1천명당)

구분	저위가정	중위가정	고위가정
2015	1.6	1.6	1.6
2020	0.4	1.2	2.1
2030	-0.2	0.6	1.4
2040	-0.1	0.7	1.4
2050	-0.1	0.7	1.4
2065년 이후	0.0	0.7	1.4

<표32> 인구추계의 사망률(기대수명) 변화가정

(단위: 세)

구분	저위가정		중위가정		고위가정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015	79.0	85.2	79.0	85.2	79.0	85.2
2020	79.6	85.5	80.3	86.2	80.9	86.7
2030	81.7	86.8	82.7	87.8	83.6	88.6
2040	83.6	87.9	84.7	89.1	85.6	90.0
2050	85.2	89.1	86.3	90.2	87.2	91.2
2060	86.6	90.0	87.8	91.2	88.7	92.1
2065	87.2	90.5	88.4	91.6	89.2	92.6

<표33> 조합시나리오에 대한 경제변수 가정(실질)

(단위 : %)

인구	경제	경제변수	2018~ 2020	2021~ 2030	2031~ 2040	2041~ 2050	2051~ 2060	2061~ 2070	2071~ 2080	2081~ 2088
저위	중립	실질 GDP성장률	2.9	2.2	1.2	0.7	0.3	-0.0	-0.1	-0.2
		실질 임금상승률	2.1	2.1	2.1	2.1	2.0	1.9	1.7	1.7
		실질 금리	1.1	1.3	1.4	1.3	1.1	1.0	0.8	0.6
		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2.0	2.0	2.0
중위	비관	실질 GDP성장률	2.3	1.5	0.6	0.2	-0.0	-0.3	-0.2	-0.2
		실질 임금상승률	1.4	1.3	1.3	1.2	1.1	1.0	0.9	0.8
		실질 금리	0.9	0.8	0.9	0.8	0.7	0.6	0.5	0.5
		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2.0	2.0	2.0
	중립	실질 GDP성장률	3.0	2.3	1.4	1.0	0.8	0.5	0.6	0.6
		실질 임금상승률	2.1	2.1	2.1	2.0	1.9	1.8	1.7	1.6
		실질 금리	1.1	1.4	1.5	1.4	1.4	1.3	1.2	1.1
		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2.0	2.0	2.0
낙관	실질 GDP성장률	3.6	3.1	2.1	1.8	1.5	1.3	1.4	1.4	
	실질 임금상승률	2.7	2.9	2.9	2.8	2.7	2.6	2.5	2.4	
	실질 금리	1.3	2.0	2.1	2.0	2.0	1.9	1.8	1.7	
	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2.0	2.0	2.0	
고위	중립	실질 GDP성장률	3.0	2.4	1.5	1.3	1.2	1.0	1.2	1.3
		실질 임금상승률	2.0	2.1	2.0	2.0	1.9	1.8	1.7	1.6
		실질 금리	1.1	1.4	1.5	1.6	1.6	1.5	1.4	1.4
		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2.0	2.0	2.0
저출산 대안	중립	실질 GDP성장률	3.0	2.3	1.4	0.9	0.5	0.2	0.2	0.1
		실질 임금상승률	2.1	2.1	2.1	2.0	1.9	1.8	1.7	1.7
		실질 금리	1.1	1.4	1.5	1.4	1.3	1.1	1.0	0.8
		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2.0	2.0	2.0
출산율 1.05 대안	중립	실질 GDP성장률	3.0	2.3	1.3	0.8	0.5	0.1	0.0	-0.1
		실질 임금상승률	2.1	2.1	2.1	2.0	2.0	1.9	1.7	1.7
		실질 금리	1.1	1.4	1.5	1.4	1.3	1.1	0.9	0.7
		물가상승률	1.9	2.0	2.0	2.0	2.0	2.0	2.0	2.0

주 : 제시된 경제변수 가정은 해당 기간의 단순평균임

<표34> 조합시나리오에 대한 경제변수 가정(명목)

(단위 : %)

인구	경제	경제변수	2018~ 2020	2021~ 2030	2031~ 2040	2041~ 2050	2051~ 2060	2061~ 2070	2071~ 2080	2081~ 2088
저위	중립	실질 GDP성장률	4.7	3.8	2.8	2.3	1.9	1.6	1.5	1.4
		실질 임금상승률	4.1	4.1	4.1	4.1	4.0	3.9	3.7	3.7
		실질 금리	3.0	3.3	3.4	3.3	3.1	3.0	2.8	2.6
		물가상승률	4.9	4.8	4.5	4.4	4.3	4.1	4.1	4.0
중위	비관	실질 GDP성장률	4.1	3.2	2.2	1.8	1.6	1.3	1.4	1.4
		실질 임금상승률	3.3	3.3	3.3	3.2	3.1	3.0	2.9	2.8
		실질 금리	2.8	2.8	2.9	2.8	2.7	2.6	2.5	2.5
		물가상승률	4.9	4.5	4.2	4.1	4.0	4.0	4.0	3.9
	중립	실질 GDP성장률	4.7	3.9	3.0	2.6	2.4	2.1	2.2	2.2
		실질 임금상승률	4.0	4.1	4.1	4.0	3.9	3.8	3.7	3.6
		실질 금리	3.0	3.4	3.5	3.4	3.4	3.3	3.2	3.1
		물가상승률	4.9	4.8	4.6	4.5	4.5	4.4	4.4	4.3
낙관	실질 GDP성장률	5.4	4.7	3.7	3.4	3.1	2.9	3.0	3.0	
	실질 임금상승률	4.7	4.9	4.9	4.8	4.7	4.6	4.5	4.4	
	실질 금리	3.2	4.0	4.1	4.0	4.0	3.9	3.8	3.7	
	물가상승률	4.9	5.1	5.0	4.9	4.9	4.8	4.8	4.8	
고위	중립	실질 GDP성장률	4.8	4.0	3.1	2.9	2.8	2.6	2.8	2.9
		실질 임금상승률	4.0	4.1	4.0	4.0	3.9	3.8	3.7	3.6
		실질 금리	3.0	3.4	3.5	3.6	3.6	3.5	3.4	3.4
		물가상승률	4.9	4.9	4.6	4.6	4.6	4.6	4.6	4.6
저출산 대안	중립	실질 GDP성장률	4.7	3.9	3.0	2.5	2.1	1.8	1.8	1.7
		실질 임금상승률	4.0	4.1	4.1	4.0	3.9	3.8	3.7	3.7
		실질 금리	3.0	3.4	3.5	3.4	3.3	3.1	3.0	2.8
		물가상승률	4.9	4.8	4.6	4.5	4.4	4.3	4.2	4.1
출산율 1.05 대안	중립	실질 GDP성장률	4.7	3.9	2.9	2.4	2.1	1.7	1.6	1.5
		실질 임금상승률	4.0	4.1	4.1	4.0	4.0	3.9	3.7	3.7
		실질 금리	3.0	3.4	3.5	3.4	3.3	3.1	2.9	2.7
		물가상승률	4.9	4.8	4.6	4.5	4.4	4.2	4.1	4.0

주 : 제시된 경제변수 가정은 해당 기간의 단순평균임

■ 개별변수 시나리오

- 기금투자수익률 시나리오는 기본가정에 $\pm 0.1\%pt$ 적용
- 명목임금상승률 시나리오는 기본가정에 $\pm 0.4\%pt$ 적용
- 경제활동참가율 시나리오는 기본가정에 $\pm 0.3\%pt$ 적용
- 임의가입자 시나리오는 기본가정에 $\pm 0.1\%pt$ 적용
- 임의계속가입자 시나리오는 기본가정에 $\pm 1.0\%pt$ 적용
- 납부예외자 비율 시나리오는 2035년 이후 기본가정에 $\pm 1.1\%pt$ 적용
 - 2018~2034년에는 0.0%pt와 1.1%pt를 선형보간법을 통해서 매년 α_t 를 산출

- 하여 기본가정에 $\pm\alpha_t\%$ 적용
- 지역가입자 징수율 시나리오는 2035년 이후 기본가정에 $\pm 0.3\%$ 적용
 - 2018~2034년에는 0.0%와 0.3%를 선형보간법을 통해서 매년 α_t 를 산출하여 기본가정에 $\pm\alpha_t\%$ 적용
 - 지역가입자 소득수준 시나리오는 2035년 이후 기본가정에 $\pm 0.5\%$ 적용¹⁸⁾
 - 2018~2034년에는 0.0%와 0.5%를 선형보간법을 통해서 매년 α_t 를 산출하여 기본가정에 $\pm\alpha_t\%$ 적용
 - 관리운영비 및 출산 크레딧 급여 국고지원 비율 시나리오는 현재의 국고지원 수준 적용
 - 2018년 이후 관리운영비는 1.6%, 출산 크레딧은 30%를 국고지원

18) 다른 제도변수에서와 달리 지역가입자 소득수준은 목표 연도가 설정되지 않았으나, 다른 변수에서와 마찬가지로 2035년을 기준으로 α 를 설정

2) 민감도분석 결과

<표35> 민감도분석 결과

시나리오	적립기금		부과방식비용률			GDP 대비 급여지출				
	수지적자	기금소진	2060년	2070년	2088년	2060년	2070년	2088년		
기본가정(중위중립)	2042년	2057년	26.8%	29.7%	28.8%	7.5%	8.9%	9.4%		
조합시나리오	저위중립	2041년	2056년	30.0%	34.9%	37.5%	8.0%	9.9%	11.4%	
	고위중립	2042년	2058년	24.3%	26.0%	23.7%	7.0%	8.2%	8.2%	
	중위낙관	2044년	2059년	24.4%	26.8%	25.6%	6.7%	8.0%	8.2%	
	중위비관	2040년	2056년	29.7%	33.2%	32.6%	8.4%	10.1%	10.9%	
	저출산 대안	2042년	2057년	28.6%	33.3%	34.9%	7.8%	9.6%	10.8%	
	출산율 1.05 대안	2042년	2057년	29.3%	34.7%	37.7%	7.9%	9.8%	11.4%	
개별시나리오	기금투자수익률	기본가정+0.1%pt	2042년	2058년	26.8%	29.7%	28.8%	7.5%	8.9%	9.4%
		기본가정-0.1%pt	2041년	2057년	26.8%	29.7%	28.8%	7.5%	8.9%	9.4%
	임금상승률	기본가정+0.4%pt	2042년	2057년	25.5%	28.2%	27.1%	8.4%	10.3%	11.6%
		기본가정-0.4%pt	2041년	2057년	28.2%	31.4%	30.7%	6.7%	7.7%	7.7%
	경제활동참가율	기본가정+0.3%pt	2042년	2057년	26.8%	29.8%	28.9%	7.5%	9.0%	9.5%
		기본가정-0.3%pt	2042년	2057년	26.8%	29.7%	28.8%	7.5%	8.9%	9.4%
	임의가입자	기본가정+0.1%pt	2042년	2057년	26.8%	29.7%	28.8%	7.5%	8.9%	9.4%
		기본가정-0.1%pt	2042년	2057년	26.8%	29.7%	28.8%	7.5%	8.9%	9.4%
	임의계속가입자	기본가정+1.0%pt	2042년	2057년	26.8%	29.7%	28.8%	7.5%	8.9%	9.4%
		기본가정-1.0%pt	2042년	2057년	26.8%	29.7%	28.8%	7.5%	8.9%	9.4%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비율	기본가정+1.1%pt ('35년 이후)	2042년	2057년	26.8%	29.8%	28.9%	7.5%	8.9%	9.4%
		기본가정-1.1%pt ('35년 이후)	2042년	2057년	26.7%	29.7%	28.8%	7.5%	8.9%	9.4%
	지역가입자징수율	기본가정+0.3%pt ('35년 이후)	2042년	2057년	26.8%	29.7%	28.8%	7.5%	8.9%	9.4%
		기본가정-0.3%pt ('35년 이후)	2042년	2057년	26.8%	29.7%	28.8%	7.5%	8.9%	9.4%
	지역가입자소득수준(사업장 대비)	기본가정+0.5%pt ('35년 이후)	2042년	2057년	26.8%	29.7%	28.8%	7.5%	8.9%	9.5%
		기본가정-0.5%pt ('35년 이후)	2042년	2057년	26.8%	29.7%	28.8%	7.5%	8.9%	9.5%
	관리비, 크레딧 국고 지원	관리운영비1.6%, 출산 크레딧 30%	2041년	2057년	27.0%	29.9%	29.0%	7.5%	9.0%	9.5%

3. 보험보고서

- 「보험 회계처리지침」에 따른 보험보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무역보험(산업통상자원부-무역보험기금)

1) 인수위험의 개요

무역보험기금은 무역보험법 제30조에 근거해 설치된 기금으로, 수출보험 및 수입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출보험제도는 수출기업이 물품을 수출하고 수출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수출금융을 제공한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정책보험제도이며, 수입보험제도는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지급한 선급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금융기관이 수입자에게 대출한 금액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제도입니다.

수출보험제도와 수입보험제도는 보험료 수취 대가로 수출입거래에서 발생하는 신용위험(Commercial Risk) 및 비상위험(Political Risk)을 인수합니다.

신용위험은 거래상대방의 계약파기, 파산, 대금지급지연 또는 거절 등의 행위로 인해 피보험자가 경제적 손실을 입을 위험을 의미하며, 비상위험은 수입국에서의 전쟁, 내란, 수입국 정부의 외환거래 제한 등으로 인해 손실을 입을 위험을 의미합니다.

현재 무역보험기금이 취급하고 있는 수출보험 및 수입보험 상품의 종류 및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상품종류	상품 내용
단기수출보험	수출대금의 결제기간이 2년 이내인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의 손실을 보상
환변동보험	수출업체에 일정환율을 보장해 준 후 수출대금 입금 또는 결제시점 환율과 비교하여 환차손 발생시 보상하고 환차익 발생시 환수
부품소재 신뢰성보험	국산 부품·소재를 사용하는 기업에게 제품의 신뢰성과 관련된 재산적 피해를 담보
서비스종합보험	국내 서비스사업자가 서비스를 의뢰한 해외수입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국 또는 수입자 책임으로 서비스대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의 손실을 보상
중장기수출보험	결제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수출계약을 체결한 후 수출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수출대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해외사업금융보험	국내외 금융기관이 수출증진, 외화획득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사업에 자금을 대출하고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의 손실을 보상
해외투자보험	주식취득 등 해외투자 후 원리금, 배당금 등을 회수할 수 없게 될 경우의 해당 금액을 보상
해외공사보험	해외건설공사 등의 기성고방식 또는 연불수출방식 수출에서 수출대금의 미회수 또는 투입장비의 권리 상실 등으로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수출보증보험	금융기관이 해외공사계약 또는 수출계약과 관련하여 수입자에게 보증서(Bond)를 발급 후, 보증채무를 이행시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
이자율 변동보험	금융기관의 조달금리(변동금리)와 수출자금 제공금리(고정금리)간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 (이익은 환수)
수출신용보증	수출입자가 수출입계약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환어음 매각에 따른 금융기관 앞 수출금융채무를 공사가 연대보증
수출기반보험	금융기관이 국적외항선사 또는 국적외항선사의 해외현지법인(SPC포함)에게 상환기간 2년 초과 선박 구매자금을 대출하고 대출원리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
해외자원개발 펀드보험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보상 (수출보험기금과 별도로 투자위험보증계정 운영)
수입보험	국내수입기업이 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이 수입기업에 대한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

2) 보험충당부채 산정 내역

산업통상자원부 무역보험기금은 무역보험업 시행규칙 제4조에 근거해 보험업법 제120조에 준하는 방식으로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지급준비금 및 비상위험준비금을 산출해 적립하고 있습니다. 이 중, 미래 보험사고에서 발생할 손실 대비 목적으로 적립한 지급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재정상태표상 보험충당부채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기타충당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출신용보증의 경우 보증회계준칙 상 보증계약의 정의를 충족하므로 수출신용보증에 대해 적립한 지급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은 보증충당부채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납입기일이 당해사업연도에 속하는 수입보험료 중 사업연도 말 현재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보험료 금액으로, 결산일 현재 무역보험계약 건별로 산출된 유효계약보험료 중 미경과기간(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지급준비금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이 예상되는 금액의 추정치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 계상일 현재 사고계류금액 중 보험금지급이 예상되는 금액 및 보험금 청구금액 중 보험금지급이 예상되는 금액
-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면책통지를 한 금액
- 보험금 지급이 예상되는 소송계류금액
- 계상일 현재 사고발생통지 또는 보험금청구는 되지 않았으나 보험금이 지급될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IBN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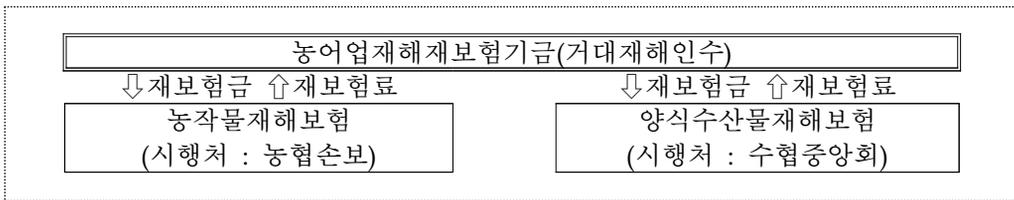
비상위험준비금은 거액보험사고 및 환변동보험 손실에 대비하기 위한 준비금으로, 미처리결손금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경과보험료(당해년도 수입보험료와 미경과보험료적립금 환입의 합계액에서 당해연도의 환급금과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적립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에 일정율을 곱하여 매년 누적적인 금액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② 농어업재해재보험(농림축산식품부-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1) 인수위험의 개요

- 태풍·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일정 수준을 초과 시 그 초과 위험 전체를 국가가 재보험기금으로 지원하여, 재해보험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농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합니다.

- * 손익분담방식(농작물) : 3단계 절차에 따라 국가 및 민간의 분담비율로 손익 정산
- * 초과손해율방식(양식수산물) : 140% 초과 손해 발생 시 기금으로 지원



2) 보험충당부채 산정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항목	산정내역
장기충당부채	지급준비금	73,935
	비상위험준비금	8,337
	소 계	82,272

3) 사업비(재보험금) 지급실적

- 지구온난화 및 이상기후로 자연재해의 발생빈도와 그 피해 규모가 매우 증가하여 재보험금 지급실적도 증가 추세였으나, '21년 이후 자연재해의 발생 현황(거대재해 미발생 등)으로 인해 '22년 재보험사업비 집행액은 감소하였습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재보험금	22,851	3,088	4,391	14,938	53,402	10,000	351,351	50,000	150,000	714

③ 경제협력사업보험(통일부-남북협력기금)

1) 인수위험의 개요

(1) 개요

경제협력사업보험은 남한주민이 북한지역에 투자한 후, 북한당국의 수용·송금제한·당국간 합의파기 등으로 인하여 영업불능, 사업중단, 권리침해 등의 피해를 입게 되어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2) 연혁

- 2004. 9. 23 : 대북투자 '손실보조' 시행
- 2008. 10. 10 : '손실보조' → '보험'으로 용어 변경

(3) 적용대상 대북투자

구분	대상투자
지분 등 투자보험	지분 또는 주식의 취득
대부 등 투자보험	시설 및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대부채권 또는 사채의 취득
권리 등 투자보험	부동산 또는 광업권 등 권리의 취득 북한지사의 활동에 필요한 설비 또는 자산 권리의 취득

(4) 담보하는 위험

수용위험	북한당국의 투자재산 몰수·박탈 또는 권리행사 침해
송금위험	북한당국의 환거래 제한·금지 등으로 인한 투자원금 등의 2월 이상 송금불능
전쟁위험	전쟁, 혁명, 내란 등 북한에서 정변으로 인한 투자사업 불능·파산 또는 1개월 이상 사업정지
약정불이행위험	북한당국의 일방적 남북당국간 합의 파기·약정 불이행 등으로 인한 투자사업 불능 또는 1개월 이상 사업정지
불가항력위험	국제법규 상 의무 이행을 위한 남한당국의 조치, 남북관계의 변화에 따른 남한당국의 조치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한 투자사업 불능 또는 1개월 이상 사업정지

(5) 보험계약 주요 내용 (2022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백만원)

구 분	회사명	확정금액	미확정금액
<해당사항 없음>			

(6) 보험수익 및 보험비용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2022		2021	
	보험수익	보험비용	보험수익	보험비용
경제협력사업보험	74	-	77	-

2) 보험충당부채 산정 내역

남북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한 보험계약은 대북사업의 특성상 일반적인 보험계약과는 달리 정치적 위험인 비상위험이 크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장래 보험금의 지급이 발생할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어렵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은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 제 44조 및 보험회계처리지침(기획재정부고시)에 의거한 보험충당부채를 설정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기타 주요 내용

2010년 「5.24조치」에 따른 개성공업지구 투자중단으로 인해 기금은 2011년 3월 18일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에 따라 7개 업체에 4,990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며, 2013년 4월 개성공업지구의 사업중단으로 인해 기금은 2013년 8월 7일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의결에 따라 59개 업체에 176,098백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9월 제2차 남북공동위원회의 합의로 개성공업지구가 재가동됨에 따라 기금은 경제협력사업보험 취급기준(통일부고시)에 의거 보험금 수령업체에게 보험금의 반납을 요청하였으며, 2022년 12월 31일 현재 130,947백만원을 회수하였습니다. 기금은 2022년 12월 31일 현재 미회수한 보험금을 포함한 50,142백만원을 기타의미수금으로 계상하고, 전액 대손충당금을 적립하였습니다. 한편, 기금은 경협보험 약관 및 보험계약자와 체결한 약정서에 따라 보험금 미반납 업체의 개성공업지구 내 재산에 대한 대위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④ 우체국보험(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체국보험특별회계)

1) 인수위험의 개요

우체국보험은 인보험을 영위하며 주요 상품으로 종신보험, 건강보험, 상해보험, 연금보험 등이 있습니다.

- 종신보험 인수위험 : 피보험자의 생명(사망)
- 건강보험 인수위험 : 피보험자의 질병(암, 성인병 등)
- 상해보험 인수위험 : 피보험자의 상해(교통재해, 일반재해 등)
- 연금보험 인수위험 : 피보험자의 노후생존

2) 보험충당부채 산정 내역

우체국보험적립금은 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대해 장래에 지급할 보험금, 환급금, 계약자배당금 및 이와 관련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약관,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보험충당부채를 적립하고 있으며 주요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보험료적립금 : 결산일 이전에 체결된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결산일 이후에 보험계약자에게 지불하여야 할 보험금의 현재가치에서 결산일 이후에 회수될 순보험료의 현재가치를 차감한 금액을 적립함
- 지급준비금 : 결산일 현재 보험금, 환급금 또는 보험계약에 의한 배당금 지급이 확정된 금액과 이미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는 금액, 분쟁 또는 소송에 계류 중인 금액으로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 등을 적립함
- 미경과보험료적립금 : 결산일 이전에 납입기일이 도래한 보험료 중 차기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적립함

- 계약자배당준비금 : 1년이상 유지되었거나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는 유효한 유배당계약에 대해 상품별 예정이율이 배당기준율에 미달할 경우 그 차이를 보전해 주는 배당금을 적립한 것으로 1995년도부터 적립하고 있음

3) 기타 주요내용

우체국보험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첫째, 지역간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우체국보험은 저소득층 국민의 보험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편적 금융서비스로 도시서민 및 농어촌 주민을 주된 가입대상으로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우체국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간 균등한 서비스를 제공
- 둘째, 소액 위주의 보험으로 가입이 간편합니다.
 - 우체국보험은 최고 4,000만원까지 제한된 가입한도액으로 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하므로 면담 및 성실한 고지의무 이행으로 누구나 부담 없이 가입
- 셋째, 공익성을 중심으로 운영합니다.
 - 우체국보험사업은 공익보험으로서 국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해 보험료를 가급적 낮게 책정하여 가입자에게 혜택 제공하고, 조성된 자금은 금융기관 예탁 및 공공자금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하여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고 있으며, 수익의 일부를 사회공헌활동 재원으로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책임경영 실천
- 넷째, 비독점적 정부사업으로 국가가 제공하는 공영보험이지만, 민영보험과 상호보완 및 공존하며 국회·감사원·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 등에서 조직·예산·감사 등의 법률적·행정적 규제와 금융위원회와 상품개발 및 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업무협의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4. 사회보험보고서

- 「보험 회계처리지침」에 따른 사회보험보고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고용노동부

1) 사회보험사업의 개요

-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고용보험기금)
 -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해 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서 계속 고용을 보장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급합니다.
 -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향상을 위하여 훈련지원, 실직자 재취업훈련 비용 등을 지원합니다.
- 실업급여(고용보험기금)
 -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실직한 경우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새로운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한편,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 산재보험급여(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 및 유족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를 신속·공정하게 지급하여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확충하고자 합니다.
- 체당금 지급(임금채권보장기금)
 - 기업의 도산 등으로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지급 능력이 없는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체당금)함으로써 체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 (일반체당금)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 등 중 체불액(최고 2,100만원까지 지급), (소액체당금) 퇴직자는 최고 1,000만원, 재직자는 최고 700만원(퇴직급여 제외)까지 지급

2) 재원조달 방법

- 사업주 및 피보험자의 보험료
- 기타 징수금, 기금운용 수익금 및 기타 수입, 차입금, 전입금

3) 사회보험부채 산정내역

- 「고용보험법」 제84조에 따라 대량실업의 발생이나 그 밖의 고용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서 여유자금을 적립합니다. 준비금의 적립수준은 사업별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은 당해연도 지출액의 1배를, 실업급여는 당해연도 지출액의 1.5배입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9조에 따라 보험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하고 있으며, 책임준비금의 적립수준은 전년도 지급 결정한 보험급여의 총액으로 합니다.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22조의2에 따라 체당금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책임준비금을 적립합니다. 책임준비금의 적립수준은 전년도 체당금 지급에 든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합니다.

4) 법정준비금 산정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지출액	적립배율	기타부채
합 계	24,298,224		31,088,043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3,787,746	1.0	3,787,746
실업급여	13,579,638	1.5	20,369,457
산재보험급여	6,384,269	1.0	6,384,269
임금채권보장	546,571	1.0	546,571

5) 기금운용 실적

○ 고용보험기금

- 2022회계연도 고용보험기금 자산운용 규모는 6,231,491백만원(원금기준)으로 운용수익률은 -0.89%(목표수익률 1.95% 대비 2.84%p 하회)입니다.

* 운용 비중 : 채권 59.28%, 주식 5.32%, 대체투자 14.95%, 단기자금 20.45%

○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 2022회계연도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자산운용 규모는 22,800,086백만원 (원금기준)으로 운용수익률은 -8.36%(목표수익률 3.47% 대비 11.83%하회)입니다.

* 운용비중 : 채권 51.88%, 주식 32.10%, 대체투자 12.30%, 단기자금 3.72%

○ 임금채권보장기금

- 2022회계연도 임금채권보장기금 자산운용 규모는 590,558백만원(원금기준)으로 운용수익률은 -6.59%(목표수익률 2.70% 대비 9.29%하회)입니다.

* 운용비중 : 국내채권 55.91%, 국내주식 11.70%, 해외주식 16.51%, 단기자금 7.21%, 대체투자 6.35%, 해외채권 2.32%,

5. 총잉여금 · 재정운영결과조정표

2022

I. 총잉여금(※)	14,199,222,285,000
II. 차이 항목	(61,967,460,234,896)
1. 자산·부채의 증감	37,110,579,188,331
(1) 현금및현금성자산의 증가(감소)	(4,587,681,497,116)
(2) 금융상품의 증가(감소)	831,041,162,705
(3) 투자증권의 증가(감소)	45,972,744,163,849
(4) 대여금의 증가(감소)	(21,854,962,139,537)
(5) 일반유형자산의 증가(감소)	12,553,242,643,515
(6) 사회기반시설의 증가(감소)	30,453,631,119,289
(7) 무형자산의 증가(감소)	393,520,119,443
(8) 기타자산의 증가(감소)	24,500,245,197,751
(9) 국공채의 감소(증가)	(86,536,522,676,718)
(10) 차입금의 감소(증가)	37,191,669,484,308
(11) 기타부채의 감소(증가)	(1,806,348,389,158)
2. 발생주의 기간수익·비용 차이	(79,918,771,781,063)
(1) 국세수익 차이	18,852,212,005,438
(2) 부담금수익 차이	781,269,665,309
(3) 제재금수익 차이	1,009,418,801,384
(4) 사회보험수익 차이	381,288,093,051
(5) 재화및용역제공수익 차이	303,815,172,750
(6) 연금수익 차이	392,574,128,117
(7) 보험수익 차이	262,730,644,791
(8) 보증수익 차이	38,804,439,109
(9) 이자수익 차이	89,969,333,778
(10) 평가이익 차이	14,843,488,418,174
(11) 기타수익 차이	(8,666,927,957,655)
(12) 퇴직급여 차이	(268,466,071,895)
(13) 이자비용 차이	(773,580,961,838)
(14) 감가상각비 차이	(17,538,781,644,721)
(15) 대손상각비 차이	(9,847,783,487,858)
(16) 기타이전비용 차이	(46,842,448,840,981)
(17) 평가손실 차이	(10,070,153,425,395)
(18) 자산감액손실 차이	(428,348,318,305)
(19) 기타비용 차이	(22,437,851,774,316)

(단위: 원)

2021

27,304,827,531,590

(90,721,012,948,463)

62,740,247,341,794

4,577,543,492,711

1,241,489,646,338

85,147,457,431,154

(10,165,489,786,991)

51,069,546,258,023

15,167,812,482,024

1,022,946,532,206

32,319,431,012,157

(112,461,694,689,089)

15,979,296,428,115

(21,158,091,464,854)

(140,023,223,113,607)

21,223,057,143,869

546,613,796,499

1,315,337,278,757

228,168,817,469

603,566,803,792

(149,104,991,184)

182,429,054,564

(205,677,023,534)

21,098,084,916

9,026,876,902,625

(537,633,113,839)

(240,315,876,010)

(847,731,666,312)

(17,121,452,824,062)

(10,473,885,095,476)

(52,214,820,858,933)

(71,400,381,564,539)

(468,227,594,239)

(19,511,140,387,970)

	2022
3. 전기 결산상 잉여금 세입이입액	(11,771,014,650,630)
4. 순자산변동	(7,388,252,991,534)
(1) 납입자본의 증감	-
(2) 기타순자산의 증감	(7,388,252,991,534)
III. 재정운영결과(I+II)	(47,768,237,949,896)

(단위: 원)

2021

(7,401,324,178,330)

(6,036,712,998,320)

(517,220)

(6,036,712,481,100)

(63,416,185,416,873)

(*) 총잉여금

(단위: 원)

	2022	2021
I. 일반회계	8,818,075,400,810	20,642,608,907,880
(1) 세입	493,867,232,388,900	438,363,287,124,340
(2) 세출	(485,049,156,988,090)	(417,720,678,216,460)
II. 특별회계	5,381,146,884,190	6,662,218,623,710
1. 기타특별회계	4,835,074,671,350	4,410,420,574,190
(1) 세입	67,498,361,539,290	72,865,487,340,750
(2) 세출	(62,663,286,867,940)	(68,455,066,766,560)
2. 기업특별회계	406,831,154,480	2,075,731,319,840
(1) 세입	11,240,778,405,650	11,727,793,040,940
(2) 세출	(10,833,947,251,170)	(9,652,061,721,100)
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39,241,058,360	176,066,729,680
(1) 세입	1,330,383,342,230	1,217,508,374,890
(2) 세출	(1,191,142,283,870)	(1,041,441,645,210)
III. 기금	-	-
(1) 수입	1,837,931,339,999,800	1,835,484,360,487,858
(2) 지출	(1,837,931,339,999,800)	(1,835,484,360,487,858)
IV. 총잉여금(I + II + III)	14,199,222,285,000	27,304,827,531,590

6. 수익·비용 성질별 재정운영표

(단위: 원)

	2022	2021
1. 프로그램총원가	692,618,128,743,175	609,339,439,818,532
1. 재화및용역제공원가	5,691,150,424,251	6,321,484,981,184
2. 인건비	23,586,664,153,871	22,908,745,447,444
3. 복리후생비	2,262,942,895,328	2,058,200,778,016
4. 소모품비	5,510,017,148,345	5,973,213,831,557
5. 인쇄비	158,321,131,674	135,773,617,084
6. 광고선전비	91,165,376,648	95,564,119,738
7. 지급수수료	3,276,216,435,316	3,000,805,525,116
8. 세금과공과	1,165,155,869,868	965,588,274,722
9. 수도광열비	1,101,944,453,513	970,077,729,286
10. 지급보험료	96,829,548,416	121,016,999,002
11. 피복비와급량비	2,402,476,904,212	2,253,030,870,903
12. 교육훈련비	162,683,924,586	142,320,863,347
13. 지급임차료	1,054,042,500,709	1,001,395,308,955
14. 유류비	866,158,316,275	771,052,016,887
15. 수선유지비	4,272,864,609,247	6,653,697,541,683
16. 여비교통비	419,181,113,704	370,929,902,325
17. 업무추진비	1,563,307,592,643	1,434,998,523,138
18. 외주용역비	9,590,106,794,125	7,869,777,374,466
19. 보전비	15,300,319,834,391	11,016,565,932,616
20. 출연비	51,164,278,319,767	46,407,013,108,002
21. 보조비	328,398,568,461,530	266,335,205,652,078
22. 기타이전비용	156,984,712,163,885	152,061,914,980,707
23. 감가상각비	16,739,642,391,630	16,308,185,748,304
24. 대손상각비	3,341,039,887,285	3,141,542,950,831
25. 이자비용	24,543,528,325,733	21,645,196,457,618
26. 평가손실	8,257,681,161,988	19,323,786,449,977
27. 자산감액손실	252,770,042,409	203,228,361,868
28. 자산처분손실	2,441,494,682,688	444,302,602,080
29. 국립학교운영비	76,293,708,670	74,248,880,090
30. 연구개발비	2,460,281,457,797	2,533,292,560,914
31. 기타비용	19,386,289,112,671	6,797,282,428,594

(단위: 원)

	2022	2021
II. 프로그램수익	144,856,579,762,591	128,022,223,952,142
1. 재화및용역제공수익	13,042,873,259,078	12,801,324,554,954
2. 연금수익	76,632,455,738,220	73,309,142,039,382
3. 보험수익	1,013,062,310,218	664,564,540,803
4. 이자수익	5,621,562,115,045	5,985,725,035,232
5. 평가이익	9,624,731,027,134	6,258,910,376,703
6. 자산처분이익	6,268,865,421,294	15,770,960,891,169
7. 보증수익	1,498,437,495,119	1,390,542,933,428
8. 기타수익	31,154,592,396,483	11,841,053,580,471
III. 관리운영비	30,758,230,963,850	31,940,692,287,368
1. 재화및용역제공원가	20,067,950	9,303,000
2. 인건비	21,389,445,487,180	20,651,884,333,656
3. 복리후생비	3,948,647,625,977	3,638,650,950,999
4. 소모품비	312,539,389,201	333,389,523,192
5. 인쇄비	34,843,607,118	34,669,274,060
6. 광고선전비	20,402,400,309	22,639,933,440
7. 지급수수료	323,049,906,736	322,608,351,689
8. 세금과공과	154,731,441,969	158,906,556,820
9. 수도광열비	174,894,300,203	157,742,785,832
10. 지급보험료	11,969,774,482	10,244,864,765
11. 피복비와급량비	47,544,339,812	46,508,524,555
12. 교육훈련비	24,537,723,164	22,793,424,373
13. 지급임차료	201,261,729,015	161,222,093,178
14. 유류비	11,926,689,502	9,170,092,815
15. 수선유지비	167,759,970,253	172,461,617,659
16. 여비교통비	167,882,134,321	146,360,266,193
17. 업무추진비	855,334,073,182	865,046,787,052
18. 외주용역비	459,929,593,634	442,211,708,069
19. 보전비	230,385,887,469	295,282,567,516
20. 출연비	767,704,824,263	720,642,829,790
21. 보조비	153,014,536,312	132,367,080,294
22. 기타이전비용	7,570,837	2,981,179
23. 감가상각비	773,366,723,327	784,769,160,857
24. 대손상각비	3,444,000,971	1,106,729,932
25. 이자비용	8,837,414,306	5,705,829,269
26. 평가손실	38,224,676,340	2,481,451,097,145
27. 자산처분손실	565,198,621	1,118,957,718
28. 국립학교운영비	4,920,000,000	4,541,000,000

(단위: 원)

	2022	2021
29.연구개발비	117,284,391,015	109,376,910,222
30.기타비용	353,755,486,381	207,806,752,099
IV.비배분비용	19,255,497,947,367	60,542,947,160,898
1.재화및용역제공원가	27,328,649,355	25,779,738,590
2.인건비	7,153,137,951	7,178,467,652
3.복리후생비	1,581,243,787	994,645,164
4.소모품비	292,568,334	1,580,217,314
5.인쇄비	36,983,130	38,756,400
6.광고선전비	4,468,100,000	4,881,410,000
7.지급수수료	123,313,424,782	170,418,922,915
8.세금과공과	227,658,485,881	189,445,782,280
9.수도광열비	54,743	750,000
10.지급보험료	1,401,102,750	1,401,102,750
11.교육훈련비	-	1,360,000
12.지급임차료	32,403,603	55,866,684
13.유류비	4,913,895	812,944
14.수선유지비	917,239,843	2,415,926,985
15.여비교통비	87,427,346	19,319,964
16.업무추진비	160,067,147	144,764,721
17.외주용역비	57,106,684,895	10,060,131,500
18.보전비	33,615,295,183	22,501,572,241
19.보조비	47,450,590,280	7,362,288,940
20.감가상각비	25,772,529,764	28,497,914,901
21.대손상각비	783,354,346,310	1,072,253,901,542
22.이자비용	2,449,248,183,003	2,067,092,640,994
23.평가손실	1,774,247,587,067	49,595,144,017,417
24.자산감액손실	175,578,275,896	264,999,232,371
25.자산처분손실	6,200,835,729,492	2,457,429,933,405
26.연구개발비	842,839,200	499,587,464
27.기타비용	7,313,010,083,730	4,612,748,095,760

(단위: 원)

	2022	2021
V.비배분수익	85,257,030,853,714	97,712,478,013,635
1.재화및용역제공수익	3,208,891,311,728	2,949,703,409,665
2.이자수익	11,857,556,588,517	10,000,480,080,651
3.평가이익	5,218,757,391,040	2,767,966,525,922
4.자산처분이익	18,738,189,789,515	34,002,160,140,004
5.보증수익	189,440,100	361,000
6.기타수익	46,233,446,332,814	47,992,167,496,393
VI.내부거래원가	(9,057,993,341,501)	(8,176,272,072,496)
VII.내부거래수익	9,057,993,341,501	8,176,272,072,496
VIII.재정운영순원가 (I-II+III+IV-V+VI+VII)	512,518,247,038,087	476,088,377,301,021
IX.비교환수익등	464,750,009,088,191	412,672,191,884,148
1.국세수익	398,559,147,168,366	347,874,276,332,635
2.부담금수익	19,276,120,280,376	18,916,142,215,933
3.제제금수익	5,096,787,523,834	5,542,878,422,406
4.사회보험수익	24,440,660,510,310	21,434,253,663,540
5.채무면제이익	49,208,575,744	50,381,401,820
6.기타비교환수익	243,486,916,392	584,976,019,644
7.기타재원조달및이전	17,084,598,113,169	18,269,283,828,170
X.재정운영결과(VIII-IX)	47,768,237,949,896	63,416,185,416,873

7. 그 밖에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아니하였으나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1)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

-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이란 관리·유지 노력에 따라 취득 당시의 용역 잠재력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로서 감가상각하지 않고, 관리·유지에 투입되는 비용으로 감가상각비를 대체할 수 있는 자산을 말함 (국가 회계 기준 제38조 제2항)
- 따라서,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로 관리하는 자산은 특정요건을 충족하여 취득 당시의 용역 잠재력이 유지된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는 경우로 한정하므로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의 종류, 규모 및 충족한 특정요건에 대한 정보를 별도로 작성하여 필수보충정보로 공시하도록 함(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 문단 72)

가. 국가하천시설 중 제방(환경부)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 종류 및 규모

- 종류 : 73개 국가하천
- 규모 : 국가하천 연장 3,603km ('20년도 하천일람 기준)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의 상태평가기준, 최소유지등급, 최소유지등급, 상태평가결과

(1) 상태평가기준

- 하천제방의 상태평가는 일상적인 육안점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통해 상태를 평가하고 있다.
- 일상적인 육안점검은 해빙기, 우기철 전·후, 대규모 홍수이후 등 하천관리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육안점검을 실시하고, 대부분 즉각적인 보수·보강을 시행하고 있다.

- 또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밀점검은 통상 2년, 정밀안전진단은 통상 5년 주기로 전문 용역업체가 실시하는 점검으로, 시 특별법의 상태평가기준에 따라 보수·보강을 시행하고 있다.

〈상태평가기준(시특법 시행령 별표 3의3)〉

상태	시설물 상태
A(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 예산 및 실제 수선유지비

- 하천제방을 감가상각 대체 사회기반시설을 최소등급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해 최근 5년('18~'22년) 평균 2,433억원 수준의 하천 유지·보수 예산을 투입하여 관리하였으며,
-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 하천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으며, 시설물의 안전성 제고 및 시설물 고령화 추세로 인하여 '18년 이후 부터 매년 유지관리비가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가하천 유지보수 비용〉

(단위: 백만원)

연도	국비	
	예산	실제
2018	142,953	140,843
2019	175,098	175,028
2020	272,432	270,311
2021	413,784	382,441
2022	259,922	247,953
합계	1,264,189	1,216,576

나. 도로 포장물(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도의 구성물로서 도로포장 일반국도 14,175km중 관리구간 12,016km에 대하여 감가상각대체방안을 적용하였습니다. 도로포장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PMS(Pavement management system)를 활용하고 있어 사회기반시설관리시스템의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도로포장은 유지보수 결정 흐름도에 의하여 포장의 상태를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도로포장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기타 도로구조물에 대하여는 도로관리통합시스템(HMS)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의 종류 및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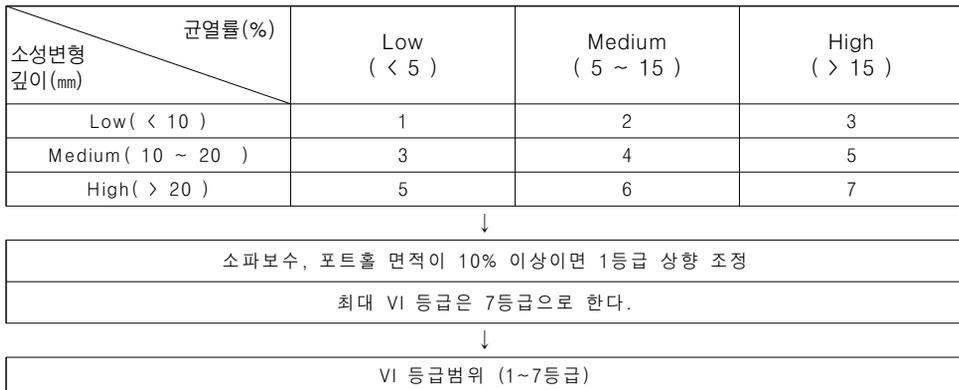
- 종류 : 관리 중인 도로포장 연장은 12,016km의 구조물

□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의 상태등급기준, 상태평가기준, 최소유지등급, 상태평가결과

(1) 상태등급기준

-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도의 포장상태를 결정하기 위해 포장결함상태 (Visual index, VI) 등급을 사용하고 있다. 포장결함상태(VI) 등급은 1~7 등급의 범위에 있습니다.
- 포장결함상태(VI) 등급은 노면의 포장 결함 자료를 바탕으로 100m에 대한 균열, 소성변형 깊이 자료의 파손 수준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고, 소파보수는 보수 면적을 고려하여 노면 파손의 종류별로 분포 면적을 백분율로 계산하여 <표 1>에 따라 포장 파손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표 1> 포장결함상태 등급(VI) 결정 흐름도



(2) 상태평가기준

- 국토교통부는 일반국도의 포장파손 상태에 따라 우선보수가 필요한 구간을 대상으로 보수공법을 결정하고, 잔여구간에 대하여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적정수준의 포장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로포장의 최종유지보수는 보수공법결정체계 흐름도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3) 최소유지등급

- 일반국도 포장의 유지보수가 필요한 수준은 포장결함상태 등급(VI) 3등급 이상을 최소등급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4) 상태평가 결과

- 일반국도의 관리구간(12,016km) 중 11,400km/lane(39,318km/lane)에 대하여 조사대상 구간을 선정하여 포장결함상태 등급을 결정하고, 상세조사구간에 대하여 포장의 지지력, 포장의 두께 등 포장의 구조적·기능적 상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예산 및 실제 수선유지비

- 국토교통부는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최근 5개 년도의 추정 수선유지비와 실제 지출된 수선유지비의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선유지비는 일상적 수선유지 및 도로 재포장 등과 같은 원상을 회복시키거나 기능유지 또는 개선하기 위한 지출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일반국도 포장물 유지보수 비용〉

(단위 : 백만원)

연도	국비	
	예산	실제
2022	1,690,730	1,623,938
2021	1,524,932	1,503,071
2020	1,512,617	1,469,109
2019	1,644,104	1,588,634
2018	1,544,363	1,518,374
합계	7,916,746	7,703,126

다. 고속국도 포장물(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구성물로서 도로포장 4,939km 중 관리구간 4,238km에 대하여 감가상각 대체방안을 적용하였습니다. 도로포장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PMS(Pavement management system)를 활용하고 있어 사회기반시설관리시스템의 요구 사항을 모두 충족하였습니다.

고속도로 도로포장은 포장유지보수 결정 흐름도에 의하여 포장의 상태를 유지관리하고 있으며, 기타 도로구조물에 대하여는 도로통합플랫폼을 통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 종류 및 규모

- 종류 : 관리 중인 도로포장 연장은 4,238km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의 상태등급기준, 상태평가기준, 최소유지등급, 상태평가결과

(1) 상태등급기준

-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포장상태를 결정하기 위해 포장상태지수 HPCI(highway Pavement Condition Index)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포장상태지수 등급은 1~7등급의 범위에 있습니다.
- 포장상태지수 등급은 포장상태 조사 및 분석 자료를 바탕으로 포장상태에 따라 따라 7등급으로 분류하고 <표 1>에 따라 포장 파손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표 1〉 포장상태지수(HPCI) 평가표

등급	HPCI	상태	대응책
1등급	5.00이하 ~ 4.00초과	매우 우수	Do nothing
2등급	4.00이하 ~ 3.50초과	우수	예방적 보수
3등급	3.50이하 ~ 3.25초과	다소 우수	필요시 수선유지
4등급	3.25이하 ~ 3.00초과	보통	수선유지
5등급	3.00이하 ~ 2.50초과	다소 불량	필요시 개량
6등급	2.50이하 ~ 2.00초과	불량	개량
7등급	2.00이하	매우 불량	우선 개량

(2) 상태평가기준

-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의 포장파손 등급에 따라 보수공법별 사업대상 구간을 산정하고 HPCI, 공용년수, 교통량 등 지표별 가중치를 통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적정수준의 포장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 최소유지등급

- 고속도로는 포장상태가 양호한 포장상태등급 1~4등급 구간을 전체 관리구간의 95%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4) 상태평가 결과

- 고속도로 관리구간에 대하여 조사대상구간을 선정하여 평탄성(IRI), 표면손상(SD), 소성변형(RD) 조사 결과에 따라 포장상태지수(HPCI) 등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 포장 개량 예산 및 지출액

- 한국도로공사가 고속도로 포장을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최근 5개년도의 포장에 투입한 개량 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포장 개량 예산은 일상적 기능 유지를 위한 도로보수비와 도로 재포장 등과 같은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한 개량 예산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고속국도 포장물 유지보수 비용〉

(단위: 백만원)

연도	국비	
	예산	실제
2022	369,156	338,034
2021	333,673	314,771
2020	298,127	267,864
2019	316,828	286,602
2018	227,768	215,125
합계	1,545,552	1,422,396

2)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 현황

□ 기획재정부

○ 준공 완료된 국유재산 위탁개발사업은 24개 사업이며 총 개발비용은 908,437,610,924원이고, 금융비용은 15,945,972,942원입니다.

○ 위탁개발자산의 상세 내역

〈위탁개발자산의 상세 내역〉

(단위 : 원)

준공 여부	수탁자 명칭	사업명	용도	개발원금	위탁기간 (예정)	개발보수	관리보수
준공	한 국 자 산 관 리 공 사	나라키움 수 진동 근린상가	근생시설	754,657,470	07.07.13.~ 16.07.12.(9년) [※]	37,777,800	233,649,300
		나라키움 정 왕동 근린상가	근생시설	654,449,306	07.07.13.~ 23.07.12.(16년)	32,776,400	124,035,789
		나라키움 저 동빌딩	업무 및 근생	41,163,301,815	08.07.01.~ 38.06.30.(30년)	1,309,128,204	8,586,788,788
		나라키움 임 대형주택	주거 및 근생	3,444,316,198	08.11.19.~ 22.11.18.(14년)	175,888,000	828,106,790
		나라키움 대 전센터	업무시설	74,595,266,870	09.09.01.~ 39.08.31.(30년)	1,541,677,000	5,369,388,000
		나라키움 삼성동빌딩 (154-1,-5)	업무 및 근생	7,594,728,470	13.06.01.~ 28.05.31.(15년)	230,352,571	1,012,236,000
		나라키움 삼성동빌딩 (155-3)	업무 및 근생	3,669,081,761	13.06.01.~ 32.05.31.(19년)	185,486,813	476,733,000
		나라키움 세종국책 연구단지	연구청사	191,304,907,963	14.11.20.~ 39.11.19.(25년)	2,916,795,340	3,539,345,028
		나라키움 대 학생주택	주거 및 근생	2,776,214,322	16.02.23.~ 44.2.22.(28년)	139,062,344	215,680,124
		콘텐츠 인재캠퍼스	교육연구시설	14,579,118,755	16.02.23.~ 44.2.22.(28년)	437,373,562	861,916,000
		지식 협력단지	교육연구시설	13,975,373,795	17.04.20.~ 42.03.19.(25년)	419,261,213	1,678,797,000
		신사동 빌딩	복합청사	12,039,219,575	18.09.06.~ 48.09.05.(30년)	364,607,581	945,281,000
		역삼동A 빌딩	업무 및 근생	13,737,616,935	18.08.21.~ 38.08.20.(20년)	415,377,586	1,089,613,343
		역삼동B 빌딩	업무 및 근생	17,737,946,405	18.08.21.~ 38.08.20.(20년)	536,333,585	1,038,030,657
		여의도 빌딩(위탁)	업무 및 근생	58,641,958,642	18.10.02.~ 47.10.01.(29년)	1,789,522,604	2,433,127,894
		제주복합 관사	주거 및 근생	28,724,875,631	18.12.27.~ 48.12.26.(30년)	873,768,763	760,354,435
		수원법원 종합청사	공공청사	166,702,556,565	19.02.25.~ 44.02.24.(25년)	5,110,090,378	3,438,169,000
		수원고지검 청사	공공청사	149,147,895,617	19.02.25.~ 44.02.24.(25년)	6,607,766,216	3,281,727,000

	송파복합관사	주거및근생	15,345,471,755	21.12.30.~ 51.12.29.(30년)	466,504,666	-	
	서대문세무서	공공청사	24,692,679,560	21.08.19.~ 46.08.18.(25년)	902,047,900	370,961,000	
	중부세무서	공공청사	27,473,619,084	21.11.29.~ 46.11.28.(25년)	1,195,138,691	-	
	광주동구복합청사	공공청사 주거	7,024,338,722	21.11.12.~ 57.11.11.(36년)	212,566,942	-	
	부산청년창업허브	공공청사	1,968,017,180	22.04.25.~ 35.04.24.(14년)	98,523,779	28,573,191	
	구로복합관사	주거 및 근생	30,689,998,528	22.03.26.~ 61.03.25(39년)	962,247,514	-	
소 계			908,437,610,924		26,960,075,452	36,312,513,339	
진행중	한국자산관리공사	용사의집	군사시설	147,554,838,293	15.12.~22.09.	4,091,805,751	-
		나라키움, 남양주 복합청사	공공업무시설 주거 및 근생	14,313,785,827	18.07.~22.12.	258,775,803	-
		나라키움 영등포 복합청사	주거시설 (관사)	10,535,274,479	18.07.~23.02.	308,047,539	-
		송파 ICT보안 클러스터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상업시설	1,224,714,150	지구단위계획 변경 완료 후 사업계획승인 예정	46,900,132	-
		안양세관복합청사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667,853,447	20.06.~24.12.	35,616,260	-
		종로복합청사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상업시설	2,837,708,260	19.12.~24.10.	127,613,467	-
		부산남구복합청사	공공업무시설 일반업무시설 상업시설	10,763,710,611	19.09.~24.07.	319,791,907	-
		정책연수원	교육연구시설 (연수원)	2,070,997,634	(기금사업으로 개발방식 변경)	114,489,825	-
		나라키움 관악복합관사	주거시설 (관사, 청년임대) 근생	303,563,940	20.12.~25.10.	13,494,759	-
		나라키움 성남선관위	공공업무시설 상업시설	27,510,000	22.01.~26.02.	1,105,574	-
		도봉세무서	공공업무시설 생활SOC	-	22.01.~27.06.	-	-
	세종국책연구단지 제2연구청사	공공업무시설	1,000,000	22.08.~27.07.	1,045	-	
	한국토지주택공사	부산(강동)	공공주택	11,049,165,922	19.05.~49.04. (34년예정)	770,872,041	-
		의정부교정시설	공공주택 도시형산업 및 복합시설	933,407,383	19.08.~58.07. (39년예정)	61,064,034	-
광주교정시설		공공주택	109,546,182	19.12.~54.05. (35.5년예정)	8,114,532	-	
전주지법지검		토지개발	143,573,672	21.12.~56.12. (35년 예정)	10,943,941	-	
용산재생혁신		건축개발	1,191,883,883	22.08.~59.08. (37년 예정)	7,614,048	-	
소 계			203,728,533,683		6,176,250,658	-	
합 계			1,112,166,144,607		33,136,326,110	36,312,513,339	

주1) 최초 위탁기간 종료(2016.7.12.) 이후 별도 종료시까지 위탁기간 연장

3) 신탁계정 현황

① 신탁방식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금융위원회)

(1) 신탁금융기관의 개요

-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통해 노후생활자금을 원활하게 시장에 공급함으로써 우리나라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노후소득 불안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7년 1월 11일 개정된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내에 설치되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7월 12일부터 기금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을 보증재원으로 하는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

(2)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신탁(연금신탁)업무의 개요

- 연금신탁업무는 “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기금내에 설치되어 있으며, 주택연금 이용자의 담보주택 및 임대보증금을 수탁받아 아래 업무를 수행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 연금신탁 계약에 따른 업무

나. 수탁 부동산에 대한 관리 업무

다. 수탁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관리 및 보증금 관리 업무

(3)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제 2(당) 기 :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1(전) 기 : 2021년 12월 31일 현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신탁계정

(단위 : 원)

과목	제 2(당) 기	제 1(전) 기
자산		
1. 현금 및 예치금	1,771,068,890	193,000,520
가. 현금 및 현금성자산	65,068,890	520
나. 정기예금	1,706,000,000	193,000,000
2. 부동산과 실물자산	3,245,353,775,308	726,738,684,041
가. 건물	3,245,353,775,308	726,738,684,041
3. 기타자산	92,514,239	342,520
가. 미수금	79,009,306	-
나. 미수수익	13,504,933	342,520
자산 총계	3,247,217,358,437	726,932,027,081
부채		
1. 금전신탁	1,771,000,000	193,000,000
가. 불특정금전신탁	1,771,000,000	193,000,000
2. 재산신탁	3,245,353,775,308	726,738,684,041
가. 부동산의 신탁	3,245,353,775,308	726,738,684,041
3. 기타부채	92,583,129	343,040
가. 미지급금	78,302,006	-
나. 미지급신탁이익	13,504,933	342,520
다. 예수금	68,890	520
라. 기타부채	707,300	-
부채 총계	3,247,217,358,437	726,932,027,081

□ 손익계산서

제 2(당) 기 :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까지

제 1(전) 기 : 2021년 6월 9일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신탁계정 (단위 : 원)

과목	제 2(당) 기	제 1(전) 기
1. 신탁이익	79,003,776	348,279
가. 예치금이자	701,770	348,279
나. 기타특별이익	78,302,006	-
신탁이익 계	79,003,776	348,279
2. 신탁손실	79,003,776	348,279
가. 금전신탁이익	701,770	348,279
나. 구상채권변제손실	78,302,006	-
신탁손실 계	79,003,776	348,279

□ 주요 주석

- 신탁방식 주택담보노후연금과 관련하여 기금이 수탁하고 있는 재산에 대한 주요 재무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자산			부채		수익	비용
	현금 및 현금성자산	정기예금	건물	금전신탁	재산신탁		
단독주택	65,000,000	1,194,500,000	80,067,033,313	1,259,500,000	80,067,033,313	499,085	499,085
다세대	-	22,000,000	56,446,500,000	22,000,000	56,446,500,000	8,718	8,718
아파트	-	459,500,000	3,049,601,680,141	459,500,000	3,049,601,680,141	78,484,086	78,484,086
연립주택	-	-	29,159,800,000	-	29,159,800,000	-	-
노인복지주택	-	30,000,000	16,199,901,988	30,000,000	16,199,901,988	11,888	11,888
오피스텔	-	-	13,661,859,866	-	13,661,859,866	-	-
복합주택	-	-	217,000,000	-	217,000,000	-	-
합계	65,000,000	1,706,000,000	3,245,353,775,308	1,771,000,000	3,245,353,775,308	79,003,776	79,003,776

② 기술신탁(중소벤처기업부)

(1) 신탁금융기관의 개요

- 신탁금융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금”)은 1989년 4월 1일 기술보증기금법(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설립되어 기술보증을 통하여 신기술사업자의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고 기술평가를 통하여 기업의 기술혁신역량과 기술금융을 효과적으로 지원함으로써 국민경제 성장동력 확충에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자 설립된 기술금융전문기관입니다. 기금은 전국에 8개의 영업본부, 62개의 지점, 8개의 기술혁신센터 등을 운영하며 기술보증, 기술평가, 기술혁신기업인증, 기술정보제공 및 경영컨설팅 등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설립시 기본재산은 21,768백만원이며 설립 후 정부 및 금융기관 등의 출연으로 당기말 현재 기말순자산은 3,421,530백만원입니다.

(2) 기술신탁관리업무 개요

- 기술신탁관리업무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술보유자로부터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기술등“이라 한다)를 신탁받아 아래 업무를 수행 및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가.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기술등“이라 한다)에 대한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과 그 밖의 관련 법률에 따른 특허료·등록료 등의 납부업무
- 나. 기술등에 대한 보호·관리 업무
- 다. 기술등의 설정·이전에 관한 업무
- 라. 기술등의 설정·이전에 따른 기술료 등 수익의 징수 및 분배 업무
- 마. 기술등의 사업화에 관한 업무
- 바. 기술의 수정·개량이나 그 밖에 기술의 추가적인 개발 및 그에 따른 출원·관리 업무
- 사. 기술자산유동화사업에 관한 업무

(3) 재무제표

□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

제 4(당) 기: 2022년 12월 31일 현재

제 3(전) 기: 2021년 12월 31일 현재

(단위 : 원)

과 목	제 4(당) 기	제 3(전) 기
자산		
1. 현금및현금성자산	36,513	27,830
가. 보통예금	36,513	27,830
2. 무체재산권	1,837,260,000	1,837,260,000
가. 특허권	1,837,260,000	1,837,260,000
3. 기타자산	-	-
가. 미수수익	-	-
자산총계	<u>1,837,296,513</u>	<u>1,837,287,830</u>
부채		
1. 무체재산권신탁	1,837,260,000	1,837,260,000
가. 특허권신탁	1,837,260,000	1,837,260,000
2. 기타부채	36,513	27,830
가. 미지급금	-	-
나. 기술이전중개수수료미지급금	-	-
다. 미지급신탁이익	-	-
라. 연차료미지급금	-	-
마. 소송비미지급금	-	-
바. 미지급비용	-	27,830
사. 위탁자납부부가세예수금	-	-
아. 가수금	36,513	-
부채총계	<u>1,837,296,513</u>	<u>1,837,287,830</u>

□ 손익계산서

제 4(당) 기: 2022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제 3(전) 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단위 : 원)

과 목	제 4(당) 기	제 3(전) 기
신탁이익		
1. 기술료수익	687,600,000	755,200,000
가. 양도기술료수익	402,600,000	665,200,000
나. 전용실시기술료수익	10,000,000	45,000,000
다. 통상실시기술료수익	275,000,000	45,000,000
2. 기타수익	415,424,842	360,887,012
가. 이자수익	8,683	11,742
나. 고유계정지원수익	295,969,569	236,152,419
다. 위탁자지원수익	119,446,590	124,722,851
신탁이익 계	1,103,024,842	1,116,087,012
신탁손실		
1. 기술신탁이익	630,492,000	694,784,000
가. 양도기술료신탁이익	368,642,000	611,984,000
나. 전용실시기술료신탁이익	9,200,000	41,400,000
다. 통상실시기술료신탁이익	252,650,000	41,400,000
2. 기타비용	472,532,842	421,303,012
가. 마케팅대행비	102,169,720	111,648,460
나. 소유권이전비	194,412,000	147,252,200
다. 연차료	52,643,530	43,474,610
라. 컨설팅비용	66,190,909	58,500,000
마. 기술이전중개수수료	57,108,000	60,416,000
바. 잡손실	8,683	11,742
신탁손실 계	1,103,024,842	1,116,087,012

4) 임대형 민자사업(BTL) 현황

① 질병관리청

(1) 사업개요

사업위치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가포로 215일원
사업규모	부지면적 29,605.24㎡, 신축 연면적 25,221㎡(지하1층, 지상7층), 음압병상(양성환자) 240병상, 일반병상(음성환자) 114병상
사업기간	2014년 8월 ~ 2017년 5월(29개월)
운영기간	2017년 5월 ~ 2037년 4월(20년)
총투자비	52,180백만원

□ 사업목적

- 배경 : 결핵전문 치료기관으로서 국가격리병상 치료기준에 적합한 병상 미흡과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환자 불편 및 감염위험 개선 필요
- 목적: 병원시설과 기능을 현대화하여 법정 제2급 감염병인 결핵의 치료에 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 및 결핵퇴치 NEW 2021계획에 따른 공공성 확보를 위한 특화된 전문병원으로서 국가의 중추기관 역할 도모

□ 사업수행주체: 질병관리청

□ 지원방식: 국고(국비100%)

(2) 중장기 투자목표

□ 목표지표

- 결핵균으로부터 환자의 치료, 의료진의 감염예방 등 치료성공률 및 환자 만족도 제고에 필수적인 음압병상(음압격리병상 30병상 포함)

※ 음압격리병상이란? 입원치료(격리)병상 운영과 관리(2011. 10. 질병관리본부)의 시설기준에 의거하여 적정한 병실구조, 공조시설, 배관설비, 세면설비, 화장실과 샤워실, 면회설비 등을 갖추어야 하는 시설이며, 유사시 사스, 메르스 등 타 호흡기질환 격리병상으로도 활용 가능

※ 국내외 사례: 미국, 일본, 대만 등 선진국은 다수의 음압격리병상을 갖춘 격리병동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국립목포병원(10병상) 외에는 결핵을 위한 격리병동이 극소수, 특히 민간병원의 경우 감염등의

위험으로 결핵환자 입원을 제한하고 있는 실정

- 음압격리병상 확보율 = 음압 격리 병상수/국립결핵병원 병상수

※ 국립결핵병원(음압격리병상수/총병상수): 국립마산병원(30/354병상),
국립목포병원(10/296병상)

구분	현재지표 (’21)	최종목표	
		BTL 미추진	BTL 추진
음압격리병상 확보율(B/A)	6.15%	3.38%	8.47%
국립결핵병원 병상수(A)	650	296	354
음압 격리병상수(B)	40	10	30

(3) 병원 현대화사업 추진 경과

- 1995. 9. 「마산 도시기본계획」 상 배후도시 예정지 지정
- 2005. 9. 병원 이전에 대하여 마산시에서 “등가교환방식”을 보건복지부에 제안
- 2005. 11. 보건복지부는 “양여방식”으로 마산시와 재협의할 것을 결정
- 2007. 5. ~ 10. 국립마산병원 이전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 실시(정책연구과제)
- 2007. 9. 7. 「국립마산병원 현대화 및 잉여부지개발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
- 2009. 7. 23. 「국립마산병원 재건축 및 마산 가포뿔산지구 개발 계획」 실시 협약 체결
- 2011. 3. ~ 12. 현대화사업 타당성 조사 및 민자적격성(BTL)조사 연구용역
- 2011. 8. 마산병원 현대화 BTL 사업 기재부 승인(총한도액 495억원)
- 2011. 12. 마산병원 현대화 BTL 사업 국회 예산 승인(총한도액 495억원)
- 2012. 11. 국립마산병원 현대화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고시 보건복지부 장관 승인
- 2013. 4. 국립마산병원 현대화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2014. 5. 실시협약 체결(복지부장관과 사업시행자)
- 2014. 8. 별관동 리모델링공사 착공
- 2015. 9. 실시계획 승인
- 2017. 5. 본관동 신축공사 준공
- 2017. 5. ~ 2037. 4.: 시설운영 및 평가(20년)

제4장 부속명세서

1. 현금및현금성자산명세서

(단위: 원)

계정과목	구분	금액	
		당기말	전기말
합계		41,308,701,056,730	59,048,755,830,014
현금및현금등가물	소계	2,516,578,994,932	3,530,416,463,919
	현금	90,029,098	67,234,697
	보통예금	1,029,463,626,745	294,417,794,990
	당좌예금	10,886,724	133,690,878
	기타현금성자산	1,487,014,452,365	3,235,797,743,354
국고금	소계	38,792,122,061,798	55,518,339,366,095
	한국은행국가예금*	15,988,471,627,640	28,091,913,909,050
	금고은행국가예금	161,047,117,247	326,369,018,230
	국고예금	237,609,068,101	237,700,772,054
	국고금여유자금운용액	328,751,527,498	109,822,391,018
	기타국고금	22,076,242,721,312	26,752,533,275,743

* 당기말 및 전기말 현재 조달특별회계가 보유하고 있는 회전자금의 한국은행국가예금 2,320,198백만원(전기말 2,300,637백만원)은 기타유동자산으로 별도 반영

2. 금융상품명세서

(단위: 원)

계정과목	구분	금액	
		당기말	전기말
합계		46,326,728,256,146	67,133,159,754,313
단기금융상품	소계	41,787,362,558,845	64,618,109,276,585
	정기예금	22,217,921,849,355	23,762,932,372,904
	정기적금	1,032,590,000	1,032,590,000
	기타의단기금융상품	19,568,408,119,490	40,854,144,313,681
장기금융상품	소계	4,539,365,697,301	2,515,050,477,728
	정기예금	2,250,823,970,991	1,378,064,201,711
	기타의장기금융상품	2,288,541,726,310	1,136,986,276,017

3. 단기투자증권명세서

(단위: 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합계	323,448,544,592,479	327,489,118,161,541
채무증권	32,174,701,063,212	23,404,269,488,322
지분증권	291,273,843,529,267	304,018,947,170,483
기타단기투자증권	-	65,901,502,736

“공 란”

1) 채무증권명세서

구분	취득가액		장부가액	
	당기말	전기말	당기말	전기말
합계	32,687,544,305,236	23,393,506,704,171	32,174,701,063,212	23,404,269,488,322
공채	48,652,937,159	-	48,672,794,695	-
지방채	1,264,154,523,183	1,450,680,097,500	1,250,519,768,181	1,456,747,644,738
회사채	31,374,736,844,894	21,942,826,606,671	30,875,508,500,336	21,947,521,843,584

2) 지분증권 및 기타단기투자증권명세서

구분		취득가액		장부가액	
		당기말	전기말	당기말	전기말
합계		257,613,234,953,330	229,524,884,290,723	291,273,843,529,267	304,084,848,673,219
지분 증권	소계	257,613,234,953,330	229,459,514,473,600	291,273,843,529,267	304,018,947,170,483
	주식	128,893,003,531,917	162,813,655,987,229	162,056,186,790,063	236,469,093,738,640
	기타지분증권	128,720,231,421,413	66,645,858,486,371	129,217,656,739,204	67,549,853,431,843
기타단기 투자증권	소계	-	65,369,817,123	-	65,901,502,736
	공채	-	1,905,000	-	1,905,000
	회사채	-	15,017,912,123	-	15,197,038,000
	기타지분증권	-	50,350,000,000	-	50,702,559,736

(단위: 원)

투자증권평가손익(누계)		투자증권감액손실(누계)	
당기말	전기말	당기말	전기말
(486,216,845,890)	16,562,562,451	(26,626,396,134)	(5,799,778,300)
19,857,536	-	-	-
(13,634,755,002)	6,067,547,238	-	-
(472,601,948,424)	10,495,015,213	(26,626,396,134)	(5,799,778,300)

(단위: 원)

투자증권평가손익(누계)		투자증권감액손실(누계)	
당기말	전기말	당기말	전기말
33,851,802,365,104	74,735,044,012,368	(191,193,789,167)	(175,079,629,872)
33,851,802,365,104	74,734,512,326,755	(191,193,789,167)	(175,079,629,872)
33,163,183,258,146	73,655,437,751,411	-	-
688,619,106,958	1,079,074,575,344	(191,193,789,167)	(175,079,629,872)
-	531,685,613	-	-
-	-	-	-
-	179,125,877	-	-
-	352,559,736	-	-

4. 장기투자증권명세서

(단위: 원)

구분	당기말	전기말
합계	794,376,671,807,468	809,794,768,134,056
채무증권	145,157,460,044,317	162,856,215,650,396
지분증권	648,219,095,166,724	645,876,222,769,487
기타장기투자증권	1,000,116,596,427	1,062,329,714,173

“공 란”

1) 채무증권명세서

구분	취득가액		장부가액	
	당기말	전기말	당기말	전기말
합계	156,691,294,817,430	162,701,338,786,280	145,157,460,044,317	162,856,215,650,396
공채	230,426,071,227	140,415,379,859	216,887,469,460	137,465,571,054
지방채	13,673,672,950,601	12,998,003,778,942	13,084,065,064,226	12,911,852,148,306
회사채	142,787,195,795,602	149,562,919,627,479	131,856,507,510,631	149,806,897,931,036

2) 지분증권 및 기타장기투자증권명세서

구분	취득가액		장부가액		
	당기말	전기말	당기말	전기말	
합계	539,768,851,570,294	488,895,977,696,446	649,219,211,763,151	646,938,552,483,660	
지분증권	소계	538,040,848,759,427	487,120,292,910,543	648,219,095,166,724	645,876,222,769,487
	주식	39,347,812,072,894	40,708,684,744,115	39,456,151,335,657	41,213,739,472,278
	출자금	152,631,613,226,936	141,961,228,529,413	139,697,978,970,450	129,249,577,362,068
	기타지분증권	346,061,423,459,597	304,450,379,637,015	469,064,964,860,617	475,412,905,935,141
기타장기 투자증권	소계	1,728,002,810,867	1,775,684,785,903	1,000,116,596,427	1,062,329,714,173
	공채	520,000	520,000	520,000	520,000
	회사채	1,710,501,263	1,716,786,947	1,621,920,000	1,704,120,000
	주식	1,611,227,620,612	1,634,546,737,139	916,747,393,198	940,301,638,223
	출자금	200,000,000	200,000,000	200,000,000	200,000,000
	기타지분증권	114,864,168,992	139,220,741,817	81,546,763,229	120,123,435,950

(단위: 원)

투자증권평가손익(누계)		투자증권감액손실(누계)	
당기말	전기말	당기말	전기말
(11,504,180,821,622)	233,564,839,384	(29,653,951,491)	(78,687,975,268)
(13,538,601,767)	(2,949,808,805)	-	-
(589,607,886,375)	(86,151,630,636)	-	-
(10,901,034,333,480)	322,666,278,825	(29,653,951,491)	(78,687,975,268)

(단위: 원)

투자증권평가손익(누계)		투자증권감액손실(누계)	
당기말	전기말	당기말	전기말
123,914,551,960,698	172,541,247,392,574	(14,464,191,767,841)	(14,498,672,605,360)
123,947,499,393,897	172,559,898,811,561	(13,769,252,986,600)	(13,803,968,952,617)
869,742,115,548	1,317,523,942,406	(761,402,852,785)	(812,469,214,243)
(70,068,105,225)	-	(12,863,566,151,261)	(12,711,651,167,345)
123,147,825,383,574	171,242,374,869,155	(144,283,982,554)	(279,848,571,029)
(32,947,433,199)	(18,651,418,987)	(694,938,781,241)	(694,703,652,743)
-	-	-	-
(88,581,263)	(12,666,947)	-	-
-	-	(694,480,227,414)	(694,245,098,916)
-	-	-	-
(32,858,851,936)	(18,638,752,040)	(458,553,827)	(458,553,827)

① 출자금 명세서

중앙관서	출자대상기관	취득가액	
		당기말	전기말
합계		152,631,813,226,936	141,961,428,529,413
교육부	코크랩티피부동산위탁관리주식회사 등	214,650,930,000	149,536,640,000
금융위원회	유동화회사	55,000	52,400
농림축산식품부	새만금개발공사 등	1,602,700,000,000	1,562,700,000,00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모태펀드 등	1,445,506,260,975	1,220,684,067,946
보건복지부	한국모태펀드	130,000,000,000	80,000,000,000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석유공사 등	13,284,169,780,075	13,157,890,780,075
인사혁신처	(주)상록골프앤리조트	100,000,000	100,000,000
고용노동부	한국모태펀드	17,500,000,000	17,500,000,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벤처투자㈜ 등	349,521,900,882	328,524,759,652
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등	79,352,689,312,305	70,256,377,203,184
기획재정부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48,375,703,715,134	47,925,683,759,098
특허청	한국모태펀드	250,000,000,000	230,000,000,000
해양수산부	여수광양항만공사 등	1,869,196,768,933	1,819,696,763,426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등	144,038,000,000	136,698,000,000
중소벤처기업부	한국모태펀드 등	5,596,036,503,632	5,076,036,503,632

(단위: 원)

장부가액		투자증권평가손익(누계)		투자증권감액손실(누계)		당기배당금수익
당기말	전기말	당기말	전기말	당기말	전기말	
139,698,178,970,450	129,249,777,362,068	(70,068,105,225)	-	(12,863,566,151,261)	(12,711,651,167,345)	135,070,026,099
214,650,930,000	149,536,640,000	-	-	-	-	-
55,000	52,400	-	-	-	-	-
1,602,700,000,000	1,562,700,000,000	-	-	-	-	-
1,438,876,000,001	1,214,053,806,972	-	-	(6,630,260,974)	(6,630,260,974)	-
130,000,000,000	80,000,000,000	-	-	-	-	-
615,000,000,000	641,000,000,000	-	-	(12,669,169,780,075)	(12,516,890,780,075)	-
100,000,000	100,000,000	-	-	-	-	-
17,500,000,000	17,500,000,000	-	-	-	-	-
337,970,292,154	316,609,134,840	-	-	(11,551,608,728)	(11,915,624,812)	-
79,282,621,207,080	70,256,377,203,184	(70,068,105,225)	-	-	-	17,453,296,712
48,204,157,807,633	47,754,137,851,597	-	-	(171,545,907,501)	(171,545,907,501)	117,616,729,387
250,000,000,000	230,000,000,000	-	-	-	-	-
1,869,196,768,933	1,819,696,763,426	-	-	-	-	-
144,038,000,000	136,698,000,000	-	-	-	-	-
5,591,367,909,649	5,071,367,909,649	-	-	(4,668,593,983)	(4,668,593,983)	-

5. 미수채권명세서

1) 단기미수채권잔액명세서

(단위: 원)

구분		금액	
		당기말	전기말
합계	A. 미수채권	74,454,692,353,452	76,210,830,880,811
	B. (현재가치할인차금)	(13,434,521,328)	(12,908,711,220)
	C. (대손충당금)	(40,099,147,630,441)	(36,252,786,487,567)
	D. 장부가액(A+B+C)	34,342,110,201,683	39,945,135,682,024
미수국세	A. 미수국세	51,937,786,952,278	54,902,335,109,522
	B. (대손충당금)	(33,234,363,848,037)	(29,419,788,292,334)
	C. 장부가액(A+B)	18,703,423,104,241	25,482,546,817,188
미수부담금수익	A. 미수부담금수익	3,556,565,419,325	2,809,496,712,860
	B. (현재가치할인차금)	(13,434,521,328)	(12,908,711,220)
	C. (대손충당금)	(369,489,104,205)	(314,961,599,143)
	D. 장부가액(A+B+C)	3,173,641,793,792	2,481,626,402,497
미수제재금수익	A. 미수제재금수익	7,700,406,666,076	7,465,223,021,598
	B. (대손충당금)	(3,858,109,220,062)	(3,803,336,480,927)
	C. 장부가액(A+B)	3,842,297,446,014	3,661,886,540,671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A. 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603,034,348,088	506,474,272,002
	B. (대손충당금)	(56,168,512,066)	(53,088,230,750)
	C. 장부가액(A+B)	546,865,836,022	453,386,041,252
미수사회보험수익	A. 미수사회보험수익	2,768,654,743,770	2,599,518,630,260
	B. (대손충당금)	(718,835,419,483)	(757,858,796,549)
	C. 장부가액(A+B)	2,049,819,324,287	1,841,659,833,711
미수연금수익	A. 미수연금수익	129,709,672,049	96,277,137,302
	B. (대손충당금)	(6,377,613,430)	(5,761,888,309)
	C. 장부가액(A+B)	123,332,058,619	90,515,248,993
미수보험수익	A. 미수보험수익	514,037,455,203	410,202,657,570
	B. 장부가액(A)	514,037,455,203	410,202,657,570
미수보증수익	A. 미수보증수익	434,005,233	440,109,004
	B. (대손충당금)	(27,684,970)	(27,684,970)
	C. 장부가액(A+B)	406,320,263	412,424,034
미수이자수익	A. 미수이자수익	2,877,641,011,213	3,027,498,262,811
	B. (대손충당금)	(1,112,582,591,258)	(1,131,970,099,206)
	C. 장부가액(A+B)	1,765,058,419,955	1,895,528,163,605
미수기타수익	A. 미수기타수익	1,863,550,720,720	1,889,508,804,534
	B. (대손충당금)	(653,705,577,807)	(676,270,271,402)
	C. 장부가액(A+B)	1,209,845,142,913	1,213,238,533,132
기타미수금	A. 기타미수금	2,502,871,359,497	2,503,856,163,348
	B. (대손충당금)	(89,488,059,123)	(89,723,143,977)
	C. 장부가액(A+B)	2,413,383,300,374	2,414,133,019,371

① 단기미수국세명세서

(단위: 원)

세목구분	금액	
	당기말	전기말
소득세	10,878,340,398,033	8,509,716,297,821
법인세	2,560,435,130,799	3,790,064,738,666
상속세	1,177,066,580,450	1,274,850,112,960
부가가치세	8,829,041,992,910	9,357,046,542,505
개별소비세	412,216,972,049	450,142,835,722
주세	53,218,806,500	367,567,001,793
증권거래세	15,300,163,034	11,915,866,928
인지세	2,472,168,800	52,424,950
관세	1,433,772,131,670	1,696,039,892,660
방위세	409,172,560	399,928,800
교통·에너지·환경세	21,950,745,630	23,660,658,780
교육세	68,814,905,243	155,936,115,463
농어촌특별세	435,688,620,840	427,916,749,790
종합부동산세	2,172,586,003,975	2,112,040,098,176
기타내국세	23,876,473,159,785	26,724,985,844,508
소 계	51,937,786,952,278	54,902,335,109,522
(대손충당금)	(33,234,363,848,037)	(29,419,788,292,334)
합 계	18,703,423,104,241	25,482,546,817,188

2) 장기미수채권잔액명세서

(단위: 원)

구분		금액	
		당기말	전기말
합계	A. 장기미수채권	15,846,894,926,954	8,446,669,267,755
	B. (현재가치할인차금)	(291,616,100,239)	(382,715,669,840)
	C. (대손충당금)	(357,984,219,773)	(267,509,977,000)
	D. 장부가액(A+B+C)	15,197,294,606,942	7,796,443,620,915
장기미수국세	A. 장기미수국세	11,643,748,646,665	4,281,429,284,162
	B. (대손충당금)	(136,231,859,166)	(73,640,583,687)
	C. 장부가액(A+B)	11,507,516,787,499	4,207,788,700,475
장기미수부담금수익	A. 장기미수부담금수익	2,561,325,469,099	2,955,168,280,431
	B. (현재가치할인차금)	(291,616,100,239)	(382,715,669,840)
	C. 장부가액(A+B)	2,269,709,368,860	2,572,452,610,591
장기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A. 장기미수재화및용역제공수익	28,359,014,183	53,780,448,412
	B. 장부가액(A)	28,359,014,183	53,780,448,412
장기미수연금수익	A. 장기미수연금수익	45,430,624,718	50,279,630,678
	B. 장부가액(A)	45,430,624,718	50,279,630,678
장기미수이자수익	A. 장기미수이자수익	271,358,188,232	144,515,423,537
	B. (대손충당금)	(48,362,785,960)	(1,003,697)
	C. 장부가액(A+B)	222,995,402,272	144,514,419,840
장기미수기타수익	A. 장기미수기타수익	165,908,763,140	190,709,587,217
	B. (대손충당금)	(162,505,645,045)	(185,596,224,734)
	C. 장부가액(A+B)	3,403,118,095	5,113,362,483
장기기타의미수금	A. 장기기타의미수금	1,130,764,220,917	770,786,613,318
	B. (대손충당금)	(10,883,929,602)	(8,272,164,882)
	C. 장부가액(A+B)	1,119,880,291,315	762,514,448,436

① 장기미수국세명세서

(단위: 원)

세목구분	금액	
	당기말	전기말
상속세	11,643,748,646,665	4,281,429,284,162
(대손충당금)	(136,231,859,166)	(73,640,583,687)
합계	11,507,516,787,499	4,207,788,700,475

6. 대여금명세서

1) 단기대여금명세서

(단위: 원)

구분		이자율 (%)	당기말	전기말
합계			34,287,728,121,124	32,905,907,472,511
단기전대차관 대여금	소계		6,275,211,420	14,484,093,300
	정부외단기전대차관대여금	0.8	6,275,211,420	14,484,093,300
단기용자금		0.0 ~ 10.5	34,990,664,978,452	33,618,580,001,014
단기대여금 대손충당금	소계		(709,212,068,748)	(727,156,621,803)
	(단기용자금대손충당금)		(709,212,068,748)	(727,156,621,803)

2) 장기대여금명세서

(단위: 원)

구분		이자율 (%)	당기말	전기말
합계			193,061,227,605,144	178,254,360,343,596
장기용자금		0.0 ~ 9.0	220,737,974,822,439	203,962,804,507,866
장기대여금 현재가치할인차금	(장기용자금현재가치할인차금)		(1,989,648,756)	(1,917,350,895)
장기대여금 대손충당금	소계		(27,674,757,568,539)	(25,706,526,813,375)
	(장기용자금대손충당금)		(27,674,757,568,539)	(25,706,526,813,375)

7. 일반유형자산명세서

1) 당해연도 증감명세서

과목	기초 장부가액	증 감 내 역			
		취득 /자본적지출	대체	처분	감가 상각
합계	704,035,611,392,210	23,322,973,056,966	-	(549,548,814,717)	(10,616,164,934,515)
토지	467,647,333,550,650	485,769,411,944	267,133,602,920	(74,631,599,189)	-
건물	66,373,276,269,720	626,828,141,270	3,827,497,653,067	(29,431,878,305)	(2,689,445,532,655)
구축물	12,325,326,715,018	355,315,323,979	785,376,322,829	(17,773,939,752)	(1,490,490,249,154)
기계장치	6,682,961,721,177	861,169,576,197	33,394,213,484	(62,584,651,089)	(772,861,899,190)
집기·비품·차량운반구	10,403,195,323,556	1,356,030,858,617	155,312,524,831	(71,270,483,922)	(1,551,897,758,340)
전비품	106,451,641,310,366	10,050,648,688,262	-	(4,104,259,827)	(3,927,208,993,070)
기타일반유형자산	8,646,944,605,762	216,691,679,086	23,168,568,615	(21,980,189,481)	(184,260,502,106)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25,504,931,895,961	9,370,519,377,611	(5,091,882,885,746)	(267,771,813,152)	-

2) 직전연도 증감명세서

과목	기초 장부가액	증 감 내 역			
		취득 /자본적지출	대체	처분	감가 상각
합계	604,107,870,474,512	27,293,138,734,179	-	(1,095,743,133,128)	(10,230,610,592,019)
토지	375,408,702,215,194	653,505,969,179	280,759,536,954	(241,072,584,296)	-
건물	69,901,610,264,363	1,103,294,572,707	3,537,596,524,535	(76,052,182,767)	(2,707,089,739,995)
구축물	10,356,039,787,261	116,063,649,061	1,025,284,711,865	(9,479,540,784)	(1,418,518,933,382)
기계장치	6,061,197,003,690	778,376,176,074	16,657,738,594	(47,678,774,205)	(807,345,433,808)
집기·비품·차량운반구	9,092,180,565,171	1,316,829,230,701	107,479,588,820	(181,479,986,850)	(1,493,105,794,529)
전비품	101,799,360,888,596	12,635,801,545,019	-	(110,709,217,517)	(3,643,053,482,226)
기타일반유형자산	8,745,180,794,288	234,882,968,683	72,783,053,312	(133,867,251,029)	(161,497,208,079)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22,743,598,955,949	10,454,384,622,755	(5,040,561,154,080)	(295,403,595,680)	-

(단위: 원)

감액 /환입	기타 증감	기말 장부가액	기말 잔액		
			감가상각 누계액	사용 수익권	재평가 이익
(196,398,552,930)	(5,597,682,256,090)	710,398,789,890,924	88,065,588,156,296	2,424,079,181,576	273,838,000,609,928
-	(2,725,082,583,253)	465,600,522,383,072	-	775,161,989,099	262,305,858,389,709
(22,118,843,874)	237,412,493,187	68,324,018,302,410	5,599,207,786,172	1,569,007,304,934	3,771,148,580,038
-	(1,105,050,470,651)	10,852,703,702,269	7,099,043,963,222	60,803,184,709	403,762,604,650
-	(184,935,035,635)	6,557,143,924,944	4,995,301,529,946	19,106,702,834	98,365,437,858
-	(512,505,835,060)	9,778,864,629,682	10,453,137,989,379	-	434,846,507,900
-	1,038,401,462,997	113,609,378,208,728	58,091,952,336,799	-	-
-	319,695,204,682	9,000,259,366,558	1,826,944,550,778	-	6,824,019,089,773
(174,279,709,056)	(2,665,617,492,357)	26,675,899,373,261	-	-	-

(단위: 원)

감액 /환입	기타 증감	기말 장부가액	기말 잔액		
			감가상각 누계액	사용 수익권	재평가 이익
(171,987,995,828)	84,132,943,904,494	704,035,611,392,210	79,122,844,045,315	1,630,480,392,258	277,855,670,955,032
-	91,545,438,413,619	467,647,333,550,650	-	286,243,967,937	263,979,979,133,087
(21,938,672,921)	(5,364,144,496,202)	66,373,276,269,720	2,690,241,129,733	1,249,785,407,683	4,068,834,084,847
-	2,255,937,040,997	12,325,326,715,018	5,493,576,705,141	74,338,697,866	1,700,340,780,364
-	681,755,010,832	6,682,961,721,177	4,589,750,994,585	20,112,318,772	368,399,413,536
-	1,561,291,720,243	10,403,195,323,556	9,556,686,614,664	-	986,815,809,293
-	(4,229,758,423,506)	106,451,641,310,366	55,090,968,753,737	-	-
-	(110,537,751,413)	8,646,944,605,762	1,701,619,847,455	-	6,751,301,733,905
(150,049,322,907)	(2,207,037,610,076)	25,504,931,895,961	-	-	-

3) 보유토지의 공시지가

구분	당기말		
	면적 (㎡)	장부가액	공시지가
토지(공시지가존재)	20,669,252,739	331,901,076,794,949	374,714,348,982,760
토지(공시지가없음)	2,062,109,077	133,699,445,588,123	-

(단위: 원)

전기말		
면적 (㎡)	장부가액	공시지가
20,345,711,580	321,887,427,188,309	322,585,432,637,907
2,372,124,757	145,759,906,362,341	-

4) 금융리스자산 명세서

(단위: 원)

과목	금융리스자산	감가상각누계액	장부가액
합계	1,903,537,274,178	798,811,321,466	1,104,725,952,712
기계장치	77,676,571,050	20,648,609,386	57,027,961,664
집기·비품·차량운반구	1,756,687,147,460	757,858,730,771	998,828,416,689
기타일반유형자산	69,173,555,668	20,303,981,309	48,869,574,359

5) 건설중인자산 명세서

(단위: 원)

과목	당기말	전기말
합계	26,675,899,373,261	25,504,931,895,961
건설중인토지	3,604,500,243,717	3,459,578,957,896
건설중인건물	8,352,203,150,243	8,669,240,087,833
건설중인구축물	4,741,942,338,228	4,705,086,302,108
건설중인기계장치	103,800,293,835	78,615,532,944
건설중인집기·비품·차량운반구	582,701,126,039	361,558,262,679
건설중인기타일반유형자산	356,945,077,176	160,450,715,506
건설중인기타의유형자산	8,933,807,144,023	8,070,402,036,995

“공 란”

8. 사회기반시설명세서

1) 사회기반시설 증감명세서

(1) 도로 증감명세서

① 당해연도 증감명세서

과목	기초 장부가액	증 감 내 역			
		취득 /자본적지출	대체	처분	감가 상각
합계	205,083,768,054,670	102,936,718,010	6,306,727,770	-	(2,132,235,768,634)
토지	47,431,860,085,295	102,898,288,010	3,838,590	-	-
건물	245,624,342,077	-	-	-	(5,608,823,666)
구축물	157,406,283,627,298	38,430,000	6,302,889,180	-	(2,126,626,944,968)

② 직전연도 증감명세서

과목	기초 장부가액	증 감 내 역			
		취득 /자본적지출	대체	처분	감가 상각
합계	195,292,197,183,836	101,171,624,330	242,002,368,347	-	(2,287,014,994,993)
토지	39,541,433,902,406	101,171,624,330	24,149,226,933	-	-
건물	135,825,498,554	-	563,963,400	-	(5,566,964,532)
구축물	155,614,937,782,876	-	217,289,178,014	-	(2,281,448,030,461)

(단위: 원)

감액 /환입	기타 증감	기말 장부가액	기말 잔액		
			감가상각 누계액	사용수익권	재평가이익
-	54,847,463,633,268	257,908,239,365,084	2,637,728,159,024	68,362,158,385,283	78,642,926,244,411
-	281,380,213,302	47,816,142,425,197	-	6,312,843,206,163	15,940,431,646,724
-	2,980,061,843	242,995,580,254	9,177,583,372	104,194,378,335	119,405,443,276
-	54,563,103,358,123	209,849,101,359,633	2,628,550,575,652	61,945,120,800,785	62,583,089,154,411

(단위: 원)

감액 /환입	기타 증감	기말 장부가액	기말 잔액		
			감가상각 누계액	사용수익권	재평가이익
-	11,735,411,873,150	205,083,768,054,670	136,530,244,775	67,108,784,679,890	58,950,122,056,087
-	7,765,105,331,626	47,431,860,085,295	-	6,085,626,578,497	15,862,543,881,550
-	114,801,844,655	245,624,342,077	865,606,946	101,008,565,398	122,108,596,036
-	3,855,504,696,869	157,406,283,627,298	135,664,637,829	60,922,149,535,995	42,965,469,578,501

(2) 철도 증감명세서

① 당해연도 증감명세서

과목	기초 장부가액	증 감 내 역			
		취득 /자본적지출	대체	처분	감가 상각
합계	54,491,964,634,727	-	-	-	(2,270,294,782,861)
토지	27,862,500,401,361	-	-	-	-
건물	2,119,160,181,369	-	-	-	(79,165,011,931)
구축물	24,510,304,051,997	-	-	-	(2,191,129,770,930)

② 직전연도 증감명세서

과목	기초 장부가액	증 감 내 역			
		취득 /자본적지출	대체	처분	감가 상각
합계	40,939,327,938,163	-	-	-	(2,462,878,176,548)
토지	24,171,408,334,583	-	-	-	-
건물	1,942,191,952,702	-	-	-	(99,933,863,170)
구축물	14,825,727,650,878	-	-	-	(2,362,944,313,378)

(단위: 원)

감액 /환입	기타 증감	기말 장부가액	기말 잔액		
			감가상각 누계액	사용수익권	재평가이익
-	(8,256,512,307,518)	43,965,157,544,348	2,625,283,300,161	14,464,918,085,386	14,889,538,786,986
-	(733,592,342,066)	27,128,908,059,295	-	25,603,538,335	10,752,213,553,608
-	(232,800,889,298)	1,807,194,280,140	85,235,410,658	942,711,243,849	124,220,176,623
-	(7,290,119,076,154)	15,029,055,204,913	2,540,047,889,503	13,496,603,303,202	4,013,105,056,755

(단위: 원)

감액 /환입	기타 증감	기말 장부가액	기말 잔액		
			감가상각 누계액	사용수익권	재평가이익
-	16,015,514,873,112	54,491,964,634,727	1,877,468,454	14,230,176,370,755	23,389,621,284,771
-	3,691,092,066,778	27,862,500,401,361	-	27,769,172,759	11,473,727,237,188
-	276,902,091,837	2,119,160,181,369	910,000,000	990,684,589,668	367,592,747,680
-	12,047,520,714,497	24,510,304,051,997	967,468,454	13,211,722,608,328	11,548,301,299,903

(3) 항만 증감명세서

① 당해연도 증감명세서

과목	기초 장부가액	증 감 내 역			
		취득 /자본적지출	대체	처분	감가 상각
합계	21,164,531,752,881	415,832,490	41,080,126,327	-	(428,210,349,486)
토지	14,871,233,138,115	-	-	-	-
건물	473,436,633,555	-	1,533,952,330	-	(25,637,351,044)
구축물	5,819,861,981,211	415,832,490	39,546,173,997	-	(402,572,998,442)

② 직전연도 증감명세서

과목	기초 장부가액	증 감 내 역			
		취득 /자본적지출	대체	처분	감가 상각
합계	19,450,050,941,302	394,547,200	64,930,689,545	-	(485,305,311,687)
토지	13,244,260,110,069	-	6,714,472,056	-	-
건물	530,191,896,801	-	1,816,925,909	-	(23,987,966,394)
구축물	5,675,598,934,432	394,547,200	56,399,291,580	-	(461,317,345,293)

(단위: 원)

		기말 장부가액	기말 잔액		
감액 /환입	기타 증감		감가상각 누계액	사용수익권	재평가이익
-	822,586,705,890	21,600,404,068,102	589,555,822,585	2,737,371,580,868	8,388,551,877,100
-	649,564,045,596	15,520,797,183,711	-	2,461,848,848,345	7,645,255,571,151
-	20,443,304,410	469,776,539,251	32,783,241,694	93,038,214,424	49,887,601,840
-	152,579,355,884	5,609,830,345,140	556,772,580,891	182,484,518,099	693,408,704,109

(단위: 원)

		기말 장부가액	기말 잔액		
감액 /환입	기타 증감		감가상각 누계액	사용수익권	재평가이익
-	2,134,460,886,521	21,164,531,752,881	20,522,996,145	2,994,484,463,513	7,936,264,137,566
-	1,620,258,555,990	14,871,233,138,115	-	2,667,171,921,955	7,070,319,548,464
-	(34,584,222,761)	473,436,633,555	305,939,640	94,279,739,376	54,630,228,059
-	548,786,553,292	5,819,861,981,211	20,217,056,505	233,032,802,182	811,314,361,043

(4) 댐 증감명세서

① 당해연도 증감명세서

과목	기초 장부가액	증 감 내 역			
		취득 /자본적지출	대체	처분	감가 상각
합계	5,425,483,575,237	-	-	-	(99,653,178,539)
토지	3,529,502,668,195	-	-	-	-
건물	9,666,690,381	-	-	-	(246,770,267)
구축물	1,886,314,216,661	-	-	-	(99,406,408,272)

② 직전연도 증감명세서

과목	기초 장부가액	증 감 내 역			
		취득 /자본적지출	대체	처분	감가 상각
합계	3,433,255,957,443	3,050,800	-	-	(119,371,031,340)
토지	2,195,484,385,932	3,050,800	-	-	-
건물	9,921,254,288	-	-	-	(250,740,437)
구축물	1,227,850,317,223	-	-	-	(119,120,290,903)

(단위: 원)

		기말 장부가액	기말 잔액		
감액 /환입	기타 증감		감가상각 누계액	사용수익권	재평가이익
-	(795,524,195,362)	4,530,306,201,336	104,138,633,249	3,082,551,582,534	2,261,886,805,419
-	(57,610,177,744)	3,471,892,490,451	-	2,012,906,183,395	2,166,518,685,680
-	(20,073,673)	9,399,846,441	249,937,469	-	106,256,952
-	(737,893,943,945)	1,049,013,864,444	103,888,695,780	1,069,645,399,139	95,261,862,787

(단위: 원)

		기말 장부가액	기말 잔액		
감액 /환입	기타 증감		감가상각 누계액	사용수익권	재평가이익
-	2,111,595,598,334	5,425,483,575,237	-	3,030,912,163,826	2,962,739,974,900
-	1,334,015,231,463	3,529,502,668,195	-	1,978,545,491,574	2,154,493,426,301
-	(3,823,470)	9,666,690,381	-	-	120,891,697
-	777,584,190,341	1,886,314,216,661	-	1,052,366,672,252	808,125,656,902

(5) 공항 증감명세서

① 당해연도 증감명세서

과목	기초 장부가액	증 감 내 역			
		취득 /자본적지출	대체	처분	감가 상각
합계	5,347,377,256,236	1,265,682,000	-	-	(69,948,895,219)
토지	4,330,556,064,098	1,265,682,000	-	-	-
건물	566,109,710,722	-	-	-	(8,333,095,103)
구축물	450,711,481,416	-	-	-	(61,615,800,116)

② 직전연도 증감명세서

과목	기초 장부가액	증 감 내 역			
		취득 /자본적지출	대체	처분	감가 상각
합계	4,594,075,398,495	-	-	-	(86,064,675,800)
토지	3,903,229,038,478	-	-	-	-
건물	621,728,516,883	-	-	-	(21,668,769,605)
구축물	69,117,843,134	-	-	-	(64,395,906,195)

(단위: 원)

감액 /환입	기타 증감	기말 장부가액	기말 잔액		
			감가상각 누계액	사용수익권	재평가이익
-	(834,451,354,682)	4,444,242,688,335	90,979,061,991	1,173,806,316,401	2,040,360,971,224
-	39,120,269,372	4,370,942,015,470	-	566,431,718,906	2,025,042,791,672
-	(525,499,826,333)	32,276,789,286	11,921,443,915	248,122,846,398	6,271,347,370
-	(348,071,797,721)	41,023,883,579	79,057,618,076	359,251,751,097	9,046,832,182

(단위: 원)

감액 /환입	기타 증감	기말 장부가액	기말 잔액		
			감가상각 누계액	사용수익권	재평가이익
-	839,366,533,541	5,347,377,256,236	6,088,278,125	1,204,861,977,242	2,385,805,121,644
-	427,327,025,620	4,330,556,064,098	-	592,516,039,698	2,054,084,535,354
-	(33,950,036,556)	566,109,710,722	1,496,921,150	259,276,888,135	50,220,222,796
-	445,989,544,477	450,711,481,416	4,591,356,975	353,069,049,409	281,500,363,494

(6) 하천 증감명세서

① 당해연도 증감명세서

과목	기초 장부가액	증 감 내 역			
		취득 /자본적지출	대체	처분	감가 상각
합계	99,119,320,545,371	6,988,899,180	100,126,705,214	-	(333,791,322,673)
토지	57,342,436,117,801	6,988,899,180	-	-	-
건물	23,689,105,142	-	-	-	(1,181,103,398)
구축물	41,753,195,322,428	-	100,126,705,214	-	(332,610,219,275)

② 직전연도 증감명세서

과목	기초 장부가액	증 감 내 역			
		취득 /자본적지출	대체	처분	감가 상각
합계	72,151,782,656,271	24,421,424,240	23,733,195,780	-	(437,928,504,269)
토지	53,197,350,837,191	24,421,424,240	347,235,880	-	-
건물	24,708,357,973	-	-	-	(584,950,426)
구축물	18,929,723,461,107	-	23,385,959,900	-	(437,343,553,843)

(단위: 원)

감액 /환입	기타 증감	기말 장부가액	기말 잔액		
			감가상각 누계액	사용수익권	재평가이익
-	(25,827,168,212,451)	73,065,476,614,641	388,199,584,264	7,389,504	22,457,484,037,731
-	542,550,783,286	57,891,975,800,267	-	7,389,504	21,885,490,440,520
-	24,801,950,651	47,309,952,395	1,195,091,535	-	221,410,574
-	(26,394,520,946,388)	15,126,190,861,979	387,004,492,729	-	571,772,186,637

(단위: 원)

감액 /환입	기타 증감	기말 장부가액	기말 잔액		
			감가상각 누계액	사용수익권	재평가이익
-	27,357,311,773,349	99,119,320,545,371	1,071,856,495	32,522,527	46,145,374,658,829
-	4,120,316,620,490	57,342,436,117,801	-	32,522,527	21,660,863,779,759
-	(434,302,405)	23,689,105,142	-	-	168,518,628
-	23,237,429,455,264	41,753,195,322,428	1,071,856,495	-	24,484,342,360,442

(7) 상수도 증감명세서

① 당해연도 증감명세서

과목	기초 장부가액	증 감 내 역			
		취득 /자본적지출	대체	처분	감가 상각
합계	7,760,516,655,580	-	12,000,000	-	(431,012,798,896)
토지	2,093,959,016,066	-	-	-	-
건물	121,495,601,854	-	-	-	(18,169,079,797)
구축물	5,545,062,037,660	-	12,000,000	-	(412,843,719,099)

② 직전연도 증감명세서

과목	기초 장부가액	증 감 내 역			
		취득 /자본적지출	대체	처분	감가 상각
합계	1,979,188,996,429	-	-	-	(331,975,401,735)
토지	1,781,056,453,928	-	-	-	-
건물	75,911,614,984	-	-	-	(18,036,326,563)
구축물	122,220,927,517	-	-	-	(313,939,075,172)

(단위: 원)

		기말 장부가액	기말 잔액		
감액 /환입	기타 증감		감가상각 누계액	사용수익권	재평가이익
-	(4,587,947,902,359)	2,741,567,954,325	459,440,034,660	4,002,162,074,254	1,055,303,741,462
-	67,502,549,767	2,161,461,565,833	-	292,157,831,420	984,062,238,952
-	(7,820,493,551)	95,506,028,506	18,610,375,738	356,289,717,950	11,079,194,383
-	(4,647,629,958,575)	484,600,359,986	440,829,658,922	3,353,714,524,884	60,162,308,127

(단위: 원)

		기말 장부가액	기말 잔액		
감액 /환입	기타 증감		감가상각 누계액	사용수익권	재평가이익
-	6,113,303,060,886	7,760,516,655,580	21,935,344,762	3,261,844,983,783	4,593,542,611,093
-	312,902,562,138	2,093,959,016,066	-	233,734,683,816	905,693,315,311
-	63,620,313,433	121,495,601,854	-	429,047,227,828	68,076,498,613
-	5,736,780,185,315	5,545,062,037,660	21,935,344,762	2,599,063,072,139	3,619,772,797,169

(8) 국가어항 증감명세서

① 당해연도 증감명세서

과목	기초 장부가액	증 감 내 역			
		취득 /자본적지출	대체	처분	감가 상각
합계	2,089,802,771,044	-	27,012,463,793	-	(82,534,141,447)
토지	965,635,582,696	-	3,883,631,172	-	-
건물	119,527,857,636	-	1,651,700,080	-	(4,120,060,148)
구축물	1,004,639,330,712	-	21,477,132,541	-	(78,414,081,299)

② 직전연도 증감명세서

과목	기초 장부가액	증 감 내 역			
		취득 /자본적지출	대체	처분	감가 상각
합계	1,505,827,043,231	-	23,122,915,772	-	(84,570,302,412)
토지	816,934,326,248	-	2,624,472,312	-	-
건물	112,017,922,811	-	1,553,843,201	-	(3,806,576,330)
구축물	576,874,794,172	-	18,944,600,259	-	(80,763,726,082)

(단위: 원)

감액 /환입	기타 증감	기말 장부가액	기말 잔액		
			감가상각 누계액	사용수익권	재평가이익
-	30,427,143,493	2,064,708,236,883	142,121,668,573	11,995,557,076	736,530,855,328
-	63,433,794,095	1,032,953,007,963	-	970	451,218,463,154
-	15,432,734,091	132,492,231,659	5,069,187,736	11,995,556,106	7,459,432,145
-	(48,439,384,693)	899,262,997,261	137,052,480,837	-	277,852,960,029

(단위: 원)

감액 /환입	기타 증감	기말 장부가액	기말 잔액		
			감가상각 누계액	사용수익권	재평가이익
-	645,423,114,453	2,089,802,771,044	2,732,141,018	12,869,223,204	817,850,916,138
-	146,076,784,136	965,635,582,696	-	970	433,593,340,615
-	9,762,667,954	119,527,857,636	198,261,508	12,869,222,234	6,416,426,592
-	489,583,662,363	1,004,639,330,712	2,533,879,510	-	377,841,148,931

2) 건설중인사회기반시설 명세서

(단위: 원)

과 목	당기말	전기말
합 계	12,539,639,406,007	9,702,505,453,543
건설중인도로	8,544,403,199,346	6,486,165,695,379
건설중인철도	7,109,181,280	414,822,945,750
건설중인항만	2,326,806,997,484	1,520,393,066,203
건설중인댐	28,107,590	28,107,590
건설중인공항	218,016,861,659	121,840,819,941
건설중인하천	764,990,395,231	620,536,033,597
건설중인상수도	1,574,609,026	1,359,393,026
건설중인국가어항	674,196,517,196	536,700,204,862
건설중인기타사회기반시설	2,513,537,195	659,187,195

“공 란”

9. 무형자산명세서

1) 당해연도 증감명세서

내역	기초장부가액	취득/자본적지출	처분
합계	2,590,605,631,964	762,862,404,570	(10,236,921,810)
산업재산권	49,430,385,763	1,191,392,417	-
광업권	415,737,000	716,639,700	-
소프트웨어	2,371,380,401,873	730,684,712,268	(10,236,921,810)
기타무형자산	169,379,107,328	30,269,660,185	-

2) 직전연도 증감명세서

내역	기초장부가액	취득/자본적지출	처분
합계	1,983,396,336,897	735,528,380,083	(15,569,129,956)
산업재산권	22,653,645,252	388,665,442	-
광업권	172,080,000	42,181,500	-
소프트웨어	1,807,829,147,815	681,265,771,217	(15,569,129,956)
기타무형자산	152,741,463,830	53,831,761,924	-

(단위: 원)

감가상각	감액/환입	기타증감	기말장부가액
(1,074,935,472,451)	-	234,893,304,913	2,503,188,947,186
(7,041,580,275)	-	14,805,328,729	58,385,526,634
-	-	(1,132,376,700)	-
(1,036,164,414,679)	-	214,799,390,353	2,270,463,168,005
(31,729,477,497)	-	6,420,962,531	174,340,252,547

(단위: 원)

감가상각	감액/환입	기타증감	기말장부가액
(595,733,833,259)	-	482,983,878,199	2,590,605,631,964
(4,765,151,639)	-	31,153,226,708	49,430,385,763
(22,656,500)	-	224,132,000	415,737,000
(563,872,751,684)	-	461,727,364,481	2,371,380,401,873
(27,073,273,436)	-	(10,120,844,990)	169,379,107,328

10. 국채및공채명세서

1) 단기국채및공채명세서 : 해당없음

2) 장기국채및공채명세서

(단위: 원)

내역		이자율(%)	당기말	전기말
장기국채	합 계		792,116,540,832,693	737,562,166,829,756
	국고채권	0.0 ~ 5.8%	938,253,487,452,020	844,083,295,870,820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0 ~ 5.6%	11,807,862,500,000	11,214,168,500,000
	1종 국민주택채권	1.0 ~ 2.0%	82,150,073,410,000	82,132,840,810,000
	2종 국민주택채권	0.0 ~ 3.0%	2,534,630,000	19,787,026,000
	국제기구 출자재정증권	0.0%	9,428,188,610	9,428,188,610
	액면금액 소계		1,032,223,386,180,630	937,459,520,395,430
	(유동성장기국채)	1.0 ~ 3.9%	(102,415,275,372,090)	(70,484,801,696,000)
	국채할증발행차금		9,034,192,455,818	9,807,758,780,284
	(국채할인발행차금)		(21,913,482,080,547)	(13,427,517,120,636)
	장부가액		916,928,821,183,811	863,354,960,359,078
(자기국채)		(124,812,280,351,118)	(125,792,793,529,322)	
장기공채	합 계		17,246,563,198,950	15,558,667,229,386
	중소기업진흥채권	1.0 ~ 5.7%	21,653,048,095,756	19,927,473,722,734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		-	-
	액면금액 소계		21,653,048,095,756	19,927,473,722,734
	(유동성장기공채)	1.0 ~ 5.7%	(3,820,000,000,000)	(3,330,000,000,000)
	공채할증발행차금		-	-
	(공채할인발행차금)		(5,658,258,364)	(6,200,057,639)
	장부가액		17,827,389,837,392	16,591,273,665,095
(자기공채)		(580,826,638,442)	(1,032,606,435,709)	

11. 차입금명세서

1) 단기차입금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이자율 (%)	당기말	전기말
합 계		95,545,853,752,937	96,268,978,936,028
기타단기민간에수금	0.0 ~ 3.6	95,545,853,752,937	96,268,978,936,028

2) 장기차입금명세서

(단위: 원)

구 분	이자율 (%)	당기말	전기말
합 계		2,882,739,630,742	2,968,937,660,719
국내장기차입금	소계	2,072,964,470,163	2,205,644,569,150
	국내장기차입금	0.0	2,203,325,470,163
	(유동성국내장기차입금)	0.0	(130,361,000,000)
금융리스부채	소계	788,471,891,829	740,017,840,819
	금융리스부채	0.0 ~ 10.3	1,216,101,875,665
	(유동성금융리스부채)	0.0 ~ 10.3	(427,629,983,836)
기타		21,303,268,750	23,275,250,750

3) 금융리스부채 연도별 상환계획

(단위: 원)

연도	당기말
2023년	472,515,304,365
2024년	396,664,568,275
2025년	273,556,774,751
2026년 이후	216,566,213,854
합계	1,359,302,861,245
(현재가치 조정금액)	(143,200,985,580)
금융리스부채의 현재가치	1,216,101,875,665

4) 운용리스료 연도별 지급계획

(단위: 원)

연도	당기말
2023년	5,478,173,410
2024년	4,374,344,344
2025년	3,182,215,052
2026년 이후	3,510,942,270
합계	16,545,675,076

12. 출연비명세서

(단위: 원)

중앙관서	출연대상기관	당기	전기
합계		51,931,983,144,030	47,127,655,937,792
국회	국회미래연구원 등	4,204,550,000	4,008,315,000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	한국개발연구원 등	521,484,854,000	507,695,185,000
기획재정부	서민금융진흥원 등	1,079,235,104,910	444,069,178,620
교육부	한국장학재단 등	9,344,379,100,800	8,267,204,915,200
외교부	한국국제협력단 등	872,494,376,610	823,537,964,360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36,913,000,000	34,555,000,000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 등	71,868,000,000	56,108,000,000
인사혁신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1,283,000,000	1,369,636,000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문화기술) 등	182,551,561,500	144,778,054,000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수산물기술기획평가원 등	287,202,000,000	266,500,000,000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6,295,694,197,663	6,051,324,687,296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907,068,860,000	1,070,976,499,000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	899,406,024,867	866,088,363,561
고용노동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	2,979,836,539,750	2,730,981,796,140
여성가족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등	62,544,000,000	53,429,000,000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등	6,149,619,450,000	6,539,720,664,000
해양수산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715,023,382,000	686,894,676,750
식품의약품안전처	(재)한국연구재단 등	67,360,000,000	45,884,000,000
방송통신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3,774,000,000	3,661,000,000
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등	61,317,000,000	56,783,000,000
금융위원회	농협 상호금융부 등	157,222,158,490	68,228,276,510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안전재단 등	133,040,000,000	135,185,265,000
관세청	(재)한국연구재단	4,417,000,000	3,000,000,000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등	3,786,988,614,950	3,104,710,010,380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199,253,000,000	193,608,367,000
문화재청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	10,225,000,000	7,500,000,000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285,835,998,930	264,897,831,680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등	56,276,000,000	53,227,000,000
특허청	한국발명진흥회 등	8,750,000,000	14,265,000,000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등	60,416,109,000	58,097,109,000
새만금개발청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1,085,000,000	-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등	1,284,461,478,000	431,563,149,000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3,336,810,800,000	3,034,829,000,000
소방청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	20,784,000,000	18,566,000,000
해양경찰청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등	42,031,000,000	25,351,000,000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등	11,960,933,982,560	11,040,054,994,295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27,994,000,000	19,003,000,000
질병관리청	한국보건산업진흥원	12,200,000,000	-

